

연구보고 2008-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유 희 정
이 미 화
장 명 립
김 은 설
김 은 영
송 신 영

육아정책개발센터

머 리 말

취학전 영유아를 위한 대표적인 육아지원정책으로는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탄생하였던 보육시설들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들 역시 기존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수요자 요구에 따라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3-5세 유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점차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OECD에서도 통합적으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제도적 이원화가 중복 운영이라는 정책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더욱 요구하게 될 전망이고,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통합 방안을 도출하고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2006년도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연구, 2007년도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이어 2008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 추진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관련 학회들로 하여금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에 대하여 학회의 대표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천 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강구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관련 학회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구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으로 혹은 분야별로 자문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가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08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구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그간 수행되었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체제 관련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통합을 모색하고자 보다 세부적인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특히 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6년도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학회들과 구축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련 학회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체제에 대하여 학회의 대표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협력과 통합 실천 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강구해보고자 하였음.
- 또한 통합을 위한 세부 실천 전략으로 기관·시설, 교사 자격, 교육·보육 과정, 관리·감독 체계, 예산 지원을 중심으로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의 기본적인 요인인 기관의 설치 및 운영, 교사 자격을 포함한 교사 양성,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보육과정, 교육·보육 서비스 관리·감독, 보육서비스 이용과 교육서비스 이용에서의 비용과 예산의 지원을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 및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연구 내용

-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원화 체제의 현황 파악
-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외국 사례 검토
-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학회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
- 학부모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
-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방안 모색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9개의 관련 학회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 자문회의
- 워크숍
- 설문조사(학부모 1,500명)

2. 유아교육·보육 이원화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원화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5개 하위 요소인 기관·시설, 교사 자격, 교육·보육 과정, 관리·감독 체계, 예산 지원에 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개괄하였음.

가. 기관·시설

-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기관·시설 수 현황, 설치 및 시설 설비, 운영 및 이용 특성에서 차이가 있음.
- 국공립 기관·시설 비율에 있어, 유치원은 53.6%인데 비해 보육시설은 5.7%임.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 설비는 각각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따르고 있어 설립유형이나 면적, 임대, 설치위치 등 규정이 다름.
- 운영일수(유치원 195일/ 보육시설 346일), 교사당 유아수(유치원 25명/보육시설 16.7명), 운영시간 등에서도 차이를 보임.

나. 교사 자격

- 우리나라 영유아를 담당하는 육아지원인력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구분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교육과정, 그리고 재교육과정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보다 낮아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함.

- 특히 사립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다. 교육·보육 과정

- 주관부처 및 관련법의 이원화, 교육·보육 과정 표현상의 차이, 교육·보육 과정 통합 방법에 대한 이견,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연계되고 통합될 필요성이 있음.
- 비효율성, 예산낭비, 교사들의 혼란, 유아들에 대한 차별,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라. 관리·감독 체계

- 유아교육·보육 관할 부처 및 전달체계는 유아교육(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유치원)과 보육(보건복지가족부 관할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유아교육 및 보육의 국가 최고 심의기구(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평가체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각기 다른 평가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평가 내용, 평가 지표, 평가 방법 및 평가위원 등의 측면에서 통합 방안 모색 필요함.
- 유아교육·보육의 지원체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기관/센터의 그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관계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함.

마. 예산 지원

- 육아지원 예산은 유아교육 지원과 보육 지원, 농어촌자녀 지원, 노동부 직장 보육 지원 예산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음.
 - 이를 통합한 중앙정부 예산은 2002년도 2,461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14,700 억원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 중 지원을 받는 영유아의 비율은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러나 기관의 설립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른 점, 지원 내역의 불명확성, 지원 효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약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에 관한 학회 의견

-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관·시설, 교사 자격, 교육·보육과정, 관리·감독 체계, 예산 지원에 대하여 본 연구에 의견을 개진한 9개 학회의 의견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음.

4. 외국의 유아교육·보육의 협력 및 통합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에 대해 OECD(2006)가 제안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협력적인 정책구조
 - 주무부처의 지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 개혁을 위한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 현장, 전문가, 부모의 연계
-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앙부처 혹은 과제별 통합을 이룬 국가의 통합과정과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스웨덴
 - 1997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주관 부처를 이관함.
 - 1998년 학교법(School Act)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만 1-6세 영유아를 위한 피르스콜라와 만 6-7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급, 가정 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이 있음

- 영국
 -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유아교육 및 보육을 1997년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로 통합, 교육고용부 산하의 아동국(Minister for Children)이 총괄해 왔음.
 - 2007년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사회의 기반인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에서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를 신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음.
- 일본
 -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유치원의 원아수 감소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보육소 입소 희망 아동의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시설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종합시설이 제안됨.
 - 2006년 취학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보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인정어린이원이 운영되고 있음.
- 싱가포르
 - 1990년대 후반 교육부와 보육 주관부처인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와 함께 양부처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영유아교사자격인증위원회의 SCPE(Steering Committee on Preschool Education)을 구성하여 일원화된 교사양성제도 시행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음.

5.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 조사목적
 - 수요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함.
- 조사방법 및 대상
 - 조사방법: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조사원을 파견하는 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
 - 조사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500명

□ 조사 내용 및 결과

-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지 보육시설에 보낼지 두 기관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5.7%로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8%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차이점 중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는 교사의 성품 및 자질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급·간식, 운영 시간 순이었음.
-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연령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응답이 67.9%로 달라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유치원 교사의 학력은 대졸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73.4%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교사의 학력은 대졸이라는 의견이 41.3%로 가장 높았으나 전문대졸이라는 의견도 39.3%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남.
-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보육시설이 국가가 정한 교육/보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1.9%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하고 바라는 희망사항은 인성지도라는 의견이 56.5%로 가장 높았음.
-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가구의 형편에 따라 정부가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95.2%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정부의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5.1%로 받고 있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52.9%로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현재 유치원 교육비나 보육시설 보육료 수준이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 중 기본비용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국공립 유치원/국공립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민간 보육시설’은 ‘교육비/보육료’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8.1%여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감독하고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5%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주관하는 평가나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0%로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기관에 대한 평가나 평가인증의 통과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이 91.6%여서 대부분이 고려할 것으로 나타남.
- 자녀를 보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프로그램 및 활동특성이라는 의견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6.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정책방안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을 일원화하는 경우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학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3가지의 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음.
 - 0-5세 연령 전체를 통합하여 일원화
 - 연령에 따라 기관·시설을 구분함으로써 연령별 이원화
 -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이원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임.
- 본 연구에서는 일원화에 초점을 두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간의 과정이 가능한 경우 협력안을 제시하였음.

가. 기관·시설

- 기관·시설의 통합 방안에는 0-5세 영유아를 하나의 기관·시설에서 교육·보육을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향과 연령별로 이원화하여 기관·시설을 구분, 운영하는 방향 등 두 가지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많은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 OECD 권고를 비롯한 외국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사례,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부모의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위의 두 가지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0-5세 영유아 기관·시설 전체를 일원화하여 통합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운영시간, 시설·설비 기준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상충적인 부분들을 조정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통합해야 함. 교육중심인지 보육중심인지에 따라 법의 목적, 성격, 이념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운영시간은 현재 유치원의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를 공통으로 채택하며 현재 보육시설의 취약보육기능도 기관에 따라 유지되어야 함.
 - 시설설비와 관련해서는 시설임대나 매도·담보제공 금지 조항이 조정되어야 하고 교사면적이나, 사용층, 실외놀이터 기준이 상향되어야 함.
- 연령별 이원화는 영아는 보육시설이, 유아는 유치원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통합 방안임.
 - 법적 규정들은 동일한 내용을 영아와 유아라는 연령기준에서만 차이 나게 조정할 수 있음. 두 법은 공히 교육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해야 함.
 - 운영시간은, 유치원의 경우 야간, 휴일, 일시보육 등 취약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영아를 주로 담당하는 보육시설에서는 반일제, 종일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교사 자격

- 통합안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통합하여 ‘영유아교사(가칭)’로 자격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임.
 - 개정된 자격기준에 의해 대학에서는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전공 학과를 도입하고, 표준양성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함.
 - 영유아교사의 자격을 상향 조정하여 4년제 대학 졸업(이상)으로 설정함(전문대학졸업자 경과조치).
 - 영유아교사의 자격에 따라 처우와 역할에 확실히 차등을 두되, 근무여건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함.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영유아교사의 처우는 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상향함.

- 교사의 자격, 양성교육의 정도,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상호고용을 위한 준비교육 등 다양한 현직 재교육프로그램 개발·실시 필요.
- 3급 보육교사제를 폐지(또는 보조교사제)하고, 보육교사교육원은 기존 인력의 직무연수와 승급 교육기관으로 전환함.
- 국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함.

□ 협력안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관리를 담당했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교사자격관리체계 기능을 조정하고 협력함.

□ 연령별 이원화안

- 교사자격제도를 연령별로 통합하는 안은 영아담당교사와 유아담당교사로 구분하여 이원화하자는 것으로 교사 배출 과정에서 현실화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시하지 않음.

다. 교육·보육 과정

□ 통합안

- 0-5세를 위한 국가 수준의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과정(가칭)을 개발함.
- 새로운 영유아 교육과정은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삶의 기초로서 생애 초기의 교육을 위해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하며, 상위 교육과정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 기초연구, 요구조사, 영유아 교육과정(안) 구성, 시범운영, 영유아 교육과정(안) 수정,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을 거쳐 개발
- 개발내용은 교육과 보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인성지도 강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연령의 연계성과 초등학교와의 연계성 고려, 학습기준에 기초
-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과 공조, 자료집과 교재 교구 연구·개발, 교사교육, 장학, 평가
-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보급되는 동안 연령별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병행하여 적용

□ 협력안

- 현행대로 유치원은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시설은 현행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되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 동시에 개정함.
-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 협의하는 내용과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 조정, 통합하는 새로운 법적 규정 제시
- 교육·보육과정 개정은 동시에 하며,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과정은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과 일치를 추구해야 할 부분을 합의하고 나머지는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함.

□ 연령별 통합안

-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과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각각 개발하여 연령별로 같은 교육·보육과정을 적용하도록 함.
-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여 개발하며,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개발하되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삶의 기초로서 생애 초기의 교육을 위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함.
- 영아와 유아를 위한 연령별 교육·보육과정 개발을 위해 ‘영아보육과정 개발위원회(가칭)’와 ‘유아교육과정개발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

라. 관리·감독 체계

□ 통합안

- 취학전 영유아 0-5세를 위한 국가 수준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감독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함.
- 국무총리 산하에 ‘영유아교육·보육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함.
 - 유아교육·보육 특별위원회는 현행 유아교육법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및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유·보 통합까지는 통합 방안 모색이 주요 기능이 되며, 통합 이후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총괄 심의 기능을 담당함.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조정, 통합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함.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 명칭을 영유아학교(가칭)로, 관리 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하거나 제 3의 부처의 신설·통합도 고려할 수 있음.

-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전문직 및 행정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별도의 '실' 또는 '국' 수준의 조직을 갖추어야 함.
- 두 부처의 책임하에 담당 부서를 두 부처 중 어느 한 부처에 둘 수도 있으며, 해당 부서는 취학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위임 권한 보유 및 유·보 통합 업무를 담당함.
- 통합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합 평가 기구(가칭: 영유아학교평가국)를 설치함.
- 통합된 기관에 대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기구(가칭: 영유아교육·보육지원센터)를 설치함.

□ 협력안

- 현행대로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리하에,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관리하에 두고 현재의 특성을 발전시키되, 양 부처간의 협력, 시·도차원의 협력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적 운영 방안을 모색함.
-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연계 운영함.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조례를 제정함.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협력 추진 공동조직 구성 및 운영체제를 구축함.
- 시·도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과 시·도청(또는 시·군·구청)간에 상호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교류 및 유아교육과 보육 연계 협력 전담과(팀)를 설치함.

마. 예산 지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영유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고 이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 통합안

- 기본적으로 영유아 1인당 비용에 근거하여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수준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운영의 구조가 통합되도록 하여야 함.
- 다음의 사항을 방안을 제안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들의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육아지원 예산 지원의 규모를 OECD가 권장하는 GDP대비 1%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함.
 - 2008년도 우리나라 GDP는 944조 4,457억 원으로 이 금액의 1%는 9조 4,444억 원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육아지원 예산을 합했을 때 44,428억 원임을 고려하여 볼 때,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최소한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두 배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
 - 예산 지원의 원칙으로는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1) 교사대 영유아 비율의 통합, 2) 학급당 교사의 동일 배치, 3) 학급당 동일 시설 기준 적용, 4) 영유아의 연령별 1인당 비용의 통합 단가 마련, 5) 지원 기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 협력안

- 지원방식의 통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국공립-사립/민간, 유치원-보육시설 간 발생하는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차이는 대체적으로 교사 인건비와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비에서 비롯되는 것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연령별 소요비용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도록 제안

<현재>		<중간단계>		<최종 통합단계>	
국공립 유치원	비용단가 A	국공립 유치원	비용단가 A	모든 기관 (국공립·사립 유치원, 국공립·법인· 민간·가정보육 시설)	비용단가 A
국공립·법인보 육시설	비용단가 B	사립유치원, 국공립·법인· 민간·가정보육 시설	비용단가 B		
사립유치원	비용단가 C				
민간·가정 보육시설	비용단가 D				
				종일반 추가 지원	
				종일반 추가 지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유아교육·보육 이원화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9
1. 기관·시설	9
2. 교사 자격	14
3. 교육·보육 과정	22
4. 관리·감독 체계	28
5. 예산 지원	41
III.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에 관한 학회 의견	49
1. 기관·시설	49
2. 교사 자격	58
3. 교육·보육 과정	66
4. 관리·감독 체계	73
5. 예산 지원	83
IV. 외국의 유아교육·보육의 협력 및 통합	90
1.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관한 OECD 정책 제안	90
2. 외국의 유아교육·보육의 협력 및 통합 사례	93
V.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118
1. 조사 목적	118
2. 조사 방법 및 대상	118
3. 조사 내용 및 결과	119
4. 소결	159

VI.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정책방안	160
1. 기관·시설	160
2. 교사 자격	172
3. 교육·보육 과정	178
4. 관리·감독 체계	186
5. 예산 지원	192
참고문헌	199
부록	201
부록 1. 한국보육정책학회 원고	203
부록 2. 한국보육지원학회 원고	207
부록 3. 한국보육학회 원고	237
부록 4.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원고	286
부록 5.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원고	305
부록 6.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원고	316
부록 7.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원고	355
부록 8. 한국유아교육학회 원고	390
부록 9. 한국육아지원학회 원고	431
부록 10. 교사 자격 관련 근로기준법	460
부록 11. 질문지	462

표 목 차

〈표 I-2-1〉 조사 내용	6
〈표 II-1-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수	9
〈표 II-1-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점	10
〈표 II-1-3〉 실내 환경 및 위생, 안전시설 관련 기준의 비교	11
〈표 II-1-4〉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12
〈표 II-2-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인원수	14
〈표 II-2-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기준 비교	15
〈표 II-2-3〉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과정 비교	16
〈표 II-2-4〉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현직재교육과정 비교	18
〈표 II-2-5〉 보육교사 시설유형별 급여액(2007년)	21
〈표 II-2-6〉 경력과 시설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연봉(2005년)	21
〈표 II-2-7〉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처 비교	22
〈표 II-3-1〉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주관부처 및 대상	23
〈표 II-3-2〉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24
〈표 II-3-3〉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25
〈표 II-3-4〉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의 각 영역 비교	25
〈표 II-4-1〉 시범평가 참여 유치원 현황	31
〈표 II-4-2〉 유치원 평가 지표(공통지표)	32
〈표 II-4-3〉 평가인증 참여신청 현황(2005-2008년)	34
〈표 II-4-4〉 평가인증 참여시설 설립유형별 현황(2005-2008.8)	35
〈표 II-4-5〉 21인 이상 평가인증 지표	36
〈표 II-4-6〉 유치원평가 및 보육시설평가인증 체계 비교	37
〈표 II-5-1〉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42
〈표 II-5-2〉 연도별 보육지원아 비율	43
〈표 II-5-3〉 유아 1인당 월 교육예산 지원액(서울시 2008년 예산기준)	45
〈표 II-5-4〉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추계(서울시, 2008)	46
〈표 III-1-1〉 학회별 통합 방안 - 기관·시설	51
〈표 III-2-1〉 학회별 통합 방안 - 교사 자격	60
〈표 IV-2-1〉 일본의 유치원과 보육소 통합 추진 경과	109

〈표 IV-2-2〉 유보제휴형의 재정상의 특례(사립시설)	111
〈표 IV-2-3〉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제도의 비교	111
〈표 IV-2-4〉 싱가포르 교사 훈련의 자격 및 내용	115
〈표 IV-2-5〉 싱가포르 교사자격 변경	116
〈표 IV-2-6〉 싱가포르 교사자격 훈련시간 비교	116
〈표 V-2-1〉 응답자 특성	120
〈표 V-3-1〉 유치원/보육시설 선택 고민 경험 유무	121
〈표 V-3-2〉 유치원/보육시설 차이에 대한 의견	122
〈표 V-3-3〉 유치원/보육시설 차이에 대한 내용(중복응답)	123
〈표 V-3-4〉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124
〈표 V-3-5〉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운영시간	125
〈표 V-3-6〉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실내환경	126
〈표 V-3-7〉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실외놀이공간	127
〈표 V-3-8〉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놀잇감, 교재교구	128
〈표 V-3-9〉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교육/보육 내용 및 프로그램	129
〈표 V-3-10〉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선생님의 성품 및 전문적 자질	130
〈표 V-3-11〉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건강/위생 및 안전 관리	131
〈표 V-3-12〉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급/간식	132
〈표 V-3-13〉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등/하원버스 이용	133
〈표 V-3-14〉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주변 환경	135
〈표 V-3-15〉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부모교육 및 가정과의 교류	136
〈표 V-3-16〉 유치원/보육시설 일원화에 대한 의견	137
〈표 V-3-17〉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인식	139
〈표 V-3-18〉 부모가 생각하는 유치원교사의 적정 학력 수준	140
〈표 V-3-19〉 부모가 생각하는 보육시설 영아 담당 교사의 적정 학력 수준	141
〈표 V-3-20〉 부모가 생각하는 보육시설 유아 담당 교사의 적정한 학력 수준	142
〈표 V-3-21〉 부모가 생각하는 영유아 (통합) 교사의 적정 학력 수준	143
〈표 V-3-22〉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보육 과정 운영 인지도	145
〈표 V-3-23〉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중점 희망사항	146
〈표 V-3-24〉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정부 지원 인지도	147
〈표 V-3-25〉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정부 지원 경험	149

〈표 V-3-26〉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	150
〈표 V-3-27〉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 수준에 대한 불만족 이유	151
〈표 V-3-28〉 국공립/사립(민간)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 차이에 대한 인지도	153
〈표 V-3-29〉 유치원/보육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인지도	154
〈표 V-3-30〉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주관 평가/평가 인증의 필요성	156
〈표 V-3-31〉 유치원/보육시설 선택 시 평가/평가인증을 고려하는지 여부	157
〈표 V-3-32〉 유치원/보육시설 선택 시 가장 알고 싶은 정보	158
〈표 VI-1-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령)의 기관·시설 관련 내용의 통합 ...	164
〈표 VI-1-2〉 기관·시설 설치 기준의 통합	167
〈표 VI-1-3〉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연령별 이원화안주)	170
〈표 VI-2-1〉 교사 자격제도 일원화를 위한 개정안	175
〈표 VI-3-1〉 통합교육과정을 위한 근거 법 개정 안	179
〈표 VI-3-2〉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 상호 협의를 위한 근거 법 개정 안	183
〈표 VI-3-3〉 연령별 교육·보육과정을 위한 근거 법 개정 안	185
〈표 VI-4-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령)의 기관·시설 관련 내용의 통합 ...	189

그림 목 차

[그림 II-4-1] 유아교육·보육 전달체계	28
[그림 II-5-1] OECD국가들에서의 ECEC서비스(0 - 6세)에 대한 정부투자	44
[그림 IV-2-1] 교사훈련 과정	117
[그림 VI-1-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기관화 과정	161
[그림 VI-1-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령별 일원화 과정	168
[그림 VI-3-1]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과정	180

부 록 표 목 차

〈표 2-1-1〉 보육시설과 유치원 설치 기준 비교	209
〈표 2-3-1〉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비교	221
〈표 2-5-1〉 각 국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정도	230
〈표 2-5-2〉 보육/교육 부담 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2005)	230
〈표 3-1-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립기준 비교	239
〈표 3-1-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관리기준 비교	241
〈표 3-1-3〉 국·공립, 사립/민간 유형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244
〈표 3-1-4〉 기관별 이용 시간	244
〈표 3-1-5〉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중점 교육·보육 활동 내용	245
〈표 3-1-6〉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작성 시 주요 참고 자료	246
〈표 3-2-1〉 유럽국가들의 유아교원의 역할 및 성격에 대한 구분	254
〈표 3-3-1〉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관련 법조항	262
〈표 3-3-2〉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비교	263
〈표 3-5-1〉 육아지원 재정의 변화	278
〈표 6-1-1〉 기관/시설 서비스기능의 통합	320
〈표 6-1-2〉 기관/시설 유형의 통합	321
〈표 6-1-3〉 기관 수급계획과 시행의 통합	321
〈표 6-1-4〉 설립인가 및 설치 기준령의 통합	322
〈표 6-1-5〉 기관/시설 설립 및 설치 기준의 통합	323
〈표 6-1-6〉 기관/시설 관련 평가인증 내용의 통합	325
〈표 6-4-1〉 유치원, 보육시설 평가제도 및 운영 비교	337
〈표 6-4-2〉 유아교육진흥원 및 센터 설립 현황	338
〈표 6-4-3〉 보육정보센터 현황	339
〈표 6-5-1〉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2006년)	344
〈표 6-5-2〉 교육 및 보육수요 아동 수 추정(2006-2010)	346
〈표 6-5-3〉 보육·유아교육비용 소요예산 추정	347
〈표 6-5-4〉 유치원교사·보육교사 통합호봉 예시	352
〈표 7-1-1〉 유아교육과 기관과 보육 시설의 이원화 현황	357
〈표 7-1-2〉 유아교육과 기관과 보육 시설의 통합 대안	361

〈표 7-2-1〉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 (유아교육법 제 22조)	362
〈표 7-2-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관련)	363
〈표 7-2-3〉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검정기준비교	364
〈표 7-3-1〉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관련법 조항	369
〈표 7-3-2〉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비교	372
〈표 8-1-1〉 시설기준 법령	393
〈표 8-1-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놀이터 및 유희실의 시설기준	395
〈표 8-1-3〉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실내 환경 기준	396
〈표 8-1-4〉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욕실 및 화장실 시설기준	399
〈표 8-2-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비교	403
〈표 8-2-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검정기준 비교	404
〈표 8-2-3〉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비교	405
〈표 8-3-1〉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목적, 인간상, 목표 비교	410
〈표 8-3-2〉 영역과 내용 비교	412
〈표 9-1-1〉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설립 기준 비교	433
〈표 9-1-2〉 유아학교 설립 기준 및 시설 설비 기준 안	435
〈표 9-1-3〉 와까야마현 시로하마 유아원의 ‘합축시설’ 운영사례	437
〈표 9-2-1〉 유아학교 최소 인력배치 기준	440
〈표 9-2-2〉 유아학교 교사자격증	441
〈표 9-2-3〉 전국의 대학 및 대학교의 보육핵심학과	442
〈표 9-2-4〉 유아학교 교사의 업무분담을 위한 틀	442
〈표 9-2-5〉 유아학교 자격취득요건: 학점 및 개편내용	443
〈표 9-3-1〉 현행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각 영역별 내용 비교	448
〈표 9-4-1〉 현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	453
〈표 9-4-2〉 유아학교 평가인증 지표(안)	454

부 록 그 립 목 차

[그림 2-4-1] 유아교육 전달체계와 보육 전달체계 현황(이옥 외, 2006)	225
[그림 3-4-1] 현 보육시설 전달체계	273
[그림 3-4-2] 현 유치원 전달체계	274
[그림 3-4-3] 통합형 전달 체계	276
[그림 6-4-1] 보육전달체계	336
[그림 6-4-2] 유아교육전달체계	336
[그림 6-4-3] 전달체계 통합안	342
[그림 7-4-1] 유아교육전달체계	380
[그림 7-4-2] 보육전달체계	381
[그림 7-5-1]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통합 재정지원 모형	386
[그림 8-5-1]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의 장, 단기 통합 방안	424
[그림 9-4-1] 유아학교 체제 전환 후의 전달체계	45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정책은 크게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으로 대별되며 그간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유아교육은 1909년 최초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인 나남유치원이 설립된 이후 유아들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일반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보육시설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 탁아시설에서 소수의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1990년대 이후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 사회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 중심으로의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 증가 등은 사회적 육아지원의 요구를 증폭시켰다. 그 결과 1990년대를 전후하여 보육시설들은 더 이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탁아시설에서 벗어나 맞벌이 가구 자녀들에게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즉,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보육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이르렀다.

한편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의 종일반 요구가 증가하자 그간 반일반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현재 총 8,294개 유치원 중 3,831개 유치원(46.2%)에서 총취원아 541,550명중 269,542명(49.8%)의 원아가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와 같이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 서비스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가 점차 유사해지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적 이원화는 중복운영이라는 정책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즉,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분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인 3-5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고, 두 영역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종사자, 심지어 학계 전문가들 간에 소모적 갈등이 야기되었다(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이일주, 1999). 이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을 모색하여 육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교육개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은 미흡하다. 앞으로도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더욱 요구하게 될 전망이다,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안을 도출하고자 설립된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센터 설립 초기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06년도 수행한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연구에서는 육아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의 필요성,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연구 필요성, 세계 보편적 육아정책 주제로서의 연구 필요성, 그간 수행되었던 통합관련 선행연구 한계 극복의 필요성, 육아정책 환경의 변화 등을 연구의 필요성으로 정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 법적·제도적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두 영역의 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두 영역의 협력과 통합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 과제들을 탐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와 주요 국가들에서의 통합과 협력 사례들을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통합적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나아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정책부서 담당 공무원,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수요자인 유치원 교직원, 관련학계 전문가들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협력과 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모형을 검토하여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기능별 일원화 후 통합, 과제별 조정 후 부처통합, 단기부처 통합-교육인적자원부 총괄, 단기부처 통합-여성가족부의 한시적 총괄 등 총 다섯 유형의 통합모형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론적, 이상적 통합모형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 방안과 세부 협력과 조정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통합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부처통합 목표를 지향하되, 현행 이원화 체제의 주요 갈등 유발 요인의 해소 또는 완화 방안을 중시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통합모형이다.

2007년도 실시된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방안 연구는 국내외 유치원과 보육시설 서비스 협력 사례들을 발굴, 조사하여 협력 유형과 협력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과 과제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의 사례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사례, 둘째, 대학 부설 기관 협력 사례, 셋째, 개인 동일기관장에 의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사례, 넷째,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협력 사례이다. 연구결과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협력 유형을 ‘기능 부가형’, ‘제휴형’, ‘연합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이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되었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체제 관련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통합을 모색하고자 보다 세부적인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6년도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학회들과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학회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체제에 대하여 학회의 대표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협력과 통합 실천 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강구해보고자 하였다. 통합을 위한 세부 실천 전략으로는 기관 통합, 교사 통합, 교육·보육 과정 통합, 교육·보육 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예산의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의 기본적인 요인 기관의 설치 및 운영, 교사 자격을 포함한 교사 양성,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보육 과정, 교육·보육 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교육서비스 이용과 보육서비스 이용에서의 비용과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연구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원화 체제의 현황 파악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는지 문헌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외국 사례 검토

OECD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에서 0-5세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운영의 통합에 대한 연구와 노력사례들을 살펴보아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3)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학회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학회들이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통합을 위한 방안모색에 활용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학회들로 하여금 각각의 학회들이 제안한 서로의 의견들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통합을 향한 학회들의 의견수합을 시도하였다.

4) 학부모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통합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5)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방안 모색

선행연구 결과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방안을 제안하였다.

나.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관련 학회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및 워크숍 개최, 학부모 의견조사 등이 활용되었다.

1) 문헌연구

기존의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0-5세 영유아들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통합사례를 조사하였다. 검토 국가로는 스웨덴, 영국, 일본, 싱가포르 4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2) 학회 의견 수렴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회들로 하여금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통합방안으로는 기관·시설, 교사 자격, 교육·보육 과정, 교육·보육 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예산 지원의 소재목별로 제안하도록 하였다. 대상 학회는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정된 총 12개 학회이다. 이중 3개 학회가 불참하여 총 9개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¹⁾.

3) 설문 조사

학부모들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부모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 11월 3일에서 11월 17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질문지는 연구진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1)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정된 총 12개 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보육정책학회

〈표 1-2-1〉 조사 내용

영역	내용
일반사항	- 이용기관 유형, 기관 이용 기간
기관·시설 관련 사항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차이 인식 및 이유, 차이 내용 - 이용 기관에 대한 만족도(11개 항목별): 운영시간, 실내 환경, 실외 놀이 공간, 놀잇감·교재교구, 교육·보육 내용 및 프로그램, 교사의 성품 및 전문적 자질, 건강·위생 및 안전 관리, 급·간식, 등·하원버스 이용, 주변 환경, 부모교육 및 가정과의 교류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에 대한 의견
교사 관련 사항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의견 및 요구 학력, 이유
교육·보육 과정 관련 사항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 및 보육 과정에 대한 인지 -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에서 중점을 두는 내용
관리·감독 관련 사항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담당부처에 대한 인지 - 국가가 주관하는 평가, 평가인증에 대한 필요성 인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나 평가인증에 대한 고려 여부 - 유치원, 어린이집 선택 시 요구 정보
예산 관련 사항	-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시 정부의 교육비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 -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에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인지 - 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대한 만족 정도, 만족하지 않은 경우 이유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민간어린이집’에서의 교육비, 보육료의 차이 인지 여부

4) 자문회의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 7회의 자문회의와 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가) 1차 자문회의(2008. 5)

유아교육과 보육(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개괄적인 정책 방안 제안을 논의하였으며, 다음의 5개 영역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 방안(과제) 중심으로 과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기관·시설
- 교사 자격
- 교육·보육 과정
- 관리·감독 체계
- 예산 지원

참석자는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정된 총 12개 학회 대표자였으며, 한국보육정책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가 대상이었다. 회의 결과 3개 학회를 제외한 9개 학회가 연구에 정책제안을 개진하기로 하였다.

나) 2차 자문회의(2008. 10)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총 9개 학회 중 7개 학회(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가 참석하여 학회가 제출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에 관한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토론했다.

다) 3차 자문회의(2008. 11)

세부적으로 교육, 보육과정에 관한 일원화 정책방안에 대한 자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 4명이 참석하였다.

라) 4차 자문회의(2008. 12)

재정 지원에 관한 일원화 정책방안 자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 2명이 참석하였다.

마) 5차 자문회의(2008. 12)

기관/시설에 관한 일원화 정책방안 자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 4명이 참석하였다.

바) 6차 자문회의(2008. 12)

교사 자격에 관한 일원화 정책방안 자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 4명이 참석하였다.

사) 7차 자문회의(2008. 12)

질 관리/감독에 관한 일원화 정책방안 자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 4명이 참석하였다.

아) 워크숍 개최(2008. 10)

각 학회가 제출한 분야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상호 검토하고 토의하였다. 정책제안을 제출한 총 9개 학회 중 8개 학회(한국보육정책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대표자가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Ⅱ. 유아교육·보육 이원화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에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관·시설, 교사 자격, 교육·보육과정, 관리·감독 체계, 예산 지원 등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기관·시설

가. 현황

이 절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점을 각 기관(시설)의 수, 시설설치 기준 및 설비, 운영, 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관·시설 수 현황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은 2007년 현재 8,294개원이 운영되고 있고 보육시설은 30,856개소가 있다. 유치원의 경우 53.6%가 국·공립유치원이고 46.4%가 사립유치원으로, 기관수에 있어서는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이 5.7%에 불과하여 민간(가정, 법인, 단체 포함)보육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II-1-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수

단위: 개소(%)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계
국·공립	4,448(53.6)	1,748(5.7)	6,196(15.8)
사립/민간	3,846(46.4)	29,108(94.3)	32,954(84.2)
계	8,294(100)	30,856(100)	39,150(1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7. 12).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수에 있어서 유치원이 보육시설의 26.9%정도이나 국·공립 기관(시설)의 수를 보면 보육시설이 유치원 수의 39.3%에 불과하다. 전체 기관(시설) 수와 설립유형에 따른 기관(시설) 수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기관·시설 설치 및 시설 설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나 기준들이 서로 다르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법령과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시설 설치기준과 성격이 구분되고 있으며 설립유형도 다른 형식을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교 사항들은 다음 <표 II-1-2>와 <표 II-1-3>에 제시되고 있다.

<표 II-1-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점

	유치원	보육시설	
관련 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서비스 대상	만3세부터 취학 전 아동	0-5세 취학전 아동(12세까지 연장가능)	
성격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	보호자 위탁에 의한 보육“시설”	
설립유형 구분	- 국립유치원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국공립보육시설 - 법인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	
설치기준법령	대통령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설립인가(국공립외)	시·도 교육감 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기관(시설) 우선 이용자	-	1. 기초생활수급자 2. 편부모 자녀 3. 차상위 계층 자녀 4. 장애아 5. 근로자 자녀	
시설 설치 기준	교사 면적(m ²)	- 5N(40명 이하) - 80+3N(41명 이상)	4.29N
	시설임대	불허	제한 없음
	시설처분	매도·담보제공 금지	제한 없음
	설치위치	1, 2층 원칙, 200m유해시설 없는 곳.	1층 원칙. 50m내 유해시설 없는 곳.
	실외놀이터(체육장)	-160㎡(40명 이하) -120㎡+N(41명 이상)	2.5N(50인 미만 제외). 3종이상설치. 옥내/인근놀이터활용가능

출처: 이옥, 김은설, 신나리, 문무경, 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표 II-1-3〉 실내 환경 및 위생, 안전시설 관련 기준의 비교

	유치원	보육시설
교실·보육실	- 교실의 내부환경 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소음: 55데시벨 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 연령구분 없이 영유아 일인당 2.64㎡이상 - 침구, 놀이기구, 교재교구 구비 -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적정유지관리 - 바닥 난방시설
급·배수 시설	- 급수시설 구비 - 수질 검사로 위생상 무해 판명 필요	- (간이)상수도로 식수 공급시 직접 수도 꼭지에 연결 공급 - 음용수로 지하수 사용시 저수조 경유 - 더러운 물, 빗물의 배수설비
온수시설	- 온수공급 시설 구비	- 목욕실 : 난방, 미끄럼 방지장치, 샤워설비, 세면 설비, 냉온수 공급 설비, 수도꼭지 온도조정 및 고정, 보육실과 인접 위치
소방시설	-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 방염 및 소화설비	- 소화용 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 2층 이상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
급식시설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 1인 ○ 5개 이내 유치원 공동 영양사 가능 ○ 조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오염 방지 처리실, 조리실 및 식기 구세척실로 구획 원칙 - 내부벽,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 내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재질, 출입구와 창문 방충망 설치, 환기시설 설치, 220룩스 이상 조명, 손 소독시설 설치, 급배기시설, 냉·난방시설 ○ 설비·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세정대 설치 - 전자식 온도계 구비 -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폐달식 ○ 식품 보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와 방습(防濕), 식품과 식품재료의 위생적 보관, 방충망설비 - 통풍 시설이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 급식관리(제34조) 영양사(5개 이내 보육시설 공동 가능), 100인 미만 시설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사용 -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 공급 원칙 ○ 조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광, 기계 환기시설, 방충망 설치 - 식기소독, 위생적 취사조리설비 구비 - 공공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시설은 공동 사용 가능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 바닥 미끄럼 방지 장치 - 세정장치, 수도꼭지 온도조정·고정 가능

자료: 각 학회 제출 원고(부록 1-9 참조).

3) 운영 및 이용 특성

교사당 아동수와 연간 운영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4년 전국보육·교육 실태 조사보고 자료(여성가족부, 2005)에서 유치원의 교사 일인당 유아수 평균은 25.0명 인데 비해 보육시설의 교사 일인당 평균 아동수는 3-5세 기준 16.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영기간은 보육시설은 평균 연간 9.3일을 휴원하고 유치원은 연간 평균 195일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 유치원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바(여성가족부, 2005), 이는 유치원이 법적으로 학교에 해당하여 초중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에 따르면 토요일에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보육시설 96.6%, 유치원은 65.5%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이 토요일에 운영하는 경우는 주로 병설 등 국공립 설립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가 월중 2회 토요일을 휴무하고 있어 이를 유치원도 동일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용 아동수 통계를 보면, 국공립은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은 전체 유치원 이용아동 542,550명 중 21.9%인 118,422명이고 사립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이 78.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육시설은 전체 이용 아동수가 1,099,933명으로 유치원 이용 아동수의 2배 가까이 되고 이 중 10.8%가 국·공립 시설에, 89.2%가 민간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 국공립 시설(기관)의 이용비율이 보육 시설에 비해 유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1-4〉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계
국·공립	118,422(21.9)	119,141(10.8)	237,563(14.5)
사립/민간	423,128(78.1)	980,792(89.2)	1,403,920(85.4)
계	541,550(100)	1,099,933(100)	1,641,483(1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7.12).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보면, 평균 이용 시간은 유치원이 보육시설보다 1시간 30분 정도 짧으나, 보육시설의 영아 이용 시간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용 시간의 차이는 더 작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치원 아동의 서비스 이용 평균 시간은 5시간 51분임(표준편차는 1시간 15분)이고 보육시설 아동의 서비스 이용 평균 시간은 7시간 20분임(표준편차는 1시간 56분)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05).

나. 문제점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오랫동안 서로 구별된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유치원은 초기에 부유층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기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지녔고, 보육시설은 빈곤층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대리하는 복지적 성격에서 시작하여 한동안 유지되었다. 이러한 출발에서의 차이점은 유아교육과 보육 간 지속적인 이원화를 낳아왔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기능에 있어 둘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두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고 관할 부처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분됨으로써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국가 행·재정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으로써 이용자인 3-5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0-2세에는 보육시설의 선택에만 관심을 두다가 3세가 되면 자녀를 어디에 보내야 할 지 선택하는데 있어 고민을 하게 되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선택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이 시기 자녀 부모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겨난다.

셋째,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으로 인해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서비스의 내용 면에서 차이가 없어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 되어 있어 시설·설비 기준, 설립기준뿐만 아니라 이용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시대의 변화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실에서 부모가 두 가지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혼란스러운 문제는 매우 크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관·시설 면의 통합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교사 자격

가. 현황

우리나라 영유아를 교육, 보육하는 인력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재직인원수는, 전국 30,856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122,262명과 시설장 30,856명이 있고(보건복지가족부, 2007.12.31), 8,294개 유치원에 교사 29,028명과 원감 및 원장 4,473명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표 II-2-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인원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교사	29,028	122,262
원감 및 원장/시설장	4,473	30,856
계	33,501	153,118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7.12).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

나. 문제점

1) 자격기준 이원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인력은 자격기준에 있어서도 매우 차이가 있다. 3-5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0-5세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표 II-2-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기준 비교

구분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근거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자격규정	제 22조 (교원의 자격)	제 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자격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격증 검정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자격증 검정수여
자격취득 최소학력	전문대학 졸업(이상)	고등학교 졸업(이상)
자격구분	- 유치원 준교사, 2급·1급 정교사 - 원감, 원장	- 3급·2급·1급 보육교사 - 시설장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다르고, 교사자격 취득연한도 다르므로 교사의 질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되는 보육교사는 전문성 측면에서 자격기준 낮은 편으로 보육교사 3급의 경우 자격기준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많다. 현행 자격기준과 양성과정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욕구 반영 못하여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부모들은 영유아교사를 대학 졸업 이상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수준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스스로가 평가한 전문성 수준은 유치원교사가 보육교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았고, 5개의 전문성 영역 중 자기개발, 교육/보육신념 영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장과 보육시설장 스스로가 평가한 전문성 수준은 유치원장이 보육시설장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고, 5개의 전문성 영역 중 교육/보육신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이미화, 장명림, 신나리, 김문정, 김현철, 2006).

2) 양성과정 이원화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은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받으면서도 교육연한과 교육과정이 다양하며, 보육교사의 경우 또한 개방형 체제로의 전환이후 전문대학과 대학교

에서는 매우 다양한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양성대학 중에는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만을 양성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양성대학에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동시에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육아지원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공통 양성교육과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표 II-2-3〉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과정 비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양성 기관	- 2·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학과,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등	- 2·3년제 전문대학 보육학과 및 관련학과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 보육교사교육원
양성 과정	교양과정, 교직과정 및 전공과정으로 구분, 대학교육 연한에 따라 졸업 이수 학점 다름	- 보육실습과 함께 제시된 영역별로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 총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수하면 2급 보육교사 자격 부여(학과에 상관없이 교과목 이수로 자격 부여) - 교육훈련시설인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실습을 포함하여 제시된 영역별 필수 18과목, 선택 2과목 총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수하면 3급 보육교사 자격 부여

양성과정에 대해서도 상호 보완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그 내용으로는 유치원교사 양성시 보육 및 양육 관련을 보완하고 전문대학 과정에서는 교육관련 소양 교육 보완 요구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념과 연령구분이 모호하여 양성교육과정 내에 중첩되는 교과목 내용 및 대상 조절 필요하다. 유치원교사의 적절성 평가에서는(이미화 외, 2006), 재직학과 양성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과 ‘전공과목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교양·전공·교직의 비율’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장 적었다. 특히 대학교 양성학과의 교수들은 전문대학 교수들에 비해 ‘수업연한 및 졸업 이수학점’과 ‘교양·전공·교직의 비율’ 면에서 재직학과의 양성과정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이 졸업한 학과의 양성과정 적절성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평가에 따르면, 양성과정 중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과 ‘전공과목’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실습운영’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 특히 ‘실습운영’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대해 4년제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교육대학원이나 전문대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보다 더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보육교사 양성과정 평가에 대해서는 재직학과 양성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교수진의 전문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과 ‘전공과목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적었다. 특히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교수들은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수들에 비해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전공과목 구성 및 내용’, ‘실습운영’ 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고한 수가 더 많았다. 자신이 졸업한 학과의 양성과정 적절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평가에 따르면,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실습운영’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 특히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과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에 대해 4년제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2·3년제 대학이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보다 더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실습운영’에 대해서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더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3) 현직 재교육과정의 이원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정 역시 이원화되어 있다. 유치원정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의 자격기준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라고 명시된 것으로 보아 승급을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수임을 알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2.29) 제6조에 의하면 유치원교원에 대한 연수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되어진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1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라고 명시함으로써 재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시설장 자격기준에는 승급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 47조). 제2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1-2-4〉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현직재교육과정 비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현직 재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정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의 자격기준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라고 명시된 바 승급을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수임(유아교육법 제 22조). - 유치원교원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 자격연수의 과정 지침 제시, 세부적인 교과목,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 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1급과 2급 자격기준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자'라고 명시함으로써 재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설장 자격기준에는 승급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영유아보육법 제 46,47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영유아보육법 제 23조)
현직 재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기관은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되며, 대학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 제 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이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 23조 3항). -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는 교육훈련시설,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명시되어 있음

미래인적자원 육성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 및 원장은 영유아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교사

와 원장의 전문성은 현직 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직 재교육을 위한 지원과 체계가 부족할 때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현직 재교육은 교사 및 원장들로 하여금 지식이나 이론, 그리고 기술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반성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념이나 실천적 지식을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교육과정은 외부기관에 의해 획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교사와 원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재교육과정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재교육체계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무엇을(what), 누가(who), 어떻게(how) 가르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재교육과정이 형식적으로 인식되거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안경아, 1999; 윤희경, 2003)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교사 재교육을 위해 현직 재교육체제를 정비하고 재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4)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배출 현황 및 수급 예측 문제

유치원교사 배출은 2003년까지 대략 10,000명 내외를 유지해 오다가 2004년에는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의 3년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3,000명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5년에는 다시 10,000명 수준을 회복하였다. 보육교사 배출은 네가지 유형의 양성기관·시설을 통해 지난 2005년도에 배출된 보육교사수의 추정치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1,013명, 전문대학에서 약 12,500명, 4년제 대학교에서 3,000명, 원격대학에서 7,182명으로, 총 33,700명 내외로 추정된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수급 예측결과에 의하면(이미화 외, 2006)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공급규모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모두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치원교사의 경우는 그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공급규모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유치원교사 양성기관 졸업자수의 추이를 보면 공급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육교사 자격은 전공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의 자격요건을 만족한 자에게 부여되는 개방형체제로 전환되었고,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년 내에 졸업자를 배출하기 시작할 신설학과가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공급초과 현상 또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도한 공급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초중등 교원수급 조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양성 관련학과의 정원축소나 자격증 발급 기준의 변경 등의 정책수립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수요의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이원화된 육아지원인력 자격제도와 관련 육아정책의 향후 변화가능성으로 인하여 단편적인 배출자수 조절만을 통해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처우 및 고용측면에서의 문제점

가)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 50조(부록 10 참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일일 8시간, 제 51조(부록 10 참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최대 48시간, 합의에 의한 최대 52시간을 연중 내내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 특히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8시간 이상, 보육시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 이상인 반면 임금 낮은데 특히 유치원과 보육교사 차이, 국공립과 사립(민간)시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1,365천원이며, 국공립·법인보육시설과 민간개인·가정보육시설 간의 급여 차이가 크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월 급여 총액이 1,525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법인 보육시설 1,460천원, 민간개인 보육시설 1,199천원임. 민간개인과 가정 보육시설은 월 급여 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가정 보육시설은 월 급여 총액이 979천원으로 100만원 미만이다.

〈표 II-2-5〉 보육교사 시설유형별 급여액(2007년)

단위: 천원

구분	기본급	월 급여총액	희망 월급여액	급여인상분
전체	1,284.4	1,365.3	1,778.8	50.4
국공립	1,448.5	1,524.9	1,993.1	-
법인	1,417.4	1,459.9	1,891.9	20.5
민간개인	1,077.1	1,198.6	1,483.7	52.5
가정	867.9	979.4	1,298.5	49.3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인정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육교사 급수나 학력에 따른 호봉차이 없고, 근로시간과 근무시간 개념이 모호하며 초과근무 불가피하나 초과수당지급과 대체교사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봉은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의 50% 정도 수준이다. 2005년 기준 5년 이하 경력 교사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은 2,372만원이고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은 1,214만원으로 국공립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의 비율은 51.2%임. 교사경력이 5년 이하일 때 연봉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봉차이는 경력 6-10년차에서 가장 적으며,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은 2,756만원이고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은 1,553만원으로 국공립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의 비율은 56.3%이다.

〈표 II-2-6〉 경력과 시설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연봉(2005년)

단위: 만원, %

경력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	국공립 대비 비율
5년 이하	2,372	1,214	51.2
6-10년차	2,756	1,553	56.3
11-15년차	3,090	1,608	52.0

자료: 여성가족부(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사립유치원 교사는 매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기본임금이 매우 낮아 교사의 사기와 이직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과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나) 상호고용 허용 문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유치원교사자격과 보육교사자격의 상호고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즉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대부분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보육교사 자격증만 소유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에만 근무할 수 있다.

〈표 11-2-7〉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처 비교

	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자 (대부분 보육교사자격증 소지함)	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
근무처	유치원 및 보육시설	보육시설

3. 교육·보육 과정

가. 현황

1) 주관부처 및 관련법의 이원화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²⁾에 근거하고 표준보육과정은

2)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교육과정 등)

-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³⁾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표준보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준보육과정은 0-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만 3-5세 유아들은 재원 기관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기초한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다.

〈표 II-3-1〉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주관부처 및 대상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주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관련법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
대상	3-5세	0-5세

최근 OECD 국가들은 협력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뉴질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은 0-6세 유아교육을 교육부처로 통합하였으며, 영국은 0-5세, 스웨덴은 만 1-6세, 뉴질랜드는 0-4세를 위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만 2-5세, 홍콩은 만 2-6세를 위한 공통의 교육과정이 있다.

2) 교육·보육 과정 표현상의 차이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은 강조점, 표현, 서술 등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더 많다. <표 II-3-2>, <표 II-3-3>, <표 II-3-4>에 나타난 것처럼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및 목표, 영역별 내용은 표현이 다르더라도 그 내용과 의미는 유사하다.

3)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보육과정)

-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추구하는 인간상을 살펴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표준보육과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은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은 민주적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

〈표 II-3-2〉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가. 자율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목적과 목표를 살펴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적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결국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람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역 명칭과 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총 6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역의 수와 명칭은 다르나, 유치원 교육과정의 건강생활은 표준보육과정

의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사회생활은 사회관계, 표현생활은 예술경험, 언어생활은 의사소통, 탐구생활은 자연탐구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3-3〉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구분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목적	유치원 교육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 과정의 목적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목표	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라.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마.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바.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표 II-3-4〉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의 각 영역 비교

구분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건강	건강 생활 나의 몸 인식하기 나의 몸 움직이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기본생활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바른 생활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 신체활동 참여

구분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사회	사회 생활 나를 알고 사랑하기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 현상에 관심 가지기	사회관계 자기 존중 정서인식과 조절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식
(예술)표현	표현 생활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 즐기기 감상하기	예술경험 심미적 탐색 예술적 표현 예술 감상
언어	언어 생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탐구	탐구 생활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과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 수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	자연탐구 탐구적 태도 수학적 탐구 과학적 탐구

3) 교육·보육 과정 통합 방법에 대한 이견

교육·보육과정 통합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이 공감을 가지고 동의하지만, 통합의 방안과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예컨대 학회의 의견만 보더라도 교육·보육과정 통합의 주관부처와 관리감독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되 영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되 개발된 교육과정은 제 3의 관리감독 필요하다는 의견, 중앙과 지자체의 양육지원센터(보육·교육지원센터)가 학계 및 현장의 자문을 받아 개발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통합의 방법에 있어서도 0-5세를 위한 일원화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과 0-2세, 만 3-5세를 위한 교육·보육과정을 분리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이나 목표를 전인적인 인간 양성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인성 계발, 창의성 함양 및 사회성을 길러주는 종합복지서비스에 목적을 두어

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영역구분에 있어서도 유치원교육과정의 5개 생활영역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견,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견, 전체적인 학습 개념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4)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연계되고 통합될 필요성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은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연계되고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애 초기부터의 교육·보육과정을 다루고 있지 못하며, 표준보육과정은 0-5세의 교육·보육과정을 다루고 있으나 영아와 유아와의 연계는 고려한 반면, 상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되었다.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교육·보육과정은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켜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상위 교육과정과도 일관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나. 문제점

관련법과 주관부처의 이분화로 인하여 만 3-5세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보육 과정과 관련 자료를 중복으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인해 비효율적이다. 더불어 만 3-5세 유아는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보육과정을 적용한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교사 역시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교육·보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내용상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보육 과정이 따로 개발되고 이로 인해 영역 명칭과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어 예비교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을 중복 개발함으로써 인해 국가의 예산 낭비도 심하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으나, 통합의 방안과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통합의 방법에 있어서의 이견은 실제 통합을 실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의 목적과 방법 등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한편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면에 있어서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연계되고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의 최선의 발달을 위한 교육적 경험의 연속과 확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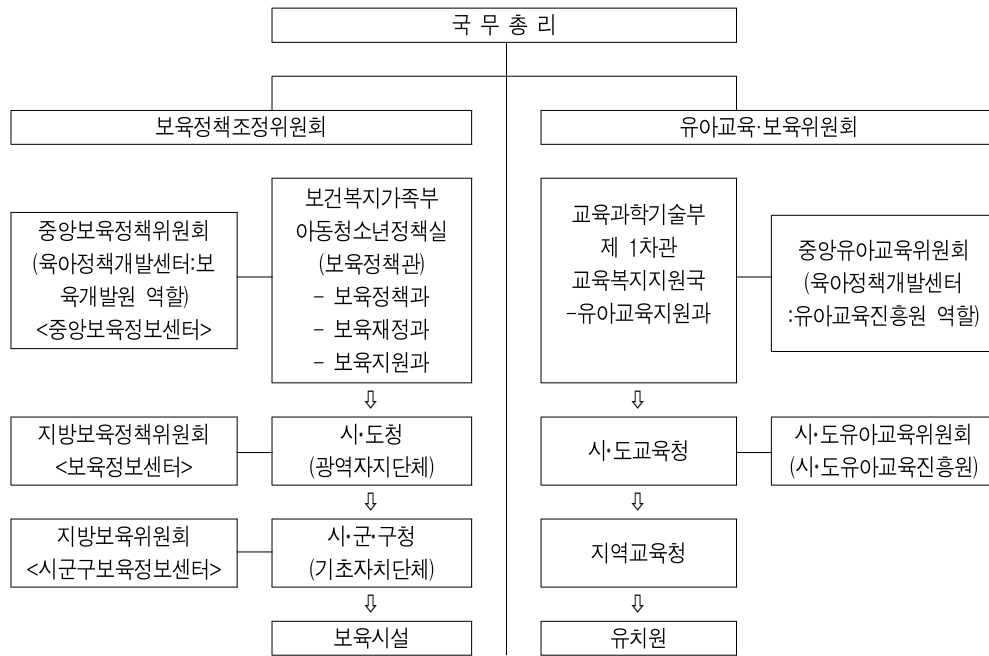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보육 과정 통합을 통해 인재 양성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4. 관리·감독 체계

가. 현황

1) 유아교육·보육 전달 체계

유아교육·보육 전달 체계는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육 전달체계는 중앙의 보건복지가족부 → 각 시·도청 → 시·군·구청 → 보육시설로 이루어지며, 그 각각의 단계별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II-4-1] 유아교육·보육 전달체계

한편, 유아교육 전달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유치원으로 이루어지며,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 소속: 국무총리 소속
 - ▶ 기능: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
 -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구성: 위원장 포함 11명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 위촉직위원: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

유아교육·보육 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1/3 또는 과반수 정도가 동일인이 참여하게 되며, 핵심적인 논의 사항만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사항을 조정·심의하는 기능이 추가 된다.

이 두 위원회는 별도의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별도의 위원회이긴 하나, 양 위원회의 긴밀한 연계 운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양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양 기능을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련한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이 두 위원회의 통합 구성 및 운영은 장기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 소속: 국무총리 소속
 - ▶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보육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구성: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부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노동부차관
 - 위촉직위원: 당연직위원의 추천하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 유아교육계, 여성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감독 체계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수요자의 기관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재정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두 부처의 제도적 협력과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동일한 행정체제 내에서 지역내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협력과 통합,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은 유아교육·보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평가 체계

가) 유치원평가

정부는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치원이 학교로서 책무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유치원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유아교육진흥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학부모들에게는 바람직한 유아교육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정보 제공으로 기관 선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007년에는 전국 공사립유치원 100개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본 평가가 시행중에 있다.

〈표 II-4-1〉 시범평가 참여 유치원 현황

단위: 개원

시·도 지역	공립	사립	계
서울, 경기	10	10	2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9	39	78
제주도	1	1	2
총계	50	50	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8. 6). 유치원 평가 매뉴얼.

유치원 평가의 추진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가 기본정책 수립, 국가 공통지표 개발, 평가위원 연수 등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한다.
- 평가방법: 유아교육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유치원의 자체평가, 평가위원들의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종합하여, 심의 평가함. 서면평가는 유치원 교육계획서, 유치원 자체평가보고서를 활용함.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평가지표: 4개 영역(교육과정, 교육환경, 유아의 건강·안전, 운영관리), 14개 항목, 28개 지표로 구성
- 1주기에는 사립유치원의 80%가 평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치원평가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모든 유치원은 3년 주기로 1회 평가에 참여하게 될 것임.
- 평가결과 활용
 - 유치원평가결과를 부모에게 정보 제공
 -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경영 개선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유치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표 II-4-2〉 유치원 평가 지표(공통지표)

평가 영역 (배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지표(배점)
1. 교육과정 (65)	1-1. 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5)	1. 교육계획안 작성 및 활용 (5) 2.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육내용·활동 선정 (10)
	1-2. 일과 운영의 적절성 (15)	3. 통합적 일과 운영 (10) 4. 교육활동 유형간의 균형적 안배 (5)
	1-3. 교수-학습 방법의 적합성 (20)	5.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사용 (10) 6. 교사-유아간의 질적인 상호작용 (10)
	1-4. 평가의 적절성 (15)	7. 유아의 발달 상황 기록 및 활용 (10) 8. 교육과정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5)
2. 교육환경 (45)	2-1. 교육환경의 적합성 (25)	9. 실내 교육환경의 적합성 (10) 10. 실외 교육환경의 적합성 (10) 11.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5)
	2-2. 교재·교구의 적합성 (20)	12. 유아 발달 수준과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구 비 및 활용 (10) 13. 교재·교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관 (10)
3. 건강·안전 (40)	3-1. 건강관리의 적절성 (15)	14. 유아 건강 지도 및 관리 (5) 15. 시설·설비의 청결한 관리 (10)
	3-2. 영양관리의 적절성 (10)	16. 균형 있는 급·간식 시행 및 식습관 지도 (5) 17.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사용 (5)
	3-3. 안전관리의 적절성 (15)	18.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대비책 (10) 19.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5)

평가 영역 (배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지표(배점)
4. 운영관리 (40)	4-1. 교직원 인사 및 복지의 적절성 (10)	20. 교직원 인사 규정 보유 및 준수 (5) 21. 교직원 복지 규정 보유 및 지원 (5)
	4-2. 예산 편성 및 운용의 합리성 (10)	22. 예·결산서 작성 및 공개 (5) 23. 정부지원금 예산 편성 및 사용의 타당성 (5)
	4-3.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10)	24. 다양한 부모교육 및 가정과의 교류 (5) 25. 지역사회 인사·자원의 활용 및 기관 홍보 (5)
	4-4. 기관장의 원 운영의 전문성 (10)	26.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5) 27. 기관장의 리더십 (5)
학부모 만족도 (10)		28. 학부모의 기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
5. 종일반 운영	5-1. 종일반 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설비 구비	
	5-2. 종일반 프로그램의 적절성	
	5-3. 종일반 교사 확보	
계		200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8. 6). 유치원 평가 매뉴얼.

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서비스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현장을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서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개별 보육시설들의 자발적인 평가인증 참여신청을 전제로, 자체점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게 됨. 또한 현장관찰 및 전문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보육시설의 현 수준을 평가하게 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된다.
-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도 처음 시범운영이 실시된 이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제1단계('05-'09년, 도입·정착기), 제2단계('10-'13년, 질적 수준 향상기)로 나누어 점진적 향상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08년 8월 현재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55.4%인 17,086개소가 인증에 참여하였고, '07년 제 4기 참여시설까지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이중 총 7,566개소가 인증을 통과(참여대비 통과율 63.8%, 전체적으로는 24.5% 인증 통과)하였다.

연도별 인증 현황은 ('05년) 622개소 → ('06년) 438개소 → ('07년) 3,482개소 → ('08년 8월) 3,024개소로, '07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07년 제4기에는 평가인증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시설이 인증에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가정보육시설(정원 20인 이하)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인증통과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4-3〉 평가인증 참여신청 현황(2005-2008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계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참여 신청	1,089		4,420		6,359		5,218		17,086	55.4
참여 확정	809		3,525		4,956		4,494		13,784	
인 증	650		2,804		4,112		-			
인증 누계	650	2.1	3,454	11.2	7,566	24.5	※ '08년 8월 현재 3기 진행중			

주: 인증에는 재참여 인증시설을 포함('08.8.28현재), 전국 어린이집: 30,856개소('07. 12월말 기준)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8. 29). 평가인증 현황 보도자료.

〈표 II-4-4〉 평가인증 참여시설 설립유형별 현황(2005-2008.8)

지역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 협동	민간	참여시설 합계	참여시 설비율	전체시설 총계	전체시설 대비율
참여시설 합계	1,820	1,729	200	7,472	32	8,391	19,644	100.0		
참여시설 비율	9.3	8.8	1.0	38.0	0.2	42.7	100.0			
전체시설 총계	1,748	1,460	320	13,184	61	14,083			30,856	
전체시설 대비율	104.1	118.4	62.5	56.7	52.5	59.6				63.7

주: 전체시설은 2007년 12월말 전국 보육시설수(30,856개소)를 기준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8. 29). 평가인증 현황 보도자료.

평가인증의 실시는 중앙정부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 인증방법: 보육시설들의 자발적인 참여신청 이후 자체점검, 현장관찰 단계를 거쳐 심의위원들이 인증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인증지표: 21인 이상 보육시설 대상(7개 영역 80항목), 21인 미만 보육시설 대상(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 전담시설 대상(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분된다.
 - 7개영역 80항목이 기본형이며, ① 보육환경 ② 운영관리 ③ 보육과정 ④ 상호작용 ⑤ 건강과 영양 ⑥ 안전 ⑦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표 중에서 ①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준수 ② 재정관리의 투명한 운영 ③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시설의 책임 등은 필수항목이며, 필수항목 위반 시에는 인증을 통과할 수 없음.
 - 기본형인 21인 이상 보육시설 대상 지표는 〈표 II-10-5〉와 같음.
 - 각 지표의 평가는 3단계 기술평정척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3점(우수한 수준), 2점(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1점(부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됨.
- 인증 주기: 3년
- 인증결과 활용: 2010년도부터 정부의 기본보조금 지원과 연계함.

다만 현재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관들은 평가/평가인증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민간 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들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보충하는데 드는 비용, 준비에 소요되는 업무 부담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표 II-4-5〉 21인 이상 평가인증 지표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 (10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5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
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7항목) 나. 보육인력 (6항목)
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8항목)
영역 4. 상호작용 (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8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 (13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3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6. 안전 (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
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8항목)	가. 가족과의 협력 (6항목) 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침서

〈표 II-4-6〉 유치원평가 및 보육시설평가인증 체계 비교

구분	유치원 평가	보육시설 평가 인증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의 질 제고 ○ 유치원의 책무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의 질 제고 	
평가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과학기술부는 공통지표 및 편람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업무를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위탁 	
평가 대상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공·사립유치원 8,000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보육시설 30,000여개
	참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신청·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신청·참여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평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주기 (2007년 시범평가, 2008-2010년 1주기 평가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유효 (2005년부터 3년째 시행 중) 	
평가 영역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표 +시·도 자체지표 * 시·도 자체지표는 20% 이내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공통지표로만 구성 	
평가 영역 및 지표 수 (항목/지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영역, 14개 항목, 28개 지표 1. 교육과정(4/8) 2. 교육환경(2/5) 3. 건강·안전(3/6) 4. 운영관리(4/9) * 운영관리에 학부모만족도 지표 1개 포함 * 종일반 운영은 참고적으로 제시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포함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영역, 15개 하위영역, 80개 항목 1. 보육환경(2/10) 2. 운영관리(2/13) 3. 보육과정(2/15) 4. 상호작용(2/11) 5. 건강과 영양(3/13) 6. 안전(2/10)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표: 총 200점 만점(5점 척도 평정) * 시·도에서 자체지표 포함 총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40점 만점(3점 척도 평정)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종합·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현장관찰자의 현장 관찰 평가→심의위원의 서면인증심의 	

구분	유치원 평가	보육시설 평가 인증
평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및 아동 관련 전공 교수,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사), 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 * 평가결과의 컨설팅 효과를 위해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우선 고려 * 평가위원 역할 매우 중요 *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심의 모두 수행 * 시범평가에서는 4인 1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관찰자(2인 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경력 3년인자 - 영유아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경력 3년포함 총경력 5년이상인 자 ○ 인증심의위원(3인 1팀): 서면으로 최종평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등 학계전문가 - 영유아 관련 석사이상: 교사경력 1년 포함 총보육경력 4년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 학사이상: 교사경력 1년 포함 총보육경력 6년이상인자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 및 결과 순위 공개 없음 ○ 참여 유치원 인센티브 제공 ○ 교육과정 및 기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보급 ○ 현장 실태에 근거한 정책지원 우선 순위 판단 ○ 장학지도와 연계 적극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인증/인증유보/불인증 ○ 인증서 및 현판 전달 ○ 인증유보 및 불인증시설은 재참여 유도
DB구축 및 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향후 DB구축 및 전산화 준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의 자체점검결과 및 보고서 입력 전산화 ○ 인증심의 결과 DB구축 관리(KICCE,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3) 유아교육·보육 지원 체계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각각 유아교육진흥원 및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유아교육
 - 유아교육법 제 6조에 근거, 2008년 3월1일 현재 서울시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2010년까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다.

-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원 연수, 연구, 정보제공 및 유아 체험학습 기회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
- 보육
 - 영유아보육법 제 7조, 제 8조 2항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체제로서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 보육정보 센터는 평가인증 조력,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최근 보육 정책 정보 전달 등의 다양한 보육지원 업무 담당
 - 2008년 10월 현재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와 시·도 및 지역 보육정보센터 40개소 설치·운영

나. 문제점

유아교육·보육의 관할 부서 및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육아 정책이 유아교육(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유치원)과 보육(보건복지가족부 관할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즉, 행정 인력 낭비, 지원 업무의 경쟁적 실시, 유사사업의 별도 시행 및 재정 투자의 중복, 동일 정책의 각기 다른 시행 방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유아교육 및 보육의 기본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심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즉 유아교육법 제 4조에 명시된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명시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주제검토(OECD’s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사업과 관련하여 1차 보고서(Starting Strong, OECD, 2001)와 2차 보고서(Starting Strong II, OECD, 2006)를 출간하고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 정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며, ‘교육’과 ‘보육’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보며, 이 둘 간의 통합적 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는 보육·교육을 하나의 정부 부서에 일원화시키거나 관련 부서들을 통합한 제도 아래에서 보육·교육 제도에 관한 정책 및 행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원화된 국가의 경우, 그 행정 부서는 교육부(스웨덴),

교육연구부(노르웨이), 복지부(덴마크) 등이 있다. 이는 보육·교육 과정에 관한 정책의 통합이나 일원화가 각 나라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관점과 배경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OECD도 각 나라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원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이룬 나라의 사례와 함께 양 집단간 전문가의 균등한 활용, 양집단 이해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평가 체계에 있어서는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사한 교육·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각기 다른 평가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평가 내용, 평가 지표, 평가 방법 및 평가 위원 등의 측면에서 통합 방안 모색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평가와 보육시설평가인증 자체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보육시설평가인증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조력시스템이 가동되나, 유치원의 경우는 조력 시스템 부재
- 유치원 평가의 경우, 시행초기이므로 현장에서 평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포함된 지침서 개발·보급 필요
- 유치원 평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부재
- 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제도 도입으로 일정 수준의 질관리는 가능하나 보다 높은 수준의 질 관리 필요

이상과 같은 문제외에도 평가/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업무 가중 문제,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일부 민간/사립 기관들이 불참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유아교육·보육의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기관/센터의 경우에도 그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관계로, 결국 자료의 중복 개발, 유사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지원하는 통합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며, 이 센터에서는 연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된 부모 양육 지원,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계, 지역 사회와의 연계 운영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이미 구축되어 있는 보육 지원 인프라의 기

반과 운영 노하우를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예산 지원

가. 현황

1) 육아지원 예산 현황

육아지원 예산은 유아교육 지원과 보육 지원, 농어촌자녀 지원, 노동부 직장보육 지원 예산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다(표 II-5-1 참조). 이 네 부분을 통합한 중앙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2002년도 2,461억원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3,623억원으로 전년대비 47.2% 증가하였다. 2004년도에는 4,899억원으로 전년대비 35.2%, 2005년도에는 7,345억원으로 전년대비 49.9%, 2006년도에는 1조 574억원으로 전년대비 44.0%, 2007년도에는 13,227억원으로 전년대비 25.1%가 증가하는 등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중앙정부의 보육예산은 2006년도 7,913억원에서 2007년도 1조 384억원으로 31.9% 증액되었으며, 2008년도 중앙정부 예산은 1조 4,117억원으로 전년대비 35.3%가 증가되었다.

중앙정부의 유아교육 예산은 2006년도 2,091억원, 2007년도 2,171억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중앙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모두 지방으로 이양된 특징이 있다. 2008년도 지방정부 예산은 1조 589억원이다.

유아교육 지원, 보육 지원, 농어촌자녀 지원, 노동부 직장보육 지원 예산을 총괄하는 육아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2002년도 0.118%이던 것이 2006년도 0.355%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는 0.470%임을 알 수 있다. 이다. 이중 보육예산은 0.356%, 유아교육예산은 0.112%이다.

〈표 II-5-1〉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 ¹⁾ 대비 비율	
2002	보육	2,147	2,264	4,411	0.065
	유아교육	208	3,348	3,556	0.052
	노동부	106		106	-
	계	2,461	5,612	8,073	0.118
2003	보육	3,120	5,141	8,261	0.114
	유아교육	257	3,568	3,825	0.053
	노동부	246		246	-
	계	3,623	8,709	12,332	0.170
2004	보육	4,050	6,569	10,619	0.136
	유아교육	420	4,053	4,473	0.057
	노동부	127		127	-
	농업인양육비	302	302	604	0.008
	계	4,899	10,924	15,823	0.203
2005	보육	6,004	10,046	16,050	0.198
	유아교육	966	5,512	6,478	0.080
	노동부	151			-
	농업인양육비	224	224	448	0.006
	계	7,345	15,782	23,127	0.285
2006	보육	7,913	12,495	20,408	0.240
	유아교육	2,091	6,864	8,955	0.106
	노동부	207			-
	농업인양육비	363	363	726	0.009
	계	10,574	19,722	30,089	0.355
2007	보육	10,384	16,451	26,835	0.298
	유아교육	2,171			
	노동부	165		165	-
	농업인양육비	507	507	1,014	
	계	13,227			
2008	보육	14,117	19,550	33,667	0.356
	유아교육	1	10,589	10,590	0.112
	노동부	171		171	-
	농업인양육비	411	411	822	0.009
	계	14,700	30,550	44,428	0.470

주: 1) GDP: 8,480,446억원(2006), 9,011,886억원(2007), 9,444,457억원(2008). 한국은행.

출처: 2002-2006: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2006: 기획예산처 내부자료에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포함
2007-2008: (1) 보육예산

· 국비: 각 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내역”

· 지방비: 국비 매칭은 위의 자료, 지방 시책은 각년도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 현황”

(2) 유아교육예산: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유아교육 예산지원 현황”.

2)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지원 현황

지난 5년 간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 중 지원을 받는 영유아의 비율은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중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3-4세 저소득층 차등교육비, 5세아 무상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받는 유아 비율은 2003년 9.5%(51,864명)에서 2007년 50.6%(273,823명)로 5배 넘게 빠르게 증가하였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중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등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 비율은 2003년 24.5%(210,613명)에서 2007년 78.1%(859,353명)로 3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로써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현원 1,641,483명 중 1,133,176명이 유치원 교육비와 보육시설 보육료를 지원받아 지원아 비율은 69.0%이다.

〈표 11-5-2〉 연도별 보육지원아 비율

단위: 명, %

	유치원			보육시설		
	현원	지원아 수	원비지원율	현원	지원아 수	보육료지원율
2003	546,531	51,864	9.5	858,345	210,613	24.5
2004	541,713	88,000	16.3	930,252	279,882	30.1
2005	541,603	144,000	26.6	989,390	536,049	54.2
2006	545,812	214,000	39.2	1,040,361	680,736	65.4
2007	541,550	273,823	50.6	1,099,933	859,353	78.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통계 각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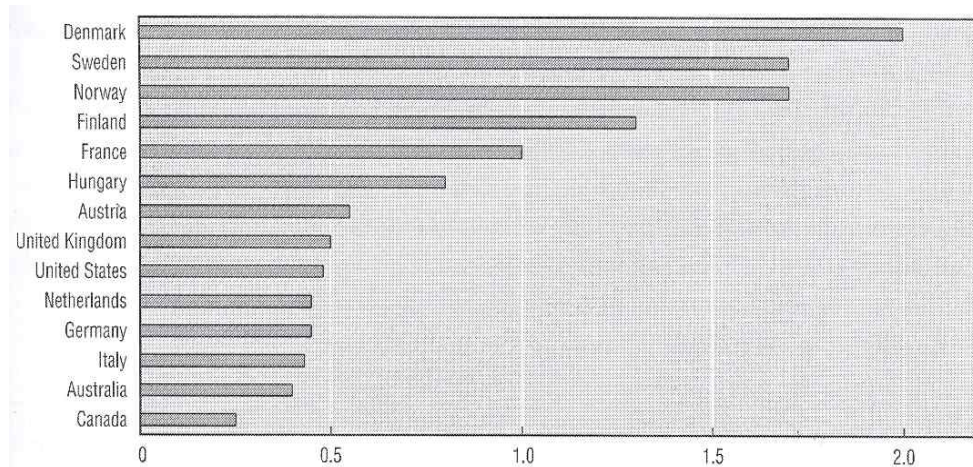
나. 문제점

정부의 예산 지원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기관의 설립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른 점, 지원 내역의 불명확성, 지원 효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약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1) 예산 지원의 확대 필요

우리나라 육아지원 예산을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정부의 육아지원 분담률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가 국가별 영유아 교육과 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서비스에 대한 정부 투자의 범위를 살펴본 결과는 덴마크의 국내총생산(GDP) 2%에서부터 캐나다의 0.3%(2004)까지 이른다.

1996년 유럽 육아위원회 네트워크는 유럽 국가들에게 최소 GDP의 1%를 투자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림 II-5-1]에서 볼 수 있듯이 20개 국가들 가운데 5개 국가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만이 1%가 넘는 투자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2004). 그러나 OECD는 GDP의 1%라는 수치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 본 자료는 OECD의 2004년도 조사에 의한 것임.

자료: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그림 II-5-1] OECD국가들에서의 ECEC서비스(0 - 6세)에 대한 정부투자

2) 지원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

정부의 육아지원 예산은 육아지원기관의 설립 유형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지원되

는 문제가 있다. 즉, 기관 유형이 국공립인지 사립/민간인지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며, 이로 인하여 이용 기관 유형에 따른 영유아 1인당 확보되는 교육·보육 비용, 그리고 부모 부담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종사자 보수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결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보육시설은 표준보육단가를 적용하여 보육료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비용이 자율화되어 있어 비용 지원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부지원 원칙과 자율화 체제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영유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가는 영유아 1인당 소요되는 교육비용과 보육비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유아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부모가 내는 교육비는 더 많지만, 공적 자금 투입의 차이 때문에 아동 1인당 교육비는 더 적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유아 1인당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은 공립유치원이 39만 5천원 수준이지만 사립유치원은 5만 7천원 수준으로, 지원 금액만을 따진다면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하여 6.8배가 된다(표 II-5-3 참조). 사립유치원은 추가 소요비용을 부모들에게 부담하고 있다. 이는 공립유치원 교사는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교육공무원이고, 사립의 경우는 원장에 의하여 원비에서 교사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 1인당 투입 비용은 사립유치원 원비가 자율화되어 있어 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표 II-5-3〉 유아 1인당 월 교육예산 지원액(서울시 2008년 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학비지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기타 (목적사업비 등)	계
공립	9,338	206,614	159,727	3,335	16,562	395,576
사립	51,660		2,305	2,232	1,766	57,96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내부자료.

보육시설 역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보육시설 즉, 인건비지원시설과 인건비 지원이 없는 인건비미지원시설에 따라 비용 투자가 다르다. 2008년도 서울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0세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인건비지원시설은 영아 1인당 월평균 991천원이 소요되고 인건비미지원시설은 870천원이 소요되어 지원시설 대비 비율은 87.8%이다. 1세아는 인건비지원시설은

영아 1인당 월평균 703천원이 소요되고 인건비미지원시설은 624천원이 소요되어 지원시설 대비 비율은 88.8%이다. 2세아는 인건비지원시설은 영아 1인당 월평균 542천원이 소요되고 인건비미지원시설은 502천원이 소요되어 지원시설 대비 비율은 92.7%이다.

그러나 3세아부터는 미지원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세아는 인건비지원시설은 유아 1인당 월평균 318천원이 소요되고 인건비미지원시설은 344천원이 소요되어 지원시설 대비 비율은 108.2%이다. 4세아 이상에서는 인건비지원시설은 유아 1인당 월평균 270천원이 소요되고 인건비미지원시설은 336천원이 소요되어 지원시설 대비 비율은 124.6%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영아와 유아의 비율에 따라 영유아 1인당 투자되는 비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에서 1인당 투자 비용이 높았고, 유아의 경우는 인건비 미지원시설에서 보육료가 높아 유아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5-4〉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추계(서울시, 2008)

단위: 원, %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 개선	계	지원시설 대비비율
				교사	기타	소계				
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591.606	14.698	606304	4150	7977	991,037	
	1	327,000	164,000	354.963	8.819	363782	4150	7977	703,273	
	2	270,000	109,000	253.545	6.299	259844	4150	7977	542,231	
	3	185,000		118.321	2.940	121261	4150	7977	318,509	
	4세이상	167,000		88.741	2.205	90946	4150	7977	270,164	
미 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59.980	2.070	62050	94762	1266	870,140	87.8
	1	327,000	164,000	35.988	1.242	37230	94762	1266	624,295	88.8
	2	270,000	109,000	25.706	887	26593	94762	1266	502,534	92.7
	3	236,000		11.996	414	12410	94762	1266	344,864	108.2
	4세이상	231,000		8.997	311	9308	94762	1266	336,656	124.6

주: 보육예산 중 기능보강비, 인프라 확충비, 행사비 제외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서울시(2008). 내부자료.

3) 지원예산의 세부 항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정부지원금이 내포하고 있는 항목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 무엇에 대한 지원인가가 불분명하고 예산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때로는 비용 총액 대비 지원과 항목별 지원이 중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총 소요비용을 항목에 따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영유아 연령별, 운영유형별 표준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후 정부는 예산의 지원이 당초의 지원 목적대로 소요되고 있는 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 아동별 지원을 통합하여 부모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4) 기관이용 비용 결정에서 운영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대체적으로 반일반과 종일반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의 차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 유치원은 기존에 원칙적으로 반일반을 기준으로 운영하여 온 배경이 있어 현재의 정부지원을 반일반 운영 대한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경우 당연히 종일반 추가 비용을 징수한다.

이와는 다르게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종일반을 기준으로 운영하여 온 배경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단가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종일반 비용으로 활용된다. 즉 동일한 연령의 유아가 반일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종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단가가 동일한 불합리성이 있다. 더욱이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현행의 보육료가 종일반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나 일부 보육현장에서는 담합에 의하여 종일반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치원 운영과의 비교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 역시 영유아를 반일반 기준으로 교육·보육하는 경우와 종일반 기준으로 교육·보육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계한 후 정리할 수 있다.

5) 예산 지원에 대한 관리 부족

정부지원 예산이 늘어났고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지원,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아래 사립/민간 기관 이용 영유아들에게도 국공립기관 이용 영유아들과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를 검증하는 과

정이 미흡하였다고 하겠다. 다만 일부 사립/민간 기관들의 경우 육아지원의 공공성 확보 논의 과정에서 그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정원 초과 등의 운영들이 행정 관리되면서 정비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운영되던 일부 기관들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역시 육아지원 현장의 수준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정부의 예산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역기능의 하나로 그간 재무관리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기관들에 재무회계 관리에 대한 거부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사립유치원 혹은 민간 보육시설의 일부는 이익창출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던 부분에서 지원이 늘어나고 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투명한 재무회계가 운영 이익에 제한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기도 하다.

육아지원사업이 교육사업과 마찬가지로 비영리사업이고 영유아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투자되는 정부예산 지원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일부 사립/민간 기관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상 관리감독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에 관한 학회 의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들로 하여금 기관·시설, 교사 자격, 교육·보육과정, 관리·감독 체계, 예산 지원의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학회의 정책방안을 종합하여 제시하고⁴⁾ 각 학회별 정책제안서를 요약, 정리하였다. 각 학회가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원문 그대로 부록에 제시하였다. 참석 학회는 한국보육정책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이상 가나다 순)이다.

1. 기관·시설

가. 통합 방안에 대한 학회 의견 종합

기관·시설에 대한 각 학회의 의견은 크게 기관·시설의 유형, 운영시간,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종합할 수 있다. 각각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학회가 제시한 정책방안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 방안에 제시 학회를 약자로 표기하였음. 각 학회의 약자는 다음과 같음. 한국보육정책학회: 보육정책, 한국보육지원학회: 보육지원, 한국보육학회: 보육,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영유아교원,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교육보육행정,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생태유아, 한국육아지원학회: 육아지원

1) 기관·시설 유형

- 1안: 0-5세 연령 전체 통합 일원화(보육정책, 생태유아, 영유아교원, 유아교육, 육아지원)
 - 기관 명칭 제안: '영유아학교'(영유아교원, 유아교육, 육아지원)
 - 0세/1-2세/3-4세/5세 등 연령에 따른 시설기준 지침 마련(보육정책)
 - 기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운영(생태유아)
 - 지역실정에 따라 영아전담형, 유아전담형, 영유아통합형으로 선택 운영할 수 있음(영유아교원)
- 2안: 연령에 따른 이단계적 일원화(열린유아, 교육보육행정)
 - 기관 명칭 제안: '영아학교(0-2세)', '유아학교(3-5세)'
- 3안: 기관·시설 운영 형태의 다양화 유지(보육지원)
 - 서비스 시간, 대상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기관·시설 필요
 - 시설 일원화에는 반대 입장
 - 기관·시설의 공공성 제고가 우선 과제

2) 운영시간

- 1안: 정규시간+방과후시간으로 통합(영유아교원, 육아지원)
 - 초·중등학교와 같은 시스템. 연간 180일 운영
 - 반일제(오전9시-오후12시 혹은 1시까지 운영) 원칙(육아지원)
 - 방과후 보육: 오전7시 또는 9시부터 12시간 운영(육아지원)
 - 국가 수준의 정규 수업 + 융통성 있는 방과후 활동(영유아교원)
- 2안: 종일제/시간연장제/반일제 형태로 통합(생태유아)
 - 학부모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
 - 일정한 운영 일수를 두되 연장운영 가능
 - 종일제의 경우 20명 이하로 의무화
- 3안: 종일보육/야간연장보육/24시간보육/휴일보육 등 다양화(보육지원)
 - 지역적 특성과 상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3) 시설·설비 기준

- 인가법령의 통합(교육보육행정, 영유아교원, 유아교육)
 - 대통령령으로 통일(교육보육행정)
- 인가기준, 시설규정 일원화 필요(보육정책, 보육지원, 생태유아, 영유아교원, 육아지원)
 - 연령에 따른 기준 일원화(보육정책, 생태유아, 육아지원)
 - 유치원에 준하여 보육시설 인가기준 상향조정(보육지원, 육아지원)
 - 건강, 안전 기준 상향화 통합(유아교육)
- 현행 시설규정 중 일원화가 우선 필요한 사안
 - 면적: 유치원과 동일하게 상향조정(보육지원, 교육보육행정, 육아지원)
 - 건강, 안전 시설설비 강화(보육정책, 보육지원, 교육보육행정, 유아교육, 육아지원)
 - 유치원의 영유아 보육설비 설치: 바닥난방, 냉온샤워시설 등(보육지원, 육아지원)
 - 보육시설 임대 불허, 매도 담보 금지(교육보육행정)
 - 취약보육, 시간연장형보육과 유치원의 통합기준 마련(보육지원)

나. 학회별 통합 방안

〈표 III-1-1〉 학회별 통합 방안 - 기관·시설

학회	내용
한국보육 정책학회	<p>1. 통합에 따른 시설 형태 다양화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부의 실제적 대안 필요 <p>2. 시설규정 일원화: 연령에 따른 시설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 지침, 1-2세 지침, 3-4세 지침, 5세 지침으로 나누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규모를 이에 맞게 새로이 적용 <p>3. 유치원·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일원화</p> <p>4. 장학은 교육부처, 행정감독은 행정부처 담당</p> <p>5. 유치원의 건강, 안전, 영양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에도 건강, 안전, 영양 기준이 미약함.

학회	내용
한국보육 지원학회	<p>1. 부모의 선택권 존중</p> <p>가. 보육·유아교육 시설 및 기관의 다양화: 시설 일원화에는 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른 요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운영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의 취업모 지원과 유치원의 유아교육 강조라는 특성을 살려야 함. - 특수보육(24시간보육, 영아전담, 휴일보육, 시간연장형, 장애아전담, 통합보육 등) 및 농번기보육, 휴일보육 등 보다 다양한 보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함. <p>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공통적 적용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기준이 높은 유치원의 기준에 준하여 보육시설의 인가 기준을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유치원 모두 안전시설설비(CCTV, 소화기 등) 설치 명시가 필요 - 시설 규모: 발달의 적정 수준인 총 정원 300인 이하로 제한 - 시설기준 면적: 유치원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할 필요 - 보육실: 유치원 교실에 바닥 난방 시설 기준 필요 - 실외놀이터: 위생과 안전, 관리 관련 항목 추가 필요 <p>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설비기준의 차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보육, 야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 - 유치원은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냉·난방, 냉·온 샤워 시설구비 <p>2. 보육·유아교육 시설 다양화 추진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의 융통성: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 ○ 평균 이용시간의 단축: 영유아 부모에 대한 탄력 근무시간 운영 등 필요 ○ 일시보육서비스와 부모상담을 제공하는 종합보육시설이 보급될 필요가 있음.
한국보육 학회	<p>1.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p> <p>가. 공립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 및 단설 유치원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병설유치원을 2-3학급 규모로 확대함.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 우선 설립

학회	내용
	<p>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 낮은 지역에 우선 확충 <p>다.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선도적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통합교육서비스 우선 제공 - 포괄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내 거점 센터로서 운영 모형 기능 수행 <p>2.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 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p> <p>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함. <p>나.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조함. - 보육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민간보육시설의 법인 전환을 유도함. - 투명한 행정·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결산 회계관리를 철저히 함.
<p>한국생태 유아교육 학회</p>	<p>1. 기관·시설의 통합 운영 방향</p> <p>가. 유아교육·보호 통합 운영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운영을 위해서 시설 설치, 교육·보육과정, 행정체계, 지원체계, 교사수급 등의 다각적 측면에서의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해 줄 수 있어야 함 <p>나. 유치원, 보육시설 행정체계의 통합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화된 관련행정체계를 연결해 주고 질을 관리하는 국가적인 체제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행정체계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고, 차츰 기관 및 시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나갈 수 있음. <p>2. 현행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통합 운영</p> <p>가. 기존 유치원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은 연령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영아반과 유아반 운영의 프로그램 개발 제공에 유의하여야 함 - 영아반 운영 시, 여러 가지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함 - 영아반, 유아반 운영에 적절한 교사 수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학회	내용
	<p>나. 기존 보육시설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은 유치원으로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선택권이 제공되어야 함.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규정이 유치원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교사 수급 대책이 유치원의 경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함. <p>다.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특성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학부모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8시간 이상), 시간연장제(5-8시간 미만) 및 반일제(3-5시간 미만)를 운영할 수 있음 ○ 운영일수: 일정한 운영일수를 두되, 학부모 요구가 있을 경우 연장운영 가능. ○ 교육내용: 교육과 보호의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된 내용 ○ 학급 편제 및 정원: 종일제의 경우 20명 이하로 의무화하여야 함 <p>3. 시설 설치 기준 및 관련 기준</p> <p>가. 시설 설치 기준의 조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과정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 설치 기준을 동일화하여야 함 <p>나. 관련 제반 기준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상호 변동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관련 제반 기준 조정 후, 전환을 희망하는 곳에 한해 전환 허용 - 보육시설: 관련 제반 기준 조정 후, 설립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고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곳에 한해 허용 ○ 기존의 설립주체, 설립행위, 설립기준(교사 및 실외놀이터, 교지) 등에 관한 관련 제반 기준을 재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열린 유아교육 학회	<p>1. 연령별 단일화 방안</p> <p>가. 학교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의 유아교육기관을 연령별로 구분하고 학교체제로 통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 영아학교, 3-5세 유아학교 - 단, 기존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영아학교와 유아학교로 선택적 전환 허용 <p>나. 소관 행정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영아학교): 보건복지가족부 ○ 3-5세(유아학교): 교육과학기술부

학회	내용
한국영유아 교원교육 학회	<p>1. 법령의 통합</p> <p>가. 서비스 기능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시설의 서비스기능 정의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하는 서비스기능에 대한 정의 및 개념 통합 필요. ○ 기관/시설 명칭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영유아학교>로 제안함. ○ 기관/시설 대상 연령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학교>에서는 0세-5세(또는 0세-취학전)의 대상연령으로 통합시킴. - 단, 지역실정 및 특성에 따라 0세-2세(영아전담형), 3세-5세(유아전담형), 0세-5세(영유아통합형)의 3가지 대상유형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시설 운영시간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간에 대한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함. 정책방안으로 정규시간과 방과 후 시간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함. ○ 대상 기관/시설 우선이용의 통합 <p>나. 기관/시설 유형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및 설립의 유형을 조정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학교>는 <국공립영유아학교>와 <사립영유아학교>로 구분함. <p>다. 기관 수급계획 수립과 시행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의무조항이 없는 유치원과 수급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조항 있는 보육시설 간의 조정 필요 <p>라. 기관/시설 설립 및 설치인가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인가 및 설치 기준령의 통합 ○ 기관/시설 설치 및 설비 기준내용의 통합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영유아학교> 설립시부터 통합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기존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가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 - 신규<영유아학교>부터 통합된 설립 및 설치 인가기준을 실시하도록 함. <p>2. 기관 및 시설 평가인증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학교>의 통합된 평가인증관련 구체적 내용 조정 필요.

학회	내용
한국유아 교육·보육 행정학회	<p>1. 목적의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기관의 목적에도 보호와 복지의 내용을 삽입하여 일원화 하여야 함. <p>2. 대상의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는 0-2세와 3세-취학전 유아를 구분하여 전자의 유아는 영아학교로 후자의 유아는 유아학교로 운영하는 등, 유아 교육 보육 통합조정위원회(가칭)와 유아교육보육지원청(가칭)을 통해 협력과 통합을 하여야 함. <p>3. 설립근거 및 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근거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통일하고, 인가에도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함께 협조하여 결정함. <p>4. 위치 및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위치에 있어서도 통합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경우는 1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면적을 유아교육기관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함. <p>5. 임대 및 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도 임대 불허, 매도, 담보 금지를 적용하여 일원화 함. <p>6. 기타 부문의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운영(안전장치, 급식, 건강관리) 등에 있어서도 수요자에 대한 공정성과 서비스질의 제고를 위해 일원화 통합이 되어야 함.
한국유아 교육학회	<p>1. 시설기준 법령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통합된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p>2. 유아교육과 보육의 특수성·정체성이 고려된 시설기준 마련에 의한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 보육의 특수성과 정체성, 즉 영아의 특성과 종일제와 반일제 교실의 특성 및 장애아 통합교육·보육에 대한 특수성과 정체성이 반영되어 시설기준의 통합이 마련되어야 함. <p>3.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설기준의 상향화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기본적 생존권과 관련된 시설기준과 법령들은 그 기준이 높은 쪽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p>4. 유아의 발달, 교육 및 안녕을 향한 시설기준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시설기준 통합은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 기준으로 초점을 두고, 점차 최적 발달과 교육, 안녕을 위한 시설통합기준으로 상향화 되어야 함.

학회	내용
한국유아 지원학회	<p>1. 기관 및 시설 통합의 방향</p> <p>가. 일원화 체제: 유아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교는 0-5세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호 서비스 기능의 통합을 지향함. 동일한 시설설치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p>나. 설립 인가 기준의 동일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설립 인허가 주체의 일원화 및 설립인가기준 형평성 조정 필요 <p>다. 기존 기관·시설의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p>2. 기관 및 시설 통합의 방안</p> <p>가. 기관 설립 기준의 일원화 및 조정을 위한 시설 기준령 및 허가절차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의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육시설 인가 절차 및 신규 설립 인허가 주체를 일원화함 <p>나. 유아학교 시설설비 기준의 조정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원 대상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시설의 설비 추가 및 관련 요건 조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전환한 기관은 별도의 종일반 교실 및 낮잠 공간 확보, 주방설치, 안전설비 및 CCTV 설치,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 샤워시설, 교시 및 복도 바닥 난방 등 설비 구비가 필요함 - 보육시설에서 유아학교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유아학교 시설 설비기준에 맞게 시설설비 보완 ○ 유치원의 경우 영아반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p>다. 유아학교 체제를 위한 시설유형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유형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p>라. 유아학교 운영시간의 조정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교는 연간 180일 기준, 하루 운영시간은 반일제의 경우 1일 3-4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1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방과후 보육의 형태로 오전 7시- 9시, 오후 1시 이후부터 7시까지 전체적으로는 하루 12시간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방과후 보육의 연간 운영일수는 300일 기준임.

자료: 각 학회 제출 원고(부록 1-9 참조)

2. 교사 자격

가. 통합 방안에 대한 학회 의견 종합

교사 자격에 대한 각 학회의 의견은 크게 교사 자격 통합, 소관 행정부처, 자격기준 및 양성교육과정, 현직 재교육과정, 근무여건 및 처우, 수급계획 및 조절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종합할 수 있다. 각각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자격 통합

- 1안: 통합(영유아교원, 교육보육행정, 유아교육, 육아지원)
- 2안: 준비과정 거친 후 통합(보육, 보육정책, 보육지원, 생태교육)
- 3안: 연령별 이원화(열린 유아)
 - 9개 학회 모두 통합 찬성하나 전제조건 다름

2) 소관 행정부처

- 1안: 1개 부처로 통합(보육정책, 영유아교원, 유아교육, 육아지원)
- 2안: 2개부처 상호협력 및 연령별 담당(보육지원, 생태유아, 열린유아)
- 3안: 제3의 전담기구 담당(보육)
- 4안: 담당기구 신설: 영·유아교육복지청(교육보육행정)

3) 자격기준 및 양성교육과정

- 1안: 교사 자격기준 강화
 - 자격시험제도 도입(보육정책, 보육지원, 보육)
 - 4년제 졸업 이상, 초중등교원과 동등하게 상향 조절(보육정책, 보육, 생태유아, 열린유아, 영유아교원, 교육보육행정, 유아교육, 육아지원)
 - 자격기준 이원화(열린유아, 육아지원)
- 2안: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 보육교사자격 취득 학과중심 전환(보육정책, 보육, 영유아교원)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생태유아)
 - 보육교사 3급 기준 재조정 및 보육교사교육원 역할 전환(보육정책, 보육지원, 보육, 생태유아, 교육보육행정)
 -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강화(보육)
 - 기타: 4년제와 2·3년제 자격종류 차등화 및 보상(보육지원, 생태유아, 육아 지원), 자격 호환 및 상호 고용(보육정책, 생태유아)
- 양성교육과정 강화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교과목 학점 상향 조정(보육정책, 보육)
 - 양성교육과정 내용 보완(보육지원, 보육, 유아교육, 육아지원)
 - 실습강화(보육정책, 보육지원)
 - 교원양성교육기관 평가인증제 도입(생태유아)

4) 현직 재교육과정

- 보수교육 상향 조정(보육정책, 보육지원, 보육)
- 재교육 내용 개선(보육지원, 보육, 생태유아)
- 재교육 전담기구 재정비 및 설치(보육정책, 보육지원, 보육)
- 교사윤리강령 마련(교육보육행정)

5) 근무여건 및 처우

- 급여 및 호봉체계 조절, 근무시간 준수,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체교사 지원, 근무환경 및 복지수준 향상(보육, 보육지원)
- 근무여건 개선비용 증액, 법정정원 준수(보육)
- 차량전담인력 배치(보육지원)
- 교원배치기준(육아지원)

6) 수급계획 및 조절

- 교사 수요 및 공급의 양적 균형 고려한 교사 수급 계획 요구
(보육정책, 보육지원)

나. 학회별 통합 방안

〈표 III-2-1〉 학회별 통합 방안 - 교사 자격

학회	내용
한국보육 정책학회	<p>1. 통합을 위한 유치원, 보육교사대상 재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행정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p>2. 자격기준과 양성 및 재교육과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시험을 통한 유치원, 보육교사 수준 유지, 수급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보육시설 교사 시험제도 도입 ○ 4년제 졸업, 유아교육과 이상 또는 관련학과 교직이수자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와 2·3년제 졸업자간 동일직급 재조정, 2년제 출신 교사 경과조치 통한 자격기준 강화 ○ 보육교사 자격교과목 45학점 이상, 보수교육 80시간과 160시간으로 상향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보육교사는 영유아 부교사제 ○ 재교육 담당 영유아 교사 연수원 설치 <p>3.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수급계획 및 관리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종사자 공무원 신분 보장 제안

학회	내용
한국보육 지원학회	<p>1. 통합은 아동 이익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거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행정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의 협의(MOU체결) ○ 교사자격제도의 통합을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의 핵심적 과제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된 자격제도 및 재교육제도를 통한 상호고용제 실시 <p>2. 자격기준과 양성 및 재교육과정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교사(통합) 자격시험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 이상의 보육교사 2급과 유치원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응시, 일정점수이상 취득시 영유아(통합)2급 자격증 부여 ○ 통합 양성교육과정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근무 가능하도록 영아반 포함 종일반 근무를 기본으로 교육 실시,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 실습 이수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현직교육 연계와 통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보육·교육시수 법제화, 참여지원을 위한 대체교사제 확립 - 현직교육은 교사의 요구에 맞게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함께 받는 시간도 두어 교사간의 소통과 현장적응력 높임 - 현직교육담당은 보육개발원 설립 또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 기능 발전시켜 총괄하도록 함 - 현직교육 담당부서는 현행 현직교육 담당부처가 협력하여 현직교육계획 및 평가 담당, 이를 위해 전국 권역별 대학이나 학회 중심 네트워크 형성 시도 <p>3.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급여체계 통합 및 처우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기본급여 체계 통합, 급여수준은 병설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상향 조절, 공무원 복지수준으로 개선 ○ 8시간 근무 준수 및 교대근무제나 정규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 ○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초과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토요일 근무 줄이는 운영방안 강구 ○ 차량담당인력 배치

학회	내용
한국보육학회	<p>1.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킨 후, 2단계에서 통합논의 과정 거쳐 통합체제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행정부처는 현재 주무부처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담당 <p>2. 자격기준과 양성 및 재교육과정 강화</p> <p>: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각각 별도의 자격증 강화 과정 거친 후 통합 가능 판단 시 제3기구를 통한 행정의 일원화 도모</p> <p>가. 자격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을 위한 학점 상향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최소학점 79-80학점으로 상향 조절(전공확대, 교직및 복지·건강가정·가족·지역사회 추가) ○ 초중등교원과 연계하여 자격기준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으로 학사 이상 학력 강화 -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교사 학력 고양기관으로 활용 검토 - 보육교사 3급과 유치원준교사제 점차 폐지 -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 강화 <p>나. 양성체제 개선방안 2개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관련학과 중심 전공학과제 구축(1안) 과 학과제한 없이 교과목 이수 후 국가시험을 통한 자격부여(2안) <p>다. 현직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표준교육과정 개발 ○ 보육교사 보수교육시간 확대(특히 승급) ○ 현직교육기관 재정비 요구 ○ 현직교육 참여 지원할 대체교사제 확립 <p>3. 근무 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급여체계 상향 조절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유형별 급여체계 격차 해소 - 보육시설 호봉체계 상향 조절 ○ 교사 근무시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간 근무로 근로기준법 준수 - 초과 근무시간 교대근무 실시 제도 도입 -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1일 2교대 정교사 담임제도 시도 ○ 작업복지환경 개선 ○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증액 요구 ○ 법정정원(교사 1인당 영유아수) 준수

학회	내용
<p>한국생태 유아교육 학회</p>	<p>1.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적 통합에 대한 우려로 조정과정을 거친 단계적 통합 방안 제시 ○ 소관 행정부처는 기존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상호 협력하여 동일한 형태로 조정해 나가도록 함. <p>2. 자격제도 체계, 양성기관 체계 조정 및 교사교육 방향 제시</p> <p>가. 자격제도 및 양성기관 체계 조정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자격제도의 일원화는 무엇보다 유아교사로서의 질 보장과 양 확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원화와 연계하여 조정과정에서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유지하되, 교사교육의 내용 및 자격기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음 ○ 교사의 자격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일원화 또는 재구조화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자격이수를 하고 있는 과의 교사 양성 기준 명확히 하여 자격 부여에 대한 원칙 필요 - 수업연한별 다양한 직전교육형태를 체계화하여 재구성할 필요 있음 ○ 교원양성교육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 교사양성기관 및 관리체계 개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양성 4년제 대학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전문대학을 통한 양성은 현행 수준에서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함 - 4년제 학사와 2·3년제 전문학사 자격 종류 차등화 <p>나. 교사교육의 방향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보육의 활성화, 유아교육의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호 및 교육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생태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 교사 양성 위한 교사교육의 목적과 방향 제시 - 교사자격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교원 및 종사자의 자격 전환 방안 마련 - 기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증진 차원에서 대학 편입학과 재교육 연수기회 확대 실시 <p>3. 상호 고용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과정에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의 상호고용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점차 교사자격체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함

학회	내용
한국열린 유아교육 학회	<p>1. 연령별 이원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체제로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아학교와 유아학교로 선택적 전환 허용 ○ 소관 행정부처는 0-2세 영아학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3-5세 유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 <p>2.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보육시설장은 영아학교장의 자격을, 유치원장은 영유아학교장의 자격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학교 교사 및 장은 소정의 연수 후 유아학교 교사 및 장 자격 부여 ○ 교사는 4년제를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교 2년제 교사는 4급, 3년제 교사는 3급, 4년제 교사는 2급 부여 - 영아학교 1년제 교사는 5급, 2년제 교사 4급, 3년제 교사 3급, 4년제 교사는 2급 부여 - 각급 교사는 소정의 연수를 거쳐 승급 가능
한국영유아 교원교육 학회	<p>1.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잠정적으로 '영유아학교'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고려하여 0-2세, 3-5세, 0-5세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옵션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잠정적으로 '영유아교사'로 개정 - 소관 행정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 <p>2. 양성교육과정 통합 및 질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자격을 학과목 위주가 아닌 학과 중심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체계를 보완, 학력수준을 점진적으로 4년제 졸업자로 함 - 영유아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과정은 현행 교원자격검정기준을 적용하여 교직의 전문성 확보 - 영유아교사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은 동일하나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0-2세, 3-5세, 0-5세 영유아학교를 선택하여 취업, 봉급은 동일수준으로 함

학회	내용
<p>한국유아 교육·보육 행정학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 보육을 보육·교육·복지를 통합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통합정책 펼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으로 소관 행정부처 통합, 「영·유아교육복지청」 신설 제안 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동일 수준으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질 확보를 위한 학력 단계적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3년제 이상의 학력으로 조정, 점차 학사학위 이상 추진 -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 심화교육과정 활용 ○ 교사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기존 전문대학 2년제 졸업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배출된 교사의 학력 제고기관으로 전환 3. 법령의 정비 및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자격기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의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사 양성, 자격제도, 인사, 처우 등 담당 -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양성, 자격제도, 인사, 처우 등
<p>한국유아 교육학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된 “유아학교” 자격기준과 양성과정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행정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유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지닌 유아교사 양성 구축 - 유아교사 자격제도를 일원화하여 초·중등 교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현재의 교사 자격 강화, 전문성 수준 높임

학회	내용
한국육아 지원학회	<p>1.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후, 일정 규모 갖춘 기관은 “유아학교 (0-5세)”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행정부처는 교육기술과학부로 통합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전환 - 보육시설은 유아학교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전환의지가 있을 때 유아학교로 전환, 현재의 가정보육시설은 영아전담시설로 계속 유지 <p>2. 유아학교 종사자의 유형, 교원배치 기준, 교사 자격 변환, 교원 양성 및 자격 취득 요건 등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교는 초등학교와 같은 체제로 재정비, 가정보육시설 종사자는 현행 보육교사와 같은 자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교 교장, 교감, 교사, 방과후 교사 - 가정보육시설 종사자(가정보육시설 담당) ○ 현직교사의 자격은 통합 후 교직이수여부를 중심으로 변환 ○ 현행 2·3·4년제 유아교육과는 ‘영유아교육학과’로 명칭 변경, 보육핵심학과는 영유아교육학과로 전환 유도하여 유아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폐지 - 보육교사교육원은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양성 전담 ○ 유아학교 정교사 자격취득 요건은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하되 기본 이수영역 일부 개편

자료: 각 학회 제출 원고(부록 1-9 참조)

3. 교육·보육 과정

가. 통합 방안에 대한 학회 의견 종합

교육·보육 과정에 대한 각 학회의 의견은 크게 주관부처 및 관리감독, 방법, 통합 교육·보육과정의 세부 내용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종합할 수 있다. 각각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처 및 관리감독

- 1안: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열린유아, 영유아교원, 육아지원)
 - 영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열린유아)
 - 개발된 교육과정은 제 3의 관리감독 필요(영유아교원)
- 2안: 중앙 및 지자체의 양육지원센터(보육·교육지원센터)가 학계 및 현장의 자문을 받아 개발, 관리, 감독(보육지원)

2) 방법

- 1안: 0-만 5세의 일원화된 통합교육과정 개발(생태유아, 영유아교원, 교육보육행정, 유아교육, 육아지원)
- 2안: 0-만 2세, 만 3-5세 교육·보육과정 분리 개발(보육정책, 보육, 열린유아)

3) 통합 교육·보육과정의 세부 내용

추구하는 인간상

- 1안: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유아교육)

목적 및 목표

- 1안: 전인적인 인간 양성(교육보육행정, 육아지원)
- 2안: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인성 계발, 창의성 함양 및 사회성을 길러주는 종합복지서비스(생태교육)

영역 구분

- 1안: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에 기초(교육보육행정)
- 2안: 유치원교육과정의 5개 생활영역에 기초(육아지원)

수준 구분

- 1안: 2세 미만 연령의 세분화(보육, 교육보육행정)
- 2안: 표준보육과정을 따름(교육보육행정)
- 3안: 전체적인 학습 개념 제시(유아교육)
- 4안: 연구를 통해 재조정(육아지원)

나. 학회별 통합 방안

〈표 III-3-1〉 학회별 통합 방안 - 교육 과정

학회	내용
한국보육 정책학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표준 교육과정의 재정립 2. 3-5세는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국가수준의 과정을 개발: 종일반 관련 보육내용을 포괄적으로 확장 3.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재정립: 3세 이상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공통점을 찾고, 종일반보육을 위한 일상생활관련 교육과정을 개발, 3세 이하는 보육과정을 재정립
한국보육 지원학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준비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상호 협력 ○ 보육·교육과정 개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양육지원센터를 중앙과 지방에 설립하여 운영 2. 보편적 보육·교육과정 제공 3. 보육·교육과정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보건에 대한 내용, 가족지원 내용 추가 ○ 부모들의 양육지원 추가 ○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야간연장제, 24시 프로그램에 따라 보육·교육과정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 ○ 국가 수준의 보육·교육과정을 지역 수준에서 조려 개정을 통해 조절
한국보육 학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간의 연계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세 유아들은 같은 교육·보육 내용 공유 3. 영유아교육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4.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 사용 5. 연령 세분화와 구체적 기술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세 미만 연령을 보다 세분화

학회	내용
	<p>6.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p> <p>7. 특수교육·보육에 대한 내용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항목 명시와 관련 교사용 지침서 별도 개발 <p>8. 교육·보육과정 개발 상설 자문기구 설립</p> <p>9. 성 평등적, 반편견적인 내용 포함</p>
<p>한국생태 유아교육 학회</p>	<p>1. 유아교육과정·보육과정의 일원화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보편화 ○ 부처 간 협력 체계 ○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중재위원회 구성 <p>2. 유아교육과정·보육과정의 구성</p> <p>가. 유아교육과정·보육과정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목적과 성격을 보편화 ○ 국민의 평생교육 차원과 연결 <p>나. 유아교육과정·보육과정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의 내용적 일원화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충분한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개정: 0-5세 <p>3. 유아교육과정·보육과정의 운영</p> <p>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운영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 형식을 맞추는 과정 필요: 기관 간 변경,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선택 적용 ○ 행정적 문제를 중재하는 기구 마련 ○ 교육과 보육을 포괄한 운영 형태의 모델 제시 <p>나.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일원화를 위한 단계적 운영 실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작업 선행 ○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운영 체제 변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상호 적용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완전 일원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사수급, 행정시스템 등 전반 문제에 대한 해결 선행

학회	내용
한국열린 유아교육 학회	<p>1. 0-2세를 위한 영아교육과정, 3-5세를 위한 유아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하되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함 ○ 유아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함
한국영유아 교원교육 학회	<p>1.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 및 서비스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및 유아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 ○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구조적 통합 우선 ○ 교육, 보호 기능과 같은 서비스 내용 측면 우선 통합 ○ 영유아 학교로 구조화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제 통합 <p>2. 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에 대한 각계각층의 합의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에 대한 각계각층의 합의 도출: 실시간 인터넷 활용 조사 ○ 부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조사 <p>3. 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 조정위원회 구성</p> <p>4. 국가 수준 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 모형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정’ 통합 모형 우선 구성 ○ 두 체계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수용-연계-통합 체계 순으로 통합모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보다 교사자격, 질 관리 감독기관, 기관·시설, 재정 지원 측면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 이러한 과정 중에 교육·보육과정을 수용(인정) <p>5.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영유아 교육과정’ 체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영유아학교’로 체계화한 후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 ‘영유아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개발 ○ 제 3의 관리 감독 센터 신설, 운영 ○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의 장점인 교육, 가족지원, 교사교육 수용, 보육의 장점인 건강, 안전, 보호적 측면 강화

학회	내용
한국유아 교육·보육 행정학회	<p>1. 관련법 및 주관 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관련법의 통합 ○ 주관 부처의 통합 <p>2.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제 수업에 따른 연령과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수준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과정의 대상연령도 만 0-5세로 통합, 운영 ○ 영역구성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영역으로 세분화 ○ 영유아의 권리 측면에서의 목표 기술 ○ 협동심 배양과 체험 중심의 통합된 교육·보육과정 편성 ○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교사 역할의 구체적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 명시 ○ 만 2세 미만의 연령의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수준(0-6개월, 6-12개월, 12-18개월, 18-24개월)으로 세분화
한국유아 교육학회	<p>1. 기관의 성격과 목적, 인간상, 교육목표, 교육내용을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추구하는 인간상 설정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한 유아교육과정 신설 <p>2. 교육을 중심으로 보육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일원화</p> <p>3. 유아 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로 유아의 경험을 연계·통합</p> <p>4. 비구조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구조화하기보다 전체적인 학습 개념을 제시하여 유아들이 비구조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기본능력을 기르도록 함 <p>5. 교육기관과 지방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침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준의 큰 울타리 속에서 세부적인 사항과 실행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기관과 지자체의 자율성 허용

학회	내용
한국육아 지원학회	<p>1.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여 교육과정을 제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처로의 통합은 유아기 교육을 생애 전체 교육과 연관되는 공교육 및 평생교육의 체계 속에서 강화하여 나가는 토대가 됨 ○ 교육부처로 통합하는 것은 교육과정 제정, 개정 및 평가, 장학 및 교육과정 관리 체계, 교사양성 및 자격관리 체계,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전문행정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함 ○ OECD 국가들 중 스웨덴, 뉴질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 교육복지 선진국들에서 0-6세를 유아의 교육을 이미 교육부처로 통합함 ○ 유아교육이 아직 기간학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공교육적 특성은 매우 공고화되어 있으므로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교육과정 통합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p>2. 국가 수준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근거 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조정,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 제시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개정위원회’ 구성, 운영 <p>3. 0-5세 유아를 위한 통합교육과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인간 양성을 목적 ○ 생활영역을 기초로 구성: 건강생활, 사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5개 생활 영역 기초 ○ 연령별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수준구분은 교육과정 제정 과정에서 연구하여 재조정함 - 놀이, 활동, 경험을 주입으로 통합교육과정 운영 <p>4. 일정 기간(약 1-2년) 동안 연령별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병행하여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보육과정’을, 3-5세에 대해서는 ‘유치원교육과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보육시설에서는 3-5세의 경우, 필요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 <p>5. 0-만 5세 유아를 위한 통합 교육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고시·시행</p> <p>6. 자료집 개발과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및 교사교육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발달수준, 하루 일과 길이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전개와 운영에 대한 교육 ○ 교육과정의 적절한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

자료: 각 학회 제출 원고(부록 1-9 참조)

4. 관리·감독 체계

가. 통합 방안에 대한 학회 의견 종합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각 학회의 의견은 크게 관리·감독 부처 및 전달체계(행정 지원체계), 조정·관리 기구, 평가체계,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종합할 수 있다. 각각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감독 부처 및 전달체계(행정지원체계)

- 1안: 0-5세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
 - 0-5세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영유아교원, 유아교육, 육아지원)
 - * 영유아교원: 영유아학교; 유아교육, 육아지원: 유아학교
 - *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중심 전달체계 통합(육아지원)
 - 시도교육청 초등에서 유아교육 분리, 유아교육과 신설, 전문 장학사 배치
 - 유치원, 보육시설 관련 제 규정을 유아학교를 위한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작업 선행
 - 제 3의 관련 청(보육정책, 교육보육행정) 또는 아동·청소년·가족부 신설(보육)
- 2안: 연령별 구분 일원화
 - 0-2세 영아학교 보건복지가족부, 3-5세 유아학교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열린유아)
- 3안: 현재의 특성 발전 및 협력 유도
 - 보육전달체계, 유아교육전달체계의 특성 발전 → 중앙부처 통합 유도(보육지원)
 - 보육전달체계와 유아교육전달체계의 협력(생태유아)
 - * 두 부처의 행정지원체계 강화 필요(생태유아)
 -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지원 기능강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유아교육과(계) 신설
 - 보건복지가족부의 육아복지 지원체계 구축

2) 조정, 관리 기구

- 국무총리산하의 통합을 위한 조정, 중재 기구 설치 및 개칭
 - 영유아 보육·교육통합준비위원회(보육지원)
 - 교사지위향상팀, 보육·교육과정팀, 시설지원팀, 행재정지원팀
 - 유아교육·보육조정위원회(생태유아)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중재 역할
 - 한시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특별위원회 설치·운영(영유아교원)
 - 산하에 영유아학교 통합 관리 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지정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영유아교육위원회로 개칭
-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운영위원회 조정
 - 중앙보육·교육위원회, 시군구지방보육·교육위원회 설치(보육)
 - 현 보육정책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역할 통합

3) 평가체계

- 1안: 통합 평가 기구 설립
 - 보육·교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보육지원): 현재의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발전
 - 영유아보육·교육평가국(보육)
 - 제 3의 기관 설립
 - 통합평가지표 개발
 - 영유아학교평가사무국(영유아교원)
 - 유치원평가인력, 보육시설평가인력의 적절한 배치
 - 유아학교 평가기구(육아지원)
 - 현재의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의 업무 기반 통합
 - 보육시설평가 인력과 유치원 평가인력 협력
 - 통합평가지표 개발
 - 통합평가기구(생태유아, 교육보육행정)
 - 유치원 평가, 장학 업무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업무 통합
 - 평가 내용 및 방법의 일원화
 - 장학사 및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인력의 협력적 관계 모색(생태유아)
- 2안: 연령별 평가 기관 설치
 - 영아학교와 유아학교의 독립된 평가기관, 조력기관 설립 또는 위탁(열린유아)
- 평가체계 개선 방안(유아교육)
 - 평가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립: 대체교사, 조력활동 강화, 평가 비용 지원 등
 - 평가와 장학간의 기능분담 및 조화
 - 평가 수행 전문가 육성 관리체계 구축
 - 평가 후 질관리 체계 구축 및 피이드백을 통한 컨설팅 효과 증대

4)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안: 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교육지원센터(보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구축된 보육지원인프라(보육정보센터 등) 확대 발전 - 보육·교육지원센터(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감독, 장학, 프로그램 제공, 평가 담당 • 현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역할 통합 - 육아지원정보센터 설립 또는 현 보육정보센터의 적극 활용 지원, 시스템 통합(생태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보육시설의 실제적 통합 가교 역할 • 연수, 연구, 개발 담당 - 영유아교육지원센터(영유아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진흥원+보육정보센터+영유아이용이시설 기능 통합 • 연수, 연구, 정보제공, 유아 체험의 장 제공 등 ○ 장학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과에서 장학 총괄 담당(육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설유치원 중심, 자율장학 및 장학지도 지원 - 장학 기능 확대(생태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합동 장학제도 도입 ○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조직 및 기능 강화(생태유아)

나. 학회별 통합 방안

〈표 III-4-1〉 학회별 통합 방안 - 관리·감독 체계

학회	내용
한국보육 정책학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시설을 위한 독자적 국가 관리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제도 내용 수정 보완, 통합시설 질 관리 ○ 모든 기관의 의무적 참여를 위한 법령 규제 2. 통합시설의 책임경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경영 토착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 ○ 유아의 잠재적 능력 신장 중심, 유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육 3. 질 관리·감독 일원화: 보건복지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 외의 제 3의 관련 청을 두어 독립적 일원화 추진

학회	내용
한국보육 지원학회	<p>1. 현재 구축된 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육전달체계와 교육청 중심 유아교육전달체계 각각의 특성 살려 발전시키면서 중앙 부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중앙부처의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보육과 유아교육 질 관리 및 감독 체계 협력과 통합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보육인프라 확대 발전 -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보 전달 기능을 영유아정책 및 각종 영유아관련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 관련 서비스까지 확대한 포털사이트로 발전 - 보육교사자격관리국과 기존 보육정보센터의 평가인증시설 조력 기능 및 교사교육의 기능을 흡수, 확대 강화, 교육청 유치원교사 담당부서와 협력 통합하여 가칭 ‘영유아교사발전지원국’으로 발전 -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의 노하우를 살려 이 기구를 ‘보육·교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으로 발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업무 담당 <p>2. 보육·교육사업을 총괄하는 전달 및 지원체제로 가칭 ‘영유아보육·교육지원센터’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영유아보육·교육지원센터’를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설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센터를 통한 부모지원 확대 강화 - 이 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연계 및 협력 확대 - 이 센터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양육지원 기능 확대 <p>3. 보육·유아교육 관리감독체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행정직에 보육직 신설, 또는 행정직(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보육학 과목을 두어 보육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보육·유아교육 담당 공무원으로 보육·유아교육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 보육·교육 정책 실행과 시설 관리 감독 등 보육·유아교육 지원 업무 담당 ○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준비위원회’에 교사지위향상팀, 보육·교육과정팀, 시설지원팀, 행·재정지원팀 등을 둠. ○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준비위원회’의 행·재정지원팀은 정부 부처의 아동청소년 정책이나 가족정책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농산어촌, 노동 및 실업, 경제, 주택, 미디어, 교육, 문화 정책 등에서 영유아와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각종 정책과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영유아보육·교육 정책 전달과 지원 강화

학회	내용
한국보육학회	<p>1. 질관리 통합 방안</p> <p>가. 행정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평가인증사무국과 유치원 평가 인력 재구성, 제3의 기관인 '영유아보육·교육평가국(가칭)'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평가인증사무국의 전산시스템 수정 사용 -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과를 중심으로 한 행정 전달체계 이용 - 아동가족직 공무원(가칭)직 도입 <p>나. 평가시스템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및 모집 → 자체점검평가보고서 작성 → 현장관찰 평가(관찰평가위원) → 관찰평가 종합, 심의 평가(심의위원) ○ 평가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준 및 구성: 현 보육시설평가인증 관찰자와 유치원평가위원의 자격 기준을 중심으로 자격기준 마련(예: 보육, 유아교육 현장 10년 이상 경력 교사 및 원장, 보육, 유아교육, 아동학과 교수,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장관찰자 3년 이상 경력자, 유아교육 담당장학관(사), 학부모 등) ○ 평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의 지표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하나의 지표로 통합 사용 - 평가지표의 일원화(영아전담, 장애아통합, 장애아전담, 연장보육, 방과 후 포함) ○ 조력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교육지원센터 역할 활성화 - 공인조력자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준: 현 보육시설평가인증 관찰자와 조력위원, 유치원 장학 참여하고 있는 인력(장학사 포함)을 중심으로 자격기준 마련 * 예비 조력 시스템 도입 및 사후 조력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적인 질관리 ○ 지원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평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지정 후 지도 점검, 사후 연구 발표 * 우수교사 수당, 교재교구비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 도입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상호교류 유도로 지역별 자체 장학이 되게 함 - 사후 질관리의 제도적 확산

학회	내용
	<p>2. 전달체계 통합 방안</p> <p>가. 행정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가족부(가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부처에서 보육과 교육의 통합 및 가족복지 담당 - 전달체계는 이 부처를 정점으로 광역 시도 ‘중앙보육교육위원회(가칭)’, ‘시군구 지방보육교육위원회(가칭)’,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전달 체계 구축 - ‘보육교육지원센터(가칭)’는 ‘보육교육위원회(가칭)’와 협조, 유아교육기관의 감독, 장학, 프로그램 제공, 평가 등의 업무 담당 <p>나. 통합 내실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감독 전달체계의 통합 내실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보육시설지도점검 관련 공무원과 유치원 장학지도를 담당하는 장학사의 협력체제 구축 ○ 보육교육위원회 통합 내실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보육정책위원회와 유아교육위원회의 역할 통합 ○ 보육교육지원센터의 통합 내실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보육정보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 보건소의 역할 통합 ○ 광역시와 도의 중앙보육교육위원회와 시도의 지방 보육위원회, 각 구청 단위의 보육교육 위원회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와 유치원 평가제도 통합 ‘보육교육평가국(가칭)’ 설립
한국생태 유아교육 학회	<p>1. 조정위원회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p> <p>가. 1단계: 보육전달체계와 유아교육전달체계의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유아교육전달체계 내의 인력과 보육전달체계 내의 업무인력 간의 협력적 운영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으로 ‘(가칭)유아교육·보육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그 성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재적 조정 역할 필요 <p>나. 2단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통합지원센터(『(가칭)육아지원정보센터』)를 설치하거나 혹은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 필요 ○ 통합지원센터의 정보교환, 의견수렴, 지원체계 구축은 기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실제적 통합 가교 역할

학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보호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 영유아교사 연수기능 담당 - 영유아 교육과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담당 <p>다. 3단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행정 조직 정비 및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인 유치원과 보건복지가족부 관할인 보육시설의 행정지원체제에 대한 보편화 방침에 근거한 행정 지원체제의 변화 필요 ○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정책 기능 강화 -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지원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담당과 신설, 독립 운영/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계 신설 - 보건복지가족부의 육아복지 지원체제 구축 ○ 유아교육·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조직과 기능 강화 ○ 장학 기능 확대 및 평가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장학사 위주의 형식적 장학 지양, 민·관합동 장학제도 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장학사 및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인력의 협력적 관계 방안 모색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평가 내용 및 방법의 일원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논의 및 연구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의 업무와 유치원 장학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평가기구 설치 및 운영
<p>한국열린 유아교육 학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 관리 및 감독의 최고 책임 행정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학교: 보건복지가족부 ○ 유아학교: 교육과학기술부 2. 영아학교와 유아학교의 평가 및 질 관리를 위한 독립된 기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관장할 독립된 평가기관과 조력기관의 확보(설립 또는 위탁) ○ 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학회	내용
한국영유아 교원교육 학회	<p>1.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유아교육업무 전담 행정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 관리 및 전달체계 통합의 가능성은 유아교육법 제 4조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제안 ○ 위 근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 가칭 ‘영유아교육위원회’로 개칭하여 구성, 산하에 통합 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지정,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통합한 가칭 ‘영유아학교’를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행정체계 구축 제안 ○ 유아교육·보육전달체계의 통합 실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아교육·보육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통합의 효율적 추진 도모 <p>2. 유아교육·보육시설 평가를 위한 통합된 전담기구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기관의 평가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가칭 ‘영유아학교 평가사무국’ 통합기관 설치 전담 ○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평가 추진 인력과 보육시설 평가 인증사무국의 운영을 담당해 온 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통합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 <p>3. 유아교육. 보육업무의 효율적, 다각적 지원을 위한 통합된 전담센터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지역교육청내에 가칭 ‘영유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가칭 ‘영유아교육지원센터’는 기존의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 이용시설(예: 영유아 플라자)의 기능을 통합하여, 교사연수, 영유아교육정책 연구, 영유아교육정책관련 정보제공, 가칭 ‘영유아학교’ 평가 지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양육지원과 영유아 체험 학습의 장 제공 등의 기능 담당
한국유아 교육·보육 행정학회	<p>1.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체제는 문제점으로 인식, 향후 통합체제의 필요성 지향하는 연구와 노력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청을 두어 통합된 정책 실현 필요 ○ 유치원 평가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일원화된 국가수준의 질 관리 체제로 평가 실시, 지도와 감독, 정책평가, 모니터링 등 실시.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평가방법 모색 <p>2. 질 관리를 위한 형평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기구·인력의 통합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의 업무와 유치원 장학과 감사, 평가총괄 통합평가기구가 설치, 운영

학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치원 장학사 및 시범평가위원,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인력등 평가전문 인력의 긴밀한 협력 필요 <p>3. 관리감독(전달체계 포함) 의 통합</p> <p>4. 관리감독(전달체계) 담당하는 전문성 갖춘 전문관료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직렬의 신설, 법제화 필요
<p>한국유아 교육학회</p>	<p>1.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평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정과 절차 확인, 자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 평가, 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원래의 목적을 수행토록 해야 함. <p>2. 평가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준비 교사의 업무 경감, 수업결손을 막을 수 있는 대체교사제 필요 ○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보육시설 조력활동 강화 필요 ○ 평가 및 평가인증 비용 지원,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p>3. 평가와 장학간의 기능분담 및 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와 장학간의 적절한 기능분담 필요. ○ 보육의 경우, 평가인증과 지도점검의 기능분담 필요. 평가이전에 교사 장학이 선행되어야 함. <p>4.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관리체계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전문가 훈련 제도 마련, 연수프로그램 개발 필요 ○ 현장관찰자 체계적으로 선발, 전문적 훈련 제도 마련, 연수프로그램 개발 필요 <p>5. 평가 후 질관리 체계 구축 및 결과보고서 피드백을 통한 질향상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컨설팅체계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충실한 결과보고서의 피드백을 통해 컨설팅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함. ○ 평가인증 후 사후 관리 철저 필요. ○ 평가 후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대학-현장을 잇는 전문컨설팅체계 구축 필요

학회	내용
한국유아 지원학회	<p>1. 질 관리 감독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후 효율적인 질 관리 감독을 위해 교육과학부 산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학교 전달체제의 통합 ○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이 끝난 후, 현재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업무를 분리하여 유아교육과 신설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전달체제내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할 전문장학사를 선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사는 유아교육, 보육 전문성 보유자로 선발 배치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의 조직을 일반관리, 기관 질 관리, 교사 질 관리, 교육과정 질 관리 담당 부서로 개편함 <p>2. 일반 행정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후 교육과학부 산하 시도교육청에 신설되는 유아교육과의 일반관리 부서에서 일반 행정 관리 총괄 * 준비과정: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폐원, 시설 및 설비,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비교 점검하여 유아학교를 위한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작업 선행 <p>3. 유아학교 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을 통합한 유아학교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 * 준비과정: 유아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구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보육시설 인증평가사무국의 업무를 기반으로 통합 -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인력과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시범평가를 담당했던 인력의 협력 유도 - 보육시설평가인증 지표와 유치원 평가 지표를 통합, 유아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 개발 <p>4. 수업 및 교사 질 관리(장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 신설, 유아학교의 장학을 총괄 담당, 일상적인 수업 및 질 관리 ○ 유아교육과 신설, 장학업무 담당을 위한 유아교육 전문성 있는 장학사 추가 배치함. ○ 각 지역에 있는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자율장학 및 장학지도 등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함께 활용하는 방안

자료: 각 학회 제출 원고(부록 1-9 참조)

5. 예산 지원

가. 통합 방안에 대한 학회 의견 종합

예산 지원에 대한 각 학회의 의견은 크게 예산 지원의 원칙, 예산의 확보, 균형 있는 지원방식의 확립,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종합할 수 있다. 각각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지원의 원칙

- 육아지원의 공정성, 효율성 및 보편적 공적 서비스 강조(보육지원, 생태유아, 영유아교원)
- 재정지원 기준의 일원화: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 체제의 통합(생태유아, 유아교육)
- 육아지원의 단계적 무상 지원(생태유아, 육아지원)
 - 농어촌 거주 유아에게 우선 실현하고, 점차 저소득 계층 및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무상교육 실현
- 이용 대상 영유아의 연령, 가정의 소득, 이용 시설, 이용시간 등을 기초로 표준 비용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형평적 지원(보육지원, 육아지원)
- 육아지원 비용의 수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정부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보육지원, 생태유아, 영유아교원)

2) 예산의 확보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생태유아, 보육지원)
- 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구축(영유아교원)
- 2010년까지 정부교육예산의 4%를 유아교육 예산으로 확보 추진(생태유아)
- 한시적 목적세인 '보육세'의 도입(영유아 양육세, 혹은 교육·보육세)(보육)

3) 균형 있는 지원방식의 확립

가) 영유아별 예산 지원 방식

- 영유아 1인당 공적재원 투입, 부모 부담,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통일(보육)
- 시간별 및 모의 취업 유무에 따른 차별적 지원
 - (1안)
 - 하루 일정시간(2-4시간)까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 보육·교육을 제공하고 이후 시간 초과 시 부모가 비용 부담(보육지원, 보육, 육아지원)
 - 종일제와 장시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가정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보육지원)
 - 영유아 지원시 모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 지원(보육, 생태유아)
 - (2안)
 - 1일 3시간, 주 15시간에 해당하는 유아학교 교육비는 무상교육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오후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노동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육아지원)
- 표준단가에 근거한 자율화 제한
 - 비용의 자율화를 어느 정도 허용. 다만 비용의 자율화는 비용 인상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의 계층별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 허용 (보육지원, 보육)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보육지원, 보육)
-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 지원(보육지원, 보육)

나) 기관별 지원 차이에 따른 대안

- 1안: 하나의 체계로 통합(유아교육, 보육지원, 교육보육행정, 생태유아)
 -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 체제의 통합, 교부금으로의 단일화 및 재정의 독립
 - 재정통합을 위한 통합기구 설치(교육보육행정)
- 2안: 영아학교와 유아학교로 구분(열린유아)
 - 영아학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공립과 법인, 개인 설립 학교 간에 균등 지원
 - 유아학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공립과 법인 간에 균등 지원 원칙. 개인 설립 학교는 법인화 유도
 - 영아학교와 유아학교 교직원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3안: 별도의 비용체제를 가지고 있는 병설 유치원은 K학년제로 편입 (보육지원)
- 4안: 국공립 기관 지원과 민간 및 사립기관 지원 체계 구분(보육)
- 5안: 사립기관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생태유아, 영유아교원)

4)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 정비

- 보육시설·유치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관리
 -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재정지원 관리체계(통제시스템) 구축(영유아교원)
 - 보육과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관리감독 강화(보육, 생태유아)
 - 기관의 열린 운영이 전제가 되어야 함. 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보육지원)
 - 투명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 업무 전산화(보육지원, 보육)
 - 평가시스템과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강화(보육지원, 보육)

나. 학회별 통합 방안

〈표 III-5-1〉 학회별 통합 방안 - 예산 지원

학회	내용
한국보육 지원학회	<p>1.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 부담의 적정 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일정시간(2-4시간)까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 보육·교육을 제공하고 시간 초과 시 부모가 비용 부담 ○ 비용의 자율화를 어느 정도 허용. 다만 비용의 자율화는 비용 인상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의 계층별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적정 표준단가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 설정 ○ 종일제와 장시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가정에 한하여 제공 ○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에 대해서도 지원 <p>2.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지원에서의 형평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연령, 가정의 소득, 이용시설, 이용시간 등에 따른 형평성 제고 ○ 기관 유형에 따른 지원 차이 불식 및 정부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 ○ 별도의 비용체제를 가지고 있는 병설유치원은 K학년제로 편입 <p>3. 보육시설·유치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열린 운영이 전제가 되어야 함. 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 투명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현행의 표준보육행정 시스템(e-보육)을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 ○ 평가시스템과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꾸준히 향상 ○ 특수 보육·유아교육 기관 확충 ○ 보육시설·유치원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p>4. 보육·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유아교육의 보편적 공적 서비스 강조 ○ 국공립 기관 확충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국비의 절대적 지원 필요 ○ 증가하는 보육·유아교육 비용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학회	내용
<p>한국보육 학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료·교육비 상한선 상향 조정 - 부모의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의 이원화 ○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 논의 시 보육료와 교육비의 자율화 여부 결정 필요. 자율화는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상한선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 허용 논의 2. 연령별, 소득별, 시설 간 형평성 확립 - 정부의 보육 및 교육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연령, 가정의 소득, 이용 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한 지원 ○ 아동 1인당 공적재원 투입, 부모 부담,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통일 3. 유아의 보육·교육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지원시 모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보편주의에 입각한 지원 실현을 위해 4시간 비용 지원을 우선하고 점차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 ○ 국공립 기관 지원과 민간 및 사립기관 지원 체계 구분 4. 영아에 대한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보육의 경우 시설 뿐 아니라 가정 양육도 지원 ○ 모 취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 이원화 5. 육아지원 자원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목적세인 ‘보육세’ 도입(영유아 양육세, 혹은 교육·보육세) ○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추가 지원 6.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과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 업무 전산화 ○ 평가(인증)제도를 통한 질적 측면에 대한 관리 강화
<p>한국생태 유아교육 학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지원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기준의 일원화 ○ 재정지원 체계 정비 2. 통합 체제 구축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 저소득층 학비 지원 사업 실시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시설 확충 및 질 개선

학회	내용
	<p>3. 재정 확보 방안</p> <p>가. 재정 투자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까지 정부 교육예산의 4%를 유아교육 예산으로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matching fund 제도 도입 ○ 재정 지원의 단계적 확대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제고 ○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동시에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 <p>나. 재정 투자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수준에 대한 일관적 체제 마련 ○ 만5세아 무상 교육·보호는 표준교육경비를 개발·산출하여 지원 ○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 ○ 사립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체제 우선 정비
한국열린 유아교육 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학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공립과 법인, 개인 설립 학교 간에 균등 지원 ○ 유아학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공립과 법인 간에 균등 지원 원칙. 개인 설립 학교는 법인화 유도 ○ 영아학교와 유아학교 교직원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한국영유아 교원교육 학회	<p>1. 재정책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 ○ 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구축 <p>2. 예산의 분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민간) 시설의 법인화 ○ 육아지원의 형평성,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 ○ 교육 및 보육 비용의 수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 분배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 <p>3.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관리체계(통제시스템) 구축 <p>4. 주무 부처 및 법의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법 제정 ○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육아지원’국 설치 <p>5. 교사의 자격, 경력 및 보수체계 등의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경력 및 보수체계 등의 통합(정비) 기준 마련

학회	내용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p>1. 재정 통합 모형개발의 접근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및 일원화가 가능한 유형부터 우선적으로 모형 개발 ○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방식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모형 개발 ○ 모형에 포함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 ○ 재정통합을 위한 통합기구 설치 <p>2. 단기, 중단기, 장기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유아교육과 보육사업 보육재정 지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전작업 실시 ○ 중장기: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통합재정 모형의 현실적 접근 ○ 장기: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현실적 통합적 모형 개발
한국유아교육학회	<p>1. 단기 방안: 이원화된 행정체제를 고려한 재정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 단위의 교부금으로의 단일화 및 재정 독립 ○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 체제의 통합 <p>2. 장기 방안: 일원화된 행정체제 구축을 통한 재정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보육 행정의 교육과학기술부로의 일원화 ○ 유아교육·보육 재정의 통합 및 재정의 독립
한국유아지원학회	<p>1. 유아학교 교육비는 이용 대상 유아 연령 및 시간을 기초로 표준 비용을 산출하여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3시간, 주 15시간에 해당하는 유아학교 교육비는 무상교육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오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노동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만3-5세 유아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한 완전 유아학교 무상교육을 우선 실현하고, 이를 점차 저소득 계층 및 도시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 실현 <p>2. 지방자치단체의 유아학교 교육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교육경비 조례’를 “유아학교 지원”을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p>

자료: 각 학회 제출 원고(부록 1-9 참조)

IV. 외국의 유아교육·보육의 협력 및 통합

본 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OECD에서 제시하는 정책 제안과 스웨덴, 영국, 일본, 싱가포르의 협력 및 통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부처통합을 이룬 스웨덴과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와 통합적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통합한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원화체제를 위한 통합방안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부분적 통합을 이루어낸 일본과 교사 양성 제도를 통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협력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관한 OECD 정책 제안

OECD의 Starting Strong II(OECD, 2006)에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결정과 서비스 협력 분야에서의 다섯 가지 도전적 과제를 제시,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Starting Strong(OECD, 2001)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주요 결과를 제시한 Starting Strong II(OECD, 2006)를 바탕으로 OECD의 입장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위한 다섯 가지 도전적 과제(OECD, 2006)

-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협력적인 정책구조
- 주무부처의 지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 개혁을 위한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 현장, 전문가, 부모의 연계

가.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적인 협력 구조

영유아 정책은 아동에게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영유아 발달과 아동빈곤, 영유아 건강, 사회복지, 여성고용과 기회균등, 노동시장 공급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OECD(2006)는 개별 국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였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은 제도 전반에 걸친 일관성 있는 목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책임 등을 명시한 공동의 정책구조의 개발을 수반한다. 이에 OECD는 Starting Strong(OECD, 2001)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협력적, 체계적 정책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범 부처 간, 부서 간 조정기구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정기구만으로는 부처들 간의 경계와 영유아를 위한 의제를 결집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나. 주무부처의 지정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부처를 하나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국가들(북유럽 4개국,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등)은 0-6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정책을 총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하나의 주무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들은 담당하는 부처가 어느 부처인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다.

- 규제, 재정, 교원제도, 교육과정 수립과 평가, 비용과 이용시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능함.
- 영유아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
- 영유아기 경험의 연속성 증대 및 연령 및 시설별 서비스 수준의 연계가 용이해짐.
- 서비스에 대한 공적 관리가 향상되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접근성이 높아짐.

통합된 영유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운영 실재를 통해 역량을 증진시키는 다음의 몇 가지 공통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 영유아 분야에 전문가인 공무원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강화

- 서비스 관리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 대학, 연구소, 협회, 단체의 정책분석, 자료수집, 연구 지원을 통한 영유아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단순히 프로그램과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등 보다 광범위한 발달과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에 초점을 둔다. 또한 자녀의 최초 교육자가 부모라는 사실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계획 및 조직, 현장 규제, 지원, 평가의 권한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 정부에 이양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지방 분권화를 통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포트폴리오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국가의 경우(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영유아 및 그 가족들에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으며, 지역의 욕구에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적절히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 권한 및 책임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은 앞서 제시한 장점과 동시에 지역 간 접근성 및 질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낮은 조세 수입 등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기제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나 운영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강력한 조정기제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해서 합의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목표설정, 규제, 직원 채용, 교육과정 및 품질보장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큰 틀을 제시함으로써, 영유아 서비스가 잘 개념화된 국가정책의 한 영역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개혁을 위한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해 체계적이고 참여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도력 외에도 지방정부, 기업대표, 조직화된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국가 정책의 의제를 공식화하고 실천하는 협력도 이루어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접근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다양한 관점으로 기여할 것이

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서류가 중심이 되는 수직적인 전달체계보다는 상호협력적인 접근으로 국가의 모든 아동과 가정을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의 동등한 접근성과 합의된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 현장, 전문가, 부모의 연계

보다 일관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현장 및 전문가, 그리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 간의 협력(예: 유아학교-학교-방과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삶에 일관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센터나 전문기관 주도의 종사자간의 네트워크는 전문성 향상 뿐 아니라 소속감 등에 기여한다. 다양한 서비스 간의 협력 역시 부모를 안심시키고 영유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화의 장과 사회적 관계를 구축시켜 결국 아동 및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 외국의 유아교육·보육의 협력 및 통합 사례

가. 스웨덴

1) 개요

스웨덴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1944년부터 1996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에 이르러 영유아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교육과학부로 이관하였고 이로써 중앙정책, 목표, 가이드라인, 재정적 기초 등에 관한 책임은 현재 교육과학부에 있다. 1998년 학교법(School Act)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만 1-6세 영유아를 위한 펠르스콜라와 만 6-7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이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통합 및 이관 과정

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보건복지부로의 통합 배경과 과정

19세기부터 시작된 스웨덴의 영유아 대상 서비스는 가난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 개선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복지, 학습, 발달을 통합할 수 있는 공공 유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이루어져 왔다(정선아, 2007). 1904년에 설립된 최초의 공공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모든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료·사회·보육·교육 서비스가 통합된 총체적인 관점(holistic view)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의 목적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계층을 통합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를 통해 정치적 관점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복지사회의 초석으로 여기고 교육·보육·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려는 스웨덴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스웨덴은 “시민을 사회가 돌본다”는 국가이념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아동양육”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이옥, 1996). 이러한 정부의 의지 아래 아동보육, 모성보호, 아동보건과 같은 가족의 관심사들이 중앙집권적 국가 정책으로 통합되었으며 교육이 아닌, 보편적·공적 보육제도로써 사회적 복지 실현의 차원으로 국가의 주요한 관심 영역이 되어 왔다(문무경, 2006).

스웨덴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기존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여성취업의 증가로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이 요구되자, 스웨덴 정부는 1968년 ‘국립보육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교육적, 보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 발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국립보육위원회는 모든 아동에게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단일한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반일제 유아교육기관, 즉 유치원(lekskolan: kindergarten)과 종일제 보육시설(daghem: day-care centres)을 통합한 형태인 피르스콜라(förskola: pre-school)라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도록 하였다. 1973년에는 피르스콜라법(Pre-school Act)을 제정, 피르스콜라를 확충하며 그 목적을 “가정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동의 전인적인 인성발달과 신체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육과 보육이 구별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교육과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특별한 지원과 교육이 요구되는 장애아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나) 교육과학부로의 이관 배경과 과정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는 1944년 통합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에 이르러 ①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초석’에서 ‘지식국가’로 전환하고 ② 보편적 평생학습체제로의 개혁, ③ 취학전 교육을 의무교육체제로 통합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 등의 이유(이옥 외, 2006)로 영유아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과학부로 이관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관 과정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의 교육과학부로의 이관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동한 담당자들과 교육부의 기존담당자들은 함께 통합된 집단을 구성하였고, 이들은 학교교육 담당자들과 0세에서 만 16세까지의 모든 연구 및 논의, 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함께 진행하였다.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of Education)은 교육과학부로의 이관을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이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국가교육청 담당자들이 취학 전 영유아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이옥 외, 2006).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실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립교육원은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스웨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시찰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정치, 행정조직을 통합하지 않았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개혁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문무경, 2006).

한편 스웨덴의 보건복지부는 교육과학부로의 이관에 대해 20세기 전반에 걸쳐 누려왔던 사회정책 분야의 하나로서의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높은 위상이 격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부담 육아비용 상한선 제도 개혁(2002)과 만 4-5세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유아교육(2003) 등이 도입되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교육과학부로의 이관에 대해 보육시설의 침체를 우려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저항이 있었으며 교사 단체들은 교직원의 위상과 전문성을 거론하며 모든 교직원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며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문무경, 2006).

(2)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이관 과정

교육과학부로의 이관은 목표 주도적인 중앙부처의 규제와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해 동시에 진행되었다. 분권화가 강한 29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전환과정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스웨덴의 지자체는 이관에 앞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의 문제와 행정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계획들은 학습과 보육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것으로 여겨져 때때로 재정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이옥 외, 2006).

[스웨덴 중앙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실행사항]

- 1998. 1.
 -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 국가보건복지청(Socialstyrelsen)에서 국가교육청(Skolverket)으로 위임
 - 유아교육과 보육법: 사회법에서 교육법으로 전환
 - 의무교육체제: 학령전 유아학교학급(pre-school class) 설치법 제정, 의무교육 기간을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1998. 8.
 - 새로운 교육법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에게 의무교육체제에서 가르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
 - 정부령(Lpfö98)에 의해 취학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시작(1997/98:94법안)
- 2001. 7.
 - 지자체는 일자리가 없는 부모를 둔 5세 이상의 아동이 최소한 하루 3시간, 취학전 교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 2001. 8.
 - 새로운 교사훈련프로그램 도입: “새로워진 교사교육(A Renewed Teacher Education”(1999/2000:135법안)에 의해 독립적인 교사자격을 제안, 지도 대상아동의 연령에 따라 스스로 계획, 결정한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기간(3.5년에서 5년까지)에 따라 훈련을 실시
- 2002. 1.
 - 부모부담 최대비용 상한선을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 2003. 1.
 - 만4세와 5세 아동에게 보편적인 무상 유아교육을 연간 525시간 제공하는 법률 제정

출처: 이옥 외(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01.

3) 분야별 운영 현황⁵⁾

가) 기관·시설

스웨덴의 의무교육은 만7세에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아동이 만6세부터 초등학교의 취학 및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유아학급을 이용한다. 초등학교나 유아학급에 속해있지 않은 만6세 이하의 아동은 펠르스콜라나 가정보육시설, 또는 개방형 펠르스콜라를 이용하며, 유아학급이나 초등학교 입학 후의 아동은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가활동센터,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한다. 각각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펠르스콜라(förskola)
 - 만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종일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의 근무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개방형 펠르스콜라(öppen förskola)
 - 펠르스콜라의 대안적(alternative) 형태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시설로 시간제 활동을 제공함.
- 가정보육시설(familjedaghem)
 - 만 1-6세 영유아의 전일제 보육서비스 및 9세 이하 아동의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의 스케줄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용이 가능함.
- 유아학급(förskoleklass)
 - 만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로의 취학 및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제공함.
- 여가활동센터(fritidshem)
 - 만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외의 시간에 시간제 활동 제공

스웨덴은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비율에 대한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교사 1

5) 스웨덴의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현황은 국립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로 기술하였음 (<http://www.skolverket.se/sb/d/354/a/944>)

명당 영유아 5-6명으로 구성된다. 여가활동센터의 경우 평균 아동수는 학급당 30명으로 구성(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되며, 퍼르스콜라의 학급당 최대 아동수는 17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OECD, 2006). 2004년 2억 크로나의 예산 증액으로 약 6000명의 교직원이 충원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급 규모가 줄어들고, 성인 대 아동 비율 역시 평균 1:5로 낮아졌다.

나) 교사자격

스웨덴에서 영유아를 가르치고 돌볼 수 있는 교사는 퍼르스콜라 교사(preschool teacher), 레크리에이션 강사(recreational instructor), 보조교사(daycare attendant), 가정보육시설의 보육사(childminder)로 나뉜다. 퍼르스콜라와 여가활동센터 교사는 3년 과정의 대학 학위를 거쳐야 하며, 교수방법, 발달심리, 가족사회학, 창의력 활동 등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보조교사의 경우 고등학교(upper-secondary)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반면, 보육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50-100시간의 훈련을 받으면 된다.

퍼르스콜라 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나머지는 보조교사로 구성된다. 여가활동센터는 종사자의 약 70%가 레크리에이션 혹은 레저활동 교육, 혹은 관련 교사 훈련을 받은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조교사가 함께 아동을 돌본다.

법에서 보장하는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소한의 직무연수 수준이나 연간 연수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퍼르스콜라나 여가활동 강사들에 대한 현직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가정보육시설의 현직 연수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문무경, 2006).

다) 교육·보육과정

교육과학부는 1998년 전국의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Lpfö 98)을 발행하고 유아교육이 평생학습과정의 첫 단계임을 명시하고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교육과정에는 학습(learning)에 발달(development)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적 위상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스웨덴 유아교육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문무경, 2006).

Lpfö 98에는 전반적인 교육목표와 지침만 제시하고 있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달

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사들은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목표 달성과 지침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교육계획을 수립·개발해 나가고 있다.

교육철학에 있어 스웨덴의 교육과정은 아동을 유능한 학습자(competent learner),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active thinker), 복잡한 존재(involved doer)로 보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 지속적인 학습과 발달, 아동의 경험과의 연결, 집단 내에서의 발달, 보육과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 교육과정의 목표와 지침

- 표준과 가치 존중하기
- 발달과 학습 장려하기
- 아동 스스로의 영향력 격려하기
- 영유아교육·보육기관과 가정 간의 협력 확보하기
- 유아학급과 학교교육, 여가활동센터간의 상호작용 촉진하기

출처: Skolverket(2005). *Childcare in Sweden*.

라) 관리·감독체계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교육법(the Education Act)을 따른다. 현행 교육법은 1995년에 개정된 것으로 이 법에서는 관련 서비스의 유형을 정의하고 학급 규모, 교사 훈련 및 자격 등을 비롯한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고 부모의 교육·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부는 국가 정책 결정의 책임이 있으며, 국립교육원(Skolverket;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이 중앙과 지방수준에서 육아지원 서비스에 관한 총괄적인 평가, 데이터 수집,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교육원은 단지 규제만 하기보다는 아동 대 교사의 비율 및 질적 지표에 관한 분석을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발행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스웨덴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규제는 학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문무경, 2006).

마) 예산지원

2004년 육아지원 서비스에 지원되는 예산은 GDP의 약 1.9%에 해당하며 이는 OECD국가들 중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2004년 기준 아동당 USD 12,097가 지원되고 있다(OECD, 2006). 스웨덴의 육아지원 서비스 관련 예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방세 및 부모 부담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총 수입과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부담금을 책정함과 동시에 고용비용체제를 도입하여 부모부담비용을 최대한 자녀 가정 월 USD 135, 두자녀 월 USD 107, 세자녀 이상 월 USD 54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부모의 비용부담률은 약 9%이며 이는 평균소득의 2%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만 4, 5세 아동은 연간 525시간의 무상교육(하루 3시간)을 제공받는다(Skolverket, 2005).

나. 영국⁶⁾

1) 개요

영국은 교육과 사회복지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1997년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로 통합, 교육고용부 산하의 아동국(Minister for Children)이 총괄하였다. 그러나 2007년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사회의 기반인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에서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를 신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다.

2)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통합 및 변화 과정

1997년 이전까지 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교육과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리된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육시설과 가정보육모는 미취학아동을 위한 보육시설로써 보육의 기본정책과 지침은 중앙정부의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6) 영국은 England, Northern Ireland, Scotland, Wales의 4개 연방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별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분산시켜 특성이 다름. 본 보고서에서는 England의 ECEC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Social Security; DHSS)가 마련하고 설치, 운영 및 행정은 지방정부가 담당해 왔다. 반면 유아학교와 유아학급은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에 관한 기본정책은 중앙정부의 교육과학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DES)가, 행정과 운영은 각 지방정부의 교육국이 담당해왔다(임재택, 1990).

1997년에 이르러 영국정부는 이분화 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로 통합, 교육고용부 산하의 아동국(Minister for Children)이 총괄하도록 전환하였다. 이는 노동당의 집권과 동시에 국가의 역할을 노동시장 참여와 개인의 고용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국가로 재정의하면서 이루어졌다(Lister, 2003). 아울러 노동당은 영유아기 서비스 증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사회적 소외집단 및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1998년에는 '보육시설의 당면과제'를 통해 교육과 보육은 분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유아교육계획서를 확장하여 보육요소를 포함하고 3, 4세 무상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김명순, 박은혜, 신동주, 정미라, 1999). 이를 위해 유아기 발전 협력체(Early Years Development Partnerships)⁷⁾를 설치하였으며, 1998년 9월에는 사회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관 등록 업무를 교육고용부 산하의 교육표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으로 이관하여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장학사가 감독하도록 하였다.

한편 영국정부는 1998년 5월, 0-14세까지의 아동과 16세까지의 장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아동보육전략(The National Childcare Strategy Green Paper: Meeting the Childcare Challenge)을 발표하였다. 이 정부계획안에 의하여 1999년 1월에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s)이 아동빈곤을 퇴치하고자 범부처간의 협력을 통하여 60개 극빈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때 정책을 명료히 하고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는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기술부 내에 슈어스타트국(Sure Start Unit)을 신설하여 각종 아동 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슈어스타트국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위임권한을 가지며 교육기술부와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의 책임하에 독립적인 부서로서 기능했다.

7) 유아기 발전 협력체(Early Years Development Partnerships)는 후에 국가수준의 아동보육전략(The National Childcare Strategy Green Paper: Meeting the Childcare Challenge)의 시도와 더불어 유아교육과 보육협력체(Early Years Development and Childcare Partnerships)로 변경되었음.

2003년에는 아동을 위한 통합개혁안인 Every Child Matters(GB. Parliament, 2003)를 발표, 모든 아동이 성취해야 할 학습과 발달의 성과, 즉 공통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을 승인하였고 2006년에 개정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 교육기술부, 노동연금부, 재무부, 통산산업부에 의해 아동보육 10개년 전략(The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을 발표하고 ‘부모를 위한 선택, 아동을 위한 최상의 출발’(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취지 아래 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6년 4월에는 실행계획(Ten Year Childcar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국 전역에 800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조기수월성 센터는 정부의 보다 많은 재정지원과 더불어 2006년에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 2007년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사회의 기반인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에서 취학전 영유아 관련 업무는 교육기술부의 개편과 함께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아동학교가족부는 과거의 교육기술부의 기능의 대부분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19세까지의 영유아 및 청소년의 유·초·중등 교육 전반, 가족 문제 전반을 담당하고 타 부처와 연계하여 청소년 범죄, 빈곤 등의 청소년 정책의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지성애, 백선희, 채영란, 2007). 슈어스타트국은 그 대로 새로운 아동학교가족부에 남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분야별 운영 현황

가) 기관·시설⁸⁾

영국에서는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며,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학교를 다니게 된다(문무경, 2007). 영국에서 0-4세 영유아에게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8) http://www.direct.gov.uk/en/Parents/Preschooldevelopmentandlearning/NurseriesPlaygroups/ReceptionClasses/DG_10013534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 유아학급(nursery class)
 - 만 2.5-5세 영유아를 위한 학급으로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음.
- 유아학교(nursery school)
 -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기 중에 주당 12.5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반일제 혹은 종일제로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
- 놀이그룹(preschool playgroups)
 - 3-5세 아동을 대상(2세도 가능)으로 일주일에 일정 시간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임으로 부모 혹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음.
- 예비학급(reception class)
 -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내에서 학기동안 운영되며 반일제 혹은 종일제로 운영됨.
- 보육시설(day nursery)
 - 대부분 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와 상관없이 종일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음.
- 보육사(childminder; 가정보육)
 - 0-5세 혹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사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형태로 이용시간에 있어 보다 탄력적임. Ofsted에서 등록되어 있고, 지역 네트워크에 의해 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 3, 4세 아동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무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s)
 -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종일보육 외에도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함.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 주 5일, 연간 48주에 걸쳐 운영됨.

이 외에도 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crèches와 각 지역에서 비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걸음마기 그룹(toddler groups)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가정보육의 경우, 최대 집단 크기는 6명이며(보조교사 포함시 12명), 이 때 6명 중

5세 이하의 아동이 3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관 중심의 공인된 놀이집단에서는 최대 26명까지 돌볼 수 있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1:3, 2세의 경우 1:4, 3-7세의 경우는 1:8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아학교나 초등예비학급의 경우, 담임교사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교수활동을 겸한다면 1:10, 학급 담임교사가 교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1:13의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나) 교사자격

영국의 육아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은 자격과 교육과정 관리국(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에 의해 인정되는 등급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된다. 초급에 해당하는 1급, 중급에 해당하는 2급, 고급에 해당하는 3-8급이 있다.

8세 미만의 아동 보육에 관한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 for Under Eights Day Care and Childminding: Full Day Care)에 의하면, 종일제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책임 관리자 및 관리자급 종사자는 최소한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자격기준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한 실행계획서를 교육표준청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육사 자격은 지방정부가 승인한 양성훈련기관에서 6개월 과정을 마치면 취득할 수 있다.

교사의 법적 근무시간, 교사의 최소 수준, 연간 현직교육에 대한 규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보고사항이 아니며,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아동학교가족부는 육아지원인력을 위한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서비스를 위한 임금 및 노동력 전략에서 이를 언급하며, 임금, 성과급 등을 통한 임금의 상대적 격차 등을 검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문무경, 2007).

다) 교육·보육과정⁹⁾

영국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2007년 지역 기초단계 전문가(Foundation Stage Advisor)와 협력하여 영유아기 기초단계 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를 개발하였다.

9)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http://www.standards.dcsf.gov.uk/eyfs/resources/downloads/statutory-framework-update.pdf>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영유아기 기초단계 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

- 목적: 모든 아동이 Every Child Matters(HM Government, 2003)에서 설정한 안전, 건강, 즐거움과 성취, 긍정적인 기여, 경제적인 안정의 다섯 가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
- 구성요소: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에 근거하여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학년 말에 습득해야 하는 지식, 기술, 이해를 담고 있는 학습목표, 아동이 배워야 하는 내용, 기술, 과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아동의 특정한 성취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에 대한 평가계획의 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구성영역: EYFS는 6개의 학습과 발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의사소통, 언어와 문해; 문제해결, 추론과 수;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신체적 발달; 창의적 발달)
- 아동평가: 기초단계동안 이루어지는 ‘형성평가’와 만 5세가 되는 기초단계말의 ‘총괄평가’로 구분된다.

EYFS는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관보육 및 가정보육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Under 8s daycare and Childminding), 0-3세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Birth to Three Matters), 그리고 3-5세 아동을 위한 기초단계(Foundations Stage) 교육과정을 대체한다. EYFS는 이 세 교육·보육과정의 원리, 철학, 접근법상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모든 만 5세 이하 아동이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과 교육과정 관리국(QCA)에 의해 개발되었다. EYFS는 1년 동안 현장에서 시험적으로 시행·검토된 후, 2008년 9월부터 교육표준청(Ofsted)에 등록된 모든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라) 관리·감독체계

영국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조정과 평가는 교육표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표준청은 1992년 학교평가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1년 지방정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하던 기존의 평가기준을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국가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면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조정과 평가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에 모든 관련 기관은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성과에 대한 서비스의 기여, 서비스의 질, 개별적 영유아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의 부응정도에 대해서 교육표준청

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두 가지 평가과정을 통해 관리된다. 첫째는 각 지방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연간수행평가(Annual Performance Assessment: APA)이며, 둘째는 지역협력평가(Joint Area Review: JAR)이다. 지역협력평가는 연간수행평가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며 서비스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 두 가지 평가 모두 아동 서비스의 평가체제(Framework for Inspection of Children's Services)에 따라 실시되며 육아지원서비스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한다(문무경, 2007).

마) 예산지원

영국의 취학 전 기관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GDP의 0.47%이며, 이 중 약 95.8%는 공적재원으로부터, 나머지 4.2%는 사립재원으로 충당된다. 전체 교육기관에 투자되는 총 비용의 8.0%가 취학 전 기관에 제공되는 반면, 7%의 아동이 취학 전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3-6세 아동을 위한 ECEC 서비스에 드는 아동 1인당 비용은 USD 8,45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OECD, 2005).

영국의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적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서비스 공급자는 초기 시작비용을 지원받고, 이용자 중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은 아동보육 근로세 감면법(Working Tax Credit Childcare Element, 이전의 아동보육 조세 감면법, Childcare Tax Credit)¹⁰⁾에 따라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교육표준청에 등록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규정한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육료는 대체로 시장경제에 의해 결정되나, 보조금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는 보육료 상한액을 적용하는 정책이 제안되었다. 영국에서 5세 아동을 위한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나, 3-4세 아동은 연간 38주, 주당 12.5시간씩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2010년까지 주당 15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임).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유형, 소득에 따라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전체 보육료의 45% 정도로 추정되며, 저소득 혹은 중산층의 부모들은 약

10) 아동보육 근로세 감면법에 의해 아동 보육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명의 아동이 주당 175파운드, 2명 이상의 아동이 주당 300파운드까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음. 한부모를 포함하여 최소한 주당 16시간 일하는 부모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짐.

80% 정도를 지원받는다. 사립보육시설 혹은 사립유아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는 부모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다. 일본

1) 개요

일본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소가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학교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며 유치원은 학교교육기관으로서 문부과학성이, 보육소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등 이원화된 행정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목적도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에 의해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조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비해, 보육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부모가 근로,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양육하기 불가능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운영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유치원의 원아수 감소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보육소 입소 희망 아동의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시설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종합시설이 제안되고,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06년 취학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보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인정어린이원이 운영되게 되었다(유희정, 2006).

2)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협력 과정

일본의 유치원과 보육소는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갖고 각기 다른 부처 아래 운영되고 있으나, 1990년대 이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유치원의 원아수 감소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보육소 입소 희망 아동이 증가하며 유치원의 보육소화 및 보육소의 유치원화가 진행되었다. 1997년에는 교육부(당시 문부성)에서 보호자의 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할 필요에 의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보조 사업으로 발족시켰고 1998년에 이르러서는 정부가 ‘유치원과 보육소의 시설 공용화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공동 통지인 본 지침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보육소의 설비, 운영의 공유, 직원의 겸직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보육소 영유아가

각각 소수인 경우 구조개혁 특구를 신청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생과 보육소 영유아를 동일한 교사에 의해 합동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0-2세는 보육소로, 만 3-5세는 유치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조개혁특구 평가위원회는 2005년 2월에 '특구특례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2005년 4월에는 36개 시설을 종합시설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6년 6월 '취학전의 아동에게 교육,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시설인 '인정어린이원(認定 こども園)'이 설립·운영되었다. 인정어린이원은 유보제휴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인정어린이원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협의해 정하는 「국가의 지침」을 참조하고, 각 시도부현이 조례로 정하여,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은, 시도부현 지사로부터 인정어린이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분야별 운영 현황¹¹⁾

가) 기관·시설

인정어린이원의 0-2세아 교실, 건물 및 실외놀이터의 면적은 보육소와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3-5세아는 유치원이나 보육소 기준 양쪽 모두에 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에서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특례가 있다. 실외놀이터의 경우는 동일 택지 내 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고, 이용시간을 일상적으로 확보가능한 경우, 교육·보육에 적절한 장소일 것, 면적에 관한 기준(2세아 이상 1인당 3.3㎡와 3-5세아 2학급 이하 1인당 330+30×(학급수-1)㎡, 3학급 이상 400+80×(학급수-3)㎡ 중 보다 넓은 기준에 맞춤)을 충족하는 경우 근접한 곳으로 대체 가능하다(이기숙 외, 2007).

11) 인정어린이원의 인정기준에 관한 내용은 <http://www.youho.org/gaiyo.html>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표 IV-2-1〉 일본의 유치원과 보육소 통합 추진 경과

연도	유치원	보육소
1947년	학교교육법 공포	아동복지법 공포
1956년	유치원 교육요령작성	
1963년 10월	문부성, 후생성 공동성명(「유치원과 보육소의 관계에 대하여」)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능의 차이를 인정한 후, 보육소의 보육내용은 유치원 교육 내용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함	
1965년		보육소 보육지침 작성 (유치원 교육내용에 기초)
1987년	임시교육심의회 최종답신: 유치원의 시간연장, 보육소는 사적계약아동의 입소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	
1998년 3월	문부성, 후생성 공동통지 「유치원과 보육소 시설의 공용화에 관한 지침」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보육소의 설비, 운영의 공유, 직원의 겸직 등을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을 명기	
1998년	유치원 교육 요령 개정(연장보육, 자녀양육지원사업의 추진 명기)	
2001년 7월	후생노동성이 유치원 교원 면허와 보육사 자격 동시 취득을 지원할 것을 표명	
2002년 10월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유치원과 보육소 일원화 검토 제기	
2002년 12월	「종합규제개혁회의 제 2차 답신」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체적 운영의 추진 제기	
2003년 6월	「경제제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3」 취학전 아동에게 보육, 교육을 일체로 제공하는 종합시설에 대해서 제기	
2004년 12월	중앙교육심의회, 사회보장심의회 공동검토회의 「취학전 아동에게 보육, 교육을 일체로 제공하는 종합시설」에 대한 최종심의서 발표	
2005년 4월	종합시설 시범사업 실시(36개 시설)	
2006년 1월	종합시설로 검토해온 사업을 인정어린이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과 도도부현이 시설인정 업무를 맡을 것을 결정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을 결정	
2006년 3월	인정어린이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취학 전의 아동에게 교육,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안」을 각의 결정하여 국회 상정	
2006년 6월	「취학 전의 아동에게 교육,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안」 가결	
2006년 10월	인정어린이원 본격적 실시	
2008년 6월	전국 229개 인정어린이원 운영 중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출처: 유희정(2006). 일본 보육정책 동향.

교사 배치에 있어 인정어린이원은 0-2세아에 대해서는 보육소와 같은 체제로 0세아 3:1, 1, 2세아는 6:1로 정하고, 3-5세아에 대해서는 학급 담임을 배치해 장시간 이용아에게는 개별 대응이 가능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일제 유아와 종일제 유아가 함께 활동하는 합동 보육시간에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35:1이며 그 이후의 시간에는 3세아의 경우 교사 1인이 20인 이하의 유아를, 4-5세아의 경우 30인의 유아를 담당한다(이기숙, 강민정, 2007).

나) 교사자격

교사 자격의 경우, 0-2세아 교사는 보육사 자격 보유자이어야 하고, 3-5세아 교사는, 유치원 교사 면허와 보육사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급 담임에게는 유치원 교사 면허 보유자를 원칙으로 하되, 장시간 이용아 담임교사에게는 보육사 자격 보유자를 원칙으로 하여 어느 한쪽의 자격만 가진 교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 교육·보육과정

인정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은 유치원교육과정과 보육소 보육지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육·보육을 제공하고, 시설의 이용 시작 연령의 차이나, 이용 시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개별 영유아의 사정에 맞추어 세심하게 배려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인정 어린이원으로서의 일체적 운용의 관점으로부터, 교육·보육의 전체적인 계획을 편성하며, 초등학교 교육과의 원활한 연계를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라) 관리·감독체계

일본정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인정어린이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하에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공동으로 [인정어린이원에 관한 정부의 지침]을 확정하여 2006년 8월 4일 발표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침에 기초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마) 예산지원

일본의 경우 유치원은 사학조성, 유치원 취원장려비가 국고로 보조지급 되었으며, 보육소는 운영비가 지급되어 왔으며, 인정어린이원은 재정우선처치가 예정되어 있

다. 한편 유치원 및 보육소의 운영비 및 시설 정비비의 조성에 있어 지금까지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학교 법인에, 보육소의 시설 정비비의 조성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법인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유보제휴형의 인정 어린이원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학교 법인, 사회 복지 법인 모두에게 운영비 및 시설 정비비의 조성이 가능한 재정상의 특례가 있다.

〈표 IV-2-2〉 유보제휴형의 재정상의 특례(사립시설)

		종전	개정
유치원	시설정비비 (사립유치원 시설 정비비 보조금)	학교법인만 조성 가능	사회복지법인도 조성 가능
	운영비 (사학조성)	학교법인만 조성 가능	사회복지법인도 조성 가능
보육소	시설정비비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사회복지법인, 일본 적십자사 등에 조성 가능	학교법인도 조성 가능
	운영비 (보육소 운영비 부담금)	설치 주체에 관계없이 조성	조성 대상 확대

〈표 IV-2-3〉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제도의 비교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소관 부처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공동소관
근거 법령	학교교육법	아동복지법	취학 전 유아교육·보육 통합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
대상	만 3세부터 취학전의 유아	0세부터 취학 전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0세부터 취학 전의 영유아
입소 및 입원 방식	보호자가 유치원 설치자와 계약함으로써 입원 결정	보호자는 시정촌에 입소신청을 함	보호자와 어린이원의 설치자와 직접계약하는 방식을 취함.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판정은 시정촌이 하지만 전형은 설치자가 결정함
이용 시간	4시간으로 표준으로, 각 원에서 정함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보육소장이 결정	0-2세: 8시간 3-5세: 4시간, 8시간 병행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국고 보조	사학조성,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	운영비 지급	유보연계시설에 재정우선처치 예정
보육 및 교육료	설치자가 결정	시정촌에서 결정	설치자가 결정
급식	임의	급식 실시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외부위탁이 가능한 경우 예외가 인정됨
아동 비율	1학급 35인 이하	- 0세아 3:1 - 1,2세아 6:1 - 3세아 20:1 - 4,5세아 30:1	- 0세아 3:1 - 1,2세아 6:1 - 3세아 20:1(8시간아)/ 35:1(4시간아) - 4,5세아 30:1(8시간아)/35:1(4시간아)
자격	유치원교사	보육사	- 0-2세아: 보육사 - 3-5세아: 유치원 교사면허와 보육 사 모두 가진 사람을 권장

출처: 이기숙·강민정(2007). 일본의 유보일원화와 「인정어린이원」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유아
교육연구, 27(5), 63-85.

라. 싱가포르

1) 개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만 3-6세 유아를 교육하고 있으며, 하루 3-4시간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된다. 보육시설은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 Sports) 소관으로 생후 2개월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MCDS 소관 아래 3-6세 유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Choo, 2004).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싱가포르 교육부와 지역개발·체육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통합위원회인 SCPE(Steering Committee on Preschool Education)를 조직하였으며 SCPE는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훈련된 교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과 자격제도를 통합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의 통합된 교사 양성 제도의 통합과정을 정리하고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사양성제도 통합 과정

싱가포르 정부는 2001년 영유아 교사의 질을 높이고자 유치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을 통합하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영유아교사자격인증위원회(Preschool Qualification Accreditation Committee; PQAC)를 새로이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PQAC는 양 부처 장관과 관료급 인사들, 유아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영유아교사양성기관의 교육기준을 관리·감독하며,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와 인증을 부여하는 일을 담당한다(MOE-MCYS Pre-School Qualification Accreditation Committee, 2004).¹²⁾ 또한 PQAC는 인증기준에 맞춰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정부시책, 자격기준, 각 과정에서의 예외사항, 교육비용, 교육 스케줄, 영역별 소요시간, 교사교육 담당자의 이름과 경력, 다른 행정적 요구사항, 입학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MCYS, 2003). PQAC 설립 이후, 정식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력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진입이 모두 가능한 상호고용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 정부의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 기준의 통합으로 인해 양 부처가 교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생산하는 과정에서 교사양성 계획 및 조정, 교원의 수급조절에 관한 행정적 효율성이 증대되었다(Choo, 2004). 이에 따라 영유아교사에 대한 양성 및 자격부여가 명확해졌으며,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교사의 질 관리와 급여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교사양성과정의 통합의 효과는 교사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관련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통합적인 협력을 향상시켰다(이옥 외, 2006).

취학전교사 양성기관들의 질 관리를 위해 6가지 인증기준 (Accreditation Standards)

- | | |
|----------------|---------------|
| - 입학요건 및 선발 기준 | - 평가 및 실습 방식 |
| - 교과 운영 | - 교수진의 질 |
| - 교과 내용 | - 교육환경 및 기타자원 |

12) MOE-MCYS Pre-School Qualification Accreditation Committee(2004). *Accreditation Standards for Pre-School Teacher Training Courses*. MOE-MCYS Pre-School Qualification Accreditation Committee.

3) 교사 자격

싱가포르에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가 되기 위한 교사 훈련과정 입문 자격기준은 대학에서 아동 관련학을 전공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어/모국어 GCE 'O' level로 모두 같고, 교사 과정에 등록된 후 과정에 따라 훈련을 받으며 해당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각 훈련과정은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일주일에 3번, 오후나 저녁시간에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교사자격은 Certificate in Preschool Teaching, Diploma in Preschool Education-Teaching, Diploma in Preschool Education-Leadership, Diploma in Early Childhood Education-Teaching & Leadership의 4가지가 대표적이며 자격요건 및 훈련 내용은 다음의 <표 IV-2-4>와 같다. 각각의 과정을 얻은 후에는 교사, 주임교사 혹은 시설장으로 일할 수 있다.

2001년 위와 같이 통합된 교사자격 및 훈련과정을 제시한 싱가포르에서는 영유아 교육의 높은 질을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는 시설장과 교사가 다음의 자격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 2006년 1월까지 모든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기관의 시설장은 Diploma in Pre-school Education-Teaching(DPE-T), Diploma in Pre-school Education - Leadership(DPE-L) 자격을 취득하고 최소 유아교육 분야의 관련경험이 2년 이상 있어야 하며. 2) 2008년 1월까지 모든 유아교사는 Certificate in Pre-school Teaching(CPT)레벨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교사 4명 중 한명은 Diploma in Pre-school Education-Teaching(DPE-T) 레벨을 훈련받아야 한다.

한편 싱가포르는 2009년 1월부터는 새로운 교사 자격을 도입된다. 변경된 제도에 의하면 우선 학력에 있어 5개 과목 이상에서 GCE 'O' level를 받아야 하며, 영어 혹은 모국어에서 최소 B4 이상의 'O' level (B4 이하의 점수를 얻은 자에게는 교사 등록은 가능하나 2년의 기간 내에 해당 수준을 획득해야 함)을 획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K1, K2 학년의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2013년까지 영유아 교육 분야 Diploma level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위에서 제시한 언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표 IV-2-5, 표 IV-2-6, 그림 IV-2-3 참조).

〈표 IV-2-4〉 싱가포르 교사 훈련의 자격 및 내용¹³⁾

자격	자격요건	이수과목	보직
Certificate in Preschool Teaching	- 3 GCE 'o' level인 자 또는 Early Childhood Bridging을 가진 자로서 40세 이상인 자 또는 ELI 또는 MTL에서 'O' level 수준이거나 또는 IELTS에서 5.5 이상이며 preschool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고용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유아교육 1, 2에 대한 원리와 실제 - 아동발달과 학습 - 커리큘럼 구성 및 교수법 - 인간발달 및 전문가적 발달 - 안전, 건강, 영양 - 전문가로서의 실제적 교수	교사
Diploma in Preschool Education (Teaching)	- 3 GCE 'o' level인 자 또는 Certificate in Preschool Teaching 자격이 있는 자 또는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intermediate course를 수료한 자	- Pre-school Education 1&2에 대한 실제 - 아동발달과 학습 1&2 - 커리큘럼 구성과 교수법 - 인간발달과 전문가 발달 1&2 - 안전, 건강, 영양 - 전문가로서의 실제적 교수	주임교사
Diploma in Preschool Education (Leadership)	- Diploma in Preschool Education-Teaching의 소유자로 경력 2년 이상인 자	- 유아교육에서 현 이슈와 연구 - 유아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 실제 연구의 대상으로서 보육시설 (pre-school) - pre-school(보육시설)의 운영 및 행정	원장 및 시설장 ¹⁾
Diploma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ing & Leadership)	- 5 GCE 'O'level인 자 또는 Preschool Education(Teaching) 자격이 있는 자또는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intermediate course를 수료한 자	- Pre-school Education 1&2에 대한 이론과 실제 - 아동발달과 학습 1&2 - 커리큘럼 구성과 교수법 - 인간발달과 전문가 발달 1&2 - 안전, 건강, 영양 - 전문가로서의 실제적 교수 - 유아교육에서의 현 이슈와 연구 - 유아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 실제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보육 시설(pre-school) - pre-school(보육시설)의 운영 및 행정 - 전문가로서의 리더십의 실제	원장 및 시설장

주: 1) 학위 소지자 혹은 3년제 전문대 출신은 Specialist Diploma in Early Childhood(Teaching & Leadership)을 통해 원장 자격을 가질 수 있음.
출처: 이미화 외(2008). 육아지원인력의 재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13) 이 밖에도 Early Childhood Education Course (English/Chinese), Bachelor or Art in Children & Family Education, Graduate Diploma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등의 자격이 있음.

〈표 IV-2-5〉 싱가포르 교사자격 변경

현재 자격	신규교사 ¹⁾ (2009년부터 적용 Pre-Nursery/Nursery and K1/K2)	기존교사 ²⁾ (2013년부터 적용)	
		K1/K2	Pre-Nursery /Nursery
최소 3개 이상 과목 (영어 포함)에서 'O' level	최소 5개 과목 이상(영어 포함)의 'O' level (영어과목에서 C5 혹은 C6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B4 혹은 IELTS에서 6.5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최소 3개 과목 이상(영어 포함)의 'O' level	최소 3개 과목 이상(영어 포함)에서 'O' level
Certificate in Pre-School Teaching	Diploma in Pre-school Teaching (4년 내에 획득하여야 함)	Diploma in Pre-School Teaching	Certificate in Pre-School Teaching

주: 1) 신규교사: 2009년 1월 1일 이후 등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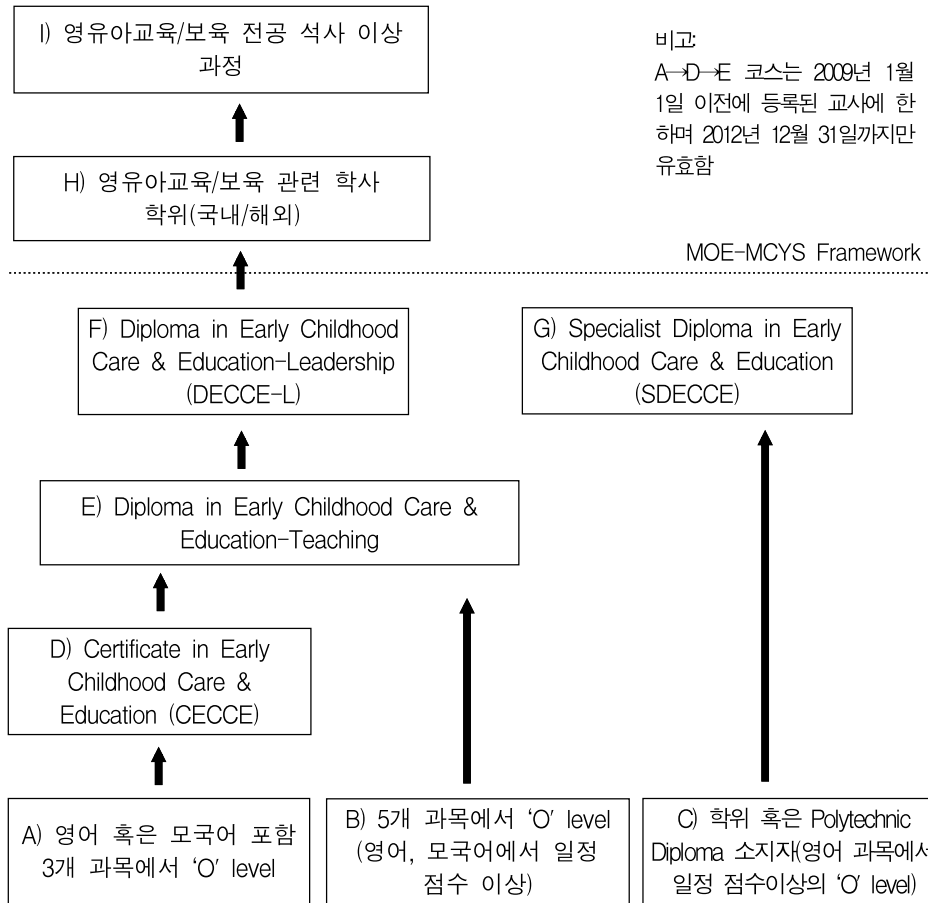
2) 200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출처: MOE·MCYS(2008). Improving the Quality of Pre-school Education.

〈표 IV-2-6〉 싱가포르 교사자격 훈련시간 비교

현재	변경 후
Certificate in Pre-School Teaching (CPT) ·총 교육시간: 470시간(3-4시간/1주일) - 수업: 320시간 - 실습: 150시간 ·소요기간: 9개월	Certificate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CECCE) ·총 교육시간 800시간 - 수업: 560시간 - 실습: 240시간 · 소요기간: part time 24개월/ full time 12개월
Diploma in Pre-School Teaching (DPE-T) ·총 교육시간: 700시간(3시간/1주일) - 수업: 500시간 - 실습: 200시간 ·소요기간: 2년	Diploma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DECCE-T) ·총 교육시간 1,200시간 - 수업: 900시간 - 실습: 300시간 · 소요기간: part time 30개월/ full time 18개월
Diploma in Pre-School Teaching-Leadership (DPE-L) ·총 교육시간: 500시간(3시간/1주일) - 수업: 380시간 - 실습: 120시간 ·소요기간: 1.5년	Diploma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Leadership (DECCE-L) ·총 교육시간 850시간 - 수업: 650시간 - 실습: 200시간 · 소요기간: part time 24개월/ full time 12개월
Specialist Diploma in Pre-School Education (SDPE) ·총 교육시간: 1170시간(3시간/1주일) - 수업: 850시간 - 실습: 320시간	Specialist Diploma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DECCE) ·총 교육시간 1,600시간 - 수업: 1,100시간 - 실습: 500시간 · 소요기간: part time 36개월/ full time 24개월

출처: 이미화 외(2008). 육아지원인력의 재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자료: MOE-MCYS Pre-school Qualification Accreditation Committee(2008). Accreditation Standards for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Courses.

[그림 IV-2-1] 교사훈련 과정

V.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본 장에서는 현재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만족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1. 조사 목적

자녀가 실제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부모들은 유아교육이나 보육 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는지 혹은 둘 간 선택에서 고민스러워 한 적은 없는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어떻게 구분 짓고 있는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을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정책의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일원화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의견조사는 대부분 전문가 및 학자 집단, 현장의 원장이나 교사 집단, 관련 공무원 집단 등(이 옥 외, 2006; 김은설 외, 2006)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어 보고되어 왔으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모 대상 조사는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에 관한 연구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

2. 조사 방법 및 대상

가. 조사 방법

본 조사는 대도시(653명, 43.5%), 중소도시(712명, 47.5%), 읍면 지역(135, 9.0%) 등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총 1,500명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2008년 11월 10일부

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중 한 곳을 다니는 영유아부모로 제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자녀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다니는 학부모를 무선으로 찾기가 힘들어 소수는 지역별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해당 가구를 찾아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는 방법도 보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조사 대상

의견조사에 참여한 영유아부모의 특성을 보면, 만3세 미만의 영아 부 또는 모가 69명(4.6%), 만3세 이상 유아 부 또는 모가 1,431명(95.4%)으로 유아의 부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자녀는 50.1%정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나머지 49.9%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었다. 참여 부모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이용기간은 1년 미만이 50.1%, 1-2년 미만이 26.6%, 2-3년 미만이 34.0%, 3년 이상이 23.5%였다. 한편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5.0%, 30대가 83.4%, 40대가 9.8%, 50대 이상이 1.8%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39.1%였으며 대학교 재학 및 대졸 이상은 60.9%였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10.9%, 200-299만원 미만이 27.8%, 300-399만원 미만이 35.6%, 400만원 이상이 25.7%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도시가 43.5%, 중소도시가 47.5%, 읍면이 9.0%였다.

3. 조사 내용 및 결과

가. 기관·시설의 일원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1)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선택의 고민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지 보육시설에 보낼지 두 기관(시설) 사이에서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1>과 같다. 전체적으로 고민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5.7%로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 44.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연령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 3세 이상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보낼지 보육시설에 보낼지 두 시설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6.5%로 만 3세 미만의 학부모의 응답 39.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2-1〉 응답자 특성

	배경변인	사례수	%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69	4.6
	만 3세 이상	1431	95.4
	계	1500	100.0
이용 기관유형	유치원	750	50.1
	보육시설	746	49.9
	계	1496	100.0
기관 이용기간	1년 미만	248	16.5
	1-2년 미만	390	26.0
	2-3년 미만	510	34.0
	3년 이상	352	23.5
	계	1500	100.0
부모연령	20대	75	5.0
	30대	1251	83.4
	40대	147	9.8
	50대 이상	27	1.8
	계	1500	100.0
부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583	39.1
	대재/대졸이상	909	60.9
	계	1492	100.0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7	10.9
	200-299만원	400	27.8
	300-399만원	513	35.6
	400만원 이상	369	25.7
	계	1439	100.0
지역	대도시	653	43.5
	중소도시	712	47.5
	읍면	135	9.0
	계	1500	100.0

〈표 V-3-1〉 유치원/보육시설 선택 고민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55.7	44.3	100.0(1,50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39.1	60.9	100.0(69)
	만 3세 이상	56.5	43.5	100.0(1,431)
$\chi^2(df = 8.0(1)**$				
이용	유치원	55.5	44.5	100.0(750)
기관유형	보육시설	55.9	44.1	100.0(750)
$\chi^2(df = 0.2(1)$				
기관 이용기간	1년 미만	52.8	47.2	100.0(248)
	1-2년 미만	55.6	44.4	100.0(390)
	2-3년 미만	56.5	43.5	100.0(510)
	3년 이상	56.5	43.5	100.0(352)
$\chi^2(df = 1.1(3)$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2.9	47.1	100.0(157)
	200-299만원	56.0	44.0	100.0(400)
	300-399만원	58.3	41.7	100.0(513)
	400만원 이상	55.6	44.4	100.0(369)
$\chi^2(df = 1.7(3)$				
지역	대도시	55.6	44.4	100.0(653)
	중소도시	56.7	43.3	100.0(712)
	읍면	50.4	49.6	100.0(135)
$\chi^2(df = 1.9(2)$				

주: ** p < .01

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2>와 같다.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78%여서 차이가 없다는 응답 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조금 있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차이가 많다는 응답 24.9%,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응답 19.7%, 차이가 전혀 없다는 응답 2.3%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 부모교육수준,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두 기관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이용기간에 따라서는 기간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기관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재/대졸 이상의 학부모가 두 기관 사이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에 사는 학부모가 두 기관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V-3-2〉 유치원/보육시설 차이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차이가 많이 있음	차이가 조금 있음	차이가 거의 없음	차이가 전혀 없음	계
전체		24.9	53.1	19.7	2.3	100.0(1,50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15.9	63.8	17.4	2.9	100.0(69)
	만 3세 이상	25.3	52.6	19.8	2.2	100.0(1,431)
$\chi^2(df = 4.2(3))$						
이용 기관유형	유치원	28.4	54.1	15.6	1.9	100.0(750)
	보육시설	21.3	52.1	23.9	2.7	100.0(750)
$\chi^2(df = 21.9(3))^{***}$						
이용기간	1년 미만	21.8	61.7	15.7	0.8	100.0(248)
	1-2년 미만	28.2	50.0	20.0	1.8	100.0(390)
	2-3년 미만	21.0	55.7	21.0	2.4	100.0(510)
	3년 이상	29.0	46.9	20.5	3.7	100.0(352)
$\chi^2(df = 24.0(9))^{**}$						
부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19.9	55.1	22.3	2.7	100.0(583)
	대재/대졸이상	28.1	51.7	18.3	2.0	100.0(909)
$\chi^2(df = 14.1(3))^{**}$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6.8	51.0	19.7	2.5	100.0(157)
	200-299만원	19.0	57.8	21.5	1.8	100.0(400)
	300-399만원	25.9	52.2	18.9	2.9	100.0(513)
	400만원 이상	29.0	49.9	19.5	1.6	100.0(362)
$\chi^2(df = 14.1(9))$						
지역	대도시	27.4	52.2	18.4	2.0	100.0(653)
	중소도시	23.3	54.9	19.8	2.0	100.0(712)
	읍면	20.7	48.1	25.9	5.2	100.0(135)
$\chi^2(df = 13.3(6))^{*}$						

주: *p < .05, **p < .01, ***p < .001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3>과 같다. 전체적으로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용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 53.9%, 시설 및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 46.2%, 교사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 44.1%, 보낼 수 있는 연령이라는 응답이 38.5%, 마치는 시간이라는 응답이 25.4%,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응답이 14.4%, 방학이라는 응답이 0.1%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응답자 특성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단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에 이어 보낼 수 있는 연령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3〉 유치원/보육시설 차이에 대한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간	마치는 시간	교사 특성	교육 프로그램	이용 비용	시설/환경	이용 연령	방학 기간	계	
전체	14.4	25.4	44.1	80.2	53.9	46.2	38.5	0.1	100.0(1,17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9.1	23.6	32.7	65.5	36.4	34.5	63.6	0.0	100.0(55)
	만 3세 이상	14.7	25.5	44.7	80.9	54.8	46.7	37.2	0.1	100.0(1,115)
이용 기관유형	유치원	18.2	32.2	56.6	75.5	55.2	46.9	32.9	0.0	100.0(143)
	보육시설	12.0	19.7	49.6	82.8	51.5	51.5	35.5	0.0	100.0(476)
이용기간	1년 미만	13.5	25.1	38.2	80.2	54.1	45.4	47.8	0.5	100.0(207)
	1-2년 미만	12.8	23.3	46.2	81.6	54.1	45.2	36.1	0.0	100.0(305)
	2-3년 미만	14.8	25.1	43.2	78.3	55.5	47.8	37.1	0.0	100.0(391)
	3년 이상	16.5	28.5	47.6	81.3	51.3	45.3	36.0	0.0	100.0(267)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2.3	15.6	41.0	78.7	55.7	38.5	36.1	0.0	100.0(122)
	200-299만원	11.7	24.8	42.3	79.8	53.7	44.6	35.2	0.0	100.0(307)
	300-399만원	12.5	23.2	44.1	78.8	54.4	44.9	35.2	0.2	100.0(401)
	400만원 이상	19.6	33.3	47.4	82.1	53.3	51.5	44.7	0.0	100.0(291)
지역	대도시	16.7	28.1	43.7	84.8	50.4	44.6	39.4	0.2	100.0(520)
	중소도시	12.4	23.5	46.5	77.2	54.4	48.1	37.3	0.0	100.0(557)
	읍면	14.0	21.5	32.3	72.0	71.0	43.0	39.8	0.0	100.0(93)

3)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는 <표 V-3-4>와 같다. 교사의 성품 및 자질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급·간식, 운영 시간 순이었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운영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주변 환경, 교사의 성품 및 자질 순이었다.

〈표 V-3-4〉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계
운영시간	16.8	58.1	19.3	5.1	0.7	-	100.0(1,500)
실내환경	16.4	54.1	23.7	5.3	0.3	-	100.0(1,498)
실외 놀이공간	12.4	43.4	28.3	13.6	1.7	-	100.0(1,491)
놀잇감, 교재·교구	14.5	49.1	28.7	6.6	0.6	-	100.0(1,492)
교육/보육 내용 및 프로그램	14.4	57.1	22.5	5.2	0.1	-	100.0(1,491)
교사의 성품 및 자질	19.7	55.8	21.0	2.9	0.4	-	100.0(1,497)
건강, 위생 및 안전관리	15.9	54.3	25.3	3.9	0.3	-	100.0(1,496)
급·간식	16.9	51.7	25.1	5.5	0.3	-	100.0(1,493)
등·하원 버스 이용	12.7	48.3	15.9	3.6	0.5	19.0	100.0(1,499)
주변 환경	10.9	56.1	26.4	5.8	0.6	-	100.0(1,498)
부모교육 및 가정과의 교류	13.4	55.3	25.9	4.7	0.5	-	100.0(1,498)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5>와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4.9%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5.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19.3%,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6.8%,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5.1%,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0.7%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 부모소득수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불만족하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표 V-3-5〉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운영시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16.8	58.1	19.3	5.1	0.7	100.0(1,50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29.0	44.9	21.7	4.3	0.0	100.0(69)
	만 3세 이상	16.2	58.7	19.2	5.2	0.7	100.0(1,431)
$\chi^2(df = 9.3(4))$							
기관유형	유치원	12.5	58.9	22.8	5.2	0.5	100.0(750)
	보육시설	21.1	57.2	15.9	5.1	0.8	100.0(750)
$\chi^2(df = 26.2(4))^{***}$							
이용기간	1년 미만	21.0	54.8	19.4	4.8	0.0	100.0(248)
	1-2년 미만	14.1	59.7	20.8	4.4	1.0	100.0(390)
	2-3년 미만	14.7	61.2	19.0	4.3	0.8	100.0(510)
	3년 이상	19.9	54.0	18.2	7.4	0.6	100.0(352)
$\chi^2(df = 18.0(12))$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6.6	57.3	21.0	5.1	0.0	100.0(157)
	200-299만원	15.5	58.8	21.0	4.3	0.5	100.0(400)
	300-399만원	11.7	65.7	16.8	5.5	0.4	100.0(513)
	400만원 이상	23.3	48.0	21.4	5.7	1.6	100.0(369)
$\chi^2(df = 40.4(12))^{***}$							
지역	대도시	17.8	59.9	16.5	5.1	0.8	100.0(653)
	중소도시	16.0	57.6	21.1	4.8	0.6	100.0(712)
	읍면	16.3	51.9	23.7	7.4	0.7	100.0(135)
$\chi^2(df = 8.8(8))$							

주: *** p < .001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실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6>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0.5%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5.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23.7%,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6.4%,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5.3%,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0.3%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일수록 자녀

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실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V-3-6〉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실내환경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16.4	54.1	23.7	5.3	0.3	100.0(1,498)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20.3	44.9	27.5	5.8	1.4	100.0(69)
만 3세 이상	16.2	54.6	23.6	5.3	0.3	100.0(1,429)
$\chi^2(df) = na$						
기관 유형						
유치원	15.7	58.5	21.2	4.4	0.1	100.0(750)
보육시설	17.1	49.7	26.3	6.3	0.5	100.0(748)
$\chi^2(df) = 14.2(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8.6	49.8	27.1	4.0	0.4	100.0(247)
1-2년 미만	13.3	57.7	24.1	4.6	0.3	100.0(390)
2-3년 미만	15.7	54.6	23.4	5.9	0.4	100.0(509)
3년 이상	19.3	52.6	21.6	6.3	0.3	100.0(352)
$\chi^2(df) = 11.0(12)$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4.6	58.6	22.3	4.5	0.0	100.0(157)
200-299만원	14.5	56.4	23.8	4.8	0.5	100.0(400)
300-399만원	14.5	54.1	25.2	5.9	0.4	100.0(513)
400만원 이상	21.7	49.3	22.5	6.2	0.3	100.0(369)
$\chi^2(df) = 14.1(12)$						
지역						
대도시	15.6	56.3	23.5	4.6	0.0	100.0(652)
중소도시	18.0	52.5	23.5	5.8	0.3	100.0(711)
읍면	11.9	52.6	26.7	6.7	2.2	100.0(135)
$\chi^2(df) = 22.6(8)^{**}$						

주: ** p < .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실외 놀이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7>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5.8%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15.3%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28.3%,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13.6%,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2.4%,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1.7%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기관의 실외놀이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3-7〉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실외놀이공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12.4	43.4	28.3	13.6	1.7	100.0(1,491)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10.4	32.8	32.8	22.4	1.5	100.0(67)
만 3세 이상	12.6	44.2	28.2	13.3	1.8	100.0(1,424)
$\chi^2(df) = 6.5(4)$						
이용 기관 유형						
유치원	13.2	49.0	26.2	10.0	1.6	100.0(49)
보육시설	11.7	38.3	30.7	17.4	1.9	100.0(742)
$\chi^2(df) = 28.2(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3.5	38.4	31.8	14.7	1.6	100.0(245)
1-2년 미만	9.5	46.8	27.8	13.6	2.3	100.0(389)
2-3년 미만	12.4	46.7	27.4	12.4	1.2	100.0(508)
3년 이상	15.2	39.5	28.4	14.9	2.0	100.0(349)
$\chi^2(df) = 14.1(12)$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5	40.4	30.8	15.4	0.0	100.0(156)
200-299만원	10.4	51.1	26.3	10.1	2.0	100.0(395)
300-399만원	12.3	42.1	29.0	14.8	1.8	100.0(513)
400만원 이상	14.8	38.3	29.2	15.8	1.9	100.0(366)
$\chi^2(df) = 21.0(12)$						
지역						
대도시	10.4	41.8	29.6	15.9	2.3	100.0(646)
중소도시	13.9	46.1	27.5	11.1	1.4	100.0(710)
읍면	14.8	40.0	28.1	16.3	0.7	100.0(135)
$\chi^2(df) = 15.5(8)$						

주: *** $p < .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놀잇감이나 교재교구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8>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3.6%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7.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28.7%,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4.5%,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6.6%,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0.6%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이용 기간에 따라서는 이용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놀잇감 및 교재교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V-3-8〉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놀잇감, 교재교구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14.5	49.1	28.7	6.6	0.6	100.0(1,492)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16.4	34.3	41.8	7.5	0.0	100.0(67)
만 3세 이상	14.5	50.1	28.2	6.6	0.6	100.0(1,425)
$\chi^2(df = 8.0(4))$						
이용 기관 유형						
유치원	15.4	53.9	24.6	5.4	0.7	100.0(747)
보육시설	13.7	44.8	33.0	7.9	0.5	100.0(745)
$\chi^2(df = 19.9(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3.4	47.2	34.1	4.9	0.4	100.0(246)
1-2년 미만	10.3	50.5	30.0	8.7	0.5	100.0(390)
2-3년 미만	14.4	51.7	27.2	6.3	0.4	100.0(507)
3년 이상	20.3	46.4	26.1	6.0	1.1	100.0(349)
$\chi^2(df = 25.0(12)*$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7.5	46.8	31.2	3.9	0.6	100.0(154)
200-299만원	12.3	53.0	27.4	6.5	0.8	100.0(398)
300-399만원	12.9	50.7	29.0	6.4	1.0	100.0(513)
400만원 이상	18.4	43.9	29.2	8.4	0.0	100.0(367)
$\chi^2(df = 18.5(12)$						
지역						
대도시	13.1	53.4	27.3	5.7	0.5	100.0(648)
중소도시	16.4	46.8	29.6	6.6	0.6	100.0(709)
읍면	11.9	43.7	31.9	11.1	1.5	100.0(135)
$\chi^2(df = 15.1(8)$						

주: *p < .05, **p < .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교육/보육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9>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1.5%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5.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22.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4.4%,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5.2%,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0.1%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일수록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교육/보육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3-9>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교육/보육 내용 및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14.4	57.1	22.5	5.2	0.1	100.0(1,491)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15.4	56.9	24.6	3.1	0.0	100.0(65)
만 3세 이상	14.4	57.5	22.6	5.3	0.1	100.0(1,426)
$\chi^2(df) = na$						
이용 기관						
유치원	14.5	59.7	21.2	4.6	0.1	100.0(747)
보육시설	14.5	55.2	24.2	5.9	0.1	100.0(744)
$\chi^2(df) = 4.1(4)$						
이용 기간						
1년 미만	15.2	56.1	25.0	3.7	0.0	100.0(244)
1-2년 미만	11.3	60.0	22.3	6.2	0.3	100.0(390)
2-3년 미만	14.3	59.0	22.4	4.4	0.0	100.0(505)
3년 이상	17.9	53.4	21.9	6.5	0.3	100.0(352)
$\chi^2(df) = 13.8(12)$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6.8	55.5	23.2	4.5	0.0	100.0(155)
200-299만원	13.9	58.7	20.3	7.1	0.0	100.0(395)
300-399만원	13.3	59.6	22.3	4.5	0.4	100.0(512)
400만원 이상	16.0	53.9	24.9	5.1	0.0	100.0(369)
$\chi^2(df) = 11.8(12)$						
지역						
대도시	13.7	63.6	18.4	4.2	0.2	100.0(648)
중소도시	15.8	53.8	25.6	4.7	0.1	100.0(708)
읍면	11.1	47.4	28.1	13.3	0.0	100.0(135)
$\chi^2(df) = 39.1(8)^{***}$						

주: *** p < .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선생님의 성품 및 전문적 자질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10>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5.5%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3.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

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21.0%,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9.7%,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2.9%,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0.4%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이용기간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이용기간에 따라서는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불만족도는 3년 이상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냈던 학부모의 경우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인 경우가 불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3-10〉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선생님의 성품 및 전문적 자질

단위: %(명)

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19.7	55.8	21.0	2.9	0.4	100.0(1,497)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20.3	53.6	21.7	4.3	0.0	100.0(69)
	만 3세 이상	19.7	56.0	21.0	2.8	0.4	100.0(1,428)
$\chi^2(df) = 0.9(4)$							
이용 기관	유치원	19.7	58.0	19.9	1.9	0.5	100.0(748)
	보육시설	19.9	53.8	22.2	3.9	0.3	100.0(749)
$\chi^2(df) = 8.0(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25.4	50.4	21.8	2.4	0.0	100.0(248)
	1-2년 미만	14.7	58.6	23.7	2.8	0.3	100.0(389)
	2-3년 미만	17.5	59.6	19.9	2.8	0.2	100.0(508)
	3년 이상	24.7	51.4	19.3	3.4	1.1	100.0(352)
$\chi^2(df) = 28.4(12)^*$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1.0	55.4	19.7	3.8	0.0	100.0(157)
	200-299만원	18.6	57.3	21.4	2.8	0.0	100.0(400)
	300-399만원	18.6	58.2	20.3	2.5	0.4	100.0(513)
	400만원 이상	22.0	51.8	22.0	3.3	1.1	100.0(369)
$\chi^2(df) = na$							
지역	대도시	17.9	58.9	19.0	3.7	0.5	100.0(652)
	중소도시	21.8	54.1	21.8	2.0	0.3	100.0(710)
	읍면	17.8	51.1	26.7	3.7	0.7	100.0(135)
$\chi^2(df) = na$							

주: ** p < .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건강/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11>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0.2%여

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4.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25.3%,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5.9%,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3.9%,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0.3% 순이었다.

〈표 V-3-11〉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건강/위생 및 안전 관리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15.9	54.3	25.3	3.9	0.3	100.0(1,496)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13.2	52.9	29.4	2.9	1.5	100.0(68)
만 3세 이상	16.1	54.5	25.2	3.9	0.3	100.0(1,428)
$\chi^2(df) = na$						
이용 기관						
유치원	15.2	58.5	22.5	3.5	0.3	100.0(750)
보육시설	16.8	50.3	28.3	4.3	0.4	100.0(746)
$\chi^2(df) = 11.0(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5.8	54.3	23.1	6.1	0.8	100.0(247)
1-2년 미만	11.6	51.9	32.9	3.6	0.0	100.0(389)
2-3년 미만	15.6	57.7	23.2	3.3	0.2	100.0(508)
3년 이상	21.6	52.6	21.9	3.4	0.6	100.0(352)
$\chi^2(df) = 32.8(12)^*$						
부모 연령						
20대	10.7	52.0	33.3	4.0	0.0	100.0(75)
30대	15.6	55.1	25.0	3.9	0.3	100.0(1,247)
40대	22.4	51.7	21.8	3.4	0.7	100.0(147)
50대 이상	14.8	44.4	37.0	3.7	0.0	100.0(27)
$\chi^2(df) = na$						
부모 교육 수준						
고졸이하	14.1	55.0	26.0	4.8	0.0	100.0(580)
대재/대졸이상	17.0	54.0	25.2	3.3	0.6	100.0(908)
$\chi^2(df) = 7.2(4)$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4.7	57.1	25.0	2.6	0.6	100.0(156)
200-299만원	14.3	56.1	25.3	4.0	0.3	100.0(399)
300-399만원	14.5	55.3	25.8	4.3	0.2	100.0(512)
400만원 이상	20.1	50.0	25.5	3.8	0.5	100.0(368)
$\chi^2(df) = 9.6(12)$						
지역						
대도시	13.8	54.8	27.7	3.2	0.5	100.0(650)
중소도시	17.9	55.3	22.6	4.1	0.1	100.0(711)
읍면	16.3	48.1	28.9	5.9	0.7	100.0(135)
$\chi^2(df) = 12.7(8)$						

주: ** p < .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응답자 특성 중 기관이용기간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이용 기간에 따라서는 3년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우 만족도가 74.1%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 기관을 이용한 경우 불만족도가 6.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급/간식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12>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8.5%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5.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25.1%,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6.9%,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5.5%,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0.3% 순이었다.

<표 V-3-12>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급/간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16.9	51.7	25.1	5.5	0.3	100.0(1,493)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13.2	60.3	20.6	5.9	0.0	100.0(68)
만 3세 이상	17.1	51.5	25.5	5.5	0.4	100.0(1,425)
$\chi^2(df = na)$						
이용 기관						
유치원	16.1	53.0	25.5	4.8	0.5	100.0(745)
보육시설	17.8	50.8	25.0	6.3	0.1	100.0(748)
$\chi^2(df = 4.2(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7.9	52.8	22.8	5.7	0.8	100.0(246)
1-2년 미만	11.3	57.4	25.6	5.4	0.3	100.0(390)
2-3년 미만	16.4	50.5	27.4	5.7	0.0	100.0(507)
3년 이상	23.4	47.1	23.4	5.4	0.6	100.0(350)
$\chi^2(df = 26.5(12)**$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5.3	54.1	22.3	8.3	0.0	100.0(157)
200-299만원	15.1	53.7	27.2	3.8	0.3	100.0(397)
300-399만원	14.5	52.1	26.8	6.3	0.4	100.0(512)
400만원 이상	21.5	48.9	23.9	5.2	0.5	100.0(368)
$\chi^2(df = 16.2(12))$						
지역						
대도시	14.9	52.6	25.8	5.8	0.8	100.0(650)
중소도시	18.1	53.0	24.3	4.7	0.0	100.0(708)
읍면	20.7	43.0	27.4	8.9	0.0	100.0(135)
$\chi^2(df = 16.4(8)^*$						

주: *p < .05, **p < .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응답자 특성 중 기관이용기간,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이용기간에 따라서는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3년 이상인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불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급/간식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등/하원 버스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0.9%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4.1%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15.9%,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2.7%,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3.6%,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0.5% 순이었다.

<표 V-3-13>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등/하원버스 이용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계
전체	12.7	48.3	15.9	3.6	0.5	19.0	100.0(1,499)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11.6	31.9	11.6	2.9	1.4	40.6	100.0(69)
만 3세 이상	12.7	49.1	16.2	3.6	0.4	18.0	100.0(1,430)
$\chi^2(df = 24.2(5)^{***})$							
이용 기관							
유치원	12.5	52.9	15.5	2.3	0.4	16.4	100.0(750)
보육시설	12.8	43.7	16.4	4.9	0.5	21.6	100.0(749)
$\chi^2(df = 19.9(5)^{**})$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0.1	41.9	14.5	4.8	0.4	28.2	100.0(248)
1-2년 미만	9.0	54.4	19.2	3.1	0.0	14.4	100.0(390)
2-3년 미만	14.9	50.1	15.1	3.9	0.4	15.5	100.0(509)
3년 이상	15.3	43.5	14.5	2.8	1.1	22.7	100.0(352)
$\chi^2(df = 49.0(15)^{***})$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7.2	47.8	16.6	2.5	0.0	15.9	100.0(157)
200-299만원	11.5	51.4	16.5	4.8	0.8	15.0	100.0(399)
300-399만원	13.3	53.6	17.2	2.3	0.2	13.5	100.0(513)
400만원 이상	11.7	38.2	15.2	4.1	0.8	30.1	100.0(369)
$\chi^2(df = 60.1(15)^{***})$							
지역							
대도시	11.5	49.4	13.8	3.8	0.9	20.6	100.0(652)
중소도시	12.2	49.4	16.3	2.8	0.0	19.2	100.0(712)
읍면	20.7	37.0	24.4	6.7	0.7	10.4	100.0(135)
$\chi^2(df = 37.1(10)^{***})$							

주: * p < .05, ** p < .01, *** p < .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응답자 특성 중 자녀연령,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 부모 소득수준,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만 3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이용기간에 따라서는 2-3년 미만인 경우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1년 미만인 경우에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부모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인 경우가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부모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300만원대인 경우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에 만족도가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인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읍/면의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1%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6.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26.4%,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0.9%,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5.8%,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0.6%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이용기간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이용 기간에 따라서는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부모교육 및 가정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15>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8.7%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5.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 25.9%,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3.4%,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4.7%,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 0.5%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이용기간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이용 기간에 따라서는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72.2%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이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65.3%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V-3-14〉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주변 환경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10.9	56.1	26.4	5.8	0.6	100.0(1,498)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10.1	65.2	21.7	2.9	0.0	100.0(69)
	만 3세 이상	11.0	55.8	26.7	5.9	0.6	100.0(1,429)
$\chi^2(df) = 3.2(4)$							
이용 기관	유치원	11.3	58.9	23.6	5.7	0.4	100.0(749)
	보육시설	10.5	53.5	29.2	5.9	0.8	100.0(749)
$\chi^2(df) = 7.6(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5.6	63.3	25.4	5.6	0.0	100.0(248)
	1-2년 미만	9.2	59.2	25.1	5.9	0.5	100.0(390)
	2-3년 미만	12.2	55.9	25.6	5.5	0.8	100.0(508)
	3년 이상	14.8	48.3	29.8	6.3	0.9	100.0(352)
$\chi^2(df) = 24.1(12)^*$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2.1	56.1	26.8	5.1	0.0	100.0(157)
	200-299만원	12.0	56.6	25.3	5.5	0.5	100.0(399)
	300-399만원	9.6	57.3	26.9	5.7	0.6	100.0(513)
	400만원 이상	11.7	54.9	25.8	6.5	1.1	100.0(368)
$\chi^2(df) = 5.0(12)$							
지역	대도시	9.0	56.0	27.0	7.1	0.9	100.0(652)
	중소도시	11.8	58.1	24.9	4.9	0.3	100.0(711)
	읍면	15.6	47.4	31.9	4.4	0.7	100.0(135)
$\chi^2(df) = 15.3(8)$							

주: *p < .05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표 V-3-15〉 유치원/보육시설 만족도 - 부모교육 및 가정과의 교류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13.4	55.3	25.9	4.7	0.5	100.0(1,498)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20.3	55.1	21.7	2.9	0.0	100.0(69)
만 3세 이상	13.1	55.4	26.2	4.8	0.6	100.0(1,429)
$\chi^2(df) = 3.9(4)$						
이용 기관						
유치원	11.3	58.1	24.7	5.3	0.5	100.0(749)
보육시설	15.5	52.6	27.2	4.1	0.5	100.0(749)
$\chi^2(df) = 8.9(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4.5	57.7	22.6	5.2	0.0	100.0(248)
1-2년 미만	8.7	58.4	28.5	4.4	0.0	100.0(389)
2-3년 미만	14.5	56.2	24.6	4.1	0.6	100.0(509)
3년 이상	16.2	49.1	27.6	5.7	1.4	100.0(352)
$\chi^2(df) = 25.2(12)^*$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4.0	52.2	29.3	3.8	0.6	100.0(157)
200-299만원	12.1	55.8	26.6	5.3	0.3	100.0(398)
300-399만원	11.7	58.1	26.3	3.7	0.2	100.0(513)
400만원 이상	16.3	53.7	23.0	5.7	1.4	100.0(369)
$\chi^2(df) = 15.6(12)$						
지역						
대도시	12.3	57.1	25.2	4.9	0.5	100.0(653)
중소도시	14.0	55.5	25.1	4.9	0.4	100.0(712)
읍면	15.6	45.9	34.1	3.0	1.5	100.0(135)
$\chi^2(df) = 11.1(8)$						

주: *p < .05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4)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16>과 같다.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1%, 일원화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30.7%, 일원화보다는 현재 상태가 더 좋다는 의견이 19.9%로 나타나 일원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

게 나타났다. 부모들은 부처 일원화에 대한 인식은 없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부처와 상관없이 기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3-16〉 유치원/보육시설 일원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일원화되는 편이 좋음	연령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좋음	일원화보다는 현재상태가 더 좋음	계	
전체	30.7	49.1	19.9	100.0(1,497)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29.0	55.1	15.9	100.0(69)
	만 3세 이상	30.9	48.9	20.2	100.0(1,428)
$\chi^2(df = 1.2(2))$					
이용 기관유형	유치원	27.3	51.6	21.1	100.0(750)
	보육시설	34.3	46.9	18.9	100.0(747)
$\chi^2(df = 8.5(2))^*$					
기관 이용기간	1년 미만	26.4	48.4	25.2	100.0(246)
	1-2년 미만	30.8	46.3	22.9	100.0(389)
	2-3년 미만	31.0	50.8	18.2	100.0(510)
	3년 이상	33.5	50.9	15.6	100.0(352)
$\chi^2(df = 12.7(6))^*$					
부모연령	20대	18.7	57.3	24.0	100.0(75)
	30대	30.3	49.0	20.8	100.0(1,248)
	40대	41.5	44.2	14.3	100.0(147)
	50대 이상	29.6	66.7	3.7	100.0(27)
$\chi^2(df = 19.6(6))^{**}$					
부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36.6	44.7	18.7	100.0(582)
	대재/대졸이상	27.2	51.9	20.8	100.0(907)
$\chi^2(df = 14.7(2))^{**}$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2.5	55.4	12.1	100.0(157)
	200-299만원	29.3	50.6	20.1	100.0(399)
	300-399만원	30.9	46.9	22.3	100.0(512)
	400만원 이상	33.3	47.4	19.2	100.0(369)
$\chi^2(df = 9.6(6))$					
지역	대도시	31.3	45.3	23.3	100.0(651)
	중소도시	32.1	49.6	18.3	100.0(711)
	읍면	21.5	65.9	12.6	100.0(135)
$\chi^2(df = 22.3(4))^{**}$					

주: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 부모연령, 부모교육 수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기관의 일원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용 기간에 따라서는 이용기간이 길수록 기관의 일원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연령에 따라서는 부모연령이 높을수록 기관의 일원화를 더 선호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모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보다 대학교 재학 및 대졸 이상인 경우가 일원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치원교사·보육교사의 일원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1) 유치원교사·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동일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17>과 같다. 전체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응답이 67.9%여서 달라야 한다는 응답 3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중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유형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유치원교사의 적정 학력 수준

유치원 교사의 학력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18>와 같다. 전체적으로 대졸이라는 의견이 73.4%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라는 의견이 17.7%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대학원 졸업 6.9%, 학력은 상관없다는 의견 1.7%, 고등학교 졸업 0.4%의 순이었다.

자녀연령,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 부모연령, 부모교육 수준, 부모소득 수준,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았다.

〈표 V-3-17〉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자격이 달라야 함	자격이 같아야 함	계
전체		32.1	67.9	100.0(1,50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36.2	63.8	100.0(69)
	만 3세 이상	31.9	68.1	100.0(1,431)
$\chi^2(df = 0.6(1))$				
이용기관 유형	유치원	38.5	61.5	100.0(750)
	보육시설	25.6	74.4	100.0(750)
$\chi^2(df = 28.8(1)***$				
기관 이용기간	1년 미만	33.9	66.1	100.0(248)
	1-2년 미만	31.8	68.2	100.0(390)
	2-3년 미만	32.0	68.0	100.0(510)
	3년 이상	31.3	68.8	100.0(352)
$\chi^2(df = 0.5(3))$				
부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30.4	69.6	100.0(583)
	대재/대졸이상	33.0	67.0	100.0(909)
$\chi^2(df = 1.1(1))$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1.8	68.2	100.0(157)
	200-299만원	34.3	65.8	100.0(400)
	300-399만원	34.3	65.7	100.0(513)
	400만원 이상	27.1	72.9	100.0(369)
$\chi^2(df = 6.2(3))$				
지역	대도시	29.2	70.8	100.0(653)
	중소도시	33.4	66.6	100.0(712)
	읍면	38.5	61.5	100.0(135)
$\chi^2(df = 5.6(2))$				

주: *** p < .001

〈표 V-3-18〉 부모가 생각하는 유치원교사의 적정 학력 수준

단위: %(명)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에 상관없음	계
전체	0.4	17.7	73.4	6.9	1.7	100.0(481)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0.0	20.0	68.0	4.0	8.0	100.0(25)
만 3세 이상	0.4	17.5	73.7	7.0	1.3	100.0(456)
이용 기관						
유치원	0.0	15.6	76.8	6.2	1.4	100.0(289)
보육시설	1.0	20.8	68.2	7.8	2.1	100.0(192)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2	17.9	70.2	7.1	3.6	100.0(84)
1-2년 미만	0.0	10.5	81.5	8.1	0.0	100.0(124)
2-3년 미만	0.0	21.5	71.8	4.9	1.8	100.0(163)
3년 이상	0.9	20.0	69.1	8.2	1.8	100.0(110)
부모 교육 수준						
고졸이하	0.0	23.2	65.5	9.0	2.3	100.0(177)
대재/대졸이상	0.3	14.0	78.7	5.7	1.3	100.0(300)
지역						
대도시	0.0	17.8	71.2	8.9	2.1	100.0(191)
중소도시	0.4	17.2	76.5	4.6	1.3	100.0(238)
읍면	1.9	19.2	67.3	9.6	1.9	100.0(5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3) 보육교사의 적정 학력 수준

보육시설 영아 담당 교사의 학력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19>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문대졸이라는 의견이 55.7%로 가장 높았고, 학력에 상관없다는 의견이 25.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고졸 10.6%, 대졸 8.1%, 대학원졸업 0.2%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 부모교육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녀연령, 부모연령, 부모소득 수준, 지역에서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았다.

<표 V-3-19> 부모가 생각하는 보육시설 영아 담당 교사의 적정 학력 수준

단위: %(명)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무관	계	
전체	10.6	55.7	8.1	0.2	25.4	100.0(481)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8.0	52.0	8.0	0.0	32.0	100.0(25)
	만 3세 이상	10.7	55.9	8.1	0.2	25.0	100.0(456)
$\chi^2(df) = na$							
기관 유형	유치원	11.1	56.1	8.0	0.3	24.6	100.0(289)
	보육시설	9.9	55.2	8.3	0.0	26.6	100.0(192)
$\chi^2(df) = 1.0(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9.5	56.0	6.0	0.0	28.6	100.0(84)
	1-2년 미만	6.5	61.3	6.5	0.8	25.0	100.0(124)
	2-3년 미만	11.0	54.0	9.8	0.0	25.2	100.0(163)
	3년 이상	15.5	51.8	9.1	0.0	23.6	100.0(110)
$\chi^2(df) = 10.6(12)$							
부모 교육 수준	고졸이하	14.7	50.3	10.7	0.0	24.3	100.0(177)
	대재/대졸이상	8.3	59.7	6.3	0.3	25.3	100.0(300)
$\chi^2(df) = 9.3(4)$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6.0	50.0	14.0	0.0	20.0	100.0(50)
	200-299만원	10.2	56.2	7.3	0.0	26.3	100.0(137)
	300-399만원	11.4	55.1	9.7	0.6	23.3	100.0(176)
	400만원 이상	8.0	59.0	5.0	0.0	28.0	100.0(100)
$\chi^2(df) = na$							
지역	대도시	9.4	56.0	6.8	0.5	27.2	100.0(191)
	중소도시	11.3	55.9	8.4	0.0	24.4	100.0(238)
	읍면	11.5	53.8	11.5	0.0	23.1	100.0(52)
$\chi^2(df) =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보육시설 유아 담당 교사의 학력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20>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졸이라는 의견이 45.1%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졸업이라는 의견이 41.0%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학력은 상관없다는 의견이 9.4%, 고졸 3.5%, 대학원졸업 1.0%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부모교육수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부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에 유아 담당 교사가 대졸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부모가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보다 높았다.

〈표 V-3-20〉 부모가 생각하는 보육시설 유아 담당 교사의 적절한 학력 수준

단위: %(명)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에 상관없음	계
전체	3.5	41.0	45.1	1.0	9.4	100.0(481)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4.0	56.0	28.0	0.0	12.0	100.0(25)
만 3세 이상	3.5	40.1	46.1	1.1	9.2	100.0(456)
$\chi^2(df) = na$						
기관 유형						
유치원	3.8	38.8	48.8	1.0	7.6	100.0(289)
보육시설	3.1	44.3	39.6	1.0	12.0	100.0(192)
$\chi^2(df) = 5.5(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3.6	44.0	46.4	0.0	6.0	100.0(84)
1-2년 미만	1.6	38.7	46.8	2.4	10.5	100.0(124)
2-3년 미만	4.3	39.3	44.8	0.0	11.7	100.0(163)
3년 이상	4.5	43.6	42.7	1.8	7.3	100.0(110)
$\chi^2(df) = na$						
부모 교육 수준						
고졸이하	5.6	39.5	48.6	1.1	5.1	100.0(177)
대재/대졸이상	2.0	42.0	43.3	1.0	11.7	100.0(300)
$\chi^2(df) = 10.5(4)^*$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0	46.0	44.0	2.0	6.0	100.0(157)
200-299만원	4.4	38.0	43.8	2.2	11.7	100.0(400)
300-399만원	3.4	40.9	44.9	0.6	10.2	100.0(513)
400만원 이상	3.0	45.0	45.0	0.0	7.0	100.0(369)
$\chi^2(df) = na$						
지역						
대도시	2.6	43.5	42.9	1.0	9.9	100.0(191)
중소도시	3.4	39.9	46.2	1.3	9.2	100.0(238)
읍면	7.7	36.5	48.1	0.0	7.7	100.0(52)
$\chi^2(df) = na$						

주: *p < .05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교사가 통합되어 영유아를 모두 담당하는 교사의 학력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21>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졸이라는 의견이 41.3%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이라는 의견이 39.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학력에 상관없다는 의견 13.8%, 고졸 3.6%, 대학원졸업 2.0%의 순이었다.

〈표 V-3-21〉 부모가 생각하는 영유아 (통합) 교사의 적정 학력 수준

단위: %(명)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에 상관없음	계
전체		3.6	39.3	41.3	2.0	13.8	100.0(1,019)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6.8	47.7	13.6	2.3	29.5	100.0(44)
	만 3세 이상	3.5	38.9	42.6	1.9	13.1	100.0(975)
$\chi^2(df) = 18.9(4)^{***}$							
기관 유형	유치원	4.6	38.4	44.7	0.9	11.5	100.0(461)
	보육시설	2.9	40.0	38.5	2.9	15.8	100.0(558)
$\chi^2(df) = 12.9(4)^*$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2.4	44.5	34.1	1.2	17.7	100.0(164)
	1-2년 미만	3.0	40.2	41.0	1.9	13.9	100.0(266)
	2-3년 미만	4.3	36.9	44.4	2.3	12.1	100.0(347)
	3년 이상	4.1	38.0	42.1	2.1	13.6	100.0(242)
$\chi^2(df) = 9.4(12)$							
부모 교육 수준	고졸이하	4.9	34.5	44.1	2.2	14.3	100.0(406)
	대재/대졸이상	2.8	42.7	39.6	1.8	13.1	100.0(609)
$\chi^2(df) = 8.9(4)$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5	45.8	30.8	0.0	15.9	100.0(107)
	200-299만원	1.9	39.5	42.6	0.4	15.6	100.0(263)
	300-399만원	3.0	35.3	47.5	2.4	11.9	100.0(337)
	400만원 이상	3.3	40.9	40.9	4.1	10.8	100.0(269)
$\chi^2(df) = 30.4(12)^{**}$							
지역	대도시	3.5	41.3	35.9	1.3	18.0	100.0(462)
	중소도시	4.2	38.8	43.0	2.3	11.6	100.0(474)
	읍면	1.2	30.1	61.4	3.6	3.6	100.0(83)
$\chi^2(df) = 32.0(8)^{***}$							

주: *p < .05, **p < .01, ***p < .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응답자 특성 중 자녀연령, 기관유형, 부모소득수준,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만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응답자보다 영유아 담당교사의 적정한 학력 수준이 대졸이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의 경우 대졸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보육시설의 경우는 전문대졸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소득수준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의 경우 전문대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상의 소득 수준인 경우 대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인 경우 전문대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중소도시와 읍/면의 경우 대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읍/면의 경우는 대졸이라는 응답이 전문대졸이라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다.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일원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1) 교육과정/보육과정 운영 인지도

응답자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보육시설이 국가가 정한 교육/보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22>와 같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81.9%여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 18.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중 자녀연령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만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희망사항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가장 중점을 두었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사항에 대한 응답은 <표 V-3-23>과 같다. 전체적으로 인성지도라는 의견이 56.5%로 가장 높았고, 안전한 보호라는 의견이 14.7%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인적인 발달, 자유놀이중심 활동, 영양식 제공과 건강, 영어나 미술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 쓰기나 읽기를 강조한 인지 교육의 순이었다. 인성지도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는 것은 2005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 부모소득수준,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인성지도를 중점적으로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기관이용기간에 따라서는 2-3년 미만인 경우가 인성지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년 이상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1-2년 미만, 1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소득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인성지도를 중점적으로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성지도를 중점적으로 희망하는 비율이 타 소득계층보다 더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일수록 인성지도를 중점적으로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3-22〉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보육 과정 운영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
전체		81.9	18.1	100.0(1,50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72.5	27.5	100.0(69)
	만 3세 이상	82.3	17.7	100.0(1,431)
$\chi^2(df) = 4.3(1)^*$				
기관유형	유치원	82.7	17.3	100.0(750)
	보육시설	81.1	18.9	100.0(750)
$\chi^2(df) = 0.6(1)$				
이용기간	1년 미만	80.6	19.4	100.0(248)
	1-2년 미만	82.8	17.2	100.0(390)
	2-3년 미만	82.0	18.0	100.0(510)
	3년 이상	81.5	18.5	100.0(352)
$\chi^2(df) = 0.5(3)$				
부모연령	20대	81.3	18.7	100.0(75)
	30대	81.9	18.1	100.0(1,251)
	40대	83.7	16.3	100.0(147)
	50대 이상	70.4	29.6	100.0(27)
$\chi^2(df) = 2.7(3)$				
부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81.0	19.0	100.0(583)
	대재/대졸이상	82.4	17.6	100.0(909)
$\chi^2(df) = 0.5(1)$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79.0	21.0	100.0(157)
	200-299만원	82.0	18.0	100.0(400)
	300-399만원	83.2	16.8	100.0(513)
	400만원 이상	80.8	19.2	100.0(369)
$\chi^2(df) = 1.8(3)$				
지역	대도시	82.2	17.8	100.0(653)
	중소도시	81.9	18.1	100.0(712)
	읍면	80.0	20.0	100.0(135)
$\chi^2(df) = 0.4(2)$				

주: *p < .05

〈표 V-3-23〉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중점 희망사항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인성 지도	안전한 보호	자유 놀이 활동	영양식 제공과 건강	인지 교육	특별 활동	기타	계	
전체	11.3	56.5	14.7	7.5	4.7	2.3	2.9	0.1	100.0(1,500)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5.8	33.3	29.0	14.5	8.7	4.3	4.3	0.0	100.0(69)
	만 3세 이상	11.5	57.7	14.0	7.2	4.5	2.2	2.8	0.1	100.0(1,431)
$\chi^2(df) = na$										
기관 유형	유치원	12.0	61.1	12.3	6.5	3.6	1.9	2.5	0.1	100.0(750)
	보육시설	10.5	52.0	17.1	8.5	5.7	2.8	3.2	0.1	100.0(750)
$\chi^2(df) = 19.7(7)**$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7.3	50.0	19.4	10.1	5.2	1.6	6.0	0.4	100.0(248)
	1-2년 미만	9.5	56.2	16.9	7.9	5.9	2.3	1.0	0.3	100.0(390)
	2-3년 미만	13.3	59.2	12.2	6.9	3.7	1.8	2.9	0.0	100.0(510)
	3년 이상	13.1	57.7	12.5	6.3	4.3	3.7	2.6	0.0	100.0(352)
$\chi^2(df) = 44.9(21)**$										
부모 연령	20대	5.3	57.3	16.0	10.7	6.7	1.3	2.7	0.0	100.0(75)
	30대	11.1	56.4	14.9	7.4	4.6	2.5	3.0	0.2	100.0(1,251)
	40대	17.0	51.0	14.3	8.2	5.4	2.0	2.0	0.0	100.0(147)
	50대 이상	3.7	88.9	3.7	0.0	0.0	0.0	3.7	0.0	100.0(27)
$\chi^2(df) = na$										
부모 교육 수준	고졸이하	9.4	56.9	14.4	7.7	5.5	3.4	2.6	0.0	100.0(583)
	대재/대졸이상	12.5	56.2	14.6	7.5	4.2	1.7	3.1	0.2	100.0(909)
$\chi^2(df) = 10.8(7)$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6.4	52.9	19.7	6.4	7.6	1.9	4.5	0.6	100.0(157)
	200-299만원	9.0	61.8	12.8	7.3	3.8	3.3	2.0	0.3	100.0(400)
	300-399만원	11.9	58.5	11.5	9.0	4.9	1.9	2.3	0.0	100.0(513)
	400만원 이상	14.9	50.9	18.2	7.0	3.8	1.9	3.3	0.0	100.0(369)
$\chi^2(df) = 40.7(21)**$										
지역	대도시	8.1	57.6	13.5	8.1	5.8	2.1	4.6	0.2	100.0(653)
	중소도시	13.1	57.3	15.3	7.3	3.4	1.8	1.8	0.0	100.0(712)
	읍면	17.0	47.4	17.0	5.9	5.9	5.9	0.0	0.7	100.0(135)
$\chi^2(df) = 47.4(14)***$										

주: ** p < .01, *** p < .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라. 예산의 일원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1) 교육비/보육료 지원제도의 인지도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가구의 형편에 따라 정부가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24>와 같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95.2%여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 4.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V-3-24>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정부 지원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
전체		95.2	4.8	100.0(1,50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98.6	1.4	100.0(69)
	만 3세 이상	95.0	5.0	100.0(1,431)
$\chi^2(df) = na$				
이용기관	유치원	93.9	6.1	100.0(750)
	보육시설	96.5	3.5	100.0(750)
$\chi^2(df) = 5.8(1)^*$				
이용기간	1년 미만	98.4	1.6	100.0(248)
	1-2년 미만	95.4	4.6	100.0(390)
	2-3년 미만	93.3	6.7	100.0(510)
	3년 이상	95.5	4.5	100.0(352)
$\chi^2(df) = 9.5(3)^*$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99.4	0.6	100.0(157)
	200-299만원	97.5	2.5	100.0(400)
	300-399만원	93.6	6.4	100.0(513)
	400만원 이상	93.0	7.0	100.0(369)
$\chi^2(df) = 17.4(3)^{**}$				
지역	대도시	96.8	3.2	100.0(653)
	중소도시	93.4	6.6	100.0(712)
	읍면	97.0	3.0	100.0(135)
$\chi^2(df) = 9.6(2)^{**}$				

주: *p < .05, **p < .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 부모소득수준,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

부모가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정부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이용기간에 따라서는 정부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1년 미만인 경우가 9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년 이상인 경우, 1-2년 미만인 경우, 2-3년 미만인 경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적을수록 정부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의 경우 97.0%로 정부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의 경우 96.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9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교육비/보육료 지원의 대상 여부

응답자가 현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정부의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25>와 같다. 전체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5.1%여서 받고 있다는 응답 44.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중 자녀연령, 기관유형, 부모연령, 부모교육수준, 부모소득수준,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만 3세 미만의 경우 받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은 반면, 만 3세 이상의 경우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그렇다는 응답에 비해 더 높았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은 반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받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부모연령에 따라서는 20대의 경우 받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30대 이상은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부모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인 경우 받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대학교재학 이상은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부모소득수준에 따라서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받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300만원 이상은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읍/면의 경우는 받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표 V-3-25〉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정부 지원 경험

단위: %(명)

구분		받고 있음	받지 않고 있음	계
전체		44.9	55.1	100.0(1,50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56.5	43.5	100.0(69)
	만 3세 이상	44.3	55.7	100.0(1,431)
$\chi^2(df = 4.0(1))^*$				
기관유형	유치원	37.3	62.7	100.0(750)
	보육시설	52.4	47.6	100.0(750)
$\chi^2(df = 34.4(1))^***$				
이용기간	1년 미만	42.3	57.7	100.0(248)
	1-2년 미만	46.7	53.3	100.0(390)
	2-3년 미만	43.5	56.5	100.0(510)
	3년 이상	46.6	53.4	100.0(352)
$\chi^2(df = 1.9(3))$				
부모연령	20대	69.3	30.7	100.0(75)
	30대	44.0	56.0	100.0(1,251)
	40대	42.2	57.8	100.0(147)
	50대 이상	33.3	66.7	100.0(27)
$\chi^2(df = 20.4(3))^***$				
부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55.1	44.9	100.0(583)
	대재/대졸이상	38.4	61.6	100.0(909)
$\chi^2(df = 39.9(1))^***$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72.6	27.4	100.0(157)
	200-299만원	56.8	43.3	100.0(400)
	300-399만원	41.7	58.3	100.0(513)
	400만원 이상	24.4	75.6	100.0(369)
$\chi^2(df = 136.3(3))^***$				
지역	대도시	42.4	57.6	100.0(653)
	중소도시	44.2	55.8	100.0(712)
	읍면	60.0	40.0	100.0(135)
$\chi^2(df = 14.2(2))^***$				

주: *p<.05, ***p<.001

3) 교육비/보육료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표 V-3-26>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7.1%로 만족

하지 않는다는 응답 52.9%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응답 40.1%,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 11.3%, 매우 만족스럽다는 응답 7.0% 순이었다.

〈표 V-3-26〉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전체	7.0	40.1	41.6	11.3	100.0(1,500)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8.7	49.3	31.9	10.1	100.0(69)
	만 3세 이상	6.9	39.7	42.1	11.3	100.0(1,431)
$\chi^2(df = 3.5(3))$						
기관 유형	유치원	6.1	37.1	44.0	12.8	100.0(750)
	보육시설	7.9	43.2	39.2	9.7	100.0(750)
$\chi^2(df = 10.3(3)^*$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7.3	39.9	40.3	12.5	100.0(248)
	1-2년 미만	5.9	39.5	43.1	11.5	100.0(390)
	2-3년 미만	6.5	38.8	44.1	10.6	100.0(510)
	3년 이상	8.8	42.9	37.2	11.1	100.0(352)
$\chi^2(df = 6.8(9))$						
부모 연령	20대	10.7	36.0	49.3	4.0	100.0(75)
	30대	7.0	40.4	41.6	11.1	100.0(1,251)
	40대	4.8	43.5	35.4	16.3	100.0(147)
	50대 이상	11.1	22.2	55.6	11.1	100.0(27)
$\chi^2(df = 16.7(9))$						
부모 교육 수준	고졸이하	6.5	40.8	43.1	9.6	100.0(583)
	대재/대졸이상	7.4	39.7	40.5	12.4	100.0(909)
$\chi^2(df = 3.5(3))$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6	45.9	37.6	8.9	100.0(157)
	200-299만원	7.5	39.5	40.5	12.5	100.0(400)
	300-399만원	6.4	36.6	47.4	9.6	100.0(513)
	400만원 이상	7.3	43.6	35.0	14.1	100.0(369)
$\chi^2(df = 18.4(9)^*$						
지역	대도시	7.5	41.3	39.4	11.8	100.0(653)
	중소도시	5.6	37.8	46.1	10.5	100.0(712)
	읍면	11.9	46.7	28.9	12.6	100.0(135)
$\chi^2(df = 19.5(6)**$						

주: * p < .05, ** p < .01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 부모소득수준,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만족하는 비율이 58.7%로 높았으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는 불만족하는 비율이 61.4%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와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경우에는 불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읍/면의 경우에는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현재 유치원 교육비나 보육시설 보육료 수준이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은 <표 V-3-27>과 같다.

<표 V-3-27>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 수준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기본 비용 부담이 큼	추가 지불비용 부담이 큼	사립/민간이 국공립에 비해 비쌘	기타	계	
전체	50.8	30.8	17.8	0.6	100.0(793)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72.4	13.8	13.8	0.0	100.0(29)
	만 3세 이상	50.0	31.4	17.9	0.7	100.0(764)
기관유형	유치원	50.9	31.5	17.1	0.5	100.0(426)
	보육시설	50.7	30.0	18.5	0.8	100.0(367)
기관 이용기간	1년 미만	57.3	22.9	19.8	0.0	100.0(131)
	1-2년 미만	54.0	33.3	11.3	1.4	100.0(213)
	2-3년 미만	48.0	34.4	17.6	0.0	100.0(279)
	3년 이상	46.5	27.6	24.7	1.2	100.0(170)
부모연령	20대	55.0	32.5	10.0	2.5	100.0(40)
	30대	49.2	31.4	19.0	0.5	100.0(659)
	40대	57.9	25.0	15.8	1.3	100.0(76)
	50대 이상	72.2	27.8	0.0	0.0	100.0(18)
부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51.5	34.9	13.4	0.3	100.0(307)
	대재/대졸이상	50.3	28.3	20.6	0.8	100.0(481)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47.9	34.2	17.8	0.0	100.0(73)
	200-299만원	53.8	33.0	12.7	0.5	100.0(212)
	300-399만원	51.7	31.8	15.8	0.7	100.0(292)
	400만원 이상	47.5	24.3	27.6	0.6	100.0(181)
지역	대도시	52.7	29.6	17.1	0.6	100.0(334)
	중소도시	50.4	31.0	18.1	0.5	100.0(403)
	읍면	42.9	35.7	19.6	1.8	100.0(5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전체적으로 기본비용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본비용 외 추가 지불비용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30.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 및 민간 이용 시 국공립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17.8%, 기타 응답이 0.6% 순이었다.

자녀연령,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 부모연령, 부모교육 수준, 부모소득 수준,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았다.

4)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 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차이의 인식

‘국공립 유치원/국공립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민간 보육시설’은 ‘교육비/보육료’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28>과 같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88.1%여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 11.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중 자녀연령, 기관유형, 부모연령, 지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만 3세 이상인 경우에 차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보다 차이를 알고 있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일수록 차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8〉 국공립/사립(민간)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보육료 차이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
전체		88.1	11.9	100.0(1,50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76.8	23.2	100.0(69)
	만 3세 이상	88.7	11.3	100.0(1,431)
	$\chi^2(df = 8.9(1)**$			
기관유형	유치원	91.3	8.7	100.0(750)
	보육시설	84.9	15.1	100.0(750)
$\chi^2(df = 14.7(1)***$				
이용기간	1년 미만	85.5	14.5	100.0(248)
	1-2년 미만	89.0	11.0	100.0(390)
	2-3년 미만	88.6	11.4	100.0(510)
	3년 이상	88.4	11.6	100.0(352)
$\chi^2(df = 2.1(3)$				
부모연령	20대	76.0	24.0	100.0(75)
	30대	88.6	11.4	100.0(1,251)
	40대	89.8	10.2	100.0(147)
	50대 이상	88.9	11.1	100.0(27)
$\chi^2(df = 11.3(3)**$				
부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86.4	13.6	100.0(583)
	대재/대졸이상	89.1	10.9	100.0(909)
$\chi^2(df = 2.4(1)$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82.2	17.8	100.0(157)
	200-299만원	88.3	11.8	100.0(400)
	300-399만원	88.3	11.7	100.0(513)
	400만원 이상	89.7	10.3	100.0(369)
$\chi^2(df = 6.1(3)$				
지역	대도시	90.5	9.5	100.0(653)
	중소도시	87.1	12.9	100.0(712)
	읍면	82.2	17.8	100.0(135)
$\chi^2(df = 8.8(2)*$				

주: *p < .05, **p < .01, ***p < .001

마. 관리·감독의 일원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1) 현행 관리·감독 주관 부처에 대한 인지도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감독하고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29>와 같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5%여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 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3-29> 유치원/보육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
전체		60.5	39.5	100.0(1,50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49.3	50.7	100.0(69)
	만 3세 이상	61.1	38.9	100.0(1,431)
$\chi^2(df = 3.8(1)^*$				
이용기관 유형	유치원	62.3	37.7	100.0(750)
	보육시설	58.8	41.2	100.0(750)
$\chi^2(df = 1.9(1)$				
기관 이용기간	1년 미만	55.2	44.8	100.0(248)
	1-2년 미만	64.4	35.6	100.0(390)
	2-3년 미만	58.0	42.0	100.0(510)
	3년 이상	63.6	36.4	100.0(352)
$\chi^2(df = 8.0(3)^*$				
부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57.3	42.7	100.0(583)
	대재/대졸이상	62.8	37.2	100.0(909)
$\chi^2(df = 4.5(1)^*$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1.6	48.4	100.0(157)
	200-299만원	59.0	41.0	100.0(400)
	300-399만원	64.9	35.1	100.0(513)
	400만원 이상	60.2	39.8	100.0(369)
$\chi^2(df = 9.8(3)^*$				
지역	대도시	61.7	38.3	100.0(653)
	중소도시	61.2	38.8	100.0(712)
	읍면	51.1	48.9	100.0(135)
$\chi^2(df = 5.5(2)$				

주: *p < .05

응답자 특성 중 자녀연령, 기관이용기간, 부모교육수준, 부모소득수준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만 3세 이상의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데 반해 만 3세 미만의 경우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관이용기간에 따라서는 모든 경우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모르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특히 1-2년 미만인 경우와 3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이나 2-3년 미만인 경우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았다. 부모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에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부모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소득수준은 300-399만원으로 나타났다.

2) 국가 주관 기관/시설평가 제도의 필요성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주관하는 평가나 평가인증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30>과 같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95.0%여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5.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45.7%,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4.5%,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0.5% 순이었다.

자녀연령,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 부모연령, 부모교육 수준, 부모소득 수준,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았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기관에 대한 평가나 평가인증의 통과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표 V-3-31>과 같다.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이 91.6%여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8.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자녀연령, 기관유형, 기관이용기간, 부모연령, 부모교육 수준, 부모소득 수준,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3-30〉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주관 평가/평가 인증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한 편임	필요하지 않은 편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전체		49.3	45.7	4.5	0.5	100.0(1,500)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63.8	33.3	2.9	0.0	100.0(69)
	만 3세 이상	48.6	46.3	4.6	0.5	100.0(1,431)
$\chi^2(df) = na$						
기관 유형	유치원	49.3	46.3	4.1	0.3	100.0(750)
	보육시설	49.2	45.2	4.9	0.7	100.0(750)
$\chi^2(df) = na$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52.0	46.0	1.6	0.4	100.0(248)
	1-2년 미만	46.9	47.2	5.4	0.5	100.0(390)
	2-3년 미만	46.5	47.6	5.3	0.6	100.0(510)
	3년 이상	54.0	41.2	4.5	0.3	100.0(352)
$\chi^2(df) = na$						
교육 수준	고졸이하	44.9	49.6	5.0	0.5	100.0(583)
	대재/대졸이상	52.1	43.5	4.0	0.4	100.0(909)
$\chi^2(df) = na$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40.1	55.4	4.5	0.0	100.0(157)
	200-299만원	46.0	49.5	4.0	0.5	100.0(400)
	300-399만원	48.7	46.8	4.1	0.4	100.0(513)
	400만원 이상	56.4	38.2	4.6	0.8	100.0(369)
$\chi^2(df) = na$						
지역	대도시	48.4	46.9	4.0	0.8	100.0(653)
	중소도시	50.4	44.7	4.8	0.1	100.0(712)
	읍면	47.4	45.9	5.9	0.7	100.0(135)
$\chi^2(df) =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표 V-3-31> 유치원/보육시설 선택 시 평가/평가인증을 고려하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고려할 것임	고려하지 않을 것임	계
전체	91.6	8.4	100.0(1,500)
자녀연령	만 3세 미만	4.3	100.0(69)
	만 3세 이상	91.4	100.0(1,431)
$\chi^2(df) = 1.5(1)$			
기관유형	유치원	7.3	100.0(750)
	보육시설	90.5	100.0(750)
$\chi^2(df) = 2.2(2)$			
이용기간	1년 미만	6.5	100.0(248)
	1-2년 미만	7.2	100.0(390)
	2-3년 미만	8.0	100.0(510)
	3년 이상	11.6	100.0(352)
$\chi^2(df) = 6.9(3)$			
부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7.2	100.0(583)
	대재/대졸이상	90.9	100.0(909)
$\chi^2(df) = 1.7(1)$			
부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8.9	100.0(157)
	200-299만원	8.5	100.0(400)
	300-399만원	8.0	100.0(513)
	400만원 이상	7.6	100.0(369)
$\chi^2(df) = 0.4(3)$			
지역	대도시	9.0	100.0(653)
	중소도시	7.7	100.0(712)
	읍면	8.9	100.0(135)
$\chi^2(df) = 0.8(2)$			

3) 유치원/보육시설 선택에서 필요한 정보

자녀를 보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알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1위)은 <표 V-3-32>와 같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및 활동특성이라는 의견이 51.1%로 가장 높았고,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이라는 의견이 27.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교직원의 학력 및 경력 9.9%, 기관의 원아수 현황 4.7%, 비용 4.5%, 이용시간 1.5%, 등/하원 차량의 운행 여부 0.7%, 교사의 인성 0.3%, 기타 0.2%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 중 기관유형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

가 자녀를 보내는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경향은 유사했으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보다 프로그램 및 활동 특성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3-32〉 유치원/보육시설 선택 시 가장 알고 싶은 정보

단위: %(명)

구분	원아 수 현황	교직원 학력·경력	프로그램·활동	시설/환경·안전 관리	비용	이용 시간	차량의 운행 여부	교사의 인성	기타	계
전체	4.7	9.9	51.1	27.1	4.5	1.5	0.7	0.3	0.2	100.0(1,500)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2.9	13.0	37.7	37.7	4.3	4.3	0.0	0.0	100.0(69)
	만 3세 이상	4.8	9.7	51.7	26.6	4.5	1.3	0.7	0.3	100.0(1,431)
$\chi^2(df) = na$										
기관 유형	유치원	5.2	9.6	53.9	26.0	3.2	1.1	0.3	0.4	100.0(750)
	보육시설	4.3	10.1	48.3	28.3	5.9	1.9	1.1	0.3	100.0(750)
$\chi^2(df) = 18.1(8)^*$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3.6	8.9	51.6	30.2	4.0	1.6	0.0	0.0	100.0(248)
	1-2년 미만	5.1	10.3	53.6	23.8	4.1	0.8	0.8	0.8	100.0(390)
	2-3년 미만	4.5	10.2	48.6	29.4	5.1	1.2	0.8	0.2	100.0(510)
	3년 이상	5.4	9.7	51.4	25.3	4.5	2.6	0.9	0.3	100.0(352)
$\chi^2(df) = na$										
부모 연령	20대	5.3	18.7	44.0	25.3	5.3	1.3	0.0	0.0	100.0(75)
	30대	4.8	9.6	52.0	26.6	4.5	1.4	0.6	0.3	100.0(1,251)
	40대	3.4	7.5	47.6	32.0	5.4	2.7	0.7	0.7	100.0(147)
	50대 이상	7.4	11.1	48.1	29.6	0.0	0.0	3.7	0.0	100.0(27)
$\chi^2(df) = na$										
부모 교육 수준	고졸이하	4.8	7.4	48.5	29.7	6.7	1.4	0.9	0.3	100.0(583)
	대재/대졸이상	4.7	11.3	52.8	25.4	3.2	1.5	0.6	0.3	100.0(909)
$\chi^2(df) = na$										
부모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3.2	6.4	51.6	28.7	6.4	1.9	0.6	0.0	100.0(157)
	200-299만원	3.0	9.5	49.5	29.3	6.5	1.0	0.8	0.3	100.0(400)
	300-399만원	6.8	9.6	51.7	27.7	2.5	1.4	0.2	0.2	100.0(513)
	400만원 이상	4.1	11.9	51.2	24.1	4.6	2.2	1.1	0.8	100.0(369)
$\chi^2(df) = na$										
지역	대도시	4.7	9.0	52.5	26.2	4.7	1.5	0.9	0.2	100.0(653)
	중소도시	4.6	11.2	51.8	25.8	3.7	1.4	0.6	0.6	100.0(712)
	읍 면	5.2	6.7	40.0	38.5	8.1	1.5	0.0	0.0	100.0(135)
$\chi^2(df) = na$										

주: * p < .05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냄.

4. 소결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보육시설의 일원화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아이가 유아인 경우 유치원과 보육시설 중 어디를 보낼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필요성 중 하나가 수요자인 부모가 선택의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과반수가 선택에서 고민을 한다는 조사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모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차이가 있는 기관(시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결과는 부모들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프로그램, 비용, 교사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교사의 학력에 대한 기대를 보면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다. 유치원교사에 대해서는 적정학력 수준이 대학졸업(73.4%)으로 나왔으나 보육시설에서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는 전문대졸(56.0%)이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었다.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56.1%가 전문대졸을 적당하다고 보았고 학력이 무관하다고 보는 입장도 24.6%였다. 그러나 앞으로 영유아를 모두 돌보게 될 일원화된 체계에서 교사의 적정학력 수준을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졸(41.3%)이라고 답한 결과는, 보편적으로 부모가 기대하는 교사의 학력 수준을 말해준다.

셋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에 대해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시설)은 영아/유아 등 연령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계나 전문가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통합된 일원화와는 상치되는 결과로 다소 의외이나, 부모들이 생각하는 연령별 이원화는 체제의 이원화라기보다는 영/유아별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요구가 반영된 기관/시설면에 한한 이원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응답부모의 40%가량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각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있는 현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체제의 차이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경험하는 현장의 중요성만을 고려한 응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VI.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정책방안

이상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및 협력에 대한 학회의 의견, 외국의 사례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본 센터에서 추진한 유아교육과 보육과 통합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연구진들의 집중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정책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0-5세 연령 전체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통합을 기본 전제로 하되, 그 중간 단계의 방안으로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협력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연령을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관·시설, 교사 자격, 교육·보육과정, 관리·감독 체계, 예산 지원의 다섯 가지 부문별로 이상과 같은 3가지 방안에 근거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기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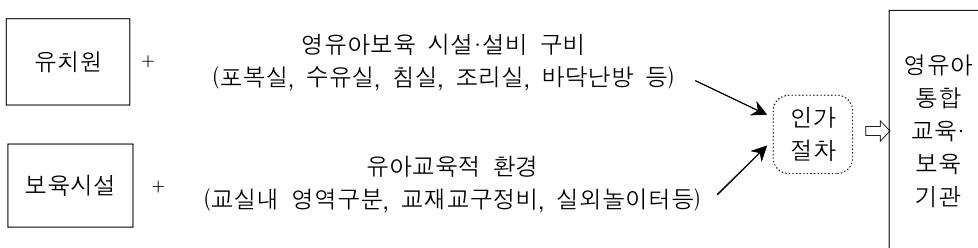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방안을 일원화 통합과 연령별 이원화 방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기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측면, 특히 서비스 대상 아동 연령, 서비스 운영시간, 그리고 설치 및 관련 기준이라는 면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현행을 유지하며 협력을 위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시설·설비·환경 등에서 방안제시가 쉽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앞서 여러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통합 경향 및 OECD의 권고와도 일치하는 입장이며,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연령별로 구분된 시설·기관에 대한 높은 선호도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하겠다.

가. 통합안

1) 방향

유치원, 보육시설의 구분 없이 하나의 기관으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통합할 때 대상 아동의 연령은 모든 기관에서 0-5세까지가 된다. 이렇게 통합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관·시설의 근거와 설치기준을 밝히고 있는 법적 준거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0-5세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또는 시설)으로 일원화하는 경우 현재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통합기관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어린 연령의 영아를 포함한 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 교재교구 등을 갖추는 쪽으로 변화해야 하고 보육시설은 보다 교육전문적인 마인드를 도입하여 일과 운영과 시설·설비, 교재교구 등에서 질적 수준이 제고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유치원에 영아보육을 위한 수유용품, 수유실, 포복실, 영아 및 유아를 낮잠 공간 및 침구, 조리실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보육시설은 교실면적을 넓히고 자유놀이공간 등 교육환경을 재구성하고 실외놀이시설을 필수로 갖추며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비에 주력해야한다¹⁴⁾. 모든 연령을 위한 시설·설비가 갖추어진 곳에 한하여 통합기관 또는 통합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림 VI-1-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기관화 과정

14) 교사나 교육과정 관련 통합 논의는 다음에 이어서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함.

2) 방안

가) 법령의 통합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이 먼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법은 만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집행을 의거하고 있는 법인데 반해 영유아보육법은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행정적 근거를 의거하고 있는 법이다. 만일 0-5세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다면 일단 영유아보육법이 대상연령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용가능성이 커보인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적 투자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유아교육법의 지향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기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내용을 두 법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 보다 발전적인 통합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통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법의 목적을 보면,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호와 교육, 보호자의 경제·사회 활동 지원, 가정복지 증진’이라고 명시하여 교육을 포함하기는 하나 보다 복지적인 관점을 강조한 목적을 진술하고 있다. 통합된 기관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져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기본으로 가지면서도 유아 및 영아의 교육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영유아 교육과 보호에 관한 법’을 가능한 안으로 생각하며 제안하는 법의 목적은 “영유아의 교육, 보호자의 경제·사회 활동 지원 목적의 영유아 보호”이다.

둘째, 통합된 법은 현재의 영유아보육법과 동일하게 만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통합된 법에 나타나는 기관·시설 및 서비스의 성격은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을 ‘학교’로 구분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스웨덴을 비롯하여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주도해온 세계 여러 국가의 추세를 보지 않더라도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시설보다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할 때 프로그램이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통합 기관을 ‘학교’로 분류할지 ‘복지시설’로 분류할지는 관할 중앙부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통합된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가정 복지 증진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임은 분명하다.

넷째,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기관·시설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 민간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통합법은 이러한 유형을 국공립 기관과 사립기관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사립기관유형 내에 설립 특성을 살려 직장이나 가정 등을 포함하는 형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보다 간결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자세한 유형구분을 할 수도 있다.

다섯째, 기관의 설치기준령에 있어 현재는 유치원은 대통령령,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통합된 법은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현재 유치원은 학교의 운영체제를 따르고 있어 ‘학년도’를 일 년의 단위로 하고 있다. 즉 3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까지의 기간을 운영의 1년으로 보고 여름과 겨울 중 총 2-3개월의 방학을 두고 있다. 보육시설은 특별히 정해진 학년도 방식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유치원식의 1년으로 운영하는 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부모)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보육시설은 유치원만큼의 장기 방학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시설보수나 교사휴가 등을 위해 연간 1-2주의 휴가기간을 두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통합 기관은 유아교육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기능을 함께 지녀야 하므로 학교 방식의 학년도와 장기간의 방학 체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3월부터 시작의 의미를 두는 것은 사회 관념상 어려움 없이 수용 가능할 것이나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볼 때 장기방학을 두기 보다는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 운영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곱째,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 나타나있지 않다. 통합기관의 운영을 위한 법에는 이를 통일해야할 필요가 있는 바,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원장, 교사, 지역인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덟째,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보육시설 이용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하도록 하는 규칙이 있고 유치원에는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정해져 있는 입소 우선자의 순위제

도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통합기관에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자녀에 대한 입소 우대제도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다음 <표 VI-1-1>에 정리되어 있다.

<표 VI-1-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령)의 기관·시설 관련 내용의 통합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통합시 법령
목적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영유아 보호와 교육,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 지원, 가정복지 증진 목적	교육 또는 보육 중심에 따른 조정이 필요함.
대상	만3세부터 취학 전 아동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 채택
서비스 성격	교육	보호·양육·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또는 보육 중심에 따른 조정이 필요함.
기관/시설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	보호자 위탁에 의한 보육 “시설”	
용어정의	반일제: 1일 3-5시간 시간연장제: 1일 5-8시간 종일제: 1일 8시간 이상	-	㉠ 채택
이념	-	아동의 권리를 위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 원칙 적용	㉡을 참고하여 이념제시 필요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이미 동일함.
기관(시설) 구분	- 국립유치원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국공립보육시설 - 법인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	국공립과 사립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바람직함. ㉠채택
설치기준 법령	대통령령	보건복지가족부령	교육 또는 보육 중심에 따른 조정이 필요함.
설립인가 (국공립 외)	시·도 교육감 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학년도 개념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	-	통합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실을 고려하면 ㉠채택이 무난함.
운영위원회	-	국공립 등 취약보육 실시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운영위원회 설치 필요. ㉡채택
기관(시설) 우선 이용자	-	1. 기초생활수급자 2. 편부모 자녀 3. 차상위 계층 자녀 4. 장애아 5. 근로자 자녀 우선 이용권 부여(28조)	동일 기준이 필요함.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필요.

나) 운영시간의 통합

유치원은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으로 지역 사정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운영시간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동별로 주어지는 국가의 보조금은 반일제의 유치원 교육비를 기준하여 지급된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하루 12시간을 정규 시간으로 기준하여 모든 보육시설이 종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또한 종일제 보육료에 맞추어 지급된다. 보육시설은 종일제 기준이고 유치원은 반일제 기준으로 보육료와 교육비가 책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보육시설의 보육료에는 급·간식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업료를 내고 있으면서 급식비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 유치원의 경우와는 비용 산정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0-5세 일원화 통합을 위해서는 운영시간에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능한 방안으로서는 현재 유치원의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방식으로 다양한 운영시간이 있어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바, 통합된 기관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시작 시간을 참고하여, 7시부터 최대 오후 12시까지 반일제반이 가능하고 오후 3시경까지 시간연장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후 7시까지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기관이나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오전 7시가 아니라 9시부터 12시나 3시,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여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보조금 등은 기본 운영시간에 맞추어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에 기준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보육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취약보육 즉, 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취업모 가정의 양육지원 서비스는 통합된 기관의 일부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지역사정과 시설설립유형(사립/국공립)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관에서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 가정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는 취약보육이 확대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연장된 형태의 보육이 줄어드는 쪽이 직장, 가정, 국가가 모두 노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다) 시설·설비 기준의 통합

기관·시설의 통합을 위해서는 시설·설비 관련 기준이 통합되어야 한다. 법령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법령에 제시된 설치기준 또한 통합이 될 것이나 구체적으

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보다 환경면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상향조정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유치원은 설립주체가 유치원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시설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기관 건물이나 대지에 대한 자의적인 매도 및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설립 주체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대나 시설 처분에 대한 금지조항도 없다. 이것은 유치원이 학교 성격의 기관이나 보육시설은 복지시설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통합된 기관은 교육 중심의 학교가 되거나 보육 중심의 보육시설 형태가 되거나 하는 사항과는 무관하게, 기관의 질적 수준을 생각한다면 현재 유치원이 가진 임대 및 처분 불허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임대료를 지불하여 운영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 보다 높은 질적 투자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영유아에 대한 안정된 교육·보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담보, 매도는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보육의 0-5세 통합기관은 현재의 유치원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임대 불허와 매도·담보 제공 금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기관·시설의 면적기준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건물면적기준을 보면, 현재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은 40명 이하 소규모 기관일 경우, $5Nm^2$ (단, N은 아동수), 41명 이상인 경우 $80+3Nm^2$ 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육시설은 $4.29Nm^2$ 로, 소규모인 경우는 유치원에 요구되는 면적기준이 넓으나 아동수가 많아질수록 보육시설의 요구면적이 넓게 책정되어 있다. 보육시설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급·간식과 낮잠, 세면 등 교육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조리실, 샤워실, 수면실, 수유실 등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활공간과 관련한 사항들은 통합된 시설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다 상향된 조건을 취하여 통합시설의 면적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50명 이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우 $5N m^2$ (단, N은 아동수)
- ▶ 51명 이상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우 $4.29N m^2$ (단, N은 아동수)

셋째, 통합기관의 설치위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보육시설은 1층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유치원은 1층 또는 2층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기관의 경우 아

동의 연령이 유치원보다는 어려워지는 만큼 안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보육시설의 설치위치기준을 받아들여 1층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실외놀이터 설치 기준도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유치원은 40인 이하인 경우 일률적으로 160m², 41인 이상인 경우는 120+N m²(단, N은 아동수)를 실외놀이터 면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설치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보육시설은 이보다 완화되어 50인 미만 시설은 의무설치 조항이 없고 50인 이상일 때 2.5Nm²(단, N은 아동수)이라는 설치조건을 두고 있다. 유치원과 비교해보면 80인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이 요구하는 실외놀이터 면적이 더 넓어지고 50-80인 사이는 유치원의 요구 면적이 더 넓으며 50인 이하 보육시설은 아예 실외놀이터가 없어도 되는 것이다. 통합기관은 이러한 조건들을 조정하여 한 가지 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실외놀이터면적 기준을 가져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 ▶ 40인 이하인 경우 160 m²
- ▶ 41인 이상 80인 이하인 경우 120+N m²(단, N은 아동수)
- ▶ 81인 이상인 경우 2.5N m²(단, N은 아동수)

지금까지 논의된 기관·시설 설치기준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VI-1-2>과 같다.

<표 VI-1-2> 기관·시설 설치 기준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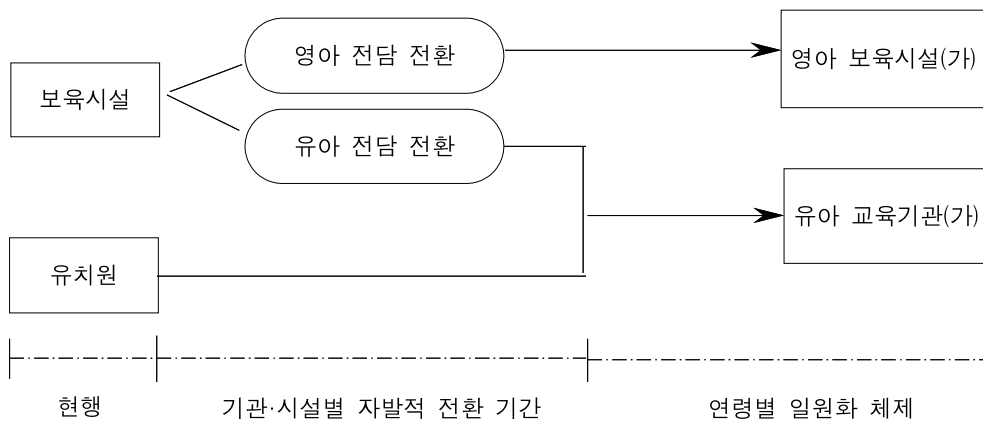
	현행 유치원 기준	현행 보육시설 기준	통합 기관(시설) 기준
시설 임대	불허	제한 없음	불허
시설 처분	매도·담보제공 금지	제한 없음	매도·담보제공 금지
교사 면적(m ²)	-5N(40명 이하) -80+3N(41명 이상)	4.29N	-5N(50명 이하) -4.29N(51명 이상)
설치 위치	1, 2층 원칙	1층 원칙	1층 원칙
실외 놀이터	-160(40명 이하) -120+N(41명 이상)	2.5N(50인 미만 제외)	-160(40명 이하) -120+N(41-80명) -2.5N(81명 이상)

나. 연령별 이원화 또는 협력 방안

1) 방향

기관·시설 측면의 연령별 이원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협력 방안으로 거론될 수도 있다. 즉 연령별로 이원화된 체제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각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령이 높아지면 보육시설의 아동은 유치원으로, 유치원의 아동은 초등학교로 이동하는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유치원 교육이 초등학교와 연계되고 두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서로 연계와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령별 이원화 방안은 두 기관간 협력이 요구되는 체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연령별 이원화 또는 협력 방안은 어떻게 연령을 구분하는가에 따라 몇 가지의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제안되어 온 기존의 방안들을 총괄해 볼 때 0-2세/3-5세안, 0-3세/3-5세안, 0-4세/5세안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 0-2세/3-5세 또는 0-3세/3-5세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고 0-4세/5세안은 비교적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연령구분을 명확히 하기 보다는 ‘2세 정도까지의 영아’와 ‘3세 이상 6세 미만 유아’로 구분하여 연령별 일원화를 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VI-1-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령별 일원화 과정

2) 방안

가) 법령 및 설치기준의 연령별 이원화

연령별로 이원화를 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을 구분하게 되면 영아는 상대적으로 보육과 보다 깊은 관련이 있고 유아는 유아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행의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의 대상이 3세 미만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히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관련 부처(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아교육을 담당할 것이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복지관련 부처(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명칭을 하여야 할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만 명시하고 있으나 연령별 일원화가 되면 모든 유아담당 기관에서 종일반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므로 유아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보호(care)도 함께 제시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은 대부분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아보육법으로 법명을 변경하는 것이 더 내용을 분명하게 해준다. 기관(시설)유형은 국립, 공립, 사립 등 세 가지로 통일하고 설립인가나 책임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어도 큰 무리가 없다. 유아교육법이 유아를 위한 기관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영아보육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자세한 사항의 개선과 비교는 다음 <표 VI-1-3>에 제시되고 있다.

설치기준은 앞서 언급한 통합된 기관(시설)에서 제시된 바를 영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에서 구분 없이 그대로 따를 수 있다. 이는 현행에서 각자 우수한 점을 선택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한 바이므로, 둘 모두가 적용하기에도 적절하다.

〈표 VI-1-3〉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연령별 이원화안^{주)}

	㉠ 유아교육법	㉡ 영아보육법	비고
목적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영유아 보호와 교육,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 지원, 가정복지 증진 목적	두 법 모두에 교육과 보육의 목적이 포함됨
대상	취학 전 유아	영아	영아보육법 대상 변경
서비스 성격	보호 를 포함하는 “교육서비스”	보호·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두 기관·시설이 모두 교육·보육 포함
기관/시설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	보호자 위탁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시간	반일제: 1일 3-5시간 시간연장제: 1일 5-8시간 종일제: 1일 8시간 이상 취약보육: 야간시간, 휴일, 24시간, 일시	반일제: 1일 3-5시간 종일제: 1일 8시간 이상 취약보육: 야간시간, 휴일, 24시간, 일시	- 아동보육법에서는 ‘시간연장제’ 제외 - 유아교육법에 ‘취약보육’ 첨가
이념	아동의 권리를 위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 원칙 적용	아동의 권리를 위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 원칙 적용	두 법의 동일화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이미 동일함.
기관(시설) 구분	- 국립유치원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국공립 영아보육시설 - 사립 영아보육시설	국공립과 사립의 유형으로 정리
설치기준 법령	대통령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령	두 법에 차이 있음
설립인가 (국공립 외)	시·도 교육감 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학년도 개념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	-	영아보육법에서는 채택 필요성 없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공립 등 취약보육 실시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운영위원회 설치 필요.
기관(시설) 우선 이용자	1. 기초생활수급자 2. 편부모 자녀 3. 차상위 계층 자녀 4. 장애아 5. 근로자 자녀 우선 이용권 부여	1. 기초생활수급자 2. 편부모 자녀 3. 차상위 계층 자녀 4. 장애아 5. 근로자 자녀 우선 이용권 부여(28조)	동일 기준이 필요함.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필요.

주: 표에서 **진하게** 표현된 내용은 현재 법에는 없으나 연령별 이원화 체제에서는 필요하여 첨가되어야 할 사항을 강조하여 정리해 둔 것임.

나) 운영시간

운영시간에 있어서는 특히 두 가지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유아교육법에 ‘취약보육’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유치원은 종일반이 끝나는 6, 7시 이후에나 토요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또한 교육법상 법적 수업일수를 지켜 대부분 방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시간은 현재의 3-5세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유치원과 달리 보육시설은 경제, 사회활동을 하는 영유아 부모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다양한 시간별 운영을 제공하고 있는 바, 만일 3-5세를 하나의 기관이 총괄적으로 교육·보육 담당을 하게 된다면 교육을 벗어나 보육적 마인드를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령별로 일원화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소위 취약보육, 즉 종일반 이후 10-11시까지의 야간 운영, 토요일 시간연장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일시 보육 등을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측면, 시설설비 측면, 기관운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와 같은 장기간의 방학도 불가능하며 이는 앞서 1안, 통합적 기관운영에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연중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비록 유아교육기관이 법적으로 ‘학교’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보육의 기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차별되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영아보육법에서는 유아교육법과 마찬가지로 반일제, 종일제, 취약보육을 모두 시간운영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시간연장제’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연장제는 1일 5-8시간 운영을 의미하는 것인 바, 만3세이하 어린 영유아의 경우 꼭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짧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장애인 부모, 또는 극빈층의 경우 등 어린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경우에 한해 종일보육 또는 취약보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사회적으로 진행해 가야할 방향이므로, 3-5시간 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반일제 프로그램이나 종일제, 취약보육 등만 법에 명시하고 시간연장제는 제외시키도록 한다.

2. 교사 자격

가. 통합안

1) 방향

교사 자격제도 측면에서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는 꼭 필요한 과정이나 현실적으로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 자격제도의 일원화에 따른 부수적인 과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여 협력 또는 단계적 일원화를 우선적으로 지지하기도 한다.

교사 자격제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는 양성교육과정과 자격기준의 일원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과 같은 학제에서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학력(교육연한)에 대한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과 자격제도의 일원화에 대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¹⁵⁾와 관련 학회의 의견 결과를(2장 내용 참조)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0-5세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영유아교사(가칭)’를 양성한다.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통합한 ‘영유아교사(가칭)’의 자격기준을 조정하여 자격제도를 일원화하고, 영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동의 양성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한다.

15)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및 기관의 교수를 대상으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일원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미화외,2006), 82%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교사양성시 ‘자격증 관리부처’와 ‘양성교육내용’을 우선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또한 93%가 표준화된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교사의 적정학력으로는 ‘4년’이 57%정도로 가장 많았음. 적절한 자격부여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유치원교사 자격부여방식인 ‘특정학과에서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게 무시험 검정을 통해서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자격별 역할구분에 대해서는 48%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방식으로는 ‘영아교사/유아교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교사자격제도의 일원화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을 위해 가장 핵심적 과제로 지목되었음(이옥외, 2006).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개선 방향으로 상향 동일화하여 격차를 해소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교사자격에 관계없이 상호고용을 허용한 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2) 방안

가)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일원화

영유아교사 자격제도 일원화를 전제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양성교육과정의 내용이다. 영유아교사 모두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과 그 내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발달변화가 심하고 긴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교사가 어떤 연령을 담당하더라도 충분히 준비되도록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이는 유보일원화의 일단계 과정일 것이다.

이전에 유치원 중심으로 유아교육기관이 운영될 때에 유아교육과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영아반 또는 종일반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보육계의 요구에 의해 연령의 하향화와 종일반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실제 유사한 내용의 반복일 뿐 현장과 연령의 차이에서 오는 요구를 잘 반영하는 변화로는 여기질 않았다. 양성 교육기관에서도 양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반영하는데 급급하였으며 이는 일원화를 고려한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성교육기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어느 연령을 담당하든지 그 연령의 영유아를 이해하고 보살피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자격제도의 일원화에 따라 개정된 자격기준에 의해 대학에서는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전공 학과를 도입하고, 표준양성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한다. 교과목의 내용과 학점 수를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현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영유아교사를 위해 개발될 표준양성교육과정은 0-5세 연령의 영유아들을 이해하고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또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내용과 교과목, 운영방법,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할 인격적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영유아교사의 직무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교사가 양성 교육과정에서 받아야 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내용과 교과목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조정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학력인 양성교육과정의 교육연한은 양성교육과정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의 차이를 볼 때 전공영역의 개설교과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육연한을 논할 때 몇 년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전문대학에서 2년을 배우는 것이 영유아교사를 시작하기에 부족하고 단순하게 3년 또는 4년이 더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는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주는 한계 때문에 물리적인 연한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현행 학제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자격제도의 일원화를 위해서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조정한다. 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 수준으로 동일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제시한 근거법과 소관부처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미래 인적 자원 양성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담당하는 영유아교사의 자격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을 자격 취득 최소 학력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학제개편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고 이런 점에서 유보일원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교사 처우와 연결하여 시작 단계부터 자격에 따른 처우를 확실하게 높이자는 의도가 포함되었다.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 정교사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되 전문학사의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자격기준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종일제, 영아보육 등) 보조교사를 둔다. 또한 현행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과정은 영유아교사의 학력고양 등의 재교육 방향으로 전환한다.

〈표 VI-2-1〉 교사 자격제도 일원화를 위한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명칭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영유아교사
근거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관련법 일원화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처 일원화
자격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격증 검정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자격증 검정수여	담당부처장관이 자격증 검정수여
자격취득 최소학력	전문대학 졸업(이상)/ 고등학교 졸업(이상)	4년제대학 졸업(이상) (전문대학졸업자 경과조치)
자격구분	유치원 준교사, 2급·1급 정교사, 원감, 원장/ 3급·2급·1급 보육교사, 시설장	영유아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 (보조교사제 도입)

다) 영유아교사의 처우

현재 2·3년제 출신과 4년제 출신의 처우와 역할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사 자격제도의 유보일원화가 이루어져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4년제 출신으로 자격을 취득한 영유아교사의 처우는 장기적으로는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고, 근무여건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특히 국공립과 사립(민간)시설의 교사처우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연봉은 국공립 교사의 50-70% 정도 수준으로 기본임금이 매우 낮아 교사의 사기와 이직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과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사립/민간 기관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영유아교사가 수업활동이나 교구·교재연구, 영유아 관찰 및 기록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시설의 관리, 유지를 위한 보조교사를 시설에 채용하도록 한다. 영유아교사의 자격에 따라 처우와 역할에 있어서의 차등을 확실히 두되, 교사들이 자신의 자격을 꾸준히 보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보조교사시간도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인원을 늘리는 등의 차별적 접근으로 단계적으로 계획한다.

라) 현직 재교육과정

교사 자격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양성교육과정의 개선, 교사의 처우 및 역할의 차등 운영 등은 현직 재교육과정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교육은 현재 유치원교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1급 정교사 연수가 주가 되고, 그 외에도 산발적으로 많은 단편적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보육교사를 위해서는 승급교육과 보수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시행 초기단계여서 내용의 질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체교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신장의 효과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재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의 경력과 자격이 다양한 차이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별화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자격,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 받은 정도, 그리고 경력관리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현장으로의 이동 등을 위한 준비교육 등 필요와 요구에 따라 현직 재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상호고용을 위해서도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준비를 담당할 기관이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부터 재교육시스템을 보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측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상호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현재 이원화체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도 되고 앞으로 일원화를 위한 준비도 될 것이다.

마) 기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양성하는 3급 보육교사제를 폐지(또는 보조교사제)하고, 보육교사교육원은 교사자격 일원화 이후 현행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기능을 부여하여 기존 인력의 직무연수와 승급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영유아교사 일원화 이후 보조교사와 같은 새로운 육아지원인력의 연수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영유아교사 자격 일원화 이전에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상호고용 허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나. 협력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실현가능성 여부 및 우선과제를 전문가와 공무원은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통합을, 현장은 행·재정 통합을 우선 과제로 지적(이옥 외, 2006) 하였으나, 교사양성 및 자격제도 통합 역시 근거법과 소관부처의 통합 없이는 실행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가능한 바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관리를 담당했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교사자격관리 체계 기능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양성연수과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업무를 협조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관련 정보 관리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조정안을 마련한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유치원교사자격과 보육교사자격의 상호고용이 허용되지 않아서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대부분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보육교사 자격증만 소유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에만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간 상호고용을 위한 재교육을 이수하고 근무하는 경우 소관부처에서는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한다.

다. 연령별 이원화안

교사자격제도를 연령별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영아담당교사와 유아담당교사로 구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현실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단 양성교육과정에서 실습을 강화하여 영아대상 실습과 유아대상 실습을 구분하여 두 번의 실습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유보일원화 단계에서 기존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재교육을 통한 자격 전환 및 정리 단계에서 ‘영유아교사’ 자격증을 구분하여 영아담당교사와 유아담당교사로 선택하여 일시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격급수는 양성교육과정에 따라 구분하고, 그 역할과 처우에 차등을 둔다. 영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자격을 꾸준히 보완해나갈 수 있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영유아교사(가칭) 수급계획에 따른 일원화된 영유아교사 양성대학의 정원을 조정한다.

3. 교육·보육 과정

가. 통합안

1) 방향

0-5세를 위한 국가 수준의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과정(가칭)을 개발한다. 새로운 영유아 교육과정은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삶의 기초로서 생애 초기의 교육을 위해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하며, 상위 교육과정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2) 방안

가) 법적 근거 마련

우선 0-5세를 위한 국가 수준의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근거 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조정,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0-5세를 위한 국가 수준의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은 하나의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와 보육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는 <표 VI-3-1>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 1항은 ‘유치원은 영유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 3항은 ‘보육시설은 영유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영유아 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나머지 조항은 담당부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수정한다.

〈표 VI-3-1〉 통합교육과정을 위한 근거 법 개정 안

현행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교육·보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영유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보육과정) 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교육·보육과정 등) ① 보육시설은 영유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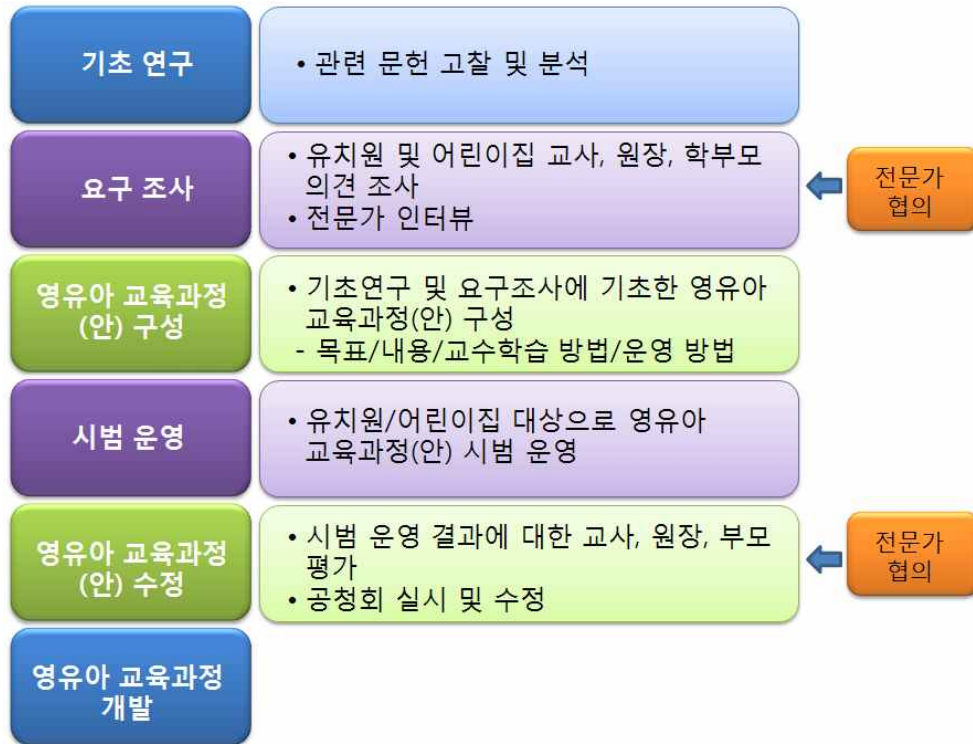
나) 개발과정

0-5세를 위한 국가수준의 일원화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는 현장의 전문가를 포함한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과정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생애 초기 교육으로서의 기초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영아기 교육과정은 그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유아기 교육과정과 달리 2007년 공포된 표준보육과정에서 최초로 국가수준에서 논의되었다. 따라서 영아기 교육과정에서는 영아발달, 영아교육,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은 개발주체가 결정되고 개발 연구팀이 구성되면, [그림 VI-3-1]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첫째, 기초 조사로 영유아 교육과정에 대한 관련 문헌 및 연구, 기존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검토 분석한다. 둘째,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원장, 부모,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운영 등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유아교육, 보육, 초·중등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기초 조사 및 의견 수렴에 근거하여 영유아 교육과정(안)을 구성한다. 넷째, 0-5세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성된 영유아 교육과정(안)을 적용하고 시행한다. 다섯째, 영유아 교육과정(안)의 적용에 대한 교사, 원장, 부모들의 평가를 실시

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여 수정한다. 여섯째,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영유아 교육과정(안)을 수정·보완하여 영유아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그림 VI-3-1]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과정

다) 개발 내용

영유아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에 두되, 교육과 보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부모들이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인성지도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한편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

여 현장의 상황에 부합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종일제프로그램, 야간보육, 장애아 통합교육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영유아 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각 수준의 내용이 점차 심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초등교육과의 연계도 염두에 둔다. 영유아 교육과정은 영아와 유아의 특성을 최대한 살피는 관점에서 개발하되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모든 연령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교육과정 전문가와 교과 전문가의 영역별 내용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초중등 교육과정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위 교육과정과도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생애 전체 교육의 맥락에서 영유아기에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기준(standards)을 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구성한다. 이때에는 다른 나라의 영유아기 학습 기준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반영한다.

라) 적용 및 지원

영유아 교육과정 일원화를 이룬 후에는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재정적 협력과 공조는 질 높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영유아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교육 활동집, 자료집, 교재교구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는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뿐 아니라 활동자료집 개발, 교사교육, 장학, 평가 등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다양한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통하여 현장교사의 능력 및 자질을 향상시키고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영유아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나 장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 이원화된 상황에서 야기되고 있는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각종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영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족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

시한다.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시행 및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모교육이나 각종 지원방안이 폭 넓게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 협력과 조정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보급되는 동안에는 연령별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병행하여 적용하되, 영아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거나,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협력안

현행대로 유치원은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시설은 현행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한다. 단,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 동시에 개정하며,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과정은 협의를 통해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과 일치를 추구해야 할 부분을 합의하고 나머지는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1) 법적 근거 마련

우선 현행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근거 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유지하되,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 협의하는 내용과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 조정,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의 개정안은 <표 VI-3-2>와 같다.

2) 개정 과정

교육·보육과정 개정 전에는 영아는 현행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아는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공통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보육과정 개정은 동시에 하며,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과정은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과 일치를 추구해야 할 부분을 합의하고 나머지는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현행대로 보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고시·시행하고, 각 부처는 담당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에 따른 자료집 개발과 교사교육을 진행하며, 장학이나 조력을 담당한다. 단, 유아를 위한 자료집 개발과 교사교육은 두 부처가 협조하여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표 VI-3-2〉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 상호 협의를 위한 근거 법 개정 안

현행법	개정안
<p>○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교육과정 등)</p> <p>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교육과정 등)</p> <p>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되,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p> <p>③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하되, 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공통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p> <p>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보육과정)</p> <p>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p>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통합교육·보육과정 등)</p> <p>①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다.</p> <p>③ 시장과 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보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하되, 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공통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p> <p>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과정에 의거하여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다. 연령별 이원화안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과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각각 개발하여 연령별로 같은 교육·보육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여 개발하며,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개발한다. 새로운 교육·보육과정은 각각 개발하더라도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삶의 기초로서 생애 초기의 교육을 위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1) 법적 근거 마련

우선 연령별 교육·보육과정 개발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근거 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조정,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의 개정안은 <표 VI-3-3>와 같다. 유아교육법을 그대로 두되, 영유아교육법 제 4장 제 29조는 영아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 개발을 전제로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과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2) 개발 과정

영아와 유아를 위한 연령별 교육·보육과정 개발을 위해 ‘영아보육과정 개발위원회(가칭)’와 ‘유아교육과정 개발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각 위원회는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생애 초기 교육으로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하게 협조한다. 연령별 교육·보육과정은 영아와 유아의 특성을 최대한 살피는 관점에서 제정하되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모든 연령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더불어 초중등 교육과정전문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위 교육과정과도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영아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이 개발되고 보급되는 동안에는 연령별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병행하여 적용하되, 영아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보육과정’을, 유아에 대해서는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공통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고시·시행하며, 각 부처는 담당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에 따른 자료집 개발과 교사교육을 각각 진행하며, 담당 연령에 대한 교육과정 장학과 조력을 담당한다.

〈표 VI-3-3〉 연령별 교육·보육과정을 위한 근거 법 개정 안

현행법	개정안
<p>○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교육과정 등)</p> <p>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교육과정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보육과정)</p> <p>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p>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통합교육·보육과정 등)</p> <p>① 보육시설은 영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과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에 의거하여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4. 관리·감독 체계

가. 통합안

1) 방향

0세-만 5세를 위한 국가 수준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감독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취학전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과 영유아권 관계없이 교육·보육 및 복지가 통합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방안

우선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 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조정,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고 심의기구로 유아교육·보육 통합 위원회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유아교육·보육 통합 조정 기구 설치

국가수준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영유아교육·보육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이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위원회는 현행 유아교육법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및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기능을 참고하되, 초기에는 통합 추진 방안 및 전략 제시의 기능을 강화한다.

영유아교육·보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유·보 통합이전에는 통합 방안 모색이 주요 기능이 되며, 통합 이후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총괄 심의 기능을 담당한다.

- 영유아교육·보육 특별위원회
 - ▶ 소속: 국무총리 소속
 - ▶ 기능: 유아교육·보육 통합 방안, 유아교육·보육 발전 방안 및 이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 추진 방안
 -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 계획
 -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 운영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구성: 위원장 포함 16명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노동부차관
 - 위촉직위원: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 보육계, 여성계, 시민단체 및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각 2명

나) 유아교육·보육 통합 전달체계 구축

국가수준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조정, 통합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¹⁶⁾.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핵심 방안은 기관 명칭을 영유아학교(가칭)로 관리 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단, 제 3의 부처의 신설, 통합도 고려할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재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체계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재의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행정체계를 이용한다. 단, 이 두 경우 모두 현재의 전문직 및 행정 인력을 관리 대상 기관수에 합당하게 대폭 확충하고, 별도의 '실 또는 국' 수준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두 부처의 책임하에 독립적인 부서를 두 부처 중 어느 한 부처에 둘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취학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위임 권한을 가지며 관련

16) 일본의 '就學前子どもに關する教育,保育等の總合的な提供の推進に關する法律(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형태

유·보 통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¹⁷⁾.

다) 통합 평가 기구 설치

통합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합 평가 기구(가칭:영유아학교평가국)를 설치한다. 영유아학교평가국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유치원평가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의 기능을 통합하여 영유아학교의 질관리를 위한 평가 업무를 전담한다.

단,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의 업무 추진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여 그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유치원평가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보육시설평가 인증 전문가 및 사무국 인력의 적절한 협력, 배치 및 활용을 기본으로 고려한다.

영유아학교평가국의 주요 업무는 연령별, 규모별 통합 평가지표 개발, 평가매뉴얼 개발, 평가위원 선발 및 연수, 평가 참여 영유아학교 교원 연수, 평가지원 포털사이트 운영 및 평가관리 on-line 시스템 구축, 평가 DB 구축, 합리적·효율적 평가 체계 수립 및 시행 등이다.

라) 통합 지원 기구 설치

통합된 기관(영유아학교)에 대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기구(가칭:영유아교육·보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영유아교육·보육지원센터에서는 기관의 장학 지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원 연수 및 현장 수업 연구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자료를 지원하고 부모 교육을 실시하며, 기관·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 통합 지원 센터는 현행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지역내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등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영유아교육·보육지원센터는 시·도 차원과 시·군·구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영유아교육·보육지원센터는 시·도별 유아교육·보육 지원 계획 수립, 교육·보육

17) 영국의 슈어스타트국(Sure Start Unit) 형태: 영국 정부는 ECEC 정책을 명료히 하고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는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기술부내에 슈어스타트국을 두어 각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이 슈어스타트국은 2007년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에 그대로 남아 기존 업무를 담당함.

과정 운영 지원 계획, 자율장학 지원 계획, 프로그램 개발·보급 계획, 시범 영유아학교 운영 등 총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한다. 지역영유아교육·보육지원센터에서는 교재·교구 공유 및 대여, 지역내 자율장학회 운영, 지역중심 기관 운영 및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지역내 합동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등을 주로 담당한다.

이 통합지원센터는 중앙의 육아정책개발센터 → 시·도 영유아교육·보육지원센터 → 시·군·구 영유아교육·보육지원센터로 연결되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표 VI-4-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령)의 기관·시설 관련 내용의 통합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통합시 법령
심의기구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위원회
전달체계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청 → 시·군·구청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시 ㉠ 보건복지가족부 통합시 ㉡
평가기구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유아담당관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영유아학교평가국
지원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보육개발원 업무 통합) 중앙보육정보센터 지역보육정보센터	육아정책개발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업무 통합)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정책개발센터 시·도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센터 지역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센터

나. 협력안

현행대로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리하에,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관리하에 두고 현재의 특성을 발전시키되, 양 부처간의 협력, 시·도차원의 협력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적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근거 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유지하되, 부처, 시·도차원, 양 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안 개정, 시도 및 시군구 조례 제정,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1) 최고 심의기구 연계 운영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연계 운영한다. 양 법안에 근거한 두개의 위원회이므로 현실적으로 통합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위원회가 연계되도록 근거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보 협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지자체의 유·보 협력 조례 제정 촉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연계협력 조례 제정

지역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추진하고, 균형적인 유아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과 지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3)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협력 추진 공동조직 구성 및 운영 체제 개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위한 공동 협의 혹은 상호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시·도지사와 교육감간의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협의체(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법률(2006.12.20) 제 41조에 근거한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법률(2006.12.20)

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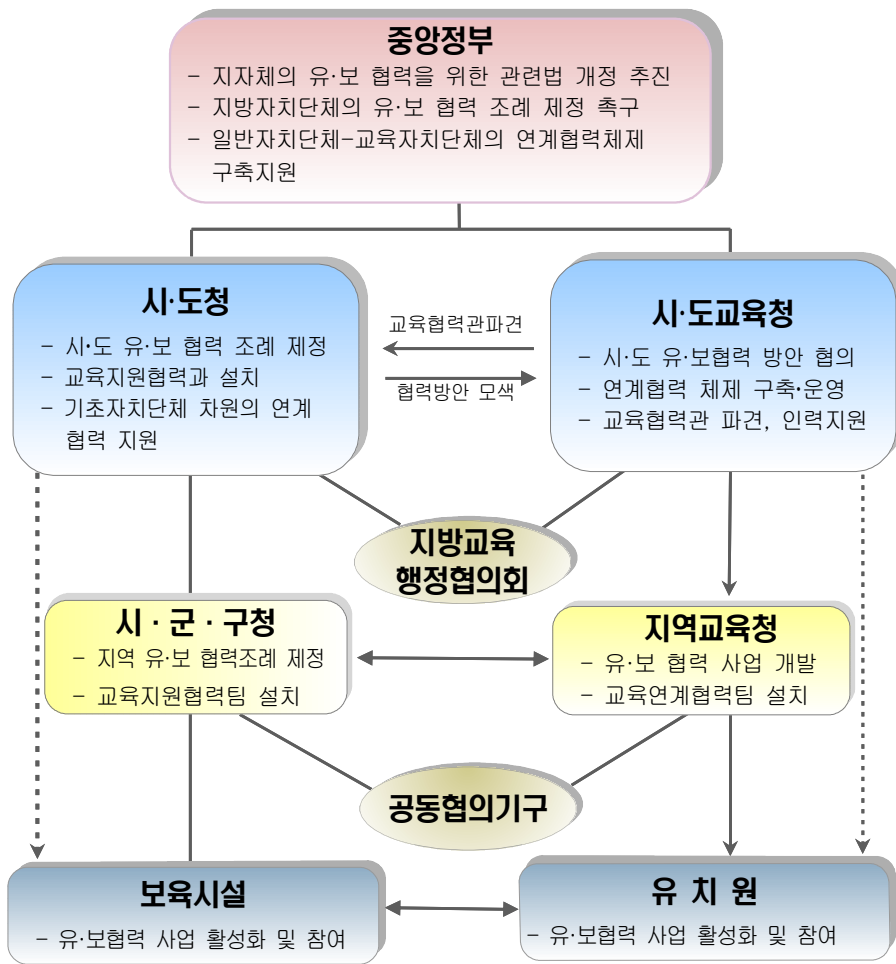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4) 파견인력 및 교육지원·연계 협력 전담과(팀)의 설치

시·도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과 시·도청(또는 시·군·구청)간에 상호 관련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상호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협력관제를 필히 두고, 이와 동시에 관련 인력의 상호 교차근 무

제 등도 개발·시행한다. 양 기관간 상호 연계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이를 주도하는 담당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내에 유아교육과 보육 연계 협력 전담과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유아교육 및 보육 협력 업무를 주도적,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초자치단체 수준(시·군·구청과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기관내에 전담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림 VI-4-1] 유아교육·보육 협력체제 모형

5. 예산 지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영유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고 이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 통합안

1) 방향

육아지원의 대상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한편, 예산지원의 비형평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다. 개선 방안으로는 정부의 예산 투자를 육아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함은 물론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인건비지원을 중심으로 한 기관 지원에서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단위를 영유아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모든 부모들은 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영유아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이 높은 기관 이용을 희망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투자비용이 안정적인 인건비지원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총수 39,150개소중 6,196개원으로 15.8%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접근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비용구조가 낮은 민간/사립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영유아 1인당 비용에 근거하여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수준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운영의 구조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가 44.9%로 나타났다(유치원 37.3%, 보육시설 52.4%). 또한 현재의 교육비, 보육료에 대하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기본 비용의 경우 50.8%(유치원 50.9%, 보육시설 50.7%)이었고, 추가비용 역시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30.8%(유치원 31.5%, 보육시설 30.0%)였다.

2) 방안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들의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예산 지원 규모

육아지원 예산 지원의 규모를 OECD가 권장하는 GDP대비 1%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2008년도 우리나라 GDP가 944조 4,457억 원이므로 1%는 9조 4,444억 원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육아지원 예산을 합했을 때 44,428억 원이므로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최소한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두 배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나) 예산 지원 원칙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교사대 영유아 비율의 통합

현재 교사 1인이 담당하여야 하는 영유아 수가 유치원은 교사 1인당 3세아 20명, 4세 이상은 유아 30명인 반면 보육시설은 교사 1인당 3세아 15명, 4세 이상은 유아 20명으로 재정 운영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만 암묵적으로 유치원은 반일제¹⁸⁾ 운영이 기준으로 종일제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한다. 보육시설은 종일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종일제 취원아에게 불법적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기도 한다.

18)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현재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운영시간 형태는 전업모 자녀 대상의 오후 2시까지 운영과 취업모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오후 7시까지의 종일반 운영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일반적인 운영형태로 오후 2시까지 운영을 반일제반, 오후 7시까지 운영을 종일제반 운영이라고 정의하였음.

〈표 VI-5-1〉 교사대 영유아 비율

단위 : 명

연령	교사 배치기준	
	유치원	보육시설
0		1 : 3
1		1 : 5
2		1 : 7
3	1 : 20	1 : 15
4세 이상	1 : 30	1 : 20

따라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의 통합 운영모형을 확정하여 비용의 징수는 기관의 유형이 아니라 영유아의 연령과 운영시간에 따라 동일한 재정 운영 구조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반일제(오후 2시까지 운영)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운영에서의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반일제(오후 2시까지 운영) 기준으로 하고, 종일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에서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종일제 기준으로 하여 반일제와 종일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유치원에서 3세 이상 1:20과 4세 이상 1:30은 과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일부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3세아를 1:15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예, 대전시교육청), 4세아 1:20, 5세아 1:25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상당수 있는 형편이다. 이를 반영한 영유아의 연령과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모형은 다음〈표 VI-5-2〉와 같다.

〈표 VI-5-2〉 영유아의 연령과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모형(예)

연령	반일제	종일제
0세	1 : 3	1 : 3
1세	1 : 5	1 : 5
2세	1 : 7	1 : 7
3세	1 : 15	1 : 15
4세 이상	1 : 25	1 : 20

(2) 학급당 교사의 동일 배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을 운영시간에 따라 반일제와 종일제를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종일제 운영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관에서 종일제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종일반에는 2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과 모든 보육시설에서는 종일반에 교사가 1명 배치되어 운영된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반일제(12시까지)나 연장제(오후 2시까지) 교실에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는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영유아들이 받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에도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의 통합을 위해서는 운영시간에 따른 교사의 배치가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3) 학급당 동일 시설 기준 적용

유치원 종일제와 보육시설을 비교하여 보면, 연령별 교실의 면적과 설비, 기자재 구비 기준에 차이가 있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받는 교육·보육 여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령별 시설 기준을 통일하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보육 여건이 마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운영의 기준을 마련한 후 신규 설립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경과조치를 두어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두 유형의 기관들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영유아의 연령별 1인당 비용의 통합 단가 마련

기관 운영의 통합 안에 따라 이용비용의 구조가 결정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영유아의연령에 따라, 그리고 반일제와 종일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운영비용이 유치원은 반일제 혹은 연장제, 보육시설은 종일제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반일제(오후 2시까지) 비용으로 운영하고, 종일제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산정한다면 현행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5-3>은 현행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비용단가이며 이를 반일제 단가로 활용할 수 있다.

〈표 VI-5-3〉 현행 운영 비용(2008)

연령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비용 단가(종일제 기준)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비용 단가(반일제 기준)
0세	991,037	
1세	703,273	
2세	542,231	
3세	318,509	395,576
4세 이상	270,164	395,576

비용산출에서는 교사들의 인건비에 대한 통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 시설에 취업하는 교사는 1년제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했거나, 대학의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거나, 유아교육관련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모두 1호봉의 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고학력을 가진 교사들이 보육시설보다는 학력에 따라 호봉을 인정해주는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의 수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 자격증과 관련한 동일한 기준의 원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경과 규정으로, 같은 학력을 가진 유치원 교사나 보육시설 교사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지원 기준의 통합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원인별로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 우선 정부의 무상 교육, 보육의 범주가 설정되면 이 범주에 속하는 영유아들은 무상 지원을 받게 된다. 모든 연령에서 영유아들이 반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종일반 이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후 차등지원은 영유아 가정의 소득 수준, 영유아 취약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무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연령 영유아의 반일반 - 종일반 영유아중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층 · 장애 영유아 · 일정수준 이하 농어촌 자녀 · 일정수준 이하 다문화 가정 자녀 · 일정수준 이하 농어촌(읍·면지역) 가정 자녀 · 기타
차등지원	-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이용 영유아

예산의 지원을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영유아의 연령과 이용 시간만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 역시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공립 기관은 정부 예산 사용 관리 기준에 따라 재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관들이 이에 준하여 재무회계를 운영하고 관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협력안

지원방식의 통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공립인가 사립/민간인가, 유치원인가 보육시설인가에 따라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교사 인건비와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여 영유아의 연령별 소요비용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도록 한다. 우선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비를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연령별로 반일반 비용과 종일반 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를 돌보는 모든 교사들이 학력과 경력에 따라 동일한 근무여건을 확보하도록 하되 중간단계로 현재 교육공무원인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기타 교사를 구분하여 비용을 적용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영유아들이 이용 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만 이용 시간만을 적용하여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중간단계>		<최종 통합단계>	
국공립 유치원	비용단가 A	국공립 유치원	비용단가 A	모든 기관 (국공립·사립 유치원, 국공립·법인· 민간·가정보육 시설)	비용단가 A
국공립·법인보 육시설	비용단가 B	사립유치원, 국공립·법인· 민간·가정보육 시설	비용단가 B		
사립유치원	비용단가 C				
민간·가정 보육시설	비용단가 D				
		종일반 추가 지원		종일반 추가 지원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유아교육 예산지원 현황.
- 김명순·박은혜·신동주·정미라(1999). OECD 주요국가 간의 유아교육제도 비교 분석. 유아교육학회지, 19(2), 119-104.
- 문무경(2006).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2: 스웨덴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문무경(2007).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4: 영국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보건복지가족부(2007. 12). 보육통계.
- 여성가족부(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인정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여성가족부(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 유희정(2006).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 일본 보육정책 동향.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기숙·강민정(2007). 일본의 유보일원화와 「인정어린이원」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27(5), 63-85.
- 이미화·김경희·김문정(2008). 육아지원인력의 재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8-05.
- 이미화·장명림·신나리·김문정·김현철(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03.
- 이 옥(1996).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187-202.
- 이 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01.
- 이일주(1999). 한국 유아교육 일원화체제 모형 탐색.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정선아(2007).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 유아의 권리와 삶의 관점에서. 유아교육연구, 27(6), 101-124.
- 지성애·백선희·채영란(2007). 영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제도. 유아교육연구, 27(5), 135-155.
-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

-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 Choo, K. K. (2004).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in Early Childhood Training in Singapore. UNESCO Policy Brief on Early Childhood, No. 24.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Retrieved November, 22, 2008, from <http://www.standards.dcsf.gov.uk/eyfs/resources/downloads/statutory-framework-update.pdf>
- GB. Parliament(2003). Government Report.
- HM Government(2003). Every Child Matters, Green paper. London: ISO.
- MOE·MCYS(2008). *Improving the Quality of Pre-school Education*.
- MOE-MCYS Pre-School Qualification Accreditation Committee(2004). *Accreditation Standards for Pre-School Teacher Training Courses*. Singapore: Author.
- OECD(2001). Starting strong. Paris: Author.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Paris: Author.
- Skolverket(2005). *Childcare in Sweden*. Retrieved July, 3, 2008, from <http://www.skolverket.se/content/1/c4/09/44/00-531.pdf>
- <http://www.direct.gov.uk/en/Parents/Preschooldevelopmentandlearning/index.htm>
- <http://www.youho.org/gaiyo.html>

부 록

- 부록 1. 한국보육정책학회 원고
- 부록 2. 한국보육지원학회 원고
- 부록 3. 한국보육학회 원고
- 부록 4.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원고
- 부록 5.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원고
- 부록 6.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원고
- 부록 7.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원고
- 부록 8. 한국유아교육학회 원고
- 부록 9. 한국육아지원학회 원고
- 부록 10. 교사 자격 관련 근로기준법
- 부록 11. 질문지

부록 1. 한국보육정책학회 원고

한국보육정책학회의 유보통합에 대한 제언 및 의견.

1. 기관·시설

- 통합에 따른 시설의 형태 다양화를 모색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부의 실제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점차적인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 준다.
- 시설규정 일원화 방안: 0세 지침, 1-2세 지침, 3-4세 지침, 5세 지침으로 나누어 마련하고 정원규모를 이에 맞게 새로이 적용하여야 한다.
- 질 관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일원화한다.
- 교육관련 장학은 교육관련 부서에서 하고, 기타 행정감독은 관련행정부서에서 한다.
- 유치원의 건강, 안전, 영양 기준 강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이 유사함에도 시설 설비 기준이 상이하다.
 - 특히 유치원의 시간이 종일제로 연장되었고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으면서도 건강, 안전, 영양 기준이 미약하다. 따라서 이를 보육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차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교사 자격

- 보육시설 종사자의 공무원 신분 보장을 제안한다.

- 자격시험을 통하여 유치원, 보육 교사의 적절한 인력 수급과 질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
 - 단, 자격시험은 일단 전체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수급을 유지하는 양적인 관리 차원에서 평이한 수준으로 실시한다.
 - 질 관리는 교사가 된 후 연수를 통해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등급화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통합을 위해 기존의 유치원, 보육 교사대상으로 일정시수 이상의 교사 재교육을 실시한다.
- 영유아 교사 자격의 강화
 - 영유아 교사 자격 기준이 상이하므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취득 과정의 공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히 필요하다.
 - 현재 보육교사 3급의 자격 기준은 질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재 조정이 필요하며 현 양 체제의 교사 자격간 호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사 1급, 2급, 원감, 원장 등)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진교육기관의 보육교사 자격 교과목을 45학점이상 상향 조정하고, 현직교육인 보수교육의 시간을 현행 40시간과 80시간을 80시간과 160시간으로 상향조정한다.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4년제 대학 졸업자와 2 3년제 대학의 졸업자 간의 동일한 직급의 자격 배출을 재조정 한다. 종국적으로는 4년제 출신 교사만이 교사가 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2년제 대학 출신 교사의 경우, 경과 조치를 통해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이상, 관련학과 교직이수자에 한할 필요가 있다.
 - 3급 교사의 경우, 영유아 부교사제로 흡수하는 것이 좋겠다.
 - 야간대학과 주간대학의 실습 기간을 동일하게 4주간 연속 실시한다. 현재 보육교사를 야간대학에서 배출하는 경우 실습기간을 주간과 동일하게 4주간을 통일하여 관계법령 개정하는 제도 재정비를 한다.
- 영유아 교사 수급의 균형 및 안정화
 - 교사 수급 정책은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현재 보육교

사와 유치원 교사의 양성 및 자격증 발급이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와 현황 파악, 적절한 수급대책 마련이 어렵다. 또한 보육교사의 공급과잉으로 급여 수준 저하, 이직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적정 원아수, 및 교대 교사 수를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의 양적 균형을 고려한 교사 수급 계획이 요구된다.

- 영유아 교사 연수원 설치
 -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재교육 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있으나 영유아교사 연수원과 같은 형태의 재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의 재교육을 전담하도록 한다.
- 국공립보육시설 교사의 시험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 유아교사(보육·유치원교사) 자격취득 학과 및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함. 교원양성과 관련한 과목이수 및 검정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원검정자격 검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교사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를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함. 이를 통해 행정의 일원화, 교사의 자격관리 효율화가 가능하다.

3. 교육·보육과정

- 통합표준 교육과정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 3-5세는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국가수준의 과정을 개발 하되 종일반 관련 보육내용을 포괄적으로 확장시킨다.
- 유치원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즉, 3세 이상은 유치원교육과정에서 공통된 점을 찾고, 종일반보육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3세 이하는 보육과정을 재정립한다.

4. 관리·감독 체계

- 통합시설을 위한 독자적 국가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의 평가인증제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통합시설의 질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모든 기관이 의

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령으로 규제한다.

- 통합 시설의 책임 경영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 경영이 토착화 되도록 여러 대안에 대한 가용 범위를 늘린다. 여기서 수요자 중심이란 유아의 잠재적 능력 신장을 중심으로 유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과 보육의 혜택의 일차적 수혜는 유아에게 돌아가야 한다.

- 관리·감독 일원화

보건복지가족부도 아니고 교육기술과학부로 아닌 관련 청을 따로 두어 독립적으로 일원화를 추진한다.

5. 재정 지원

- 지역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 학부모 간의 차등적 재정 부담을 제안한다.
- 아동보육기금의 전폭적 활용이 필요하다.
- 교사 관련 인건비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사의 복지차원 명목의 지원은 반드시 교사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교원(공무원) 복지비 지급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현행 관련부처 영유아지원에서 모든 영유아지원을 일원화 한다.
- 교사관련인건비 지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 민간형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도시 중심으로 흡수한다.
- 재정지원 일원화 방안: 독립된 청으로 두어 지원하여야 한다.

부록 2. 한국보육지원학회 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들어가며

- 최근 각국의 아동정책은 질적 보육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음.
- 최근 뇌 발달 연구는 영아기 안정 애착 형성의 중요성과 부모의 돌봄을 대신하는 우수하고 안정적인 양육전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아동중심 보육 제도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강조함.
- OECD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 및 행정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도록 권장하며 이는 각 나라마다 그 발전되어 온 과정과 상황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 통합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함.
- 따라서 한국보육지원학회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협력과 통합(또는 통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
 - 보육과 유아교육 협력과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은 일방적인 행정위주의 통합이 아니라 아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보육과 유아교육 시설장 및 원장과 교사, 부모, 그리고 학계의 의견이 상당한 정도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 보육/유아교육 협력과 통합준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우선 순위는 교사의

질을 보증하고 협력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기준 및 재교육 체계의 유사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상호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통합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교사의 근무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제안한다.

- 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은 아동의 권리와 다양한 성장환경의 요구를 채워주는 방향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국가수준의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은 기본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과 유아교육 기관의 유형과 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보육과 유아교육 학계와 현장 교사가 협력하여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제안한다.
- 보육과 유아교육 담당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육과 유아교육 협력과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TF팀)를 구성하여 행정부처를 비롯한 전달체계의 협력과 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처통합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해 더 많은 행정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처,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하여 부처 내 관련 부서나 사회의 관련 단체 등과의 연계가 더 많이 필요하고 시너지 효과가 큰 부처가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 부처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부처, 또는 청을 만들도록 제안한다.
-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의 인위적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 논의를 통해 각 시설의 운영 목적과 요건, 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시설을 운영할 것인지를 운영자가 결정하며 이용자인 부모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 이용시간에 따른 표준비용단가를 산출하여 그에 근거한 보육비 및 교육비 상한선 한도 내에서의 보육비 및 교육비 자율화와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차등제를 실시함으로써 단순히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기관 선택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한다. 또한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의 재정 및 운영관리의 통합을 위해 현행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제도나 e-보육행정제도, 재정지원과 평가인증과의 연계 등의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1. 기관·시설

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관·시설 현황

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설치 기준

〈표 2-1-1〉 보육시설과 유치원 설치 기준 비교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관계법	영유아보육법 제 10조	유아교육법 제7조, 제8조 유아교육법 제 17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설립주체 및 유형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보육시설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
교지 소유권 및 입지 조건	국·공립: 국가 또는 지자체, 법인: 법인, 민간·가정: 민간(임대허용)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 고려 쾌적한 환경 부지 선정	유치원의 설립주체 소유 원칙,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유치원'으로 되어있어야 함, 임대유치원 신규인가 불허 교지는 교사 안전, 방음, 채광, 환기, 소방, 배수 등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시설의 규모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
건물설치 원칙	건축법상 층수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1층 설치 원칙(예외: 직장보육시설), 영아반 1층 우선 배치	1, 2층 원칙(전체건물 사용시 3층까지 허용)
시설기준 면적	1인당 4.49㎡	40명 이하: 총학생수×5㎡ 41명 이상: (총학생수×3㎡)+80㎡
보육실	연령 구분 없이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일인당 2.64㎡이상 침구, 놀이기구, 각 영역별 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비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적정 유지 관리 바닥 난방시설 갖추어야 함	교사의 내부환경 기준: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소음: 55데시벨 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실외 놀이터 (체육장)	50인 이상 시설(12개월 미만 영아제외) 영유아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에 놀이시설물 3종 이상 설치된 옥외놀이터 설치 -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설치 불가능한 경우 옥내놀이터 설치(지하, 옥상 불가) 또는 인근 놀이터 활용가능	40명 이하: 160㎡ 41명 이상: 총아동수+120㎡ 배수시설, 실내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의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 가능
급·배수 시설	- (간이)상수도로 식수 공급시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 공급 - 음용수로 지하수 사용시 저수조 경유 - 더러운 물, 빗물의 배수설비	급수시설 구비, 수질 검사로 위생상 무해 판명
온수시설	○ 목욕실 - 난방/ 미끄럼 방지장치/ 샤워설비, 세면설비/ 냉온수 공급 설비 갖추어야 함, 수도꼭지 온도조정 및 고정 -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	온수공급 시설 구비
소방시설	- 소화용 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 2층 이상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 방염 및 소화설비
급식시설 설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급식관리(제34조) 영양사(5개 이내 보육시설 공동 가능), 100인 미만 시설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사용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 공급 원칙 ○ 조리실 채광, 기계 환기시설, 방충망 설치 - 식기소독, 위생적 취사조리설비 구비 - 공공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시설은 공동 사용 가능	- 1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 1인 두어야 함 - 동일 교육청의 관할구역 소재 5개 이내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 조리실 - 조리실 교차오염 방지 처리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 원칙 - 조리실의 내부벽,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 내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재질, 출입구와 창문 방충망 설치, 조리실 내 환기시설 설치, 조리실의 조명은 220룩스(x) 이상, 손세척 시설, 손 소독시설 설치, 온도 및 습도관리를 위하여 급배기시설, 냉·난방시설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 설비·기구 -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세정대 설치 - 전자식 탐침(探針) 온도계를 구비 -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으로 해충 접근 방지 ○ 식품 보관실 - 환기와 방습(防濕), 식품과 식품재료의 위생적 보관, 방충망설비 - 환기시설, 환기장 등 통풍 시설이나 조치
기타	○ 화장실 - 바닥 미끄럼 방지 장치 - 세정장치, 수도꼭지 온도조정·고정 가능	

2)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운영 현황

이옥 외(2006)와 나정(2003)의 연구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 현황

- 0-5세 아동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하는 아동수와는 달리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매년 증가함.
-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은 2005년 현재 148만 명으로 2002년에 비해 17만 명 증가하고, 전체 영유아의 47.0%임.
- 3-5세 유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은 37.4%로 유치원 이용률 31.4%보다 약간 더 높음.
- 보육시설 이용률은 영아(0-2세)는 21.1%로 유아의 이용률이 높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함.

□ 설립유형별 이용 현황

- 보육시설 수는 국공립 보육시설 5.2%, 법인 보육시설 5.3%로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 수가 매우 적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 역시 국공립보육시설은 11.3%에 불과함.

-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기관수는 많으나, 유치원 이용하는 유아 비율은 공립유치원 22.9%, 사립유치원 77.1%로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수가 3배 이상임.

□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시간 비교

- 지역별 또는 공사립 유치원 이용 아동들의 유치원 이용 평균시간은 차이가 없음.
- 취업모와 미취업모 유아들의 유치원 이용시간 차이는 평균 40분 이내임.
- 영아와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다른 양상을 보임, 영아는 8-9시간 이용, 영아가 가장 많고 유아는 5-6시간 이용 유아가 가장 많음.
-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 아동 8시간 4분, 모부재 아동 8시간 25분, 미취업모 아동은 6시간 29분을 이용하고 있음.
- 평균 이용시간은 유치원이 보육시설보다 1시간 30분 정도 짧으나, 보육시설의 영아 이용시간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용시간의 차이는 더 작을 것임.
- 유치원 이용아동의 서비스 이용 평균 시간은 5시간 51분(표준편차는 1시간 15분).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서비스 이용 평균시간은 7시간 20분(표준편차는 1시간 56분).

□ 보육시설과 유치원 선택 요인

-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부모들 모두 프로그램과 근접성 요인이 시설 또는 기관 선택의 빈번한 요인으로 조사됨.
- 다만 보육시설은 대리보호(집과의 거리 요인이 최빈도), 유치원은 초등학교 준비요인(프로그램 요인이 최빈도)이 더 빈번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냄.

□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기간

- 보육시설은 원칙상 연중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 조사결과, 보육시설들은 연평균 9.3일을 휴원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교육과정 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유치원은 연 평균 195일을 운영하고 있음.

- 보육시설은 규정상 일일 12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함. 반면 자율적으로 종일 운영하는 유치원은 전체시설의 39.4%임.
- 토요일에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96.6%, 전체 유치원의 65.5%정도임.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규모

- 유치원, 보육시설 모두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관이 많음.
- 유치원은 국공립의 경우 1학급이 70.3%로 가장 높음. 사립은 4-5학급(29.6%), 3학급(23%), 2학급(19.4%)로 국공립이 더 소규모임.
- 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20명 미만이 35.4%로 가장 많고, 31-39명(19.7%), 20-30명(17.1%)순임. 국공립은 66-91명이 35.3%로 가장 많고, 4-65명(29.4%), 92-117명(14.0%)순임. 민간은 31-39명이 가장 많음(민간 33.0%), 직장 29.2%), 그러나 가정시설의 경우 1-19명이 98.6%임).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협력과 통합에 대한 제언

1) 부모의 선택권 존중

□ 보육·유아교육 시설 및 기관의 다양화

- 보육·교육 요구는 개별 가정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획일적인 보육·유아교육 시설 운영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함. 2010년 모든 유치원에서 종일제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보육시설·유치원이 서로 유사한 종일반 운영 체제로 나아가는 것보다 다양한 유형의 보육·유아교육 시설 및 기관을 다양화하는 것이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임.
- 보육시설은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일제 보육을, 유치원은 3,4,5세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발전되어 왔음. 따라서 두 시설의 특성을 장점으로 살린다면 다양한 형태의 보육·유아교육 운영이 가능해짐.
- 보육은 보육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4시간 보육, 영아전담보육, 휴일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장애아 전담 보육, 통합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보육을 발전시켜 왔음. 유치원은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의 유형으로 발전시

켜 왔음.

- 이러한 특수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더 확대 보급하며 이와 아울러 농번기 보육, 휴일보육 등 더 다양한 형태의 특수보육을 개발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별 아동의 발달적 요구와 성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보육·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시설을 일원화하기 보다는 보육·유아교육 시설과 기관의 운영을 오히려 다양화하여 부모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공통적 적용 사항

-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모두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므로 보육시설에 비해 인가기준이 더 높은 유치원의 인가 기준에 준하여 보육시설의 인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안전을 위한 시설 설비(CCTV, 소화기, 보안등, 무인경비시스템, 비상등) 등 설치 명시가 필요함.
- 시설의 규모: 발달에 적합한 적정 수준으로서 총정원 300인 이하로 제한.
- 시설기준 면적: 유치원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필요.
- 보육실: 교실에 바닥 난방 시설 기준 필요.
- 실외놀이터: 바닥면의 충격 흡수 소재 관련 기준 마련 필요.
-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영아용, 유아용 놀이시설물의 기준 마련.
- 실외놀이시설의 위생과 안전, 관리 관련 항목 추가 필요.
- 실외 놀이시설의 실내 공간과의 연결성, 화장실과의 인접성 항목 추가.
- 기타 취약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통합기준 마련 필요.

□ 보육시설과 유치원 설비기준의 차별화

- 영유아의 연령과 다양한 보육 유형(예: 시간제보육과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통합보육)에 맞추어 시설기준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발달 단계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지만 특히 종일 보육,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가 정서적 안정감 및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

야 할 것임.

- 반일제를 주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냉·난방 시설(바닥 난방 포함), 냉·온 샤워 시설 등의 항목이 첨가되어야 함.

2) 보육·유아교육 시설 다양화 추진 방안

- 보육시설 설치 불균형 해소: 보육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간에도 보육시설이 불균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해소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재배치, 증설이 필요함.
- 운영시간의 융통성: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시간을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균 이용시간의 단축: 아동권리 입장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필요이상 장시간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부모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탄력 있는 근무시간 운영이 이상적임.
- 호주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하인데, 호주의 보육료 지원정책은 철저하게 취업모 중심으로 미취업모에게는 주당 24시간만을 지원함(서문희, 2007).
- 보육시설에서 일시보육서비스와 부모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보육시설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보육시설과 유치원 평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본 평가지표와 서비스 유형별, 규모별 평가지표를 보육과 유아교육 양계가 협력하여 개발하고 공동 평가단을 구성함. 유아교육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시하여 기본 체제에서 차이나지 않도록 유도함. 유치원은 운영시간, 건강·영양·안전, 가족과 지역사회 협력을 보완하며 보육시설은 설치기준을 강화함.

2. 교사 자격

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현황과 과제

□ 이원화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제도와 현직 교육제도

-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과에 한정되어 배출(관련학과는 정원의 10%)되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출신의 유치원교사 수급이 제한되어 있음. 보육교사 2급의 양성은 학점이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양성 수급 조절에 어려움이 있음.
-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유치원에 근무할 수 없어 보육과 유아교육 협력과 통합을 위한 노력에서 현재의 교사양성체계는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법적 기본 교육과정을 보면 최소 학점, 교직 학점, 전공과목 강조 영역 및 이수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양육과 교육의 양 측면에 대한 상호보완이 필요함. 유치원 교사 양성 과정은 보육, 양육 관련 부분이 부족하고, 전문대학 과정에는 교육관련 소양기회가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음.
- 보육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양성이 2, 3, 4년제 및 6년(대학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력에 따른 직급의 차이가 없음. 학력에 따른 차이를 적절하게 보상해 줄 필요가 있음.
- 영유아교사는 신속히 변화하는 다양한 양육환경으로 인해 대학 졸업 이상의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영유아교사의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보육교사 3급 양성기관인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배출하는 교사의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의 승급연수나 직무연수의 현직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이 지자체에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보육정보센터나 보육평가인증사무국, 보육교사자격관리국에서 일종의 현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유치원교사의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관련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연수의 경우 학회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현직 교육의 질 관리 및 교사의 이용 편리성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교사 현직교육 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함.
-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종일 보육활동에 참여해야 하므로 현직 교육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교사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체교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영유아의 특성상 낯선 교사가 대신 돌보기도 어려운 실정

입. 그러므로 안정적인 교대근무 교사나 정규 시간제 교사제도가 도입되어 교사의 초과 근무시간 방지와 현직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 유치원교사의 봉급은 학력에 따른 호봉 차이를 두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경우 급수나 학력에 관계없이 1호봉을 적용하고 있어서 호봉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그러므로 유아교사의 근무여건 향상과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근무여건 차이를 줄이는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1일 노동시간은 평균 9.5시간 - 10.5시간(2005년 보육 실태조사)이지만, 보육교사의 월평균 총 수령액은 106만원정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이며, 유치원교사의 경우 사립유치원교사는 연봉 1,387만원으로 공립유치원교사의 연봉 3,274만원의 50% 수준임(전국 유치원 실태조사, 2005).
-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어 보육·유아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이 많음.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근무여건의 개선 없이는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보장할 수 없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육·교육 시간과 근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함. 특히 보육교사는 하루 8시간 이상을 보육시간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보육활동을 위한 준비 및 교재개발, 귀가지도, 교사재교육, 부모상담,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사전답사 등 질적 보육을 위한 기본 시간을 확보하느라 결국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심시간까지도 보육·유치원 교사는 영유아를 보육·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생기는 공백은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대체교사의 인건비 부담으로 현장에서 대체교사제도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제도에 관한 협력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영유아를 위한 교사(가칭 영유아교사) 자격기준의 유사성 증진 및 제도의 통합
 - 교사자격제도의 통합은 보육과 유아교육 협력과 통합을 위한 가장 일차적이고 핵심적 과제임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경우 통합된 교사자격 및 재교육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교사를 상호고용하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상호고용제를 이루도록 함.
 -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은 교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에서나 근무할 수 있도록 영아반이 포함된 종일반 근무를 기본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습도 영아반과 유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조정되어야 함.
 - 전문적이고 우수한 영유아교사를 체계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학과 규정을 통하여 영유아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영유아교사(통합)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함.
 -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학과 규정은 보육과 유아교육 학계와 현장의 논의를 거쳐 보육교사 및 종일반 유아교사를 기준으로 하여 우수한 영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전문 지식 습득 및 실습에 필요한 교과목 및 최소 학점을 규정하고 관련 교과목과 최소 학점 이상을 개설하는 대학 이상의 학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여 사람을 영유아교사로 함.
 - 영유아교사 자격시험제도란 현행 학사학위 이상의 보육교사 2급 및 유치원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영유아교사(통합)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영유아교사(통합) 2급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임.
 - 관련학과 규정이나 영유아교사 자격시험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실시 시기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먼저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영유아교사 양성제도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점차 관련학과 규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봄.
 - 병설유치원 교사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영유아교사 자격자로 제한함으로써 K학년에 대비하여 우수한 유아교사 인력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함.
 - 보육교사교육원은 폐지하여 교사의 낮은 학력과 양성과정의 질로 인한 교사

의 질 저하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킴.

- 원격교육을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등 실습과목의 이수율의 충실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 실습 및 종일반 유치원 실습 이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현직 교육 연계와 통합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현직 교육(승급 및 직무연수 등) 시간의 차이를 개선하여 보육교사의 연간 현직교육 시간을 현행 유치원 교사 현직 교육시간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는 표준 보육·교육 시수 법제화와 함께 현직교육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교사제 확립이 요구됨.
- 현직 교육 과목이나 운영은 현장교사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함께 현직 교육을 받는 시간을 두어 두 집단 교사간의 이해와 유사성을 높이도록 함. 현직 교육은 출석교육시간과 현장 견학, 토론 등의 시간을 두어 교사간의 소통과 현장적응력을 높이도록 함.
- 보육교사의 현직교육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개발원을 설립하여 보육교사 현직교육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게 하거나 현 보육교사자격관리국의 기능을 발전시켜 보수·승급교육 등 현직교육을 총괄하도록 함.
- 보육개발원이나 보육교사자격관리국 등 보육교사 현직교육을 총괄하는 부서와 교육청 유치원교사 현직 교육 담당 부서가 협력하여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현직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평가하도록 함. 이를 위해 교사 현직교육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여 현직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며, 전국 권역별 대학이나 학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급여체계의 통합과 처우개선

-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 또는 병설이나 사립 유치원 등 어떤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 기관에 근무하든지 동일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동일한 급여체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육교사·유치원 교사의 기본급여체계를 통합함.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급여 수준은 병설유치원교사의 급여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교사의 각종 복지(퇴직금, 건강검진, 물리적 공간, 고용안전 등)도 공무원 복지규정에 준하여 시행되도록 개선되어야 함.

- 근무시간과 보육·교육시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영유아교사의 보육·교육시간을 포함한 수업준비, 기록 및 평가, 교재개발, 부모상담, 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위한 시간이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 내에서 가능하도록 표준 보육시간이나 교육시간을 설정하도록 함. 이를 위해 보육시설에는 교대근무제나 정규 시간제 교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8시간, 주 40-44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정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나 초과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함. 토요일 보육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며, 교사가 5인 이상의 시설에서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의 토요일 초과근무를 줄이도록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등·하원 버스 지도 담당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며, 종일반 운영의 경우 행정 및 보육 이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 배치하도록 함.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제도와 근무여건의 통합을 위한 정부 부처의 협력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제도의 협력과 통합, 상호고용 및 급여체계 통합, 교사 현직교육의 연계 및 통합을 위해 보육과 유치원 교육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 협의를 통해, 또는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보육·교육과정

가. 보육·교육 과정 현황과 과제

-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현황
 - 현재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의 유치원교육과정의 내용, 행정부서, 교사와 대상이 이원화되어 있음.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추구하는 인간상, 영역, 목표, 운영, 연령 수준을 구분하면 <표 2-1>과 같음.

- 이 내용을 요약 종합하면 표준보육과정은 유치원교육과정에 비해 더 세분화되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보육과 유치원교육의 발전 과정과 보육이 0세-만2세 영아를 더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며 표준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영역 및 목표는 매우 유사함.

〈표 2-3-1〉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비교

구분	표준보육과정	7차 유치원 교육과정
공표 근거	2007년 1월 3일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1호	2007년 12월 19일 교육부 고시 제2007-153호
대상 연령	0세 - 만 5세	만 3세 - 만 5세
추구 하는 인간상	1. 자율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4. 민주적인 사람 5.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영역	기본생활	건강생활
	신체운동	사회생활
	사회관계	표현생활
	예술경험	언어생활
	의사소통	탐구생활
	자연탐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기본생활습관을 기른다.
목표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

구분	표준보육과정	7차 유치원 교육과정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생활 습관을 가진다.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운영	연중, 종일제 기본	연간 180일 이상, 1일 180분 이상 유치원 자율 운영 가능
보육·교육과정	연령집단은 만2세 미만, 만2세, 만3-5세 영유아로 구분. 만2세 미만 보육내용은 1·2·3 수준, 만2세는 1·2 수준, 만3-5세는 1·2·3 수준으로 구분.	각 영역에 제시된 I 수준, II 수준, 공통 수준의 교육 내용을 유아의 발달 정도에 알맞게 편성.

출처: 여성가족부(2005), 교육부(2007).

□ 보육·교육과정의 협력과 통합의 방향

- 최근 영아기 발달연구를 통해 생애 초기의 안정애착과 뇌 발달 및 인지 발달과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OECD의 보고서 “Starting Strong”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영아기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보육 제도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최근 세계 여러 나라,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보육과 교육 제도에 관한 행정부서간(교육부, 보건복지부 혹은 사회부, 여성부, 가족부 등),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그리고 프로그램 간의 연계 및 협력행정을 강조하고 있음.
- ‘협력행정’을 잘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스웨덴, 이탈리아는 국가 수준의 보육·교육 과정을 개괄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그 다음에 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 기관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의 세계 보육과 유아교육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와 더불어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있는 경향임. 이는 보육·교육과정에서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보육·교육과정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과제

- 보육·교육과정의 협력과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
 - 부모와 가족의 보육·교육 요구 반영 정도의 문제.
 - 보육·교육과정의 목표, 내용체계, 연령 수준, 운영, 평가를 구성하는 철학적 관점에 관한 문제
 -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의 문제
 - 보육·교육과정에 보건, 의료, 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 포함의 문제
 - 보육/교육과정의 통합 운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지원의 문제
 -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보육·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협력행정’의 문제

나. 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보육·교육과정의 개발 및 관리 감독에 관한 협력과 통합을 위한 가칭‘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준비위원회’ 설치

- 1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의 연속적인 학습과 발달을 지원해주기 위해 교육, 보육, 보건, 의료, 가족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의 주무부서, 즉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상호 협력하여 보육/유치원교육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가칭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축하도록 함.
-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준비위원회’에 보육·교육과정팀을 통해 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협력과 통합에 대한 논의와 조정을 진전시킴.
- 보육·교육과정팀은 관련 전문가들 즉, 교육·보육전문가, 발달전문가, 영·유아 건강전문가, 가족복지전문가, 의료·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 중앙의 양육지원정책 개발과 지원, 지역의 보육·교육 욕구 조사와 그에 기초한 보육·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하는 가칭 양육지원센터(또는 보육·교육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자체에 설립하여 운영함. 보육·교육과정의 개발, 관리 및 감독은 중앙 및 지자체의 양육지원센터(또는 보육·교육지원센터)가 학계, 현장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도록 함.

□ 보편적 보육·교육과정의 제공

- 보육·교육과정의 통합은 보편적 보육·교육과정 제공을 전제로 함. 영유아기는 사회적 투자의 ‘황금기회’로 인정하고 영유아기의 행복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보육·교육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의 역량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보육·교육도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보육·교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세부 정책 제안

- 0-5세의 보육·교육과정의 통합과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0-5세 영유아를 위한 의료, 보건에 관한 내용과 가족지원(가족 관계 형성 및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 영아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육과정과 영아기 부모들의 양육 지원이 추가되어야 함. 0-2세의 애착형성, 배변 훈련 등 기존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지 및 언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보장함.
-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야간연장제, 24시 프로그램에 따라 보육·교육과정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함. 종일제와 야간연장제, 24시 프로그램의 보육·교육과정은 애착, 사회적 관계, 정서발달을 강조하고, 활동으로는 실외 및 산책 놀이, 신체 활동을 강조하며, 특히 24시 프로그램의 보육·교육과정은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더 강조함. 어떤 프로그램이나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가족지원은 강조되어야 함.
- 국가 수준의 보육·교육과정을 지역 수준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시 조절하도록 함.

4. 관리·감독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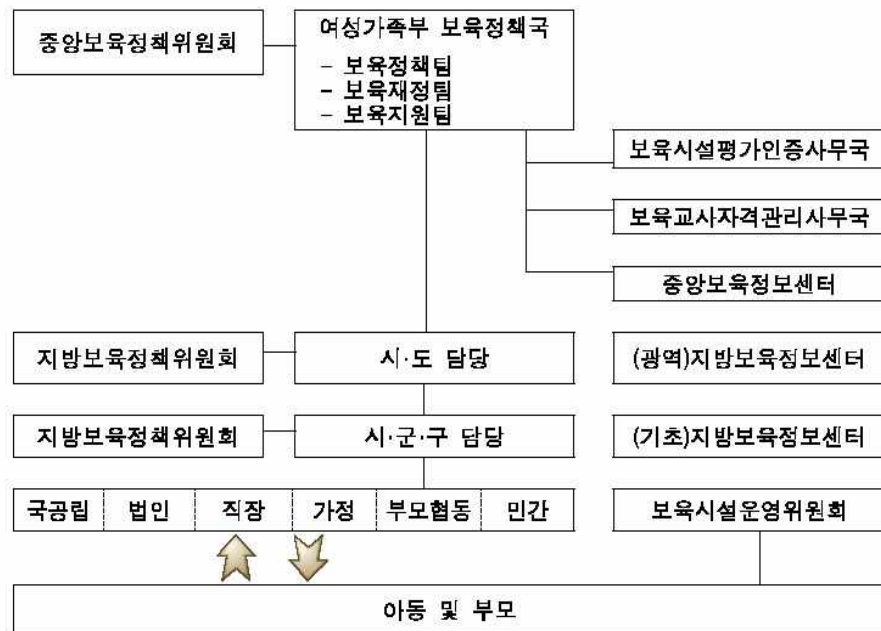
가. 보육·유아교육 질 관리 및 감독 체계 현황과 과제

□ 보육과 유아교육 전달체계

- 보육행정은 유아교육행정에 비해 체계가 많고 조직화되어 있음(이욱 외,

2006). 보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며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둠.

- 보육은 시설평가를 위해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을, 교사자격관리를 위해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함. 또한 개별 보육시설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안 및 건의사항을 심의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그림 2-4-1] 유아교육 전달체계와 보육 전달체계 현황(이옥 외, 2006)

- 유아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지원과에서 담당,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가 있음.
- 육아 선진국을 향한 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12개(이옥 외, 2007)의 효과적 실행

을 위해서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포괄하는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2005년 - 2008년까지 3년 동안 보육현장에서 평가인증제도가 자리 잡은 데에는 평가인증사무국 뿐 아니라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보육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도운 기존 보육 관련 전달체계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OECD에서는 보육·교육을 하나의 정부 부서에 일원화시키거나 관련 부서들을 통합한 제도 아래에서 보육·교육 제도에 관한 정책 및 행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도록 권고함. 일원화된 나라의 경우, 그 행정부서는 교육부(스웨덴), 교육연구부(노르웨이), 복지부(덴마크) 등으로 다양함. 이는 보육·교육 과정에 관한 정책의 통합이나 일원화가 각 나라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관점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실제 각 나라의 상황을 충실히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을 권고함.

나. 보육·유아교육 질 관리 및 감독 체계 협력과 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 현재 구축된 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 현행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육전달체계와 교육청 중심 유아교육전달체계 각각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면서 중앙 부처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함.
- 보육과 유아교육 담당 중앙부처의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보육과 유아교육 질 관리 및 감독 체계 협력과 통합은 현재 이미 구축된 보육인프라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무리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봄.
-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보전달 기능을 유아교육 관련 정보는 물론 영유아정책 및 각종 영유아관련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 관련 서비스까지 확대한 포털사이트로 발전시킴.
 - 현행 중앙 및 지자체별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보육과 유아교육통합 정보 제공으로 확대 발전(온라인, 오프라인).
 - 부모와 지역사회, 기업 등에게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 확대.
 - 나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영유아와 그 부모를 위한 정책과 공공시설물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등 양육포털사이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교사의 효과적인 자격연수와 재교육을 위해 보육교사자격관리국과 기존 보육정보센터의 평가인증시설 조력 기능 및 교사교육의 기능을 흡수, 확대 강화하고 교육청 유치원교사 담당부서와 협력 통합하여 가칭 영유아교사발전 지원국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 평가 부분의 협력과 통합을 위해 보육시설평가인증 사무국의 노하우를 살려 이 기구를 보육·교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으로 발전시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보육·교육사업을 총괄하는 전달 및 지원체계로 가칭 영유아보육·교육지원센터 설립
 - 보육과 유아교육을 아우르는 전달 및 지원체계로 가칭 영유아보육·교육지원 센터를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중앙과 지자체 단위 센터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함.
 - 영유아보육·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함.
 - 중앙센터 직영, 중앙 및 지자체 센터의 위탁, 평가, 운영에 대한 규정 합리화, 공동사업에 대한 평가와 운영 규정은 전국 공동의 기준 제정과 적용.
 - 보육·교육시설지원, 장애아통합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기업친양육환경지원사업, 기타 양육지원사업 등 각종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팀장제 운영.
 -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상향 조절.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 전문인력 네트워크 형성.
 - 영유아보육·교육지원센터를 통한 부모지원을 확대 강화함.
 - 영유아가 자기집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에도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장시킴.
 -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지역 내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기관들은 개별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관계로 네트워크 구조가 비효율적(강장

현, 2006)이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함.

- 시간제 보육, 부모교육,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부모 동아리 활성화.
-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 외의 공공 양육지원시설(가령 영유아플라자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 영유아와 부모에게 보육·교육이 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서비스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보육·유아교육 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
- 센터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저출산해소 및 양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실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양육지원센터가 이들 센터간의 연계와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가령 건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지원사업의 일부로 양육지원센터와 연계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봄.
- 영유아보육·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함.
 -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협력 강화 기관: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초등학교,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학회 및 연구소, 유아관련대학,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정책위원회(권용은 외, 2008).
 - 기업의 양육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지원은 물론 기업의 보육·유아교육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와 기업 등에게 보육·교육, 양육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연구 기능 확대
- 영유아보육·교육지원센터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양육지원 기능을 확대함.
 - 여성농업인센터 등과 연계된 농촌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양육지원.
 - ‘양육지원센터’는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 문화적 지원을 함.
 - 보육·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에 보육·유아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보육실 운영.
 - 농촌가정상담, 결혼이민자 가족 상담과 한국어교육.

- 독서공간제공이나 영화상영 등의 문화센터 역할.
- 다문화·조손 가정 도우미 파견.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과 협력 및 연계

□ 보육·유아교육 관리감독체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 공무원 행정직에 보육직을 신설하거나 행정직(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보육학 과목을 두어 보육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함(서영숙, 2008). 지자체 보육·유아교육 담당 공무원으로 보육·유아교육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보육·교육 정책 실행과 시설 관리 감독 등 보육·유아교육 지원 업무를 맡도록 함.
-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준비위원회’에 교사지위향상팀, 보육·교육과정팀, 시설지원팀, 행·재정지원팀 등을 두어 보육·교육 협력과 통합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하도록 함. 각 팀은 정기적인 회의, 혹은 포럼(forum)을 통하여 협력과 통합의 과제를 논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하며 준비위원회 전체 모임을 통해 합의해감.
-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준비위원회’의 행·재정지원팀은 정부 부처의 아동청소년 정책이나 가족정책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정책, 농산어촌정책, 노동 및 실업정책, 경제정책, 주택정책, 미디어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 등에서 영유아와 그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각종 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영유아보육·교육 정책 전달과 지원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5. 재정 지원

가. 보육·유아교육 재정 현황과 과제

□ 보육·유아교육 재정

- 보육과 유아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민 1인당 세율의 비율이 달라 OECD 국가와의 단순 비교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OECD 평균 공적 부담률인

80.0%에 훨씬 못 미치는 37.9%임(표 2-5-1 참조).

〈표 2-5-1〉 각 국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정도

구분	재원(%)		유아1인당 교육비	GDP 대비 유아교육비
	공적부담	사적부담		
한국	37.9	62.1	2,520	0.1
일본	50.0	50.0	3,945	0.2
미국	75.4	24.6	7,896	0.4
영국	94.9	5.1	7,924	0.4
프랑스	95.8	4.2	4,938	0.7
OECD국가평균	80.0	20.0	4,741	0.5

자료: OECD(2007). Education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 재구성

- 보육·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총비용(2005년) 4조 8,171억원 중 부모가 61%, 정부가 39%를 부담. 교육과 보육으로 나누어 보면 보육비용은 정부부담 40.2%, 부모부담 59.8%이고 유아교육 비용은 정부부담 34.4%, 부모부담 65.6%임.

〈표 2-5-2〉 보육/교육 부담 의 국가와 보호자의 부담(2005)

단위: 백 만원, %

구분	비용	비율	구분	비용	비율
교육비			보육료		
부모부담	1,208,812	65.6	부모부담	1,779,398	59.8
정부지원	167,128	9.1	정부지원	573,932	19.3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465,509	25.3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622,368	20.9
전체	1,841,449	100.0	전체	2,975,698	100.0

자료: 육아정책의 통합적 접근(2006)에서 재구성

- 보육 재정은 중앙정부 국고 보조금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로 구성되고 유아교육 재정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으로 됨.
 - 보육·유아교육 재정은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유아교육에 비해 보육재정의 증가 폭이 더 컸음. 2007년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 예산은 약 3조원(보육재정 20,354억원 ; 유아교육재정 8,860억원)으로 GDP대비 0.386% 정도임(표 5-3).
 - 보육지원예산 총액이 유아교육지원예산 총액의 약 2배로 많지만 이는 대상 아동 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평균적인 차이는 거의 없음.
 - 보육의 재정증가는 중앙보다는 지방정부의 재정 증가에 더 크게 기인함.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의 경우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보육재정 증가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 유아교육의 재정증가는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 증가에 더 크게 기인하며 특히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중앙정부 증가율은 152.5%와 129.3%에 달함.
 - 유아교육 예산은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었으며 유아교육 예산이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에 반영되어 예산 확충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교육인적자원부, 2006),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면 유아교육 예산 확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 재정의 편차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교육 재정의 편차를 강화시킬 수 있음.
-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 정부의 재정지원을 크게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으로 나누어 보면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특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되고, 아동별 지원은 만5세아 무상, 차등보육·교육비, 기본보조금 등으로 구분됨.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설립주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 1인당 확보되는 보육·교육 비용과 부모부담이 차이가 발생함. 정부지원시설에 보육예산의 71.3%가 집중되어 있음(이옥 외 2007). 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 재원 아동이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으며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과 비교해보면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보육에 대한 지원이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 받는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06년

부터 지원된 영아 기본보조금제도 실시를 통한 영아보육지원이 확대되면서 시설보육 중심의 영아보육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형평성 문제는 더 커졌고 영아의 복지와 권리 실현과는 거리가 멀어졌음.

□ 보육·유아교육 비용의 부모 부담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설립 주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니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비용이 달라짐. 보육의 공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아동수는 2007년 12월 말 현재 보육아동 수 1,099,933명 중 10%에 해당하는 119,141명에 그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보육료의 일원화 제도는 획일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며, 아동에게 필요 이상의 과잉보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에게는 보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동일하게 간주하는 인식을 낳고 있음.
- 보육료는 표준보육단가를 적용하여 보육료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특별활동 명목으로 지불되는 부모의 부담은 큰 편차를 보임. 사립 유치원 비용은 자율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논의시 보육료와 교육비용의 자율화가 논의되어야 함.

나. 보육·유아교육 재정에 관한 협력과 통합 방안 제언

□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 부담의 적정 기준 마련

- 외국의 경우처럼 하루 일정시간(2-4시간)까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보육·교육으로 하고 그 시간을 초과하는 보육·교육시간은 시간에 따른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도록 함.
- 현행 유치원 교육비처럼 보육시설의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보육비제를 실시하고 더불어 보육비 자율화를 어느 정도 허용하여 보육·유아교육의 재정 운영 및 부모 부담의 유사성을 높혀 보육·유아교육 통합의 기반을 마련함.
- 보육료와 교육비의 자율화는 보육료·교육비 인상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의 계층별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

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육·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연장제, 종일제, 야간보육 등 서비스 시간에 따라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보육·유아교육 표준단가를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함.
- 종일제와 그 이상 시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가정(예, 부모질병, 맞벌이 부부가족 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함.
-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적극적인 육아휴직제도와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으로 영아 양육에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스웨덴의 경우 아버지가 2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만 어머니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공동양육문화를 이루었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는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부모가 어린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을 펴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지원에서의 형평성 제고

- 영유아의 연령, 가정의 소득, 이용시설, 이용시간 등에 따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비용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이용에 따른 부모 보육료 부담의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보조금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그 부분을 유보한다면 국공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이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평가인증과 연계되어야 함.
- 별도의 비용체제를 가지고 있는 병설유치원은 K학년제로 편입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유치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관리

- 보육시설·유치원의 열린 운영이 전제가 되어야 함. 보육시설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25조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유치원도 운영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보육시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필

요함.

-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해 투명한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어야 함. 현행의 표준보육행정 시스템(e-보육)을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도 보육시설·유치원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보육시설·유치원의 평가 시스템과 재정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보육·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함.
 -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추어 야간보육, 일시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 보육 등 특수 보육·유아교육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 보육시설·유치원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 특히 병설유치원 교사의 급여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보수를 받아온 보육교사와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유아교육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육·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요구
- 보육과 유아교육의 재원구성과 수입구조의 차이에 대한 통합 논의 이전에 먼저 아동권리 보장과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유아교육은 보편적 공적 서비스가 되어야 함을 주장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낮은 국공립보육시설 비율(5.7%)과 공립 유치원의 비율(54%)을 높이는 정책도 지속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양질의 보육·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비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함. 국비와 지방비가 50: 50으로 이루어지는 보육사업은 전면 재조정되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비와 지방비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농어촌 지역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일정비율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보육·유아교육의 지역 편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임.
 - 증가하는 보육·유아교육 비용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스웨덴의 경우 보육예산 확보를 위해 25년간 보육세를 거두었음(이옥 외 2007). 한시적 목적세인 ‘보육세’도입을 고려하거나 또는 현행의 교육세를 보육·교육세로 명칭을 바꾸어 보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강창현(2006). 가족지원서비스공급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구조 연구. 가족과 문화. 18(2)
- 교육인적자원부(2007). 7차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3-2007). 예산현황자료.
- 권용은, 마미정, 박민정, 박초아, 박춘미, 이삼범, 채혜선(2008). 육아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발전방안. 2008보육정보센터 발전방안 토론회 자료집.
- 나정(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서문희(편역)(2007). 호주의 보육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서영숙(2008). 새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전문가의 요구. 100분 토론회; 좋은 보육교육, 나라를 키운다. 한국보육전문가연대 주체, 발표자료. 36-51.
- 여성가족부(2003-2008).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05). 표준보육과정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5-26.
- 여성가족부(2005). 2005년 4월 세계여성 정책보고.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병래, 김선영(2007).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통합교육과정 구성. 유아교육연구. 27(5), 111-133.
- 이옥, 김은설, 신나리, 문무경, 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01.
- 이옥, 서문희, 유희정, 장명림, 이미화, 김은설, 신나리, 김은영, 이정원, 이윤진(2007).

육아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OECD(2007). *Education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

부록 3. 한국보육학회 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이미정 교수(여주대학 교수)
양승희 교수(서일대학 교수)
임명희 교수(동남보건대학 교수)
노은호 교수(경원대학교 교수)
채혜선 센터장(중앙보육정보센터장)
김영명 소장(보육연구소장,
중앙보육정보센터장)
박진옥 교수(동원대학 교수)
오연주 교수(대림대학 교수)

1. 기관·시설

가. 유치원과 보육시설 현황

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립기준 현황

-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국·공립과 함께 사립 또는 민간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인가제에 따라 설립이 이루어짐.
-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립자가 교지를 소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육시설은 반드시 소유하지 않아도 됨(단, 국·공립 및 법인 시설은 소유해야 함).
- 유치원 교사/건물사용 기준 면적이 보육시설에 비해 더 높음.
- 실외 놀이터의 외적인 기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거의 비슷하지만, 내적인 기준은 유치원이 높음.
- 유치원은 교육감이 고시한 교육에 필요한 교구를 갖추어야 함. 보육시설 역시 필요한 완구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음(다만 구비완구 내용은 시설장이 판단 함).

〈표 3-1-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립기준 비교

구 분	유 치 원	보 육 시 설
유 형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시립, 도립), 사립 유치원(법인, 사인)(제 7조)유아교육법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 10조)
국공립 설립방법	설치기준: 대통령령	설치기준: 보건복지가족부령
설립인가 (국공립 외)	시·도 교육감 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교 지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임대 유치원의 신규인가 불허함.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시설 임대 불허	국·공립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민간 법인 보육시설은 법인 소유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임대 허용 시설 임대 제한 없음
교사/건물 사용면적	1, 2 층 원칙 (단,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층까지 사용)	1층 설치 원칙 (예외로, 사업장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건물전체사용 - 영아반 1층 설치)
교사기준 면적(실내)	40명 이하: 총아동수×5㎡ 41명 이상: (총아동수×3㎡)+80㎡	1인당 4.29㎡
실외놀이 터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해야 함 40명 이하: 160㎡ 41명 이상: 총학생수+120㎡	50인 미만 제외: 1인당 2.5㎡
보통교실, 유희실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소음: 55데시벨 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모든 연령: 1인당 2.64㎡
장애아 전담시설		시설면적: 7.83㎡/ 보육실 면적: 6.6㎡
급식시설/ 설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사: 유아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서는 영양사 1인을 둠(단, 동일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둠). ▪ 조리실: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구 분	유 치 원	보 육 시 설
	<p>식기구세척실로 구획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화성, 내수성, 내구성. 환기시설 갖추어야 하며, 조명은 220룩스(lx) 이상이 되어야 함.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 온도 및 습도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給排氣)시설 또는 냉·난방시설 - 설비기구: 냉장실 또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냉장고 5℃이하, 냉동고 -18℃이하를 유지.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사용하며,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전자식 탐침(探針) 온도계를 구비 - 식품보관실: 환기와 방습, 방충 대비 	
기 타	<p>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p>	<p>위험 시설로부터 50m 떨어져 입지, 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함.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p>

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제시된 바대로, 유치원의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행하는 보육지침을 토대로 운영함.
- 유치원은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보육시설은 출생이후 초등학교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2세까지 보육이 가능함. 저소득층, 편부모,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가 우선 대상임.

-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한 학급당 교사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유치원은 3세 20명, 4-5세 30명, 혼합연령 25명 기준임. 보육시설은 3세 이상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3세 이상 유아를 주 대상으로 하고, 사립 기관이 많으며, 교육과 보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사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일과운영은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
 -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으로, 보육시설은 표준보육과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하루일과는 활동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실내자유선택활동, 실외자유선택활동, 집단활동, 급간식, 낮잠 등의 기본생활 활동 등이 고루 진행되고 있음.

〈표 3-1-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관리기준 비교

구 분	유 치 원	보 육 시 설
근 거 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 시·도 / 시·군·구청 가정복지과
운영지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 규칙을 제정(유아교육법 제 10조)	매년 발행되는 보육사업안내서
대상연령	만 3세-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유아교육법 제11조)	만 0세-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만 12세까지 연장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7조)

구 분	유 치 원	보 육 시 설
기관(시설) 우선 이용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편부모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근로자 자녀 우선 이용권 부여(제28조)
원아수용 계 획	관할청은 관할 유치원의 적절한 원아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원아수용계획을 수립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운영시간	반일제(3-5시간), 시간연장제(5-8시간), 종일제(8시간이상)(유아교육법 제 12조)	07:30-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운영)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종일제, 시간제, 시간연장형, 방과후
교 육 / 보육연한	최대 3년(부모 선택)	최대 6년(수시, 부모 선택)
학급편제 및 정원	유치원의 학급수 및 학급당 원아수는 관할청이 정함. 학급편성은 동일연령으로 함(교육과정의 운영상 혼합연령으로 편성가능함)	
학년도 개념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	형식상 없음
수업일수	매 학년도 180일 이상(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10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 감축 가능함)	
휴 업 일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겨울 휴가가 포함됨.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 임시휴업함(관할청에 보고).	

구 분	유 치 원	보 육 시 설
교육·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국가고시)	표준보육과정(국가고시)
지도 및 감독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인증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평가인증
평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각각 대상으로,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해 평가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유치원의 시설·설비,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건강검진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건강검진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함
생활기록부 작성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 (유아교육법 제14조)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 2)
특수교육 및 특수보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에 대한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을 마련	

3) 유치원과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실태 현황

- 2007년 전국의 유치원은 8,294개원, 보육시설은 29,823개소임.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국·공립 비율은 16.1%이며, 사립/민간 비율은 83.9% 임.
- 유치원은 전체 8,294개원 중 국·공립이 53.6%로 총 4,448개원이며, 사립이 46.4%로 총 3,846개원임.
- 보육시설은 전체 29,823개소 중 국·공립이 5.6%로 총 1,670개소이고, 민간이 94.4%로 총 28,153개소임.

- 유치원은 감소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표 3-1-3〉 국·공립, 사립/민간 유형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단위: 개소

구 분	유치원	보육시설	계
국·공립	4,448(53.6)	1,670(5.6)	6,118(16.1)
사립/민간	3,846(46.4)	28,153(94.4)	31,999(83.9)
계	8,294(100)	29,823(100)	38,117(100)

출처: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

4)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 실태 현황

-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시간 비교

- 평균 이용 시간은 유치원이 보육시설보다 1시간 30분 정도 짧으나, 보육시설의 영아 이용 시간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용 시간의 차이는 더 작을 것임.
- 유치원 이용 유아의 서비스 이용 평균시간은 5시간 51분임(표준편차는 1시간 15분).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서비스 이용 평균시간은 7시간 20분임(표준편차 1시간 56분).

〈표 3-1-4〉 기관별 이용 시간

단위: %

교육·보육시간	유치원	보육시설
평균이용시간	5시간 51분	7시간 20분
표준편차	1시간 15분	1시간 56분

출처: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운영기간

- 보육시설은 원칙상 연중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보육시설들은 연 평균 9.3일을 휴원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교육과정 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유치원은 연 평균 195일을 운영하고 있음.
- 보육시설은 규정상 1일 12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함. 반면 자율적으로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전체 시설의 39.4%임.
- 토요일에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체 유치원의 65.5%, 전체 보육시설의 96.6%임.

□ 프로그램 운영

- 교육 및 보육 활동 현황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강조하는 유아활동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없음.
 - 유치원 교사: 전인발달교육 58.9%, 인성지도 33.4%의 활동 순으로 조합.
 - 보육시설 교사: 전인발달교육 40.3%, 인성지도 25.0%, 안전보호 17.8%, 자유놀이 6.6% 순으로 조합.

〈표 3-1-5〉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중점 교육·보육 활동 내용

단위: %

구 분	전인 발달교육	인성 지도	안전 보호	자유 놀이	영양/ 건강	읽기/ 쓰기	부모 자녀관계	특별 프로그램	휴식	기타	전체
유 치 원	58.9	33.4	3.3	2.7	0.3	0.3	0.3	0.3	0.2	0.3	100
보육시설	40.3	25.0	17.6	6.6	4.9	1.7	0.1	1.5	0.0	2.3	100

출처: 이옥(2005)

○ 특별활동

- 대다수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은 보편화되어 있으며(사립유치원: 73%, 보육시설: 69.7%,), 외국어와 미술관련 활동이 가장 많음.

○ 계획안 작성

- 유치원의 91.4%, 보육시설의 93.5%가 주간 또는 월간 교육 또는 보육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육·보육계획안 작성 시 참고자료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차이가 있음 (유치원은 69.9%가 유치원교육과정을 참고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주로 보육 관련 잡지 44.2%와 보육 연구기관 등의 프로그램 26.2%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음).

〈표 3-1-6〉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작성 시 주요 참고 자료

단위: %

구 분	정부자료	대학 또는 연구기관 자료	잡지/ 인터넷 자료	자체개발	특별한 자료 없음	기타	전체
유 치 원	69.9	2.6	22.9	4.3	0.3		100
보육시설	4.0	26.2	50.6	16.2	0.7	2.3	

출처: 나정·류숙희·고미경·성화영(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
이미화 외(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

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문제점

1)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

- 국·공립시설은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대기 유아도 많아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지자체 재정여건 및 민간시설의 반대 등으로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은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이 미흡한 실정임.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이 육아지원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립과 민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임.
- 국·공립기관은 영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 모형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보편적 교육·보육프로그램 및 표준교육·보육 프로그램 외에도 영유아 및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취약교육·보육프로그램 등의 차별화된 추가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

2)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의존도가 높으므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들 민간기관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가 재정 및 교육·보육과정 등을 지원하고 그 운영을 관리·지도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정책 방안

1)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 공립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 및 단설유치원 설립.

-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1~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2~3학급 이상으로 확대함.
 - 대도시 및 신규택지개발지역 등 유아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함.
 -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함.
 -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유아의 교육기회를 제공 및 확대함.
 - 종일제 운영을 위한 공립유치원의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 기회를 확대함.
- 유치원 부족 지역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립 단

설유치원 우선 설립함.

- 공급률과 이용률의 불균형으로 유치원 추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 중 저소득 밀집 지역이거나 택지개발지역에 설립함.
- 적정 규모의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아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
-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 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등 지역내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함.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확충
-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 강화
 -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및 국고보조율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중앙정부가 직접 신축 조직 설치 및 비용 전액 부담 후, 지역에 무상 임대 및 위탁 운영을 의뢰함.
- 신축비 지원 없이 건물 확보 및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한 확충
 -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 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함.
 - 공동주택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우체국,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공공건물을 우선 활용함.

□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선도적 기능 강화.

- 장애아 통합교육 서비스 우선 제공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 일반학급과의 연계 통합교육·보육을 활성화 함.
- 포괄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서비스 제공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는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교육·보육 격차 해소 및 출발점 평등 구현을 위한 포괄적 교육·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내 거점 센터로서 운영 모형 기능 수행
 - 단설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내 소규모 기관이나 민간시설에 운영 모형을 제공하고, 거점 센터 역할을 수행함.
 - 지역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표준적인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지역내 육아지원센터로서 가정·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2)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

- 유치원 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함.
 - 유치원 평가제도의 전면 도입시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재교구비, 교사처우개선비, 종일제 지원비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함.
-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함.
 - 현행 학교법인 조건을 완화한 법령과 제도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함.
- 사립유치원 운영의 재무 회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함.
 - 국가 차원의 행정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장려하고 이를 통한 예·결산 공개 의무화를 추진함.

□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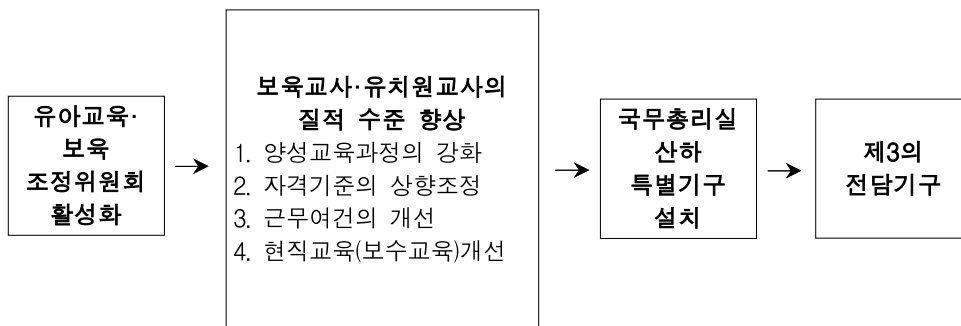
- 평가인증의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 통과 여부에 따라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농어촌), 인건비(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음. 기 본보조금 지원 또한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보육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민간보육시설의 법인 전환을 유도함.

- 법인 출연금 등에서 현행 사회복지법인 요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법인 전환을 유도함.
- o 투명한 행정·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결산 회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개토록 함.
- o 공공성을 강화한 정부지원 민간보육시설은 여타의 정부미지원 자율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임.

2. 교사자격

가.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자격 통합 모형 논의

이원화 체제 → 이원화체제: 영역별 질적수준향상과정 → 통합체제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을 보다 전문화 할 수 있는 세부사안의 강화와 근무여건 등의 개선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여 각 영역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영역 확장의 과정을 거친 후, 2단계에서 통합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추천됨.
-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역할과 기능영역, 그리고 각 영역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합의과정이 요구됨. 두 영역의 통합으로 인해 영역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보육과 유아교육이 각각 충분한 질적 향상을 통해 고유의 독자성을 확보한 후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이 영유아를 위한 보다 포괄적 서비스제공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초기에 보육과 유아교육은 그 개념, 보(교)육 대상 영역, 시간, 철학 등에 있어 매우 상이한 분야였음이 사실임.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의 전문개정과 유아교육법의 제정 이후, 두 영역은 상당히 유사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그렇지만 아직도 두 영역이 동일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여전히 상이함이 존재하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움. 가장 큰 상이점은 유치원교사는 교사의 정체성을 보다 강조하는데 비해, 보육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뛰어넘는 보다 포괄적 정체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함. 따라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모두 ‘교사’체계라는 틀 안에서만 고려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시각일 수 있으며, 자칫 보육교사의 보다 포괄적 기능영역을 ‘교사’의 제한된 영역 안에 축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음.
 - 보육은 ‘교육’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공공가정+부모역할’ 등의 개념을 모두 담는 보다 포괄적 개념이며(윤숙현·이미정, 2006), 결코 교육의 틀 안에만 묶이지 않음.
 - 이에 유·보 통합과 협력의 과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의 과정(1단계)을 각 영역별로 진행함. 이 단계에서 유·보 각 교사들의 근무여건의 개선, 자격기준의 조정, 양성교육과정의 강화 등의 과정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보육의 영역에 대한 분명하고도 독자적인 영역적 특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보육교사에 대한 독자적인 직업영역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유치원교사 역시 어린 영유아를 종일 유치원에서 ‘유아교육’하다보면 ‘교육’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확장과 개념의 확립이 요구될 것임.
- 1단계의 과정이후 2단계에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서로 통합하여 일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단계에서의 통합은 현재의 주무부처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담당함.
- 1단계(각 영역의 질적 수준 향상) → 2단계(통합 방안 고려) 의 과정은, 부처 이원화의 현실에서 보다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나. 1단계: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

1)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의 강화

가) 양성체제의 수정 개선

□ 제 1안: 핵심 관련학과 중심의 전공학과제에 의한 양성체제 구축

- 보육교사의 전문성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자격취득이 지나치게 용이하다는 점이므로 진입장벽의 상향조정은 전문성확보에 가장 중요함.
- 학과제한 없이 교과목이수(12과목 35학점 이수)에 의한 자격취득체제를 전공학과제에 의한 자격취득 양성체제로 수정함.
- 보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보육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학졸업자의 보육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최소성적기준 설치
 - 보육3급의 과정에는 25과목 65학점의 취득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요구하나 대학졸업자에 대한 검정기준은 12과목 35학점이상의 취득요건만 있고 성적기준이 없음. 이에 적정수준의 성적제한을 두어야 함.
 - 이에 비해 유치원교사자격은 전공과목(80점이상), 교직과목(80점 이상)의 성적제한이 있으므로, 유아교육과 학생 중 유치원교사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성적 최하위 학생들조차도 보육교사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는 폐단이 심각함. 이에 보육교사는 하위등급 자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문제 발생함.
 - 사회복지사 자격도 전공에 관계없이 교과목의 이수만으로 2급자격취득이 가능하나, 사회복지사2급자격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가로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급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되므로 실제 진입장벽은 매우 높은 편임. 이에 비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은 지나치게 수월하여 대폭강화가 필수적임

□ 제 2 안: 학과제한 없이 교과목 이수 후 국가시험을 통한 자격부여

- 현행 자격부여 방식대로 학과제한 없이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후,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부여. 단, 대학에서의 현행 12과목 35학점 이수 요건은 대폭 수정 강화되어야 함(양성교육과정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함).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질 관리와 수급 관리가 가능함.

나)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의 대폭 강화

-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과정의 폐지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새로운 역할모색 강구가 요구됨. 보육교사 3급의 폐지는 보육교사의 학력을 고졸이상에서 대졸(전문대졸)이상으로 높혀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됨.
-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은 시험검정으로 발급되며 교원양성이 부족한 경우에 선발하는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며, 준교사가 2년 이상의 경력으로 2급을 취득하는 조항도 검토해야할 사항임. 최근 5년 동안 2006년 에 전국에서 1명이 준교사 자격을 받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 취득학점을 70학점~80학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 있음.
 - 전공과목의 확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의 각 영역마다 1~2과목씩 추가하여 약 50학점으로 규정함.
 - 교직과목의 추가: 20학점 내외의 교직과목 추가
 - 복지관련 교과목과 건강가정 및 부모 관련 교과목의 추가: 10학점 내외추가. 이 영역의 교과목은 전공영역의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부분에서 10학점 내외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에, 복지, 건강가정, 가족, 지역사회의 개념을 포함하는 교과목의 추가가 요구됨. 보다 포괄적인 복지·가족 개념의 추가를 통해 추후 보육교사 양성체계와의 일원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교사’의 틀에만 머물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영유아교사의 정체성 확장에 도움을 줄 것임.

다)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의 통합 및 일원화 모색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취득 요건을 각각 강화하고 독자적 영역의 구축을 이룬 후 두 자격체계의 통합을 논할 수 있음.

2) 자격기준의 상향조정

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성격

〈표 3-2-1〉 유럽국가들의 유아교원의 역할 및 성격에 대한 구분

역할	자격증 범위	나라	성격
Early Childhood Pedagogue	0세-의무 취학 전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유아교육을 초등의 의무교육과 분리하여 유아교육만의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되 보육의 개념이 보충되는 개념
Preschool Specialist	초등 입학 전 2-3년 담당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교육제도 안에서 주로 교육만을 담당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양성과정에서 벨기에와 그리스는 초등과 양성과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일부 공유함
Teacher	유치원-초등 (3-11/12세)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공교육제도 안에 포함되어 유아를 포함하여 초등저학년 교육까지 담당함
Social Pedagogue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	덴마크(0-99세) 독일(0-14-27세) 룩셈부르크	의무교육 이외의 setting에서 일하는 사람

출처: 권건일, 이미정, 이희경, 정선아, 정혜순(2007) 유아교사(보육·유치원교사) 자격의 강화, 한국 유아교육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학술토론회, PP.38-39.

- 위의 표에 따른 구분을 보면 우리나라 유치원교사는 preschool specialist에 해당하고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증의 범위로 보면 early childhood pedagogue에 해당하지만 성격의 측면에서는 social pedagogue에 가까움(권건일외,

2007).

-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경우 아직 그 성격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됨. 유·보 일원화에 성급하게 집착하다 보면 보육의 영역을 오히려 ‘교사’로만 축소시킬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 있음.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각각 별도의 자격증 강화의 과정을 거친 후, 두 개의 자격증이 통합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 3의 기구를 통한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할 수 있음.

나)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 초·중등 교원과 연계하여 자격기준의 상향조정
 - 유치원·보육 교사의 자격은 2급, 1급으로 구분하며, 원감, 원장의 직제를 둠.
 - 최초 자격자에 2급 정교사자격을 부여함.
 - 유치원교사의 준교사 자격, 보육교사의 3급을 폐지함.
 - 승급과정의 동일화: 2급 → 1급 → 원감 → 원장
 - 유치원·보육교사의 학력은 단계적으로 학사 이상으로 강화함.
 - 점진적으로 유치원·보육교사의 자격을 3년제 이상의 학력으로 조정하며, 장기적으로 학사 이상으로 강화함
 -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주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은 전문대학 또는 기존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배출된 교사의 학력 고양을 위한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문대학의 학제가 2, 3년이므로 학점은행제 및 심화교육과정을 통한 학사 취득제도를 활용함. 2008년부터 개설될 심화교육과정은 전문대학졸업자를 위한 계속교육의 형태로서, 개인의 선택 과정이나 학력강화를 위해 입학의 당위성이 거론되어야 함(이희경, 2007).
- 보육교사 3급 및 유치원준교사제도의 점차적 폐지
 - 보육교사 3급에게 요구되는 학력의 자격기준이 고등학교졸업이상이므로,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육교사 3급의 제도는 검토되어야함. 또한 유치원준교사의 경우,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이므로 폐지가 바람

직함.

- 단계적으로 3급보육교사제도 대신에 보조교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격기준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하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함. 3급보육교사제도 대신에 보조교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에서도, 보조교사가 보육교사 정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졸(장기적으로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 보육교사 승급에 요구되는 기간의 형평성 제고

- 보육교사 3급은 교육원에서 1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보육업무경력 1년 이상과 승급교육만으로 2급에 도달(1+1)하며 1급까지는 2급에서 경력 3년 이상(1+1+3)으로 최소 5년 걸리며, 3,4년제 대학졸업자는 2급에서 1급까지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므로 1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게 소요됨(3,4+3). 즉, 보육교사 1급 승급에 걸리는 시간이 보육교사3급 출신은 최소 5년인데 비해 보육교사 2급 출신은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것은 모순임. 단기적으로는 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3급제도의 폐지를 지향함.

□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의 강화가 요구됨.

- 보육시설 시설장의 경로가 다양하여 최초 3급으로 임용된 교사는 학력의보장이 없어도 경력과 승급교육으로 시설장이 될 수 있음.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 대학, 대학의 심화과정 등을 통한 시설장의 학력 보장은 반드시 필요함.

다)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 통합 및 일원화 모색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 강화과정 후에 장기적으로 두 자격의 통합이 요구된다면 제 3의 기구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를 고려할 수 있음.

3) 근무여건의 개선(노광기 외, 2007)

가)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급여의 상향 조정

- 교사 급여체계의 상향 조정이 요구됨

- 개인의 직업만족도는 근무시간, 급여, 복지여건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제반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은 보육교사의 독자적 정체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 시설유형별(국공립, 사립/민간)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체계 마련이 시급함.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및 국립 유치원 교사 급여수준과 사립/민간시설 교사의 급여 수준은 큰 격차를 보임. 시설의 공사립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급여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이 요구됨.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급여체계의 절대적 상향조정이 요구됨.
 - 이때, 보육교사 급여체계의 상향조정 방안으로는 우선 초중등 교사의 급여체계를 따르는 방안과 새로운 직업영역으로서의 보육교사의 급여체계(초중등교사 급여체계에 준하는 수준)를 별도 마련할 수 있음. 최종적으로 초중등교사와 동일한 급여체제로 조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급여체계로의 상향조정을 위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수학 연한을 4년제 학사로 단계적 상향 조정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 있음.
 - 보육교사 3급의 폐지, 혹은 조정 논의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건임.
- 보육교사 호봉체계의 상향 조정이 요구됨.
 - 유치원 교사의 봉급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6호봉, 4년제 비사범계는 8호봉, 4년제 사범계는 9호봉부터 시작하여, 학력에 따른 호봉 차이를 두고 있는 반면에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의 급수나 학력에 관계없이 1호봉을 적용하고 있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간의 연봉의 차이가 큼. 따라서 호봉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보육교사의 호봉 승급액은 평균 17,000원이며, 유치원교사는 25,500원으로 1.5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갈수록 유치원교사와의 임금격차가 커짐.
 -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급여를 초중등교사의 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

나)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근무시간 개선

-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당 40시간, 일일 8시간의 근무시간 준수를 보장해야 함.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지나치게 긴 근무시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함.
-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시간은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일일 10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근무시간이 보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1일 2교대 정교사 담임제도의 정착이 시급함.
- 일일 근무 시간 중 일정시간의 연구 및 정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8시에 출근하는 교사의 경우 3시까지 보육실에서 교육 및 보육 업무에 종사하고 교대근무 교사는 2시부터 보육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업무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서영숙 외, 2006) 방안을 제기하고자 함.

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의 직업복지 환경 개선

-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의 각종 후생 복지(퇴직금, 휴가, 건강검진, 물리적 공간, 고용안전 등)여건을 공무원 복지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 개선하여야 함.
- 보육, 유치원교사의 근무여건(퇴직금, 휴가, 건강검진, 물리적 공간, 고용안전 등)에 대한 시설여건 지침 및 표준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 표준 모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및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증가

- 유아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원 및 각종 정부지원을 증가시켜야 함. 정부 지원 시 시설유형별(국 공립, 사립, 민간)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되어야 함. 정부 지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장기적으로 사립(민간)의 법인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마) 법정정원(교사 1인당 영유아수) 준수

- 최소 법정 아동수의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대상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급당 정원을 조정 하고, 보조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한 정부의 인력비 지원이 증가되어야 함.

4) 현직교육(보수교육)의 개선 방안

가) 현직교육과정(보수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됨.

- 보육교사 현직교육과정은 교사양성과정 교육에서와 같은 교과목을 이용하고 이수시간도 동일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됨. 양성교육과는 그 기본방향과 목적이 다른 현직교육의 교육과정으로는 적합지 않음. 따라서 현직교육의 목적에 맞는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함.
 - 보육교사 현직교육 교육과정이 교육기관마다 다양하고 동일한 내용도 각기 다른 명칭으로 개설되고 있어 질적 차이를 보임. 따라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여야 함.
 - 보육교사 현직교육 교육과정이 교사의 직급별, 교육목적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0-5세의 영유아의 발달이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영아/유아에 따라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내용이 세분화 될 필요 있음.
- 보육교사 현직교육과정(보수교육과정)이 유치원 교사 현직교육과정과 동일할 필요는 없음. 오히려 보육교사의 현직교육과정은 ‘교육+복지+공공가정+부모역할’ 등의 개념이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보육의 정체성에 적절한 교육과정의 수립이 중요함.
- 유치원교사의 현직교육과정에 교육의 영역을 뛰어넘어 ‘복지+공공가정+부모역할’ 등의 개념이 포함된 교과목의 추가가 요구됨. 이는 추후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에 필요한 요소로 판단됨.

나) 보육교사 보수교육 시간의 확대가 요구됨.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절대 시간이 너무 부족하므로 시간의 증가가 요구됨.

특히 승급교육의 보수교육 시간 확대가 시급함.

다) 현직교육(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재정비가 요구됨.

- 현재,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은 중앙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주관 하에 대학 및 보육교사교육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대학보다는 보육교사교육원의 담당 비율이 높음. 보육교사교육원은 3급 보육교사 양성기관이므로 이 기관에서 보수교육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보육교사 현직 교육을 담당할 정부의 전담기구 설립이 요구됨.
- 보육교사 현직 교육을 담당할 정부의 전담기구에서는 현직교육의 질관리 및 후속관리, 후속지원체계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해야 함.

라) 현직교육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교사제 확립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음.
 - 대체인력을 임시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식으로 채용하는 정규고용형태의 제도수립 필요함.
 - 대체교사 급여를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고 경력으로 인정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보수교육 비용에 대한 교사 자부담비율이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시정될 필요 있음.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의 정부부담이 요구됨.

다. 2단계: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통합 및 협력의 모색

- 1단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질적 수준이 각각 상향조정될 것임. 근무조건이 향상, 자격의 강화, 양성교육과정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각 교사의 질적 수준은 크게 향상되고 사회적인 인식과 전문성도 크게 향상될 것임. 특히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점차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동질적 성격과 이질적 성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영역은 각각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임.

- 1단계 후 두 영역의 유사성이 크다면 통합의 과정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질적인 부분이 부각된다면 각각의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남을 것임. 이때 두 영역의 통합이 어려울 정도의 이질성이 부각된다 할지라도 각 영역은 이미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질적 수준향상을 확보하였으므로 교육/보육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선(先보)개별적 질적 수준 강화, 후(後)통합논의 방안’은 보육/교육이 부처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판단됨.

3. 교육·보육 과정

가.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현황

1)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관계 법령

가)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에 의하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함.
-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의 연구 및 개발
 - 유치원교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집 발간
 - 유치원 교육 활동지도 자료집 발간

□ 시도교육청의 역할

- 법적 근거: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유치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 제시

나)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에 보육과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 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되어 있음.

〈표 3-3-1〉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관련 법조항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영유아보육법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유치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현황 비교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편성체계와 영역별 내용 등이 다르게 조직되어 있음.
- 유치원교육과정은 유아를 대상으로 5개 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유치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표준보육과정은 만 0세에서 만 5세 까지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 지침을 6개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사에게만 활동 지침을 제공하여 지역화 교육과정 없이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

〈표 3-3-2〉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비교

구분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주관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
공포 근거	2007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2호	2007년 1월 3일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1호
추구하는 인간상	1. 전인적인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1. 자율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4. 민주적인 사람 5.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목적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는 데 있다.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기본생활습관을 기른다. ▪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생활습관을 가진다. ▪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며 안전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운동능력을 기른다.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영역 구성	건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표현생활영역, 언어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 (5개 영역)	기본생활영역, 신체운동영역, 사회관계영역, 의사소통영역, 자연탐구영역, 예술경험영역(6개 영역)
수준별 교육·보육과정	각 영역에 제시된 I 수준, II 수준, 공통수준의 교육내용을 유아의 발달 정도에 알맞게 편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구분: 만 2세미만, 만 2세, 만 3세~만 5세 영유아 ▪ 수준구분: 만 2세미만은 1·2·3수준,

구분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만 2세는 1:2수준, 만 3세~만 5세는 1:2:3수준으로 구분한다.	
대상 영유아	만 3세~만 5세 유아	출생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아	
교육·보육 일수	연간 180일 이상	연중	
하루 교육·보육시간	하루 교육시간 180분을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의 지침과 유치원 실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보육시간은 종일제를 기본으로 연장보육, 시간제 등 다양하게 운영	
평가	교육·보육 과정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의 질관리 목적 국가수준에서 교육청의 지원 상황 파악을 위해 교육청에 대한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실시 국가수준에서 다양한 평가방법과 절차 및 도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과정의 질관리 목적으로 운영 평가 보육시설 자체에서 정기평가 (적절성과 실효성)
	교육·보육 과정의 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운영평가는 교육내용이 통합적으로 편성·운영 평가 교수학습방법이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특성에 대한 적합성 평가 교육환경 및 교육활동자료가 활동주제, 내용, 유아발달 특성,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 평가 평가결과는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반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과정의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영유아의 발달수준, 흥미, 요구에 적합한 경험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수학습 방법이 계획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 평가결과는 다음연도의 효율적인 보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반영
	영유아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유아에 대한 평가를 함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준거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 유아의 태도, 지식,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함 유치원 일과 속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다양한 방법(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면담 등)을 사용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 평가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유아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 부모면담, 생활기록부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특성과 정도 평가 영유아의 성장변화를 질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하되 총체적으로 평가 다양한 방법(관찰기록, 작품분석, 부모면담 등)을 사용하여 영유아 자신 뿐 아니라 영유아를 둘러싼 총체적 환경을 포함하여 평가 평가결과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생활기록부 작성, 학부모와의 면담자료로 활용
활동 지침서	교사용 지침서 개발 및 보급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문제점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많고 차이점은 강조점의 차이, 문서 표현상의 차이, 서술의 구체성의 차이와 같은 것이므로 영역과 내용의 통합을 위한 공동개발을 하여야 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유치원교육 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함으로서, 영역 명칭의 차이와 내용의 이해에 혼란을 느낄 수 있음.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같이 시·도 지역에서 표준보육과정 장학자료를 운영, 작성하여 보급할 중간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교사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 등에서 서술하는 어휘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사실상 거시적으로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 등이 같다고 볼 수 있음. 즉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부족한 점은 목적이나 목표에서 추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교육·보육과정의 인간상, 목적, 목표는 유사함.
- 구체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은 교육의 특성화 계발이 미흡하고 표준보육과정은 지역화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함.
- 표준보육과정의 명칭 때문에 보육현장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의도를 이상적인 보육과정으로 착오함.
- 운영시수에서는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일함.
- 평가는 두 기관을 국가 수준에서 질관리의 목적으로 교육/보육과정의 평가, 영유아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 유사함

다.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정책 방안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간에 연계성을 가져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에 협의를 거쳐 만 3~5세의 유아들은 같은 교육·보육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함께 공존해야 하고 국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우리의 상황 하에서는 먼저 교육·보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운영상의 혼란을 피하고, 점차 영유아교육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여 바람직한 교육·보육환경을 마련하고 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 표준보육과정이 보육현장에서 잘 실행되려면, 표준보육과정의 지역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보육과정의 지역화는 표준보육과정의 획일적 운영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의 틀 속에서 각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육목표와 내용을 지방정부 수준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보육시설에서 각 보육시설 수준에 적합하게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임.
 - 유치원교육과정은 시·도 교육청, 유치원의 교육과정 개발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도 국가수준의 지원이 밝혀져 있음.
 - 그러나 표준보육과정은 교사에게만 활동지침을 제공하여 지역화 교육과정 없이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되면 영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국가 전문 인력의 활용과 국가 재원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임.

- 연령 세분화와 구체적 기술이 필요함.
 - 표준보육과정의 연령구분에서 만 2세미만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표준보육과정에서 만 2세 미만아를 수준별로 묶어버림으로서 어린 영아들의 보육과정으로서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빠져 있음.
- 표준보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보육정보센터가 중심이 되어 장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필요함.
 -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평가인증제를 조력하기 위한 자료제공 뿐만 아니라 보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일을 담당하여야 함.
 - 또한 보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준보육과정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상호 연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함.
 - 영유아가 어느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교육·보육내용을 가지고 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특수 교육·보육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장애아 보육, 연장보육, 야간보육,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사용 지침서가 별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과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서 선진국과 같이 보육과정 개발 상설 자문기구를 두고 유아교육·보육과정 전문가 집단이 꾸준히 보육과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함.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국제화 시대에 맞게 성평등적, 반편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관리·전달 체계

가. 질 관리

1) 현행 질 관리

가) 보육시설과 유치원 관리 비교

구분	보육시설 질 관리		유치원 질 관리	
평가 인 증	주관 부서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해당시도 교육청 산하 유치원 평가위원회
	신청 체계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과 지자체 협조 체계		해당시도 교육청
	관찰 평가자	관찰자 2인이 방문하여 관찰 후 관찰결과보고서 작성		관찰자 4인이 방문하여 관찰 후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제도	중앙의 인센티브는 없으나 지자체별 지원이 다름		평가준비금 및 우수사례 포상
연구개발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두 분야의 질관리 연구			
지도점검 및 장학담당 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실 보육정책관 - 보육정책과 - 보육재정과 - 보육지원과	·보육관련 법안, 정책 수립 및 홍보 ·표준보육과정 개발 보 급 ·관련 법인·단체 지도· 감독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예산 편성 및 집 행관리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도·점검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보육개발원 설립 및 지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유아교육지원과	·유아교육발전 종합 계획 ·재정지원 ·학습능력발달 지원 ·자료개발, 교육과정, 평가
	시도 (예)서울특별시	·안심보육모니터링 단 구성 운영	광역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 총괄 ·유아교육장학 기획

구분	보육시설 질 관리		유치원 질 관리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보육지원팀 -보육사업팀 -보육평가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우수보육시설 선정, 표창 ·보육시설 이용 불편신고 센터 운영 ·보육정보센터의 지도감독 ·장애아 통합교육 지원	초등교육정책과	·자율장학, 학부모 연수 ·특수교육 지원
	시군구 (예)서울시 ○○구청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감독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시군구교육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유아교육계획수립 ·장학지도 ·교원인사 ·교육과정, 종일반 운영 ·유, 초 연계교육
관리담당자	보육담당 행정 공무원		장학사	

나) 보육시설과 유치원 질관리 분석

□ 보육시설 질관리

- 담당 공무원은 보육전문가가 아니며 순환보직으로 담당 업무가 자주 바뀌게 되므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움
- 질관리를 위해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인증 지표의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 개발 필요
- 지도점검은 회계, 보조금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질관리의 편중성
- 보육시설 운영과 지도, 점검의 분리가 요구되며 지도, 점검자의 전문성 확보 요구됨

□ 유치원 질관리

- 유아교육 전문가인 시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장학활동을 통해 질관리하며, 필요 시 방문, 전화, 문서 등을 통해 협의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운영됨

- 장학형태는 원내 자율장학, 지구 자율장학, 담임 장학, 요청 장학, 표집 장학 사이버장학 등으로 다양
- 전문가와 담임 장학사가 함께 참여하며 장학 결과 유치원의 특색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 유도
- 유치원평가는 향후 현장정착을 위해 적극적 시행 필요
- 장학사와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평가위원회가 3년 주기로 평가 및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보고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주기의 정책에 반영
- 소수의 장학사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음. 장학사는 13년 이상의 교육경험이 필수이며, 실제 수업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부서 이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치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담당 유치원의 수가 많은 편이라 실제 장학의 횟수가 제한적임
- 보건 위생관리나 시설관리의 부분은 초등학교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의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담당

2) 질 관리 통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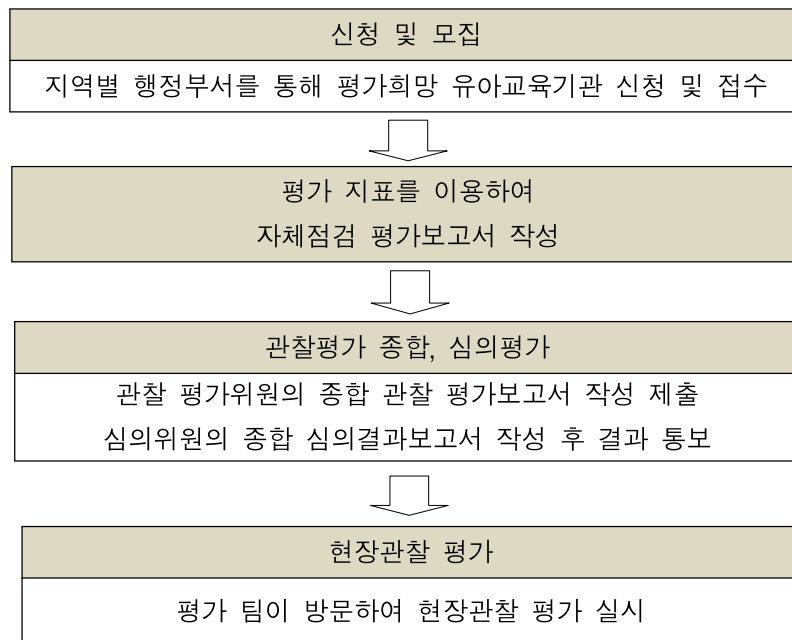
가) 행정통합

□ 행정 시스템:

- 보육평가인증사무국과 유치원 평가 인력을 재구성하여 제3의 기관인 영유아 보육·교육평가국(가칭) 설립
- 보육평가인증사무국의 전산시스템 수정하여 사용
-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과를 중심으로 한 행정 전달체계 이용
- 아동가족직 공무원(가칭)직 도입

나) 평가시스템 통합

□ 평가 절차



□ 평가 인력

- 영유아보육·교육평가원에서 5박6일 정도의 연수를 통해 평가단 구성
- 자격기준 및 구성
 - 현 보육시설평가인증 관찰자와 유치원평가위원의 자격 기준을 중심으로 자격 기준 마련
 - 예) 보육, 유아교육 현장 10년 이상 경력 교사 및 원장, 보육, 유아교육, 아동학과 교수,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장관찰자 3년 이상 경력자, 유아교육 담당장학관(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

□ 지표

- 보육시설평가인증지표 항목과 유치원평가항목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며, 미세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영역의 지표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지표의 일원화(영아전담, 장애아통합, 장애아전담, 연장보육, 방과후 포함)

□ 조력 시스템

- 영유아보육·교육지원센터 역할 활성화
- 공인조력자 제도 도입
 -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연수(5일 정도)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 국가에서 공인조력자 인증서를 주고 조력활동을 하게하며 1년에 한번씩 지표와 행정적 변화에 대한 재교육 후 갱신하게 함
 - 자격기준: 현 보육시설평가인증 관찰자와 조력위원, 유치원 장학 참여하고 있는 인력(장학사 포함)을 중심으로 자격기준 마련
 - 예비 조력 시스템 도입
 - 사후 조력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적인 질관리가 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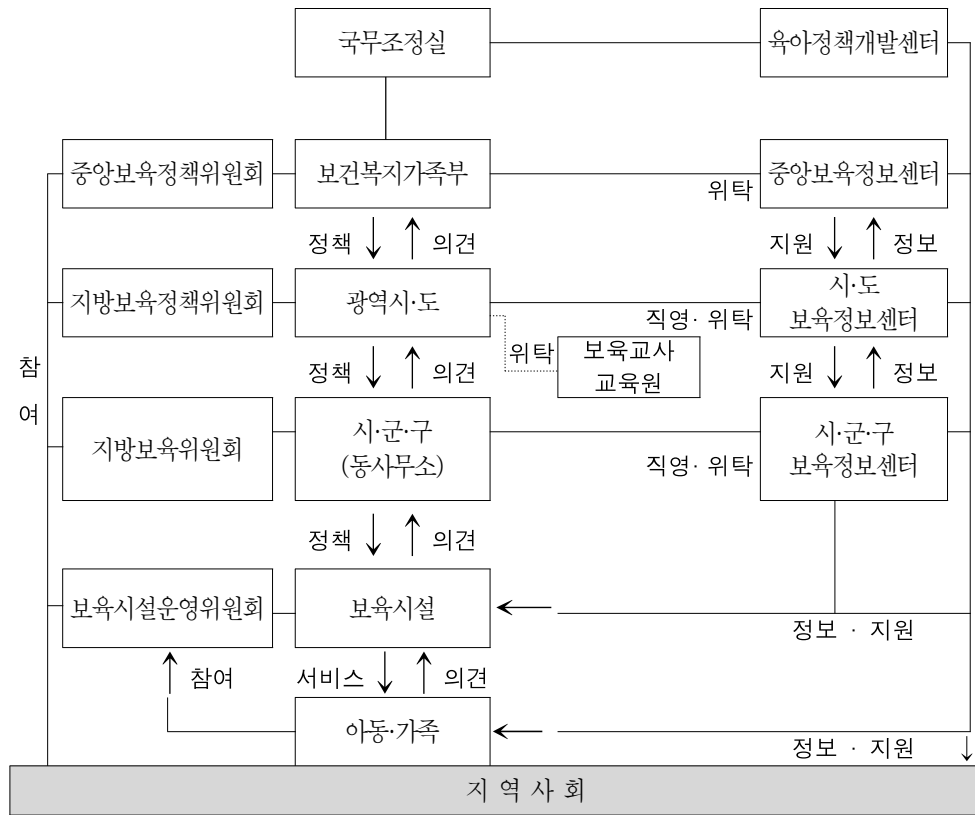
□ 지원 시스템

- 우수평가지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지원 지정 후 지도 점검, 사후 연구 발표하게 함
 - 우수교사 수당, 교재교구비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등 인센티브제도입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상호교류 유도로 지역별 자체 장학이 되게 함
- 사후 질관리의 제도적 확산

나. 전달체계

1) 현행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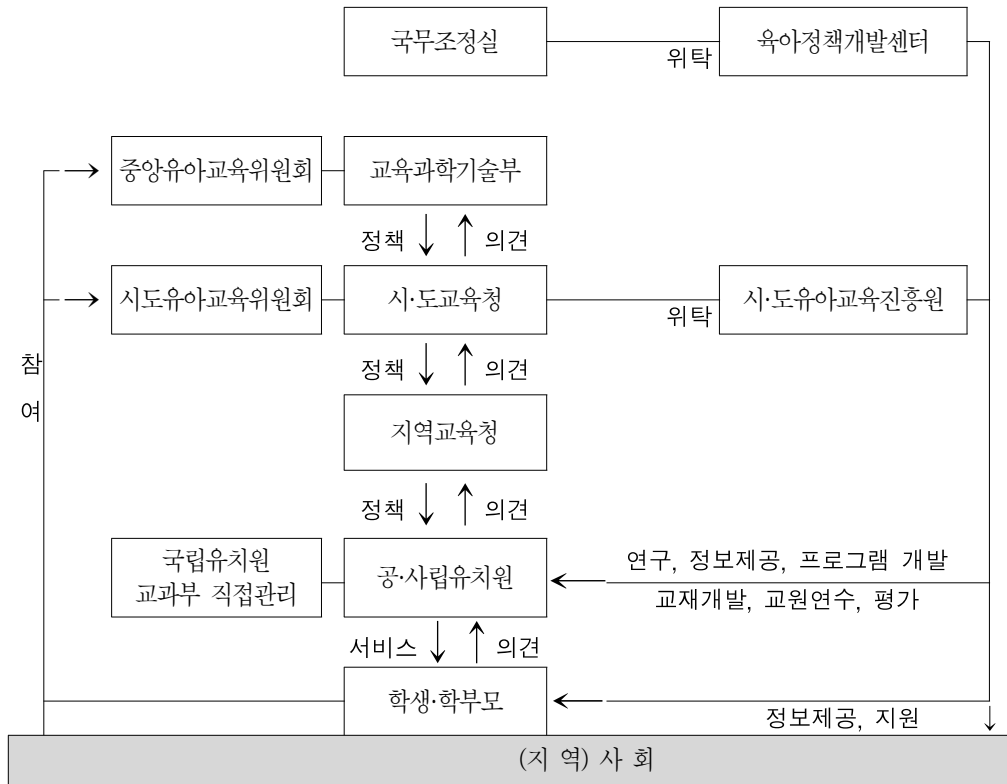
가) 현행 보육시설 전달체계



출처: 김종해 외(2006)

[그림 3-4-1] 현 보육시설 전달체계

나) 현행 유치원 전달체계



출처: 김종해 외(2006)

[그림 3-4-2] 현 유치원 전달체계

다) 현행 전달체계의 분석

□ 보육시설 전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광역시도-시군구-보육시설-아동·가족의 기본적인 체계와 아울러 보육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보육정책위원회(지방보육위원회, 보육시설운

영위원회)와 보육시설운영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한 보육정보센터 등 3가지 축의 전달체계로 구성

- 보육정보센터는 중앙 및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며, 광역시·도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조례제정 등의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점검을 학부모대표 및 교사대표로 구성된 집단과 함께 협력하며, 각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는 지역인사와 학부모대표 교사대표가 함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있는데, 더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의 협력 기능 확대가 필요함
- 보육시설 지도·감독은 보건복지가족부-광역 시도-시군구청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 또한 상대적으로 많음

□ 유치원 전달체계

- 유치원의 지도·감독은 교육과학기술부-광역시도교육청-시군구 교육청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교육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 유치원 전달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공사립유치원-학생과 학부모의 기본 체계와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진흥원의 3개 축을 갖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호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뿐 아니라 유치원,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회 대표로 구성되며, 유아교육 정책,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의 심의를 담당하며 더 실제적인 지도감독 체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2) 전달체계 통합 방안

가) 행정 통합

□ 아동·청소년·가족부 신설

- 아동청소년가족부(가칭)를 신설하여 보육과 교육의 통합과 함께 가족복지를 담당
- 전달체계는 아동청소년가족부(가칭)를 정점으로 광역 시도 중앙보육교육위원회(가칭), 시군구 지방보육교육위원회(가칭),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전달 체계를 구축
- 보육교육지원센터(가칭)는 보육교육위원회(가칭)와 협조하여 유아교육기관의 감독, 장학, 프로그램 제공, 평가 등의 업무 담당



[그림 3-4-3] 통합형 전달 체계

나) 통합 내실화 방안

□ 지도·감독 전달체계의 통합 내실화 방안

- 현 보육시설지도점검 관련 공무원과 유치원 장학지도를 담당하는 장학사의 협력체제 구축

- 현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자는 보육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보육교육내용을 지도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이나 시설점검 분야를 현행 보육시설 지도 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화 및 교원 관리 등의 분야는 유아교육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장학사 담당 업무로 상호 협조체제 구축하여 효율성 증대.
- 보육교육위원회 통합 내실화 방안
 - 현 보육정책위원회와 유아교육위원회의 역할 통합
 - 보육정책위원회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는 각종 보육 및 교육 정책, 사업의 기획, 평가 및 심의를 담당하는 정책 기관으로 중복성이 높다. 따라서 두 기관의 공통 업무의 통합과 고유 업무의 협조 체계를 갖는 보육교육위원회로 통합하여 내실화 구축 필요.
- 보육교육지원센터의 통합 내실화 방안
 - 현 보육정보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 보건소의 역할 통합
 -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과정 운영, 평가인증에 대한 준비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정기적인 교사교육과 세미나 진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며, 교사들의 보육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질적인 전문성 고양을 지원하기 위해 적어도 현장 경험 5년 이상의 전문가의 증원 배치 요망.
 - 건강가족센터도 가족복지와 더불어 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와 가족 교사에 대한 도움이 분리되어 진행되기 보다는 합쳐져서 운영될 때 중복적인 업무집행의 낭비적 요소가 없어질 것이며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
 -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보건소와 협조를 통해 아동 보호의 역할 증대
- 광역시와 도의 중앙보육교육위원회와 시도의 지방 보육위원회, 각 구청 단위의 보육교육 위원회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 지역 및 지방의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각 지역인들의 보육교육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교육과정 운영실시가 요망.
- 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와 유치원 평가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보육교육 평가국(가칭) 설립

- 현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치원 평가의 역할도 담당하게 할 평가 전문가인력풀을 구성하여 장단기적인 통합형 평가제도의 개발과 개선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 보육교육평가국(가칭)에서는 차수별 평가진행이 아니라 각 지역의 평가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질 개선을 위한 자료제공의 역할도 담당토록 함. 나아가 전국의 평가포럼을 실시하여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우수사례의 정보 일반화 도모.

5. 재정 지원

가. 보육과 유아교육 재정 현황

- 보육과 유아교육의 총 예산은 2007년 약3조원이며(이욱 외, 2007). 이는 GDP 대비 0.35%정도임.

〈표 3-5-1〉 육아지원 재정의 변화

		2002	2003	2004	2005	2006
보육	중앙정부 (전년대비증가율)	2,102	3,120 (48.4)	4,050 (29.8)	6,001 (48.2)	7,844 (30.7)
	지방정부 (전년대비증가율)	2,253	3,431 (52.3)	4,702 (37.1)	7,354 (56.4)	12,519 (70.2)
	계	4,355	6,551 (50.4)	8,752 (33.6)	13,355 (52.6)	20,354 (52.4)
유아교육	중앙정부 (전년대비증가율)	209	257 (22.9)	345 (34.2)	871 (152.5)	1,997 (129.3)
	지방정부 (전년대비증가율)	3,349	3,823 (14.2)	4,397 (15.0)	5,512 (25.4)	6,863 (24.5)
	계	3,558	4,080 (14.7)	4,742 (16.2)	6,383 (34.6)	8,860 (38.8)

출처: 유희정·김은설·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만5세아 무상보육 아동은 2006년도 기준으로 141,600명으로 보육아동의 88% 수준이며, 무상교육은 145,809명으로 아동의 50% 수준임(이옥 외, 2007).
- 보육과 유아교육의 부모 부담 비용을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 하고 있음.
-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 아동은 72만 명에 달함. 만3,4세 차등교육비 지원 아동은 2006년도에 162,000명으로 65%임. 2006년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은 55만 6,643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62%임(이옥 외, 2007).
- 영아는 그동안 지원하던 영아지원을 기본보조금으로 개념화하고 금액도 확대 하여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음(이옥 외, 2007).

나. 보육과 유아교육 재정의 문제점

-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의 상당 부분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사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은 데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설립 주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 1인당 확보되는 보육·교육 비용, 부모 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됨. 전체 보육아동 중 31.3%를 차지하는 정부지원시설에 보육예산의 71.3%가 집중되어 있음(이옥 외, 2007).
- 국가보조로 관리되던 유아교육의 예산은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었으며, 유아교육 예산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의 10% 절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될 경우 유아교육예산 확보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재정 지원은 지역 간 편차를 강화시킬 수 있음.
- 민간시설과 공공기관의 정부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왔으나 아직까지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의 해소를 위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영아 보육에만 적용이 확정됨.

-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시설보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보육 받는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영아 보육이 시설보육 중심으로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영아의 복지와 권리 실현, 영아 부모의 보육에 대한 요구나 영아보육의 현실과 거리가 있음.

다. 보육과 유아교육 재정 정책 방안

1) 보육료·교육비 상한선 상향 조정 - 부모의 부담 측면

- 보육료를 현재와 같이 모든 보육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운영 여건이 다양한 민간보육시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수립·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의 이원화 문제 등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영유아의 복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며, 효율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임(서문희 외, 2006).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별 유사한 이용 가격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교육비가 자율화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논의 시 보육료와 교육비의 자율화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 보육료와 교육비의 전면적 자율화는 급격한 보육료·교육비 인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계층별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음. 이는 민간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보육료와 교육비의 급격하고 과도한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한 상황에 기인함. 따라서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상한선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 때 적정한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현재의 표준보육단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성 있으며,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함. 또한 표준보육단가는 시간당 단가로 제시되어야 연장제, 종일제, 시간연장 및 야간 보육 등 다양한 보육과 교육 시간에 적용시킬 수

있음.

2) 연령별, 소득별, 시설 간 형평성 증가 - 정부의 보육 및 교육비용 지원

-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은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소득, 이용 시설 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참여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은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아동 1인당 공적 재원 투입, 부모 부담,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비용 등이 모두 동일한 수준이 되며 아동과 부모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을 지향함.
-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별도의 교육비용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제외된 상태이며(서문희 외, 2006),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실시 유보로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 또한 부모가 동일한 보육료를 낼 경우 예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임.
-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을 1) 5세 아를 전담하게 하여 학교 체계에 편입시키든 가 2)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또한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이 민간 보육시설에 추가로 지원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이용시설 간 부모의 보육료 부담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없으며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동일하게 할 경우 보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기 어려움.

3) 유아의 보육·교육비용 지원

- 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 및 교육비용 지원은 현행의 소득 뿐 아니라 모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
-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비용 지원을 달리할 것이냐의 여부는 보편주의, 재정 지원의 효율성, 보다 긴박한 수요자의 욕구 충족 등의 문제로 인해 쟁점 사항이며, 취업모에게 별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함(이옥 외, 2007).

모의 취업 여부를 고려하여 비용지원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호주의 예와 같이 비용지원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보편주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혼여성 노동력의 유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 반드시 장시간 보육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영유아가 장시간 보육과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만4세 이하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해 보편주의에 입각한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4시간의 보육비용을 지원 비율과 지원 대상 유아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 4시간의 보육비용 지원은 차등보육료 지원 체계에 편입시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인건비 지원이 전부 또는 일부 이루어지는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은 민간 및 사립의 지원과 체계를 달리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료 및 교육비는 이용 시설 간 동일할 수 있도록 함.

4) 영아의 보육비용 지원

- 영아의 보육비용은 시설 뿐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영아 지원의 경우 시설이용 여부 또는 이용 시설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함.
- 영아의 경우 모 취업여부 등 조건에 의한 이용시간 이원화와 비용의 이원화는 특히 영아의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봄.

5) 육아지원 재원 확보 방안

-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한시적 목적세인 '보육세'의 도입이 필요함. 일례로 스웨덴은 보육예산의 확보를 위해 25년간 보육세를 거두었음(이욱 외, 2007).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세금이어야 하나 현재 교육세가 있으므로 유아 교육세는 중복될 수 있음. 따라서 영유아 양육세와 같이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거나 현행의 교육세를 교육·보육세로 명칭을 바꾸어 보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국가보조로 관리되던 유아교육 예산을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됨으로써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확보의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양질의 유아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6)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 방안

- 행정업무 과잉으로 인한 행·재정적 폐해의 감소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의 최소화와 가격자유화 등을 병행하여 영유아 보육과 교육 서비스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주장과 육아재정 확대에 따라 보육과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현행의 보육행정 업무전산화를 위한 보조금지원체계인 표준보육행정시스템(e-보육)이나 부모에게 직접 보육비용이 지원되는 전자바우처를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확보하도록 함.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시설인가 기준, 교사 대 아동비와 같은 보육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물리적, 인적 환경에 대한 사항은 기준을 고수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보다 강화하도록 하나 재정운용의 세세한 사항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통제보다는 평가인증제도를 통한 보육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8.7 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2007년도 유치원 평가 매뉴얼: 시범평가.
- 권건일·이미정·이희경·정선아·정혜순(2007). 유아교사(보육·유치원교사) 자격의 강화. 2007 한국유아교육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 권화숙·김정희(2005). 미국과 한국의 유치원 평가 준거 탐색. 비교교육연구, 15(4), 15-35.

- 김선영·신화식·이순영·이윤경·임승렬(2007). 대학에서의 유아교사(보육·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일원화. 2007 한국유아교육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 김중해·백선희·이미정·이원영·임재택(2006).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2006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김지은(2007). 지방화 시대의 보육과 표준보육과정의 안내. 2007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 학술대회,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비교, pp 83-105. 3월 17일. 전북: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시청각실.
- 나정(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나정·류숙희·고미경·성화영(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 노광기·서영숙·이화도·최영란(2007). 유아교사(보육·유치원교사)의 근무여건 정상화 및 현직교육 강화. 2007 한국유아교육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4.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화식·박진옥(2008).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2, 103-123.
-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 유희정(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범실시와 향후 방향. 2006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11-19.105-120.
- 윤숙현·이미정(2006). 가정학적 접근을 통한 보육의 발전방향제시, 대한가정학회지, 44(5).
- 이기숙(2008). 유치원 시범평가의 배경과 추진과정. 대한어린이교육협회 2008년도 춘계회원연수자료, 1-12.
- 이대균(2001). 국가주관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유아교육학논집, 5(1), 97-116.
- 이미화 외(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
- 이옥(2006). 중장기 육아지원 정책방향과 연구과제. 2006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11-19.
- 이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2006-01.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옥·서문희·유희정·장명림·이미화·김은설·신나리·김은영·이정원·이윤진 (2007). 육아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2007-11.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희경(2007).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개선 요구 및 지원과제에 대한 토론.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사자격기준 개선 정책 워크숍. 연구자료 RM2007-81 한국교육개발원. 193-201
- 정혜순(2008). 한국국공립유치원의 변천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순자(2006).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06년 추계전국학술대회, 39-54.
- 최창한(2006). 한국보육정책의 방향 모색.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06년 추계전국학술대회, 81-102.
-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서울:학지사.

부록 4.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는 유아교육과 보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와 관련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 속에 그 해결 실마리를 찾기 힘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혁 방향이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① 가까운 곳에서, ② 질 좋은 보호·교육을, ③ 저렴한 비용으로, ④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련한 체제 개편과 재정투자로 요약되는, 질 높은 공교육·공보육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이는 아이들에게는 연령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질 높은 보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원하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아이들의 보호·교육과 운영에만 전념하고, 교사들은 더욱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뜻한다.

2006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을 위해 갈등 유발 주제별 조정 과정을 거친 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는 ‘영아보육의 활성화와 공보육화’,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화’라는 두 가지 기본전제 속에서 항상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여전히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제안한 통합방안에 기초하여 다음 5가지 영역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기관·시설

가. 기관·시설의 통합 운영 방향

1) 유아교육·보호 통합 운영시 고려사항

- 기존의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으로 다각화된 영유아 대상 교육시설 및 이원화된 관련행정체계를 연결해 주고 유아교육·보호의 질을 관리하는 국가적인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 시설 설치, 교육·보육과정, 행정체계, 지원체계, 교사수급 등의 다각적 측면에서의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해 줄 수 있어야 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 운영에 따른 설치, 운영, 감독의 행정체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2) 유치원, 보육시설 행정체계의 통합방안

- 이원화된 관련행정체계를 연결해 주고 유아교육·보호의 질을 관리하는 국가적인 체제를 마련함.
- 영아와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체계의 지원망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
- 초기에는 두 행정 부처간의 행정체계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고, 차츰 기관 및 시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나갈 수 있음.

나. 현행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통합 운영

1) 기존 유치원의 운영

- 유치원은 연령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영아반과 유아반 운영의 프로그램 개발 제공에 유의하여야 함.
- 영아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영아반 운영 시, 여러 가지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함.
- 영아반, 유아반 운영에 적절한 교사 수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기존 보육시설의 운영

- 보육시설은 유치원으로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함.
-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선택권이 제공되어야 함.
- 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규정이 유치원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교사 수급 대책이 유치원의 경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함.

3)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특성 조정

- 운영시간: 학부모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8시간 이상), 시간연장제(5~8시간 미만) 및 반일제(3~5시간 미만)를 운영할 수 있음.
- 운영일수: 일정한 운영일수를 두되,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연장 운영 가능
- 교육내용: 교육과 보호의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된 내용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일관된 형태로 가야 함.

- 학급 편제 및 정원: 종일제의 경우 20명 이하로 의무화하여야 함.
 - 단, 시간연장제, 반일제의 경우 만4~5세아의 경우 30명 이하, 만3세아의 경우 20명 이하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교원 자격 및 배치 기준
 - 교원의 구분: 원장, 원감, 영유아교사, (가칭)육아지원사
 - 교사의 자격기준
 -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3급 정교사로 구분
 - 대학(교)에서 유아교육 관련학과 졸업자
 - 교원의 배치기준
 - 원장, 원감,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기관에는 원감, 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기간제 교사, 강사 등 보조교사 배치 가능
 - 영양사, 간호(조무)사, 촉탁의사, 행정직원 등 배치 가능. 단, 10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일 경우 지역별, 학군별로 연합·구성하여 활용 가능

다. 시설 설치 기준 및 관련 기준

1) 시설 설치 기준의 조정시 고려사항

- 조정과정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 설치 기준을 동일화하여야 함.
- 시설 설치 기준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별로 유아수와 시설수의 균형을 맞추어 시설의 난립과 원아모집 경쟁을 해소하여 유아교육·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함.
 - 최근 2-3년 동안 지역별 수급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설 과잉지역에는 신설을 억제하고, 시설 부족 지역에는 ‘유아교육·보육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하여 확충하여야 함.

2) 관련 제반 기준 조정

- 현행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상호 변동 조정
 - 유치원: 관련 제반 기준 조정 후, 전환을 희망하는 곳에 한해 전환 허용
 - 보육시설: 관련 제반 기준 조정 후, 설립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고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곳에 한해 허용
- 기존의 설립주체, 설립행위, 설립기준(교사 및 실외놀이터, 교지) 등에 관한 관련 제반 기준을 재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사 자격

가. 교사자격의 체계

1) 교사자격제도의 중점 검토사항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는 ‘영아보육의 활성화와 공보육화’,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공보육화’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하여 구조기능적 관점과 인위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생태적 관점과 맥락적 관점에서 아이와 부모와 교사의 관계와 삶을 돌보는 측면에서 교사자격과 교사교육에 접근함.
- 현행 교사자격제도의 다양한 양성 체계와 과정을 살펴볼 때 일괄적 통합은 자칫 교사 자질 및 역할 수행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사자격제도의 일원화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의 기본 핵심과제 이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유아교사로서의 질 보장과 양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함.
- 일원화와 연계하여 조정과정에서 교사자격 및 양성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추후 조정과정 속에 파생된 자격기준이 여러 양성기관의

또 다른 이해관계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정과정은 일원화를 위한 단계적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과정이 고착화될 시 더 큰 이원화체계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계적 대책이 필요함.

2) 교사자격제도의 체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1년 과정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이나 약 14개 보육 관련 학과에서 총 12개 교과목과 1개월의 보육실습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질적 저하와 유아교사의 지나친 양산을 초래한 잘못된 제도로 지적받아 왔으므로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 필요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다소 복잡·다양한 현행 유아교사 자격관리체제를 하향 동일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양성과정의 현행 실행 체제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교사자격의 다양성을 두지 않는다면 유아교육과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학과와 더불어 심지어 복지관련 학과 모두가 교사자격이 동일하게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교사제도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현실적 요구를 모두 고려한 측면에서 영유아교사3급, 영유아교사2급, 영유아교사1급, 원감, 원장으로 자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교사3급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 전문학사(2·3년제) 졸업자
 - 영유아교사2급은 영유아교사3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혹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 4년제 학사 졸업자
 - 영유아교사1급은 영유아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원감은 영유아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원장은 원감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나. 교사양성과정

1) 현행 교사양성기관의 체계에 따른 고려사항

- 조정과정에서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유지하되, 교사교육의 내용 및 자격기준을 동일한 수준에서 맞추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음.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일원화 또는 재구조화가 필요함.
 - 유아교육과, 아동 및 보육관련과, 복지 관련과, 기타 보육교사 자격 이수를 하고 있는 과의 교사 양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자격 부여에 대한 원칙이 필요함.
 - 4년제, 3년제, 2년제, 1년제 등의 다양한 현행 직전교육의 형태를 체계화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4년제 유아교육과, 4년제 아동 및 보육 관련과, 4년제 복지 관련과, 3년제 유아교육과, 2년제 아동 및 보육 관련과, 2년제 복지 관련과,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현행 양성기관에 대한 조정 및 대안이 필요함.

2) 양성기관 체계 조정 방안

- 현행 교사양성기관의 체계를 재검토하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음.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운영 실태(교수 대 학생 비율, 실습환경 확보 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교사양성기관 지정을 재검토함.
 -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함.
- 교사양성기관 및 관리체제의 개혁이 필요함.
 - 교사양성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전문대학을 통한 양성

은 현행 수준에서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재구성하기로 함.

-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신·증설 계속 불허
 - 기타 전문대학의 아동·보육과 신·증설 불허
 - 4년제 학사와 2,3년제 전문학사의 자격 종류 차등화
 - 유아교육과, 아동 및 보육 관련학과, 복지 관련학과의 학과가 같은 성격으로 변하여 혼돈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 및 보육 관련학과는 평가인증을 통해 학생 수 동결 및 조정 필요
- 기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학 편입학 및 재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교사교육 프로그램

- 교사자격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교사교육의 일원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영아보육의 활성화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음.
- 현행 교사교육이 가지는 구조기능적·아동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영유아와 가족, 보육과 교육, 인간과 자연을 아우를 수 있는 관계적·순환적 삶을 지향하는 생태적 관점으로서의 변화가 요구됨.
- 영유아 보호 및 교육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생태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세워야 함.
 - 영유아교사교육의 목적은 생명공동체, 사람공동체, 아이행복세상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어야 함.
- 영유아교사교육의 내용은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아이의 본성과 삶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이들과 함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생명존중과 생태적 삶의 내용을 기저로 하여야 함.
- 영유아교사교육의 방법은 생명의 원리에 따라 ‘더 많이’, ‘더 빨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삶을 담아 생태적 삶의 체득을 포함하는 방식이 되어야만 영아와 유아를 아우르는 새로운 통합 자격에 맞춘 교사교육이 될 수 있음.

다. 교사고용 및 자격관리체계

1) 교사고용 상호 인정

- 조정과정에서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상호고용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점차 교사자격체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해야 함.

2) 자격관리체계

- 기존에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구분되어 있는 교사자격관리체계를 상호 협력하여 동일한 형태로 조정해 나가야 함.
- 기존의 보육교사교육원 기능을 전환하여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 일원화 과정을 위한 재교육 및 연수기관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교사자격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교원 및 종사자의 자격 전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 소정의 「보호」 관련 연수과정 이수 후, (가칭)영유아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되,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둬.
 - 단, 기존에 보호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았거나, 일정기간 보육시설에 근무한 자에 한해서는 소정의 연수과정 면제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소정의 「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 (가칭)영유아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되,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둬.
 - 유치원 원장 및 원감
 -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 부여
 - 단, 무자격 설립자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에 대하여는 불허

- 보육시설장
 - 소정의 관련 연수과정 이수 후 자격증을 수여하되,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의 경우 불허

3. 교육·보육과정

가. 유아교육과정 · 보육과정의 일원화 방침

1) 조정과정에서의 중점 검토사항

- 교육 및 보육과정의 일원화를 위한 조정과정으로 기존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보편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현행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일원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 체계가 중요함.
-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 보편화를 위해서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중재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나. 유아교육과정 · 보육과정의 구성

1) 유아교육과정·보육과정의 목적

- 교육·보육과정의 일원화를 위해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목적과 성격을 보편화할 수 있는 목적 설정이 있어야 함.
 - 출생~5세아에 대한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인성 계발, 창의성 함양 및 사회성을 길러주는 교육복지형 교육·보육과정의 구성이 필요함.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하여 가정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복지서비스로서의 교육·보육과정이 요구됨.

- 국민의 평생교육의 차원과 연결된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에 대한 성격 규명이 있어야 함.
 - 인간의 지적·정의적·사회적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사회·경제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을 설정하여야 함.
 -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의 가속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유아교육기관이 필요
 - 평생학습체제와 종합적 교육망 정비
 - 유아교육을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시킴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교육복지형 삶의 주기에 부합하는 종합교육망 정비 필요

2) 유아교육과정·보육과정의 내용

-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조직되어질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내용적 일원화가 다른 여러 가지 조정과정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에서 중복된 부분과 수정될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조정과정 상에서 내용의 보편적 일관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내용 분석을 통해 연령이 출생~만5세까지의 포괄성을 가진 내용으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음.
 - 연령 변화에 따른 생활과 발달의 영역과 내용 변화를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모두 수용 가능한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여야 함.

다. 유아교육과정 · 보육과정의 운영

1)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운영 방향

- 유치원의 유아교육과정과 보육시설의 보육과정과 맞추기 위해서는 현행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 형식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함.
 - 유치원의 보육시설 변경 가능
 - 적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의 유치원 변경 가능
 - 유치원에서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선택 적용이 가능해야 함.
 - 보육시설에서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선택 적용이 가능해야 함.
- 조정과정에서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보편화한다면, 이를 적용 운영하는 면에서도 보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중재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함.
- 최종적으로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영아 및 유아의 범주를 포괄하며, 교육과 보육을 포괄한 운영 형태의 운영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일원화를 위한 단계적 운영 실제

- 현행 유치원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시설의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운영 체제 변화(시간, 대상연령, 운영형태 등)가 있어야 함.
-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상호적용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완전 일원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사수급, 행정시스템 등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함.

4. 관리·감독 체계

가.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쟁점사항

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관리시 고려사항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은 종일제 및 연중 운영을 근간으로 해야 함.
 - 여성취업증가, 노령화, 출산기피, 인구감소 등에 대비한 21세기형 생산적 교육 복지 대책임(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의 접근).
 - 보건복지가족부,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노동자단체 등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야 함(대국민 설득력 확보).
 - 80년대 어린이집을 새마을유아원으로 개편하여 ‘유치원화’함으로써 결국 90년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 출현한 사례(새마을유아원의 실패 교훈)
 - 현재 유치원의 79.2%가 종일제 내지 시간연장제 운영 및 10일 정도의 방학기간을 시행하고 있음(유치원의 보육시설화 추세).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체제를 종일제 및 연중 운영을 근간으로 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현상의 혼란이 야기될 것임.
 - 교사양성, 교육 및 보육 현장의 비생산적 경쟁 강화, 학부모들의 유아교육기관 선택 혼란 등으로 교사의 처우 불안, 기관의 질적 성장 저해로 이어질 것임.
- 그러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를 위한 조정과정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무리한 보편화를 지향할 경우에 유아교육·보육 현장이 오히려 질적 저하와 혼란으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을 위한 질 관리 요소

- 다양한 유아교육 현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보체계 확보

- 시설·설비의 선진화 장비 개선 및 교육·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적 기반 확충
- 교사 및 인적 자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직전교육 및 현직교육의 체계 정비
-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 통로 확보
-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일관성 있는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확보
- 재정 지원 확보 및 확대

나. 조정위원회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1) 1단계: 보육전달체계와 유아교육전달체계의 협력

- 현행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육전달체계와 교육청 중심의 유아교육전달체계의 협력과 조정 방안이 필요함.
 - 현재의 유아교육전달체계 내의 인력과 보육전달체계 내의 업무 인력 간의 협력적 운영이 우선되어야 함.
 - 다음으로 ‘(가칭)유아교육·보육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그 성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재적 조정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함.

2) 2단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새로운 통합지원센터(『(가칭)육아지원정보센터』)를 설치하거나 혹은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할 필요성 있음.
- 통합지원센터의 정보교환, 의견수렴, 지원체계 구축은 기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실제적 통합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유아교육·보호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 영유아교사 연수기능 담당
 - 영유아 교육과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담당

3) 3단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행정 조직 정비 및 확대

□ 행정지원체제 마련

-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인 유치원과 보건복지가족부 관할인 보육시설의 행정지원체제에 대한 보편화 방침에 근거한 행정지원체제의 변화가 필요함.

□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체제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정책 기능 강화
-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지원 기능 강화
 - 유아교육담당과 신설, 독립 운영
 -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계 신설
- 보건복지가족부의 육아복지 지원체제 구축

□ 유아교육·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기능 강화

-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통합적·협력적 관점의 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행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함.
-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연구의 영역과 관점을 통합적·포괄적·생태적 관점의 접근을 통해 저출산시대, 불임증가시대, 아이건강위기시대, 가족공동체위기시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됨.
- 잉태, 태교, 출산, 수유, 육아, 교육은 물론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쳐 아이살림, 가족살림 및 생명살림의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유익한 육아정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

□ 장학 기능 확대 및 평가체제 구축

- 기존의 장학사 위주의 형식적 장학을 지양하고, 민·관 합동 장학제도 도입 검토
 - 유치원 장학사 및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인력의 협력적 관계 방안 모색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평가 내용 및 방법의 일원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논의 및 연구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의 업무와 유치원 장학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평가기구 설치 및 운영

- 이를 위해 부처간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함.

5. 재정 지원

가. 재정 지원의 기준

1) 재정 지원 기준의 일원화

- 재정 지원 기준을 현행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재정 지원에 대한 협의 및 중재 기구 설치 운영이 필요함.

2) 재정 지원 체계 확보

- 현행 학교법인의 설립 요건을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완화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영유아교육·보육시설로 전환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재단법인도 학교법인과 동등한 지위 보장
- 법인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강구
 - 기존의 재정지원을 받는 곳은 적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시설비 용자 지원방안 적극 검토
- 사립 유치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나. 통합 체제 구축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1) 주요 추진 내용

- 유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 국가의 재정 여건상 지역별 단계적 실시
 - 지불보증전표제(voucher system)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기관 선택권 보장
 - 만3~5세아 중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동시 확대 추진
- 저소득층 학비 지원 사업 실시
 - 법정저소득층: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기타저소득층: 입학금 및 수업료 일부 지원
 - 만5세아 저소득층은 만3~4세 저소득층 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하여 출발점 평등 구현 및 사회정의 구현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법인화를 통해 경상비 지원
 - 인건비, 법정부담금의 50% 지원
 - ※ 기존 유아교육·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
 - 재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우 재정 운영 상태를 매년 공개하도록 유도하여 재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원에 대한 교사담임 수당 지급
 - 사학진흥기금 등을 통한 시설비 용자 확대
-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시설 확충 및 질 개선
 - 유치원 시설 확충
 - 유치원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함.
 - 교사인건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가 학생수를 줄이고,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함.
 -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 지정·운영
 - 유아교육 진흥 확산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투자 촉진

□ 기타

- 교사 연수 지원
 -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영유아교사 자격증 갱신에 따른 연수 확대
- 영유아교사 호봉체계 및 교권 확보 방안 마련
- 유아교육·보육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다. 재정 확보 방안

1) 재정 투자 방향

- 2010년까지 정부교육예산의 4%를 유아교육 예산으로 확보 추진
 - ※ 2000년: 정부교육예산의 1.17% (교육과학기술부, 2000)
-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matching fund 제도 도입
-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제고
 - 취학 직전의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및 저소득층 자녀 우선 지원
- 사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동시에 재정 지원을 통한 투명성 확보

2) 재정 투자 전략

- 기존의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에 대한 일관적 체제 마련
- 만5세아 무상교육·보호는 「유아교육·보호 표준교육경비」를 개발·산출하여 지원
- 종일제 운영과 상시운영에 대한 지원

- 국·공립 시설에 종일제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사립 시설에 종일제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립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 법인시설에 한하여 인건비 지원, 시설비 용자 알선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체제가 정비된 이후,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해야 함 .

참고문헌

- 김중해·백선희·이미정·이원영·임재택(2005).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2005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37-85. 한국유아교육학회.
- 나정·서문희·유희정·박기백(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2000). 유아교육 발전 종합대책(안): 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2000. 11. 1 교육부 장관 보고자료. 1-36.
- 이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01.

부록 5.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1. 기관·시설

가. 현황 및 문제점

1) 명칭

- 현행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음.

2) 연령

- 유치원 교육 대상 어린이는 만3세, 4세, 5세로 되어 있음.
- 어린이집 보육 대상 어린이의 연령은 0-5세에 해당함.

3) 기관/시설 유형

-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있음.

- 유치원은 국공립(단설, 병설), 사립(법인, 개인)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져있음.

4) 원아 인원 인가기준

- 유치원은 교실 66m²당 유원장 1학급당 150m² , 1반 추가될 경우 50m²를 확보해야하며 원아는 1학급당 25명인가 가능함.
- 어린이집은 가정보육시설: 3.63 m², 민간보육시설(52인 이상): 2.64m², 유원장: 4.29m²임.

5) 유해시설기준

- 유치원은 200m내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함.
- 어린이집은 50m내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함.

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입장 - 연령별 단일화 방안

1) 학교체제

- 현행의 유아교육기관을 연령별로 구분하고, 학교체제로 통일
 - 0-2세: 영아학교
 - 3-5세: 유아학교
- ※ 단,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아학교와 유아학교로 선택적 전환 허용
- 소관 행정부서
 - 0-2세(영아학교): 보건복지가족부
 - 3-5세(유아학교): 교육과학기술부

2. 교사 자격

가. 현황

1) 교원자격의 이원화

- 유치원 정교사 1,2급 자격증이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 자격증 검정 수여
- 보육교사 1,2,3급 자격증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의해 자격인정

2) 교육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및 기준학력

- 유치원 정교사 자격은 현재 대학에 설치된 유아교육과(2,3년제 전문대학 포함)를 졸업하거나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일정비율 취득
- 보육교사 자격은 고졸이상 졸업자가 보육교사 양성과정 1000시간 이상(1년) 이수한 경우 취득

3) 교원양성기관

- 유치원 정교사 양성은 유아교육(학)과 (3,4년제), 아동학 계열(4년제: 일정비율), 아동보육/복지(학)과(3,4년제 일정비율)에서 양성
-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교육원(1년)과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3,4년제)에서 양성

4) 취득학점

- 유치원 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점(80-144학점)을 이수

- 보육교사는 학과 및 전공에 관계없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1년의 교육을 받거나 (보육교사3급)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12과목 35학점을 이수하면(2급)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음.

5) 교사 수급 및 복지

- 배출되는 유아교사, 보육교사들은 통계적으로 과잉(박은혜, 2007)
- 교사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근무여건과 보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박은혜, 2007).

나. 문제점

1) 유아교육 양성 교육과정의 문제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이원적인 운영은 교육과 보육의 개념의 혼란을 초래함(양옥승, 1997).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평균 학력차이는 교사의 전문성 및 교사의 지식과 기술의 큰 편차(나정 외, 1998)
- 유아교육의 질과 교사양성기간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조부경외,1998)로 볼 때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2) 교원양성 기관의 문제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도가 미흡하여 유아교육,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배출 과잉에 비해 수급의 부족(박은혜, 2007)
- 영유아보육법(1991) 제정과 더불어 유아교육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교사의 수급이 다급해지자 보육교사를 6개월 만에 양성하는 교육권을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함으로써 인해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의 혼란을 겪게 됨(현재 1년

으로 조정되어 존속).

3) 유아교육과 보육의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중첩의 문제

-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령구분이 모호하여 영아, 유아 연령을 모두 다루게 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내에서 많은 교과목의 중첩이 발생하게 됨.
- 교사양성과정에서 배우는 교과내용 자체가 상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를 4년부터 1년의 단기간까지, 이수하는 기간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질이 의심됨.

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입장

1) 유아 학교장(감) 및 교사

- 영아학교장은 소정의 연수 후 유아학교장(감) 자격을 부여함.
- 영아학교 교사는 소정의 자격 연수 후 유아교사 자격을 부여함.
- ※ 기존의 보육시설장은 영아학교장의 자격을, 유치원장은 영·유아학교장의 자격을 인정함

2) 교원양성과정

가) 유아학교

- 유아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4년제를 원칙으로 한다.
- 2년제 교사는 4급, 3년제 교사는 3급을 부여하고, 4년제 교사는 2급을 부여한다.
- 각급 교사는 소정의 연수를 거쳐 승급할 수 있다.

나) 영아학교

- 영아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4년제를 원칙으로 한다.

- 1년제 교사는 5급, 2년제 교사는 4급, 3년제 교사는 3급을 부여하고, 4년제 교사는 2급을 부여한다.
- 각급 교사는 소정의 연수를 거쳐 승급할 수 있다.

3. 교육·보육과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유아 교육과정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이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비슷한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통합이 필요함.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종사자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통합에 대한 방안과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고 볼 수 있음.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 현재로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없다는 점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내부 문제도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유치원도 공·사립간에 격차와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린이집도 법인 시설과 민간 시설간의 불균형이 가로놓여 있음. 뿐만 아니라 통합기관 교사의 자격기준, 양성교육과정, 복지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는 문제도 교육과정 통합과 맞물려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가 밝혀져야 함. 공급자를 위한 것인지 수요자를 위한 것인지, 수요자를 누구로 보는지, 즉 학부모인지 영유아인지 등. 통합기관의 대상 연령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수준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유아교육의 질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 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의 논의에서도 교육과정 문제가 중요함.

- 영·유아교육과정은 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상호 연계성이라는 큰 틀에서 구성되어야 함.

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입장

- ※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을 비교해 본 결과 편성체계와 영역별 내용 등이 다르게 조직되어 있어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 과정이 필요함. 특히 0-2세를 위한 영아교육과정과 3-5세를 위한 유아교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구성함.
- 영아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함.
- 유아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함.
- ※ 단 영아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제정함.

4. 관리·감독 체계

가. 현황

- 유아교육기관의 이용실태: 보육시설의 경우 만 3세를 기점으로 이용률 하락, 유치원의 경우 만4세부터 급격 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이병래, 김선영, 2007). 이는 다소 교차적 현상으로 나타남.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기대가 뚜렷이 차이가 남.
- 유치원과 보육시설 특성에 적합한 기관평가체제가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별개의 평가 체도를 실시하고 있음
- 현행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평가시 교육청 주관으로 조력 및 장학의 실시가 가능하고, 보육시설 평가시에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조력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
- 보육시설 평가인증체제로 인한 일정 수준의 유지는 가능하나 좀 더 높은 수

준의 질적 관리가 요구됨

나. 문제점

- 양적팽창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 유치원 평가를 도와줄 조력시스템의 부재
- 유아교육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미비
- 유치원 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부재
- 유아교육기관 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의 부재

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입장

- 질 관리 및 감독의 최고 책임 행정부서
 - 영아학교: 보건복지가족부
 - 유아학교: 교육과학기술부
- 영아학교와 유아학교의 평가 및 질 관리를 위한 독립된 기관 확보
 - 평가를 관장할 독립된 평가기관과 조력기관의 확보(설립 또는 위탁)
 - 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확대

5. 재정 지원

가. 현황

- ※ 육아비용 지원은 차등보육료, 교육비 확대, 만 5세아 무상교육, 교육비 확대, 장애아 무상교육 확대, 다자녀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농어민 자녀 육아비용 추가 지원, 입양아 보육비 지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차등보육료, 교육비 지원
 - 0-4세아 보육료, 교육비 재정 지원 대상을 2010년까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소득계층별 차이를 두어 차등 지원함.
- 만 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 만 5세아에 대한 지원은 2009년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확대하여 전체 아동의 80%까지로 확대할 예정임.
-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
 - 2010년에 12세 이하 장애아 지원자수는 년 25,000명 예정임
- 다자녀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비율을 2010년에 비용의 50%까지로 확대할 예정임.
- 농어민자녀 육아 비용 추가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정규모 이하 농지 소유 농, 어업인에 대해 부가적으로 보육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입양아 무상보육비 지원
 -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입양이 1,461명인데 비해서 국외 입양이 2,101명임.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양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직장보육 인건비 지원
 -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음. 채용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 중 25% 이상이 해당 사업장의 직원이고 부모 중 50%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직장 보육시설의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나. 문제점

- 보육교사의 인건비 기준과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기준이 동일하지 않음.
 - 국공립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월 127만원 정도로 유치원 교사 월 평균 급여 250만원에 비해서 50% 수준에 지나지 않음.
 -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직종의 인건비 격차가 심하여 유치원에 비해서 보육시설은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보육교사와 시설장 인건비 기준을 동일하지 않음.
 - 유치원은 교사와 교장의 인건비 기준이 동일한 상태에서 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에 보직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이나, 보육시설은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가 시설장으로 승진하면 다시 시설장 1호봉의 인건비를 지급받게 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남.
- 유치원 종일반과 어린이집의 교사 배치 기준이 동일하지 않음
 - 유치원 종일반에는 2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는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1명의 보육교사만이 배치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보육교사들의 격무로 인해 이직율을 높이고 보육을 위한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양질의 보육을 힘들게 하고 있음. 어린이집에도 2명의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조 교사 배치 기준이 동일하지 않음
 - 국공립 유치원에 학급당 1명씩의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장시간 보육이 이루어지고, 영아반의 경우는 교사가 잠시도 쉴 틈이 없어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운 실정임.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에도 학급당 1명의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입장

- 영아학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공립과 법인, 개인 설립 학교 간에 균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유아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공립과 법인 간에 균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 개인 설립 학교는 법인화를 유도함.
- 영아학교와 유아학교 교직원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부록 6.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원고

유아교육, 보육 통합 방안에 대한 학회 입장

연구 요약

□ 기본입장

본 학회의 유아교육, 보육의 통합 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만 0세에서부터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들이 지역적 여건,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의 문제로 인해 출발 전 교육을 균등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영유아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방향으로 0세-취학전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이 교사자격, 교육과정, 시설, 재정지원, 전달체계 및 질관리의 측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합의 방향은 저출산시대에 요구되는 인력양성을 통해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한다는 입장에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육”의 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즉, 교육과학기술부로의 통합을 기본으로 하여 0세-취학전 교육 및 보육관련 체계와 업무를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통합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기관·시설의 통합

- 통합기관·시설의 명칭을 ‘영유아학교’라 칭한다.
- 영유아학교의 취원 대상은 0세- 취학 전까지로 하며 지역적 실정 및 여건에 따라 0-2세 영아전담, 3-5세 유아전담, 0세-취학 전 영유아통합형으로 대상유형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시간은 반일제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수준의 ‘영유아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며 종일제 프로그램을 허용하여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다.

- 영유아학교는 ‘국공립 영유아학교’와 ‘사립 영유아학교’로 구분한다. 사립의 경우 운영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법인, 개인, 직장, 가정, 부모 협동 등의 형태가 가능하도록 한다.

○ 교사자격의 통합

- 통합된 교사자격의 명칭을 ‘유아교사’ 칭한다.
- “영유아교사”자격기준은 현행 4년제 유아교육학과의 유치원교사양성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영유아교사자격의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직에 합당한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통합

- 통합된 교육·보육과정은 ‘영유아 교육과정’이라고 칭한다.
- 교육·보육과정의 통합을 위해 일방향적이고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수용-연계-통합의 체계 순으로 통합모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유아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개발한다.
- 유아교육, 보육과정을 통합한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전달체계 및 질 관리의 통합

- 통합된 영유아교육 행정업무의 주무 부서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현행 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 ‘영유아교육위원회’로 개칭하여 구성하고 ‘영유아학교’를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 ‘유아교육, 보육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통합의 효율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유아교육, 보육시설 평가를 위한 통합된 전담기구로 ‘영유아학교평가 사무국’을 설치한다.
- 유아교육, 보육업무의 효율적, 다각적 지원을 위한 통합된 전담센터로 ‘영유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재정 지원의 통합

- 통합 기관의 재정 확보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통합 법안을 마련하며 명칭은 ‘영유아교육법’으로 칭한다.
- 통합 후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립(민간) 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 총체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재정지원의 관리체계(통제시스템)를 구축한다.
- 예산의 확보, 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행정시스템’을 도입한다.

1. 기관·시설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협력 및 통합모형으로 육아정책개발센터(2006)의 연구보고에서는 통합모형으로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기능별 일원화 후 통합, 과제별 조정 후 부처 통합, 교육과학기술부 총괄 단기부처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한시적 총괄 단기부처 통합의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본 학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총괄 단기부처 통합을 제안함. 이러한 통합 및 협력의 단계로 볼 때 ‘기관 및 시설’ 측면부터 접근하는 것이 용이할 것임. 육아정책개발센터(2007)의 연구보고에서도 전체적으로 유보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가장 높은 항목이 공간과 시설물 공동사용(61%)으로 나타났음. 유치원 기관과 보육시설 측면의 통합 정책적 방안으로 크게 법령의 통합과 평가인증기준의 통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가. 법령의 통합

1) 기관/시설 서비스기능의 통합

□ 기관/시설의 서비스기능 정의의 통합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이며, 보육시설은 보호자 위탁에 의한 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하는 서비스기능에 대한 정의 및 개념 통합 필요.

□ 기관/시설 명칭의 통합

- 본 학회에서는 통합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영유아학교>로 제안함(이하 정책방안에서는 영유아학교로 기술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영유아학교>(가칭)의 명칭은 영유아학교이외의 타 기관에서는 사용을 불허하도록 함.
- 기관/시설 대상 연령의 통합
- 유치원은 만3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정의되어 있음.
 - 보육시설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정의 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영유아학교>에서는 0세-5세(또는 0세-취학전)의 대상연령으로 통합시킬 것을 제안 함.
 - 단, 지역실정 및 특성에 따라 0세-2세(영아전담형), 3세-5세(유아전담형), 0세-5세(영유아통합형)의 3가지 대상유형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기관/시설 운영시간의 통합
- 유치원은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의 시간운영에서 선택하고 있음.
 - 보육시설은 종일제 운영임.
 - 운영 시간에 대한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함. 정책방안으로 정규시간과 방과 후 시간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함. 현 기관/시설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영어교육 등 기타의 학원교육이 정규수업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규수업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이외의 활동들은 방과 후 활동으로 정하여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성 및 융통통성 있는 종일제 프로그램을 허용하도록 함. 이는 초등학교 운영시간과의 연계성에 있어서도 필요함.
- 대상 기관/시설 우선이용의 통합:
- 유치원은 기관 우선 이용자 기준이 없음.
 - 보육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 차상위계층자녀, 장애아, 근로자 자녀가 시설 우선 이용권을 부여받음.
 - 이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함.

〈표 6-1-1〉 기관/시설 서비스기능의 통합

유치원	보육시설	정책방안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	보호자 위탁에 의한 보육'시설'	기능 및 명칭통합: 영유아학교 - 타 기관 명칭사용 불허
시설대상연령: 3세-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0세-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 연령통합: 0-5세(또는 취학전) 어린이로 통합. - 단, 영아전담형(0-2세), 유아전담형(3-5세), 영유아통합형(0-5세)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함.
시설운영시간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종일제	운영시간 통합 및 조정. -정규수업활동 -방과 후 활동으로 구분
기관 우선 이용자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자녀 - 차상위계층자녀 - 장애아 - 근로자 자녀 * 시설 우선 이용권 부여	동일 기준 필요

2) 기관/시설 유형의 통합

- 유치원은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음.
 - 보육시설은 시설별 영유아 인원에 대한 규모가 다름. 국공립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가정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육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임.
- 기관 및 설립의 유형을 조정할 필요 있음.
 - <영유아학교>는 크게 <국공립영유아학교>와 <사립영유아학교>로 구분할

것을 제안함.

- 각 <국공립영유아학교>와 <사립영유아학교>는 기본적으로 0세-5세 통합형이나 지역적 실정 및 특성에 따라 0세-2세(영아전담형), 3세-5세(유아전담형), 0세-5세(영유아통합형)의 3가지 유형에서 선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에 적절한 설립·설치기준 및 인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사립영유아학교> 운영주체의 다양성은 인정해 주도록 함. 시설목적 및 원아의 규모가 반영된 운영주체는 법인, 개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등의 형태로 가능하도록 함. 이러한 국가 이외의 운영주체는 <사립영유아학교>에 포함시킴.

<표 6-1-2> 기관/시설 유형의 통합

유치원	보육시설	정책방안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보육시설(11인이상) 법인보육시설(21인이상) 민간보육시설(21인이상) 직장보육시설(5인이상) 가정보육시설(5-12인) 부모협동보육시설(보호자15인 및 11인이상)	기관/시설 설립 유형의 통합 및 조정 필요 -<국공립영유아학교>와 <사립영유아학교>로 분류 -<영유아학교>에는 영아전담형(0-2세), 유아전담형(3-5세), 영유아통합형(0-5세) 포함. -<사립영유아학교>의 운영주체로 법인, 개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등 분류.

3) 기관 수급계획 수립과 시행의 통합

- 유치원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유치원 수급 계획 수립 내용이 없음.
- 보육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보육 시설 수급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조항 있음.

<표 6-1-3> 기관 수급계획과 시행의 통합

유치원	보육시설	정책방안
기관 수급계획 수립과 시행 없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	통합된 수급 계획 및 시행 필요.

4) 기관/시설 설립 및 설치인가의 통합

□ 설립인가 및 설치 기준령의 통합

- 유치원 설치기준은 현행 대통령령이고,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임. 이는 통합된 <영유아학교>에 따른 관련 내용 조정 및 수정 필요.
- 유치원 설립인가는 시·도 교육감으로, 보육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한 조정 및 통합 필요.

〈표 6-1-4〉 설립인가 및 설치 기준령의 통합

유치원	보육시설	정책방안
기관설치기준: 대통령령	시설설치기준: 보건복지가족부령	<영유아학교> 통합에 따른 조정 및 수정 필요
(국공립 외)시·도 교육감 설립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영유아학교> 통합에 따른 조정 및 통합 필요

□ 기관/시설 설치 및 설비 기준내용의 통합 및 조정

- 신규 <영유아학교> 설립시부터 통합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기존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가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
- 지역적 특성 및 상호 자유경쟁에 의한 기관 및 시설의 자연스런 안정화 및 도태를 꾀하도록 함. 예를 들어, 실외놀이터 없는 상가건물 시설 등 안전, 보건, 위생, 환경적으로 불안정한 기관 및 시설에 대해 제재 및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통합 및 협력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지역적 특성의 고려차원에서 기존의 시설에 대한 변경 압박을 최소화 하고 자유경쟁의 시간 흐름에 따른 정리 및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함. 평가인증제 활용 가능.
- 신규<영유아학교>부터 통합된 설립 및 설치 인가기준을 실시하도록 함. 단, 신규<영유아학교>설립의 개념에 소유자 및 운영주체가 변경될 때도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하여 통합된 <영유아학교 설립 및 설치 기준>안에 적용되도록 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립 및 설치기준의 주요 내용에는 입지조건, 교지 및 교사의 면적, 시설임대, 시설처분, 설치위치, 놀이터(체육장), 실내환경, 급수시

설, 조리실, 교구, 장애시설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6-1-5〉 기관/시설 설립 및 설치 기준의 통합

기준	유치원	보육시설	정책방안
입지조건	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당구장, 기타 유해업소가 없을 것.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보다 구체적 기준으로 상향 조정
교지 및 교사 면적(m ²)	교지: 교사용대지 + 체육장 교사 - 5N(40명이하) - 80+3N(41명 이상) * N=(면적-80)/3	- 시설면적 (놀이터제외)4.29N - 보육실 1인당 2.64이상	보다 넓은 기준으로 조정 필요
시설 임대	불허	제한 없음	보육시설기준 점진적 강화 필요
시설처분	매도·담보제공 금지	제한 없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점진적인 불허규정 필요
설치위치	1,2층 원칙	1층 원칙	통합 필요
놀이터 (체육장)	- 160(40명 이하) - 120+N(41명 이상)	- 50인 이상 보육 시설에 한함. - 2.5N(50인 미만 제외)	보다 넓은 기준으로 통합 및 조정 필요
실내환경	조도 300룩스 이상 소음: 55데시벨 이하 실내온도 : 섭씨 18도 이상	-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 적절히 유지·관리 - 바닥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보다 구체적이고 동일한 기준 조정 필요.
급수시설	저수조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 실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	보다 구체적인 상향 조정 필요.
조리실	- 교실과 차단 - 배식 편리한 곳 - 화재예방 고려	- 채광. 청정한 실내. 방충망 설치	보다 구체적 통합 및 상향 조정 필요.
교구	교구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	구체적인 교구 종목 및 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방안으로 고시
장애아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영유아 의무교육대상에 포함됨.	- 시설 1인당 7.83 - 보육실 장애아 1인당 6.6 -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 0.9m이상	영유아장애아에 따른 적절한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조정 필요

나. 기관 및 시설 평가인증의 통합

□ 유치원 평가인증 내용

- 최근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장명림은 유치원의 평가지표로 교육과정(65점), 교육환경(45점), 건강·안전(40점), 운영관리(40점), 학부모 만족도(10점)의 구성으로 총 200점 만점을 제시하였음(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08).
- 교육환경은 교육환경의 적합성(25점), 교재·교구의 적합성(20점)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음.
- 교육환경의 적합성에는 실내교육환경의 적합성(10점), 실내교육환경의 적합성(10점),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시설·설비(5점)로 구성되어 있음.
- 교재·교구의 적합성에는 유아발달 수준과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구비 및 활용(10점)과 교재·교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관(1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육시설 평가인증

-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7개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규모 및 유형에 따라 ‘21인 이상 보육시설용 지표’7개 영역 80항목, ‘20인 이하 보육시설용 지표’ 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용 지표’7개 영역 85항목 3종으로 구분되어 있음. 평가인증지표의 항목별 평가기준은 3단계 기술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음.
- 21인 이상의 경우는 보육시설 실내의 자연 채광 과 조명, 보육실의 공간배치, 보육실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 비품과 활동 자료의 보관 장소, 실외 놀이터와 놀이시설로 5가지 항목에 대한 보육시설환경에 대한 지표가 있고, 보육활동 자료로는 대·소근육 활동자료, 언어활동자료, 탐구활동 자료, 창의적 표현활동 자료, 역할 및 쌓기 놀이 자료의 5가지 항목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21인 미만의 경우에는 보육시설환경(3항목), 시설운영 및 가족과의 협력(6항목), 보육인력(3항목)으로 총 12항목의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시설 환경(7항목), 보육활동 자료(7항목)로 구성되어 있음.

□ <영유아학교>의 통합된 평가인증관련 설비기준내용 개발 및 구체적 내용 조정 필요.

〈표 6-1-6〉 기관/시설 관련 평가인증 내용의 통합

유치원		보육시설		정책방안
항목	지표	영역	지표	
교육환경의 적합성 (3항목.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교육환경의 적합성 - 실외 교육환경의 적합성 (5) - 유아발달수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21인 이상: 보육환경 (10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5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실내의 자연 채광 과 조명 - 보육실의 공간배치 - 보육실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 - 비품과 활동 자료의 보관 장소. - 실외 놀이터와 놀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관련 설비기준 내용 개발 및 구체적 내용 조정 필요 - 서비스 대상 유형(영아전담형, 유아전담형, 영유아통합형)에 따른 구체적 평가내용 분리 및 정리 필요
			나. 보육활동자료(5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근육 활동자료 - 언어활동자료 - 탐구활동 자료 - 창의적 표현활동 자료 - 역할 및 쌓기 놀이 자료 	
교재교구의 적합성 (2항목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발달 순과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구비 및 활용(10) - 교재·교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관(10) 	21인 미만:보육환경 및 운영 관리 12항목	가. 보육시설환경(3항목) 나. 시설운영 및 가족과의 협력(6항목) 다. 보육인력(3항목)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14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7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7항목)	

2. 교사 자격

영유아 중심의 개념에서 교사자격 통합의 당위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가. 교사자격통합의 당위성

1) 교육하는 연령 및 자격의 중복

- 유치원교사는 만3-5세를 보육교사는 0-만5세를 가르치므로 만3-5세의 연령이 중복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중복됨
 -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의 아동학과와 아동복지학과, 소비자아동학과, 아동가족학과 등 아동 관련학과에서도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유치원교사자격을 취득함.

2) 평등성의 원칙 고려

- 모든 영 유아들이 평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주어진 목적과 성격에 의해 제약을 받음.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법적. 제도적 이원화를 명시하고 있음.
- 상호고용 및 경력인정의 불균형
 - 유치원에서는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지만 보육시설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유치원교사자격과 보육교사자격의 상호고용이 허용되지 않음.

3) 갈등 해소

□ 교사간의 갈등 및 질적 수준의 차 해소

-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정책으로 인해 교사와 종사자, 학계, 교사지원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남.
- 보육시설에서 유치원교사자격을 가진 교사에 대한 양성과정을 수료한 보육교사의 열등감이 갈등으로 나타남.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이 다르고 교사자격 취득연한도 다르므로 교사의 질에서 차이가 남.

□ 부처간의 갈등해소

-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할이며 보육교사는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의 보육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처간의 갈등이 나타남.

4) 효율적 정책 수립

□ 효율적인 영유아정책을 위해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임

- 이원화된 교사지원정책으로 인한 교육적, 물리적, 재정적, 정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교사지원제도 수립이 필요함

나. 통합의 문제점

1) 교사공급의 과잉사태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자격의 통합은 교사양성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교사공급 과잉 사태를 초래 할 수 있음.

-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현상으로 인해 유치원연령인구의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교사의 과잉공급이 이루어짐.
- 교사양성기관의 지나친 다원화와 난립은 교직의 전문성과 교사양성기관의 특

수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공급과잉사태를 초래하여 수급불균형문제가 야기 됨.

- 교사채용적체현상을 야기하게 되어 우수학생으로 하여금 교직에 대한 매력을 잃게 할 수 있음.

2) 교사의 질적 수준 저하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자격의 통합으로 인해 교사의 현저한 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함.

-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사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로 이원화된 체제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양성기관의 학문적 성격이나 체계적 정립이 아직 미흡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은 유치원교사와는 달리 자격증제도가 아니라 학과목이수를 하면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임. 특히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학과목이수에 달려있으므로 사범대와 교육계열, 아동 관련학과 뿐 아니라 이공계에서도 자격취득을 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음.
- 교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양과 자질이 길러지지 않은 다양한 학과에서 단지 학과목을 이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육교사자격증이 수여되는 보육교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할 하에 전공과목 50학점(교과영역 8학점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 그리고 전 과목 75점 이상인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유치원교사를 통합해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사의 질 저하를 초래함.

3) 부처간의 이해관계

-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책과에서 관리하며 유치원교사는 교육과학부에서 관리하므로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통합에 어려움이 있음.

다. 통합 개선 방안

1) 연령 통합

- 보육연령 0-만2세,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중복연령 만3-만5세를 통합하여 0세-만5세를 교육하는 통합교사자격을 부여함

2). 명칭 통합

- 통합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잠정적으로 영유아학교로 개정하며, 지역을 고려하여 0-만2세, 만3-만5세, 0-만5세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Head Start와 같은 옵션(option)제를 실시함.
- 통합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잠정적으로 영유아교사로 개정함.

3) 교사의 질 재고

- 보육교사자격을 학과목위주가 아닌 학과중심으로 전환 함.
 - 35학점의 학과목이수만으로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보호, 교육을 위한 교직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수행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일 뿐 아니라 교사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체계를 보완, 확대 발전시켜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학력수준을 높여 대학 4년제 졸업자로 함.
- 교육과정의 통합
 - 영유아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검정 기준을 적용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
 - 영유아교사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운영을 하나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0-만2세, 만3세-만5세, 그리고 0-만5세 영유아학교를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봉급은 동일한 수준으로 함.

□ 부처간의 통합

- 영유아교사의 자격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직에 합당한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도록 관리, 감독함.

이상과 같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학력사회의 도래와 질 높은 교사양성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교육·보육과정

가.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현황 및 당위성

1) 유아교육·보육과정의 제도적 이원화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한 제도적 이원화에 따라 독자적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
- 유치원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 보육시설에서는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각자 실행하고 있음.

2) 유아교육·보육과정의 내용상 중복성과 공통성

- 두 법령에 따라 3-5세아 대상 유치원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이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두 과정의 차이는 제도일 뿐,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음.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 교육·보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인간상과 교육 및 보육목표, 교육 및 보육내용 체계 역시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음.

3) 유아교육, 보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시대적, 세계적 추세

- 유치원은 종일제를 확대하여 보육의 기능을, 보육시설은 체계적인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의 기능이 통합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4)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통합

- 위처럼 유아교육, 보육 기능의 일원화에 대한 시대적,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실제 현행 유아교육과정(유치원교육과정)과 보육과정(표준보육과정)은 중복되고, 공통되는 내용이 많아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될 경우,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운영체계임. 나아가 교육, 보호 기능과 같은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도 일원화 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도 통합되어야 함.
- 따라서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여 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에 나타나는 문제점

1)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로 인한 교육과정 통합의 문제점

- 유아교육은 유아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보육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실제 교육·보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
- 실제 두 체계에서는 영유아의 최적의 발달을 위해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통합하려 노력하지만,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교육과 보육의 체계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두 부분의 분절 역시 강화됨.

2) 이원화된 서비스의 비효율성

- 교육, 보호 기능과 같은 서비스 내용 측면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내용 역시 일원화 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유치원과 보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이원화, 차별화가 존재하여 능률적이지 못함.

-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종일제 운영과 같은 보호의 기능을 아쉬워하는 반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와 부모의 경우 종일제, 건강, 안전과 같은 보육과정의 내용에 비해 교육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길 원함.

3) 표준보육과정 보급 및 활용에 있어서의 미흡성

- 현재 유아교육과정에 비해 표준보육과정의 보급 및 활용률은 현저히 낮음
 - 특히 보육시설의 경우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움.
 - 표준보육과정은 수준별로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로 구분되어 있으나 영아기에 이룰수록 일반적인 연령에 의한 구분보다는 발달적 과정 특징에 의해 영아단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실제 보육시설에서 실행되는 보육내용은 표준보육과정을 활용하기 보다는 간헐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과 영유아관련 사설 잡지 보육계획안을 참고하여 독자적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해 온 실정임.

4) 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 및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격차

- 실제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부처 일원화는 바람직하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통합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아교육현장과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역시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다.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개선 방안

1)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 및 서비스의 일원화

- 영유아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통합은 영아 및 유아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
- 유치원교육과정과 보육과정 간의 통합 이전에 유아교육과 보육간 통합을 위해 일원화 체계 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통합에 대한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구조적 통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보호 기능과 같은 서비스 내용 측면이 우선적으로 통합되어야 함.
- 전체적 통합 방향은 ‘영유아학교’로 구조화 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제 통합.

2) 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에 대한 각계각층의 합의 도출

- 교육과정 통합 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
 -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시간 인터넷 활용 조사를 통한 현장 중심 의견 조사 실시.
-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가 뿐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조사.
 - 조사 시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장치 마련.

3) 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 조정 위원회 구성

-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의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영유아 교육과정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조정위원회 구성.

4) 국가 수준 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 모형 마련

- 통합된 교육·보육과정 이전에 0-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정’ 통합 모형이 우선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영유아 교육과정’의 통합 모형 구성에 있어서도 두 체계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수용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며, 두 교육·보육과정 간 연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합화의 과정 순으로 전개되어야 함.
 - 교육과정에 있어서 보다는 다른 측면 교사자격, 질 관리 감독기관, 기관·시설, 재정 지원 측면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교육·보육과정에 있어서 수용(인정)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두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수용-연계-통합 체계 순으로 통합모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대상 교육과정 교사교육 전개에 있어서도 일방향적이고,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수용-연계-통합 체계 순으로 교사교육 역시 전개되어야 함.

5)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영유아 교육과정’ 체계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영유아학교’로 체계화한 후, 유치원교육과정 과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 ‘영유아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개발.
- 관리 감독은 ‘제 3의 관리 감독 센터’를 신설하여 운영.
-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0-5세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유아교육의 장점인 교육, 가족지원, 교사교육을 수용하고, 보육의 장점인 건강, 안전, 보호적 측면을 강화한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 영유아교육과 보육, 보건서비스, 가족지원, 부모현장방문, 고용지원, 정보제공, 부모에 대한 조언과 지지 등 교육과 보육 과정 통합.

4. 관리·전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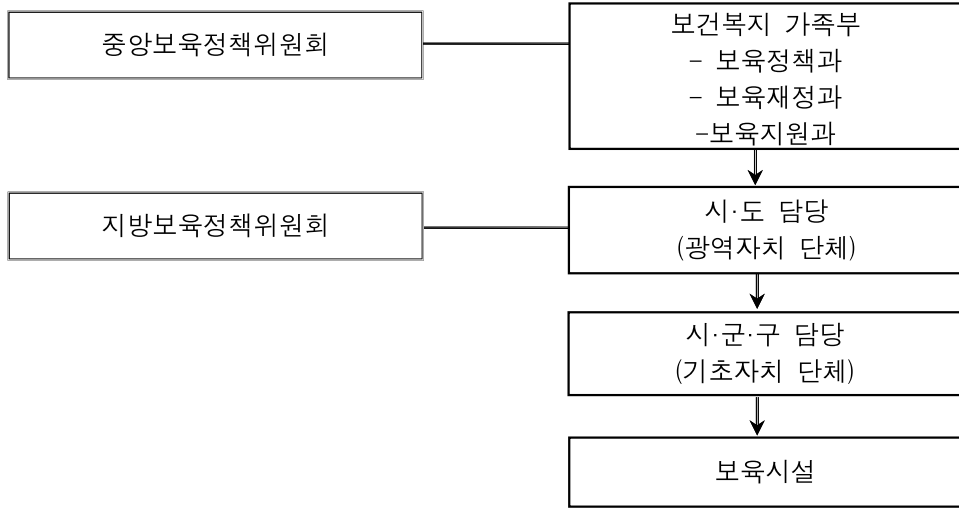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질 관리 및 전달체계의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유아교육, 보육의

행정체계, 유아교육. 보육 기관 평가 시스템, 유아교육. 보육 지원기관의 측면에서 현황과 당위성,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통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유아교육. 보육의 질 관리 및 전달체계의 현황 및 통합의 당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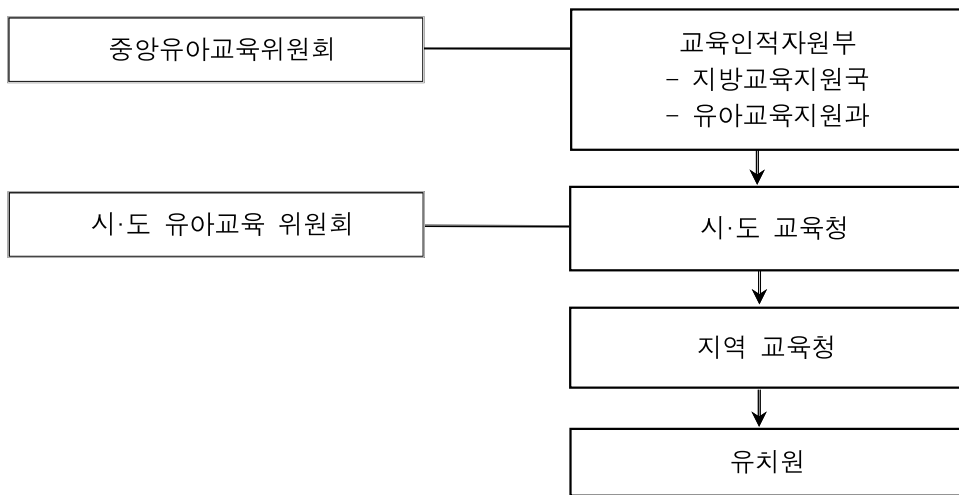
1) 유아교육. 보육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재정, 인력 활용의 중복 및 비효율적 경쟁

- 유아교육. 보육의 전달체계는 각각 유아교육법과 영유아 보육법에 기초하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유아교육 및 보육 관장 정부부처 및 지방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재정의 중복 투자 및 인력 낭비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 유치원. 보육시설 주무부서별로 관리 감독 및 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경쟁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사업의 남발 등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가중
- 국가예산 절약, 저출산해소 및 국가 인력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유아교육. 보육의 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행정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출처: 이일주(2007). 법규, 비용지원 측면에서의 통합방안 모색

[그림 6-4-1] 보육전달체계



출처: 이일주(2007). 법규, 비용지원 측면에서의 통합방안 모색

[그림 6-4-2] 유아교육전달체계

2)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평가제도 및 운영의 중복

- 보육시설은 2005년 시범운영 이후 2006년부터 보육시설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2007년 시범운영 이후 2008년부터 유치원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평가제도 및 운영에 있어 주무기관의 차이 외에 운영체계, 평가내용, 평가결과 활용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
- 유치원의 보육기능 강화, 보육시설의 교육기능 강화로 시설간 기능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평가의 목적, 내용,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방안이 요구됨.

〈표 6-4-1〉 유치원, 보육시설 평가제도 및 운영 비교

	유치원	보육시설
주무기관	시·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운영체계	자체평가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서 송부	자체점검 → 현장관찰 → 인증심의
평가내용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 안전 ·운영관리 ·학부모 만족도 ·종일반 운영 (평가 총 점수 반영 안 됨)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평가결과 활용	·우수 유치원 행·재정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인증시설 지원 ·3년 간의 유효기간 중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연차별 자체 점검 보고서 요구

3) 유아교육, 보육 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의 중복

- 유아교육, 보육 업무의 질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각각 유아교육진흥원 및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법 제 6조에 의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를 추진하여 2008년 3월1일 현재 서울시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까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될 예정임.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원 연수, 연구 및 업무지원과 체험학습기회제공의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육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영유아 이용시설과 기능이 중복됨.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관한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6-4-2〉 유아교육진흥원 및 센터 설립 현황

지역	명칭	설립년도 (예상)	프로그램 구성
서울	유아교육진흥원	2008	·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연구·연수활동 · 유아들을 위한 자연체험활동 공간, 과학·안전·예절·극놀이·신체·조형·음률·색깔 놀이 활동 등 · 예산 13억 8천만원
경기	유아체험교육원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2009	· 생태교육·전통교육·예술교육 등 유아체험학습활동 등 · 예산 70억원
강원	유아교육진흥원	2009	· 교육연구, 교원연수 · 학부모교육 · 체험학습 · 교육정보 제공 · 예산 52억원
광주	유아교육진흥원	2009	· 건강생활·사회발달·표현생활·탐구생활·언어생활 · 물썰매·수영장 등의 가족 놀이 시설 등 · 예산 25억원
울산	유아교육지원센터	2010	· 창의놀이, 과학놀이, 인형극, 교통놀이, 신체활동, 안전교육 · 자연 체험 공간 등 가족문화경험 제공 · 다문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

- 보육계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7조, 제 8조 2항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체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보육정보 센터는 평가인증 조력,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최근 보육정책 정보 전달 등의 다양한 보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보육정보센터 설립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보육정보센터) ①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2008년 6월 현재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와 지역 보육정보센터 3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표 6-4-3〉 보육정보센터 현황

단위: 개소

계	중앙	시도	시군구
37	1	16	20

자료출처: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원 연수, 연구 및 업무지원과 체험학습기회제공의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육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영유아 이용시설과 기능이 중복됨
-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 예산에 의해 지원되며, 보육정보센터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의 경우 100%국비지원에 의해, 기타 보육정보센터는 국비 50%, 지방비 50%에 의해 지원됨

4) 유아교육, 보육의 질관리 및 전달체계의 일원화는 세계적 추세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방향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교육부로의 일원화를 실현하였음

나. 유아교육, 보육의 질관리 및 전달체계 통합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

1) 유아교육, 보육 주체들간의 통합의 당위성 인식의 어려움

-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다시 이관됨으로 인해 사회복지 중심의 마인드를 가진 보육계와 교육중심의 마인드를 가진 유아교육계의 제 주체들 간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예측
- 보건 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간에 안정성 추구로 인한 통합의 당위성 인식과 실천의지의 미비

2) 유사 사업의 통폐합 실행의 어려움

-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보육재정의 급격한 증가로 유아교육계와 유사사업(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을 확장하여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어느 한쪽의 사업을 폐기 통합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3) 통합의 근거법 제정의 어려움

- 질관리 및 전달체계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므로 통합을 위해서 통합법의 제정

이 요구되거나 법의 제정은 시간적 소요와 노력이 요구됨

- 통합을 위한 근거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거시적, 미래 지향적 마스터 플랜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시간적, 재정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다. 유아교육, 보육 질관리 및 전달체계의 통합 방안

영유아교육의 수혜자인 영유아와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일부인 “유아기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하기 위하여(정미라, 나정, 박은혜, 하봉운, 2007) 인적자원개발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로의 질 관리 및 전달체계의 일원화 통합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함.

1)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유아교육업무 전담 행정체계 구축

-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 관리 및 전달체계 통합의 가능성은 다음의 법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로의 통합을 제안함.

통합 기관 설립을 모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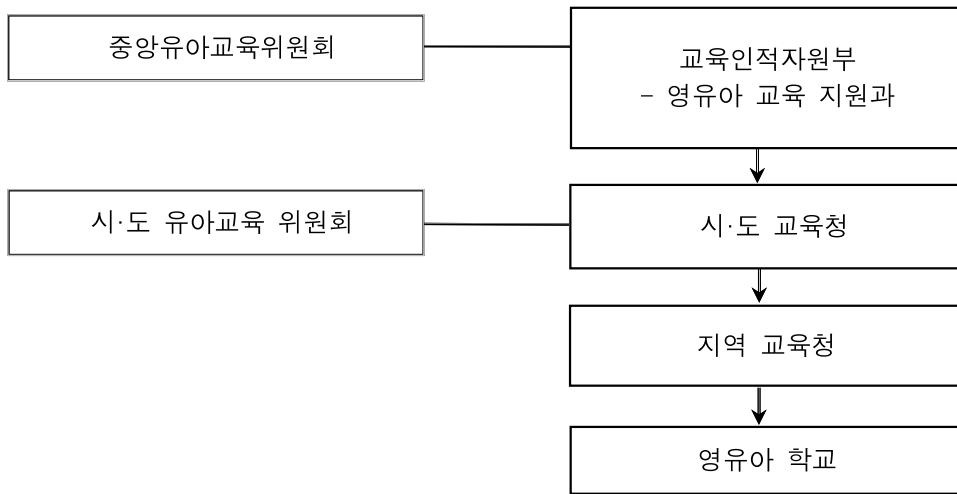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 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의 근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 가칭 “영유아교육위원회”로 개칭하여 구성하고, 산하에 통합 부서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지정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통합한 가칭 ‘영유아학교’를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유아교육. 보육전달체계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아교육. 보육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통합의 효율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함.



[그림 6-4-3] 전달체계 통합안

2) 유아교육.보육시설 평가를 위한 통합된 전담기구의 설치

- 지역교육청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이 분리되어 유사한 방식과 내용으로 관리해온 평가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가칭 ‘영유아학교평가 사무국’에서 전담하도록 통합 기관의 설치를 제안함.
- 현재 유치원 평가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으며,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진한 인력과 보육시설 평가 인증사무국의 운영을 담당해온 인력

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통합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봄

3) 유아교육. 보육업무의 효율적, 다각적 지원을 위한 통합된 전담센터의 설치

-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과 질적 양육지원을 위해 시도 및 지역 교육청내에 가칭 ‘영유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가칭 ‘영유아교육지원센터’는 기존의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 이용시설(예: 영유아 플라자)의 기능을 통합하여, 교사연수, 영유아교육정책 연구, 영유아교육정책관련 정보제공, 가칭 ‘영유아학교’ 평가 지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양육지원과 체험학습의 장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5. 재정 지원

가. 육아지원 현황 및 계획

- 육아지원(유치원과 보육시설지원비 포함)예산은 2006년 2조9,556억 GNP대비 0.35%), 2007년 3조2,995억 원으로 추정됨.
 - 저출산을 극복하고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과 육아비용 부담 완화 및 수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육아지원 증액은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 지원정책에 있어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표 6-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 수 대비 지원에 있어 보육시설 지원이 유치원 지원보다 2.3-4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가 정책이 보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예측을 하게 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 논란의 근거가 됨.
- GDP 대비 육아지원 비율이 조세 부담에 비해 높아 육아지원 계획에 있어 조세 변화 요구됨.

- 육아지원 예산이 부모나 현장의 요구를 얼마만큼 만족 시키고 있는지의 효과는 명확하게 조명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유아교육비 부담비율(0.349%)을 보여 재정분석 연구에 의하면 조세 부담은 낮은 반면육아 지원 비율은 높음

〈표 6-5-1〉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2006년)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아동수	국비	지방비	계	GDP대비 비율
보육	2006		781,784	1,256,318	2,038,102	0.240
	2007	1,059,124	1,043,474	1,248,300	2,291,774	
유아교육	2006		199,652	686,359	886,011	0.105
	2007	576,228	214,329	739,815	954,144	
농업인 양육비	2006		15,742	15,742	31,484	0.004
	2007		26,782	26,782	53,564	
계 (비율)	2006		997,178 (33.7)	1,958,419 (66.3)	2,955,597 (100.0)	0.349
	2007		1,284,585 (38.9)	2,014,897 (61.1)	3,299,482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농림부(2006). 예산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2007). 예산안개요.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아교육총괄예산. 농림부(2007). 예산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추계된 것임.

* 이중 농림부 예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아동지원 예산, 시설지원 예산, 인건비 지원 예산 및 공공시설 확충예산 등 육아지원 예산의 지원 전달체계 및 지원 방식이 다름.

- 유치원은 시설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는 교육비 지원 방식으로, 보육 시설은 아동지원 예산이 시설로 지원 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 인건비 지원의 경우 국·공립 시설의 경우 80-100% 지원되나 민간·사립의 경우는 기본보조금 지원을 실시하거나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육시설의 경우 ‘표준행정시스템’에 의해 보육 수혜 대상자, 종사자, 및 시설 규모 등 지원과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장하는 반면 유치원은 총괄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가가 예측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수요가 2010년 1,962,753명, 그에 따른 소요예산 7조793억 원으로 보육수요는 2007년과 비교하여 약20% 증가한데 반해, 지원예산은 107.5%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됨.
 - 총 비용의 GDP대비 비율이 0.65%로 추정된다는 예측(서문회)을 볼 때 재원 확보 계획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청됨.
-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아닌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령별 이분화 계획을 유추할 수 있음
 - <표 6-5-2>의 교육 및 보육 수요 아동 수의 추정에서 만3세 이상의 경우 보육수요 보다 교육수요 수의 비중이 증가되며, 특히 만5세 아의 경우는 보육수요가 감소되는 반면 교육수요는 증가시킴으로서 국가정책이 유아와 영아를 분리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표 6-5-3>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담임수당은 책정되어 있으나, 보육시설 교사의 담임수당 책정이 없음을 볼 때 유치원은 학교체제를 유지하고, 보육은 사회복지 기관으로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음.
 - 연령별 이분화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시설운영자간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을 확대함으로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을 유사한 체제로 이끌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단일체제로 통합하려함.
 -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 확대 계획은 운영형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육아지원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하려는 방책으로 추론됨.
 - 그동안 확장되어 온 보육시설이 수급 가능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요 부족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는 시설의 운영형태 자율화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 한다는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의 자연도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표 6-5-2〉 교육 및 보육수요 아동 수 추정(2006-2010)

단위: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0세아		32.065	32.905	47.091	54.720	62.204
1세아		86.123	102.175	118.460	134.320	150.180
2세아		187.367	230.298	271.062	273.141	288.273
영아소계		305.555	365.378	436.613	462.181	500.657
3세아	보육	226.705	252.093	277.156	300.136	301.004
	유아교육	77.669	1083706	139.428	168.827	167.225
4세아	보육	220.373	211.009	216.066	220.989	227.997
	유아교육	170.652	190.668	221.626	252.221	249.533
5세아	보육	204.604	173.645	156.282	155.635	154.927
	유아교육	292.870	271.854	270.848	287.545	317.410
만5세 이상아	보육	49.605	50.000	50.000	50.000	50.000
	유아교육	4.585	5.000	5.000	5.000	5.000
계	보육	1,006.842	1,059.124	1,136.118	1,188.914	1,223.585
	유아교육	541.191	576.228	636.901	713.593	739.168
총계		1,548,033	1,635,352	1,773,019	1,902,534	1,962,753

주: 2006년6월 보육통계, 주: 2006년 4월 유치원통계

〈표 6-5-3〉 보육·유아교육비용 소요예산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용 지원					
기본보조 ¹⁾					
- 보육	593,023	856,589	1,431,354	1,806,488	2,276,521
- 유아교육	407,000	470,085	845,184	1,066,830	1,266,613
차등보육료·교육비					
- 보육	598,956	856,803	1,145,718	1,364,551	1,552,346
- 유아교육	142,073	226,978	320,868	419,604	435,141
만5세아무상보육·교육					
- 보육	232,758	247,965	234,986	280,890	292,998
- 유아교육	269,909	313,535	328,755	418,758	484,190
장애아보육지원	61,043	76,914	89,733	108,353	123,664
다자녀육아지원	26,140	41,174	57,634	94,563	99,292
농어촌육아지원	31,484	44,200	42,400	41,200	39,800
입양아무상보육·교육	-	4,240	5,570	5,850	6,140
소계	2,362,386	3,138,483	4,502,202	5,607,087	6,576,705
인프라확충및개선					
국공립기관설치 ²⁾					
- 유치원	7,508	8,671	9,972	11,467	13,188
- 보육시설	77,800	104,404	120,065	138,074	158,785
운영시간 연장					
- 종일제 유치원 확대	10,000	103,366	124,660	138,460	143,050
- 야간보육 확대	39,000	52,000	95,000	129,000	150,000
유치원교사 담임수당	4,350	4,350	16,183	27,199	37,565
소계	138,658	272,791	365,880	444,200	502,588
계	2,501,044	3,411,274	4,868,082	6,051,287	7,079,293

주: 1) 사립유치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과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포함.

2) 보육시설 설치비는 건축비 이외에 매년 순 신축은 110개로 가정하고 개소당 3억원의 부지구입지를 포함함.

나. 유치원과 보육시설 재정지원 통합의 당위성

- 육아지원정책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근거 하에 진행되는 관계로 시설 유형에 따라 영·유아 육아지원 수혜범위는 큰 차가 있어 부모나 시설의 측면에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한 시설의 부재는 선택을 부자유하게 함으로써 육아지원의 중심축에 있는 아동의 잘 자랄 권리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됨.
-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을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면서 형평성을 고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대상연령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연령 범위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사한 교육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법체제의, 이원화로 지원체계의 상호 연계 미비함.

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의 저해 요인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적 유아교육기관의 이해 뿐 아니라 각 단위별 다양한 유형 간의 이해관계
 -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다. 향후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전체 연령 대상의 일원화가 아닌 연령별 일원화의 형식을 띤 이원화로 분류 될 경우,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통합의 걸림돌이 됨.
 - 일원화의 방향은 0-만5세의 모든 원아를 포함하는 통합 시설이어야 함.
- 육아지원정책의 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수준, 이용자의 비용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합의의 어려움.
-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간 갈등.
 - 업무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갈등은 현장이나 관련학과 등의 이

해와 맞물려 있음. 따라서 교육과 보육의 중심 대상인 영·유아 측면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갈등으로 통합함의 어려움.

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재정지원 통합방향

1) 재정책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재정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

- 예산에 따른 재원확보의 가능성, 예산의 안정성, 지원의 충족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예산 확보의 안정성·충족성 그리고 분배의 효율성과 공정성은 일반 정책 분야에서도 중요한 가치 기준(이준구, 2006)이며, 양질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원의 효율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함.
- 통합되는 ‘영유아교육법’(가칭)내에 영·유아의 잘 자랄 권리를 포함하는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구축

- 정부 계획에 따르면 육아지원 예산이 GNP나 세수 비율에 비해 향후 현재보다 더욱 상향 될 것임. 따라서 재원 확보의 가능성 타진과 방안 마련 필요함.
- 따라서 육아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세수 목을 따로 정 하거나, 교육세 세수율을 상향조정하여 재원 마련의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 교육세를 통한 육아지원 재정을 마련할 경우는 반드시 ‘교육세’내에 육아지원 예산 %를 명시 하여야 함.

2) 예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 사립(민간) 시설의 법인화

- 국·공립이외의 초·중등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지원이 ‘법인’이라는 사회적 약속에 의한 공공성 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민간(사립)시설을 법인 시설로 전환 하도록 유도하여 육아지원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

- 민간 시설의 질적 확보를 위한 시설비 및 장비비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 확보하여야 함.
- 육아지원의 형평성,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
 - 획일적인 지원 기준 보다는 시설의 규모, 인적구성의 요소 등을 고려 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시설 규모에 따라 필요한 환경 및 인적 구성 요인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운영경비에 차이가 남. 자칫 획일적 기준에 의해 지원이 되다보면 교육 및 보육의 질을 담보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어질 수 있음
 - 특히 인적 지원에 있어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 %를 학급기준이 아닌 교사의 경력(호봉)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함.
 - 이는 사립시설에 지원 할 기본 보조금의 경우에도 시설의 인적 구성원을 고려하여 지원 할 필요 있음.
- 교육 및 보육비용의 수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 가구당 소득수준 파악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행정 체계내에서의 공적 파악 뿐 아니라 현장종사자의 의견을 포함 한 실질적인 총체적 판단 필요함.
- 분배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
 -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바우처방식)보다는 시설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질의 육아를 받도록 하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육아지원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아재정운영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아비용지원 비율의 불균형,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차 등은 국가가 부모나 아동 및 시설의 입장에서 공평한 지원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수혜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지속 될 것임. 따라서 지원 비율의 합리적 고려가 있어야 함.

3)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관리체계(통제시스템)를 구축해야 함.

- 막대한 재정지원은 공적 교육과 보육의 필요성으로 확보되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과 연결 되어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의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확보에 서부터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까지 관리 할 광범위한 행정적 관리의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현재 보육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 행정 시스템’ 도입하여 보안한다면 예산의 확보, 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원의 확보 필요
 - 현행의 시스템은 인적 구성과 체계에 있어 많은 불합리성과 업무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구조로 지원계획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4) 주무 부처 및 법의 일원화

□ 단일법 제정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하여 0-5세를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포함하는 단일화된 법을 제정해야 함

□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육아지원’국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함.

- 유치원은 교육과학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을,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에 의해 지원 되고 있는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 마련 및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5) 교사의 자격, 경력 및 보수체계 등의 일원화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경력 및 보수체계 등의 통합(정비)기준을 마련해야 함.

- 교사자격, 보수체계와 호봉 인정 등의 문제는 인건비 예산책정 및 지원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로 통합을 가정했을 때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함.
 - 현재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획일 호봉제를 보완하여 구축
 -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경우는 종일제, 반일제 근무의 조건 없이 학력을 고려한 통합호봉 책정

-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 취득 과정,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통합호봉 책정

〈표 6-5-4〉 유치원교사·보육교사 통합호봉 예시

자 격		호봉
보육교사 3급		1 호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과정 및 유사 과정	3 호봉
	전문대 비 유아교육 관련학과	4 호봉
	전문대 유아교육과 및 보육과 등 유아교육관련학과	6 호봉
보육교사 1급	전문대	6 호봉
	3년제 대학	7 호봉
	4년제 대학	8 호봉
	2급에서 승급될 경우 1호봉 가산	
사회복지사 2급	전문대학	4 호봉
사회복지사 1급	4년제 대학	6 호봉
유치원 2급정교사	2년제 전문대학	6 호봉
	3년제 대학	7 호봉
	4년제 대학	8 호봉
	4년제 사범대학	9 호봉
유치원 1급 정교사	2급에서 승급될 경우 1호봉 가산	

- 기타 직원(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관리인, 치료사 등)의 직급체계 논의 필요함.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15.
-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통계, <http://cesi.kedi.re.kr>
-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아교육총괄 예산.
- 김미경(2005). 5세 유아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23-152.
- 문무경·이윤진·이세원(2007).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 보고서 2007-01
- 백혜리(2007). 보육예산의 확보와 배분에 관한 분석-열린유아교육학회 기고논문(미간행분)
- 사립유치원 운영관리지침.
- 서문희(2007). 육아정책의 통합적 접근(Ⅱ) - 중장기 육아지원 계획과 기대성과의 발전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세미나 자료 2007-01
- 여성가족부(2006). 보육사업관련 법령집.
- 여성가족부(2006). 보육자격제도 국가자격증 발급안내서. 보육자격관리사무국. p.15 (<http://cafe128.daum.net>)
-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http://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2006). 새싹 플랜.
- 여성가족부(2007). 2007 예산안 개요.
-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 [http://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 여성부(2005).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준 연구.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육아정책개발센터(2006). 육아정책의 통합적 접근(I). 육아정책개발센터. 세미나자료 2006-01.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육아정책 포럼, 창립2주년 특집호.

이옥·김나리·신은설·문무경·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2006-01.

이일주(2007). 법규, 비용지원 측면에서의 통합방안 모색.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주성·김진영(2006).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방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라 (2008).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연구. 경기도 교육청.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2008). 영유아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논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부록 7.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1. 기관·시설¹⁾

-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시설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교사자격, 교육 보육 과정, 질관리 감독, 재정분야를 제외한 분야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목적, 명칭, 종류, 대상, 설립기준(근거, 인가, 위치, 시설면적, 임대, 처분)등의 영역을 말함
-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시설은 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중심적인 분야로서 다른 분야의 협력과 통합에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임

가.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시설 이원화의 문제점

1) 중복업무로 인한 정책수행 효율성 저하 및 자원낭비

-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시설의 협력과 통합의 전제인 담당부처, 각종위원회, 연구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목적, 명칭, 종류, 대상, 설립기준(근거, 인가, 위치, 시설면적, 임대, 처분)등의 이원화로 인해 효율성 저하

1) 윤건호(용인송담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2) 수요자에 대한 불평등·불공정성

- 현대의 모든 정책에서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념에서 고찰해 볼 때, 한국의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 시설은 이원화 체제를 고수함으로써 인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수요자인 유아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불평등한 수혜를 받게 함. 이와 같은 문제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를 구축과도 긴밀하게 관련된 문제임.

3)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의 어려움

- 유아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유아기교육 보육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원화 통합된 기관·시설 운영구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아교육 보육 기관·시설은 이원화로 이루어진 분산된 구조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게 함.

나.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 시설의 이원화 현황

-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시설의 협력과 통합의 전제인 담당부처, 각종위원회, 연구기관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목적, 명칭, 종류, 대상, 설립기준(근거, 인가, 위치, 시설면적, 임대, 처분)등이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음

1) 목적

-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목적이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호와 교육, 가정복지 증진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2) 대상

- 현행법상 유아교육기관의 입학대상은 만3세 이상 취학 전으로 되어있고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6세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동일연령(만3세-취학 전) 유아에 대한 이용기관·시설이 이원화 되어 있음

3) 설립근거 및 인가

- 유아교육기관의 설립근거 및 인가가 대통령(시·도 교육감 인가)으로 되어있고 보육시설의 설립근거 및 인가가 보건복지가족부령(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4) 위치 및 면적

- 유아교육 기관은 1,2층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1층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면적에 있어서도 유아교육기관은 40명을 기준으로 면적을 달리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기준을 정해두고 있음

5) 임대 및 처분

- 유아교육 기관은 임대를 불허하고 있으며 매도, 담보도 금지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표 7-1-1〉 유아교육과 기관과 보육 시설의 이원화 현황

구분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비고
목적	유아교육	영유아보호와 교육, 가정복지 증진	
종류	국(공)립, 사립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대상	유아(만3세-취학전 아동)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만3세-취학전 아동 중복
설 립 기 준	근거	대통령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인가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위치	1,2층 원칙	1층 원칙
	시설면적	-40명 이하:5N(m ²) -41명 이상: 80+3N(m ²)	4.29N (m ²)
	실외놀이터	-40명 이하:160N(m ²) -41명 이상: 120+N(m ²)	2.5N(m ²)
	임대	불허	제한없음
	처분	매도, 담보금지	제한없음

주: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다.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 시설의 협력 및 통합을 위한 대안

1) 협력 및 통합의 당위성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의 목적을 저출산 해결, 미래인적자원 육성, 여성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현상적·기술적인 면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이와 같은 단기적·처방적 견해보다는 인간 존엄성에 입각한 교육과 보육의 장기적·철학적 접근에서 고찰되어야 함
- 협력과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당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부처통합과 공기업 민영화 등 모든 체제가 실용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를 지향하고 있음.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이념과도 부합되는 정책임. 부처통합은 정책대상자(이해 당사자)가 주로 공무원들이고 일반국민들은 그 현황이나 문제점이 어떠한 동조를 보이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정책대상자가 종사자, 학계, 공무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통합결정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협력과 통합결정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정책 최고결정자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통합과 관련된 사람들의 갈등으로 인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통합이 무산되어서도 안 됨.
- 인간 발달과 성장의 핵심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고, 그 기본의 형성이 유아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할 때, 유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인간발달의 기본적 측면에서 볼 때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임.
- 현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보육기관의 경우는 이미 3세 -5세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서비스기능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시설인 '인정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현장의 종사자나 수요자들은 유아교육과 교육의 통합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를 선도하

여야 할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협력 및 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 위와 같은 협력과 통합의 당위성에 근거하여 현행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 시설에 대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가) 목적

-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목적이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호와 교육, 가정복지 증진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3) 대상

- 현행법상 유아교육기관의 입학대상은 만3세 이상 취학 전으로 되어있고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6세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동일연령(만3세-취학 전) 유아에 대한 이용기관·시설이 이원화 되어 있음

가) 목적의 일원화

-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목적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유아교육 기관의 목적에도 보호와 복지의 내용을 삽입하여 일원화 하여야 함.

나) 대상의 일원화

- 단기적으로는 0세-2세와 3세-취학전 유아를 구분하여 전자의 유아는 영아학교로 후자의 유아는 유아학교로 운영하는 등, 유아 교육 보육 통합조정위원회(가칭)와 유아교육보육지원청(가칭)을 통해 협력과 통합을 하여야 함.

다) 설립근거 및 인가

-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 시설의 설립근거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통일하고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 시설의 인가에도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자치단체장

이 함께 참여 협조하여 결정해야한다.

라) 위치 및 면적

-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시설의 위치에 있어서도 통합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아의 경우는 1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면적에 있어서도 보육 시설의 면적을 유아교육 기관수준으로 상향시켜서 적용시켜야 함.

마) 임대 및 처분

- 보육 시설에도 유아교육 기관과 같이 임대를 불허하고 매도, 담보도 금지하도록 하여 일원화 하여야 함

바) 기타 부문의 일원화

-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 시설의 운영(안전장치, 급식, 건강관리) 등에 있어서도 수요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와 서비스질의 제고를 위해서 일원화 통합되어야 함

〈표 7-1-2〉 유아교육과 기관과 보육 시설의 통합 대안

		현행		대안
구분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아교육 보육 통합조정위원회에서 결정(예: 단기적으로 영아학교, 유아학교 구분하고 장기적으로 유아학교로 통합)	
목적	유아교육	영유아보호와 교육, 가정복지 증진	유치원에도 보호, 복지 기능 삽입	
종류	국(공)립, 사립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시설 조정 후 통합	
대상	유아 (만3세-취학전 아동)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유아교육 보육 통합조정위원회에서 결정(단기적으로 0세-2세, 3세-취학전 구분하고 장기적으로 0세-취학전으로 통합)	
설 립 기 준	근거	대통령령	보건복지가족부령	대통령령으로 통일
	인가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공동인가
	위치	1, 2층원칙	1층원칙	1층 또는 1,2층 원칙
	시설 면적	-40명 이하:5N(m ²) -41명 이상: 80+3N(m ²)	4.29N(m ²)	유치원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통일
	실외 놀이터	-40명 이하:160N(m ²) -41명 이상: 120+N(m ²)	2.5N(m ²)	유치원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통일
	임대	불허	제한없음	보육시설에도 불허
	처분	매도·담보금지	제한없음	보육시설에도 매도, 담보금지

2. 교사 자격²⁾

가. 법제상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실태

- 현행 법제상 유보 이원화체제에서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학과와 관련학과의 교직 이수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으며, 보육교사는 기준교과목과 학점이수

2) 권건일(수원여자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개방형 체제를 통해 양성되고 있음.

- 교사자격기준의 이원화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는 교사자격의 질적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1)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

- 유치원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 ②항에 규정하고 있음.
-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은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로 구분됨
- 유치원교사의 자격요건에는 학력, 전공, 경력이 포함됨
- 유치원교사의 교육경력 범위에는 보육시설의 교사경력이 포함됨

〈표 7-2-1〉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 (유아교육법 제 22조)

급별	자격	자격기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졸업자 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원·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보육교사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에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보육교사1급, 2급, 3급으로 구분됨.
-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에는 학력, 전공, 경력이 포함됨.
- 보육교사의 경력범위는 유치원교원의 경력이 포함됨.

〈표 7-2-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관련)

등 급	자격기준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검정기준

가) 유치원교사의 자격검정

-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수여함.
- 유치원교사의 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에 의거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위임.

-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각각80점 이상(100점 만점)이어야 함.

나)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이 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함.
- 보육교사 3급의 검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한자로서 보육교사교육원 성적이 70점 이상(100점만점)이어야함.

〈표 7-2-3〉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검정기준비교

구분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관련법규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규칙
자격 검정·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권한 위탁 받아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자격관리	교원양성연수과	보육자격관리사무국
이수과목	전공과 교직과목의 기준	전공 관련 6개 영역 교과목 기준
실습기간	4주 이상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검정서류(2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 자격증교부신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2. 보육교사 3급자격증, 경력증명서, 승급교육이수증명서

나. 교사 자격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1) 유치원 교사

- 정교사 2급 자격 기준에 대한 대학 수학 연한의 다양한 차이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사의 학력은 전문대학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교사 2급 최초 자격 획득에서 수학연한의 차이가 나타남(2년제,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교)
- 최초 자격 획득에서의 대학 수학연한의 차이는 유치원 교사의 질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음.
-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의 내실화가 문제임
 - 교원자격의 무시험 검정 제도는 교사 양성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만 취득하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준교사 자격 제도는 교원 양성이 부족한 경우에 선발하는 제도이나 최근 5년 동안 1명이 준교사 자격을 받음(2006년 현재)
 - 교사 수급상 유명무실한 제도임.
- 승급 제도의 효율성 결여로 교사 승급에 따른 사기저하와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승급대기자의 누증)
 -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력은 3년이지만 1급으로 승급되는 정도가 현격히 적은 실정임(2006년 13.9%)

2)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수학연한의 다양한 차이로 교사의 자질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음.(1년제,2년제,3년제,4년제)
- 보육교사의 체계는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어 유치원 교사와 상이함.
-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보육교사 3급을 취득한 자가 학력의 보강 없이

도 경력과 승급 교육으로만 시설장이 될 수 있음.

-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대학 관련학과 규정 삭제로 전문성 약화
 - 보육, 유아교육, 아동복지, 사회복지 관련학과 이외에도 소정의 과목과 학점(12과목 35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교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상 교직이론 과목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
 - 보육교사 교육원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사회학 등 교직과목이 전무한 실정임.
- 보육교사 양성대학 졸업자에 대한 자격과 관련한 성적 기준이 없어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보육교사 교육원 보육교사 3급 과정은 25개 과목 65학점의 취득과 평가 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요구하나 대학 졸업자의 경우 검정기준은 12개 과목 35학점 이상의 취득요건만 있고 성적 기준은 없음.

다. 개선방안

- 교육직은 전문직이며 따라서 교사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 특히 유아교사는 영·유아들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지적 통찰력과 이해력을 전제로하는 고도의 지적능력을 구비해야함.
- 교사의 전문성확립은 장기간의 사전교육과 현직에서의 계속교육을 필요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교사자격에서부터 격차가 심함으로 형평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직으로서 교사가 준수해야할 ‘윤리강령’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반 할 경우 징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1) 정책 방안

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동일 수준으로 통합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자격을 동일하게 정교사2급, 1급으로 구분하고, 보육 시설에 원감직제를 신설.
- 유치원교사의 준교사자격, 보육교사의3급을 폐지하고 보육교사교육원은 현직 교육, 보수교육, 연수 등의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함.

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질확보를 위한 학력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 단기적으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전문대 3년제 이상의 학력으로 조정하고, 점차 학사학위 이상으로 추진.
- 학사학위 이상으로의 학력 상향조정은 현재 전문대 2-3년제를 보강하기위한 학점은행제, 심화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

-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기존 전문대학 2년제 졸업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배출된 교사의 학력 제고를 위한 기관으로 전환.

라) 법령의 정비, 통합

- 우선 교사의 자격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체제의 일원화
 -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양성, 자격제도, 인사, 처우 등
 -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사양성, 자격제도, 인사, 처우 등
 - 유사, 공통점이 많고 중복적임.

마) 점진적으로 행정부처의 통합, 유아교육, 보육정책의 일원화가 요구됨.

2) 제언

- 이미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는 새 정부에 3대 정책과제를 선정 제안한 바 있음(한국보육교육단체총연합회, 2008.2.15)
- 3대 정책과제는 ①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일원화 ②법제의 통합 ③행정부처의 통합임.
- 이제 융합, 통섭, 통합은 경쟁력제고를 위한 우리시대의 대세임을 인식하고 유·보 일원화를 국가 주요전략정책으로 설정해야함.
- 지난해 유·보 통합과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총론에 공감을 확보한 상황에서 유·보 간의 갈등, 대립, 반목을 종식시켜야함(실용적협력)
- 정책→법제→행정→현장간의 체계성, 일관성 유지
 - 이명박 정부는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가 제안하는 3대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교사자격제도의 일원화부터 정책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보육을 보육·교육·복지를 통합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통합정책을 펼쳐야 함.
- 유아교육·보육 업무를 관장할 가칭 「영·유아교육복지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3. 교육·보육과정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³⁾

가.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현황 비교

1) 관련법 비교

가) 유아교육법

-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있음(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

나) 영유아보육법

-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되었음(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9조)

〈표 7-3-1〉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관련법 조항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13조(교육과정 등)	제29조(보육과정)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최순자(대진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p>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면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p>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2)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비교

가) 주관 부처

- 유치원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표준보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

나) 대상 연령

- 유치원교육과정은 만 3-5세, 표준보육과정은 만 0-5세가 대상임

다) 영역구성

- 유치원교육과정은 5개 영역, 즉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보육과정은 6개 영역 즉, 신체운동, 기본생활, 의사소통, 자연탐구, 사회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라) 수준 구분

- 유치원교육과정은 대상 연령 모두 I, II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준보육과정은 3개 연령 즉, 만 2세미만, 만 2세, 만 3-5세로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령 내에서 다시 1-3 수준으로 구분 되어 있음.

마) 목표

(1) 유치원교육과정

- 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
- ② 기본생활습관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 ③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④ 바르게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가진다.
- ⑤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궁리하는 태도를 가진다.

(2) 표준보육과정

- ① 긍정적인 신체 인식과 기본운동능력을 기른다.
- ② 건강, 안전, 바른생활에 대한 기본능력과 바른 습관을 가진다.
- ③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기른다.
- ④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 ⑤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감성 경험을 가진다.
- ⑥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바) 추구하는 인간상

(1) 유치원교육과정

-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③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④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 표준보육과정

- ① 스스로 노력하는 자율적인 인간
- ② 건전한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간
- ③ 사회에 기여하는 민주적 인간
- ④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표 7-3-2〉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비교

구분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주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대상	만 3세-5세	만 0-5세
영역구성	5개 영역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6개 영역 (신체운동, 기본생활,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사회관계)
수준구분	수준구분: I, II 수준	연령구분: 3개 연령(만 2세미만, 만 2세, 만 3-5세) 수준구분: 연령구분 내 1-3 수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 ② 기본생활습관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③ 바르게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가진다. ④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궁리하는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긍정적인 신체 인식과 기본운동능력을 기른다. ② 건강, 안전, 바른생활에 대한 기본능력과 바른 습관을 가진다. ③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기른다. ④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⑤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감성 경험을 가진다. ⑥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추구하는 인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④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스로 노력하는 자율적인 인간 ② 건전한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간 ③ 사회에 기여하는 민주적 인간 ④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가.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1) 관련법 및 주관 부처

가)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관련법의 이분화

-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관련법의 이분화로 같은 연령의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에 문제가 있음

나) 주관 부처의 이원화

- 유치원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표준보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로 되어 있어 교육목표 제시에 있어서 관점이 다름.
 - 같은 연령의 발달을 보장하는 교육제시가 필요함.

2)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가) 유치원의 종일제 수업 증가에 따른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수준구분의 다름에 따른 문제점

-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의 확대에 같은 실제적으로는 같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유치원교육과정은 2수준으로, 표준보육과정은 3수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대상 연령이 같으므로 같은 수준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나) 영역구성의 다름에 따른 문제점

-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의 확대에 실제적으로는 같은 연령의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교육과정의 5개 영역 즉,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으로 표준보육과정의 신체운동, 기본생활,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

술경험, 사회관계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대상 연령이 같으므로 같은 영역구성 편성이 필요함.

다)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목표의 차이

- 유치원교육과정에 표준보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는 목표가 서로 다름.
 - 같은 연령의 영유아이므로 같은 목표를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봄.

다. 개선방안

1) 관련법 및 주관 부처

가)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관련법의 통합

- 관련법이 통합되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관련법의 통합으로 교육기본법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이념의 틀 안에서 영유아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평등권이 확보되어야 함.

나) 주관 부처의 통합

- 현재 유치원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표준보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로 되어 있으나 이를 한 부처로 통합하여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함.

2)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가) 종일제 수업에 따른 연령과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수준의 통합

- 현재 유치원에서도 종일제 수업이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치원교육과정의 대상 연령은 시설 정비를 전제로 표준보육과정의 대상연령과 같이 만

0-5로 통합 운영되어야 함

- 수준 구분은 표준보육과정과 같이 연령 내 수준구분이 세분화 되어야 함.

나) 영역구성의 통합

- 유치원교육과정의 5개 영역 즉,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을 표준보육과정의 신체운동, 기본생활,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사회관계의 6개 영역으로 세분화함이 영유아의 발달에 더욱 적합하다고 봄.

다) 영유아의 권리 측면에서의 목표의 기술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최종 목표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전제로 하고 영유아의 권리 측면에서 기술되어야 함.

3) 제언

가) 협동심 배양과 체험 중심의 통합된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편성

- 통합된 교육과정과 보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핵가족화의 증가와 형제자매 수의 감소로 인한 영유아 발달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함.
 - 협동심 배양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영유아는 모든 감각을 활용한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통하여 사물의 본질, 개념 등을 알아가야 됨.
 -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통합된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나)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함에 있어 초등학교와의 연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 유아와 초등학교 아동과의 교류, 교사의 교류,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교류

다)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영유아기의 발달의 중요성 및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할 방안을 교육 과정 및 보육 과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지역사회의 협조와 연계는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함.
 -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의 활용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함.

라) 교사 역할의 구체적 명시

-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는 교사의 개입이 많음.
 - 영유아 중심의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교사의 역할 중 특히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마) 만 2세 미만의 연령의 세분화

- 만 2세 미만은 발달에 있어서 월령별로 급격한 변화를 보임.
 - 일본의 보육소보육지침처럼 보다 세분화 되어야 함.
 - 만 0-6개월, 만 6-12개월, 만 12-18개월, 만 18-24개월로 세분화.

4. 질 관리·감독체계(전달체계 포함)⁴⁾

- 유아교육과 보육 측면에서 선진 각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공적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반 행·재정 관리·감독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음.
 -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가치관은 정부로 하여금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원기관에 대한 공공성 제고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함.
 - 공공의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국가의 지원이 현장의 서비스 수준 향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전달체계 관련 전문관료의 서비스 담당이 필요함. 공공성과 함께 전문성도 요구됨.
 - 영유아발달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담당공무원을 통한 서비스 수행을 위한 보육직렬의 신설·법제화 필요함.

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관리·감독체계(전달체계 포함) 관련법

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제18조 (지도·감독)
 -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4) 윤난호(서일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교수)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장학지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영유아보육법(령)

○ 제4장 보육시설의운영

- 제3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장 지도 및 감독

- 제41조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나. 질관리 · 감독체계의 문제점

1)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문제

□ 제도적 이원화

-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재무회계 규칙등 법적규정이 적용되어 질 관리가 이루어 짐.
-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이 적용되어 질관리가 이루어 짐.

2) 평가의 이원화

□ 유치원의 경우 평가시스템과 장학지도

- 국·공립 유치원은 연1회의 담임장학을 포함하여 연간3-5회의 장학지도를, 사립유치원은 연 1-2회정도의 장학지도를 받음.
- 유치원의 재정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의 감사를 받음.
-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유치원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 시스템이 도입됨.
- 유치원 평가제도는 2007년 시범운영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평가제도와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 평가제도와 장학시스템을 연계하여 유치원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효율화

□ 보육시설평가 인증제도

- 보육시설의 경우 2005년도부터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음.
-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서비스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음
- 급속한 양적확충에 따른 질적수준제고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질의 보완측면에서 시행되었음.
- 안전한 보육환경에서의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학부모들의 기관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것으로 파악됨.
- 평가인증지표 개선을 통하여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보육시설들의 질적 수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3) 재정지원체계의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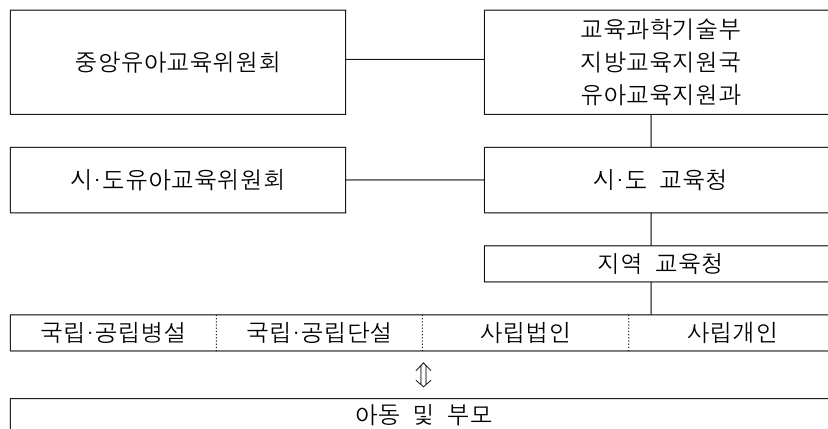
- 국가재정지원과 관련있는 공공성 강화는 국가가 재정 및 교육·보육과정등을 지원하고 그 운영을 관리·지도 함으로써 질제고를 유도함.
- 현행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서비스 기능이 유사한 사립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의 재정지원 체계의 상이함으로 비효율성·비형평성 제고됨.

4) 전달체계의 이원화

□ 유아교육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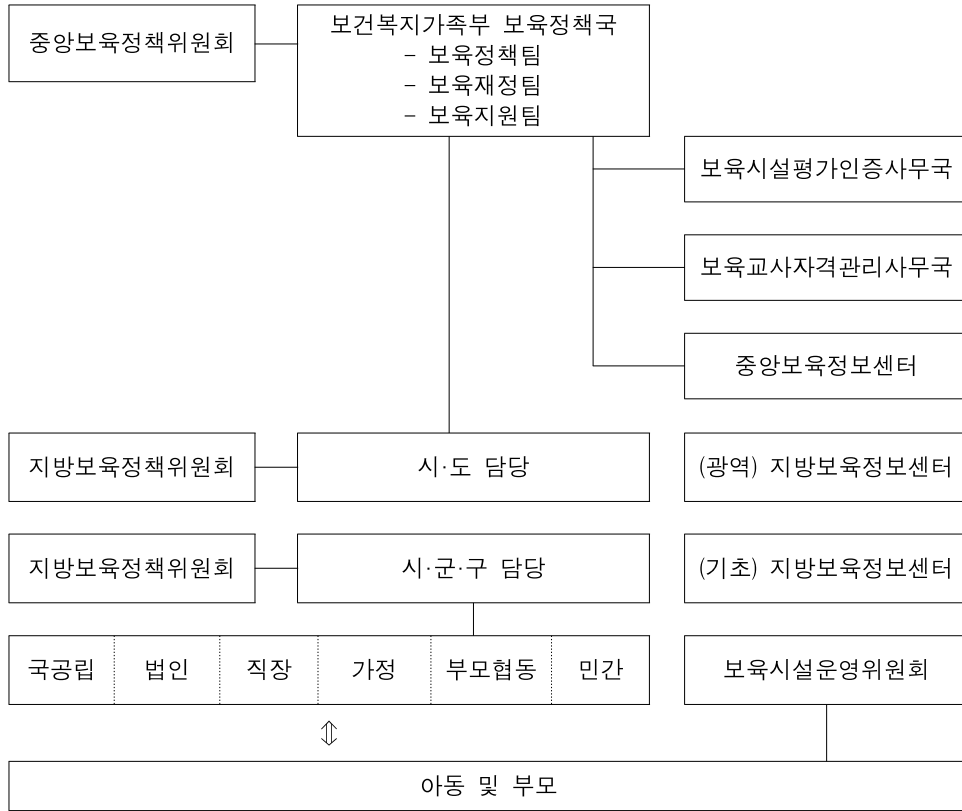
- 유아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지원과에서 담당.



[그림 7-4-1] 유아교육전달체계

□ 보육전달체계

- 보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정책국에서 담당.
- 보육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정보전달체계가 있음.



[그림 7-4-2] 보육전달체계

다. 유아교육과 보육 질관리·감독체계(전달체계 포함) 협력 및 통합을 위한 대안

1)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체제는 문제점으로 인식, 향후 통합체제의 필요성 지향하는 연구와 노력 필요.

-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청을 두어 통합된 정책실현을 가능케 하여야 함.
-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유치

원 평가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관리 방안으로서 통합되어 일원화된 국가수준의 질관리 체제로 평가가 실시, 지도와 감독, 정책평가, 모니터링 등이 되어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 실태에 기초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동향과 우수한 외국사례에서의 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질관리 체제를 개념화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평가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2) 질 관리를 위한 형평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기구·인력의 통합필요

- 현행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의 업무와 유치원 장학과 감사, 평가를 총괄할 수 통합평가기구가 설치, 운영되어야 함.
- 현행 유치원 장학사 및 시범평가위원,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인력등 평가전문 인력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3) 관리감독(전달체계 포함) 의 통합

-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으나 중복성과 유사성도 많으므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합되어야 함.
-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전달체계의 단계에 따라 중앙정부 16개시도·도시·군·구에 따라 다르게 접근 될 수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육행정전달체계가 교육청중심의 유아교육행정전달체계에 비해 체계가 많고 조직화 되어 있으므로 전달체계의 협력과 조정과정을 거쳐 협의회와 공청회를 통해 현장전문가 관련자들의 여론 수렴단계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의 관리감독, 전달체계가 모색되어야함.

4) 관리감독(전달체계)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관료 확보

- 현행 보육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과 비전문성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

성이 이야기 됨.

- 보육직렬의 신설, 법제화 필요함.

5. 재정 지원(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통합모형의 개발)⁵⁾

가. 재정통합의 이념

1) 보편주의적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실시

-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은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 있으므로 보육의 공공성 및 보편성에는 국가와 사회,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따름
- 모든 대상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아야 함

2) 현 지원체계의 현황

- 현재 이원화체계에서의 재정지원체계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동일한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재정지원체계에서 문제가 많음

나. 재정지원 통합화 과정

1)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통합과정

- 1단계: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통합재정의 확보를 위한전제조건의 해결

5) 김익균(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 분석과 기준마련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분석
- 동일기준의 마련
- 2단계: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모형으로 병행하여 통합모형에 접근
 - 일원화 모형(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 이원화모형(기타 유치원과 어린이집)
- 3단계: 보육재정의 통합화 완성
 -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재정모형의 개발

2) 통합화의 전제조건

- 공교육에 대한 교육재정과 공보육에 따른 보육재정 접근의 동일화
- 부모들이 부담하는 유아교육비와 보육비가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동일하게 부담
-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조정 및 일원화
- 설치기준 및 관련기준의 동일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운영에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전조사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부담의 동일화가 이루어지면 그 차액에 대한 동일한 지원
- 바우처제도의 점진적 도입
 - 바우처 제도가 실시하려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해소가 전제되어야 함
 - 바우처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속에는 공급자를 누가 선정하느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사업의 통합과정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 함
 - 유치원의 유형과 보육유형에 따른 점진적인 바우처제도의 개발
 - 전자바우처제도의 도입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재정의 위한 장기전략을 동시에 수립

다. 모형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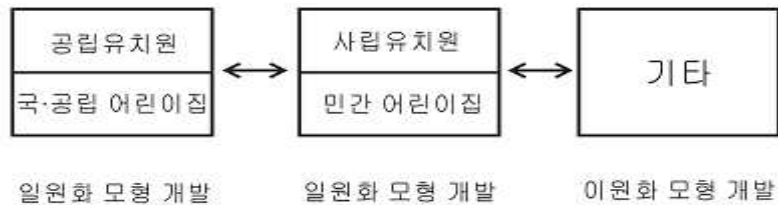
1) 모형개발의 접근방향

- 통합 및 일원화가 가능한 유형부터 우선적으로 모형개발
 - 현실적으로 재정통합 모형을 도입 할 수 있는 영역부터 통합
 - 전자바우처제도로 통합할 수 있는 영역의 개발
-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방식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
 - 유치원의 교육료와 어린이집의 보육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합재정지표의 개발
 -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통합 재정규칙의 신설
-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모형에 포함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
 - 동일하게 지원할 수 없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원화 방식으로 재정지원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인 재정통합을 위한 통합기구의 설치

2) 단기, 중단기, 장기적 접근

- 단기: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보육재정지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전작업의 실시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분석의 실시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동일기준의 마련
 - 재정통합에 필요한 법적 기준의 마련
 - 재정통합을 위한 홍보전략과 대처방안의 마련
 - 재정통합을 위한 행정기구의 조정안의 마련
- 중장기: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통합재정 모형의 현실적 접근
 -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일원화 모형의 개발

- 민간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일원화 모형의 개발
 - 기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를 해결할 수 있는 이원화모형의 개발
- 장기: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현실적 통합적인 모형의 개발
- 부모님들의 동일한 부담과 동등한 국가지원을 유도
 - 대상자 1인당 동일한 재정지원의 달성



[그림 7-5-1]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통합 재정지원 모형

참고문헌

- 권건일(2007).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과제. 국회 좋은 교육연구회자료집.
- 권건일(2008). 글로벌시대유아교육과보육의 비전. 한국보육교육단체 총연합회 자료집.
- 권건일·김재환·최순자(2007).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을 위한 비교 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논집, 27(6), 67-100.
- 권건일·이미정·이희경·정선아·정혜순(2007). 유아교사자격의 강화. 한국유아교육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학술토론회자료집.
- 김영옥·조부경·홍혜경·김희진(2005).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유아교육연구, 25(4), 53-80.
- 김용해(2005). 보육정책패러다임의 전환-정부와 시장의 역할- 보육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지정토론1자료.

- 김익균 외(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 김중해(2005). 보육정책패러다임의 전환-정부와 시장의 역할. 보육정책 방향의 재정 자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지정토론4자료.
- 김형희(2006).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동부산대학 논문집, 25, 273-304.
- 김희규·김재건·홍후조·손민호·박종필(2006). 교육과정 관점에서의 학제 개편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2206-16.
- 김희연·정선아(2006). 어린이의 삶의 관점에서 본 유아교육·보육과정의 본질: '발달' 과 '교과'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5), 355-376.
- 나성식(2005). John Dewey의 교육적 경험론에 나타난 통합적 유아교육과정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10(3), 413-442.
- 나정(2001). 유아교육의 기능변화와 유아교사양성정책. 한국교사교육, 18(3), 129-149.
- 나정·장영숙·문무경(2000). 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제도분석. 한국 교육개발원.
- 박은혜(2006).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미래방향. 2006년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자료집.
- 박진옥·최순자·윤매자(2007). 한국의 표준보육과정과 일본 보육소보육지침의 비교.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1(4), 237-266.
- 성원경·이춘자(2007). 전문가 개념도를 통한 통합적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논의. 육아 지원연구, 2(1), 70-100.
- 소경희(2005). 교육과정 개발: 주요 쟁점 및 새로운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신은수(2006). 세계 유아교육 학제와 유아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아동교육연구 15, 97-116.
- 양옥승(2004). 보살핌의 텍스트로서의 유아교육과정 이해. 유아교육연구, 24(4), 247-262.
- 양옥승(2005). 아동중심 교육과정의 의미 탐구. 유아교육연구, 25(2), 103-117.
- 양옥승(2006). 삶의 맥락에서의 영유아 보·교육과정 탐구. 유아교육연구, 26(6),

253-267.

영유아보육법령집(2008).

유희정(2006).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유희정·김희진·김문정·조혜주(2007). 육아지원기관의 교육·보육활동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윤건호(2002). 이원화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타당성 연구. 한국보육학회, 2(2).

윤건호(2007). 유아교육법제정의 의의와 한계. 한국여성교양학회, 16집.

이미화·장명립·신나리·김문정·김현철(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 문성 제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이영석(2002). 유치원 교육과정 평가 방안. 교육과정연구, 20(2), 27-47.

이영주(2005). 한국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분석-비판이론적 접근과 제안. 서울: 문음사.

이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혜선(2006). 육아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이일주(1999). 한국 유아교육 일원화체제 모형탐색.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종희(2003). 발달적으로 적절한 유아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생활과학연구, 8, 189-204.

이희경(2007).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 개선요구 및 지원과제에 대한 토론,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사자격기준개선정책워크숍, 연구자료 RM2007-81 한국교육개발원, 193-201.

임부연(2005). 포스트모던 유아교육과정의 미학적 탐색: 해체를 넘어 생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연구, 23(4), 207-230.

임춘금(2005). 현장연구에 기초한 21C 바람직한 유아교육과정의 방향 -비판적 관점에서 본 하루 일과 진행을 중심으로-. 문경대학 연구논문집, 8, 41-61.

정지현(2006). 유아교육과정과 교사 전문성의 패러다임 전환적 의미 연구: 생태 유아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249-271.

포럼 푸른한국 제 21차 세미나(2007).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정책 대토론회.

황운세·강현석·유제순(2006).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탐구생활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유아교육연구, 26(3), 33-57.

부록 8. 한국유아교육학회 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에 대한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입장

연구책임자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집필진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성소영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화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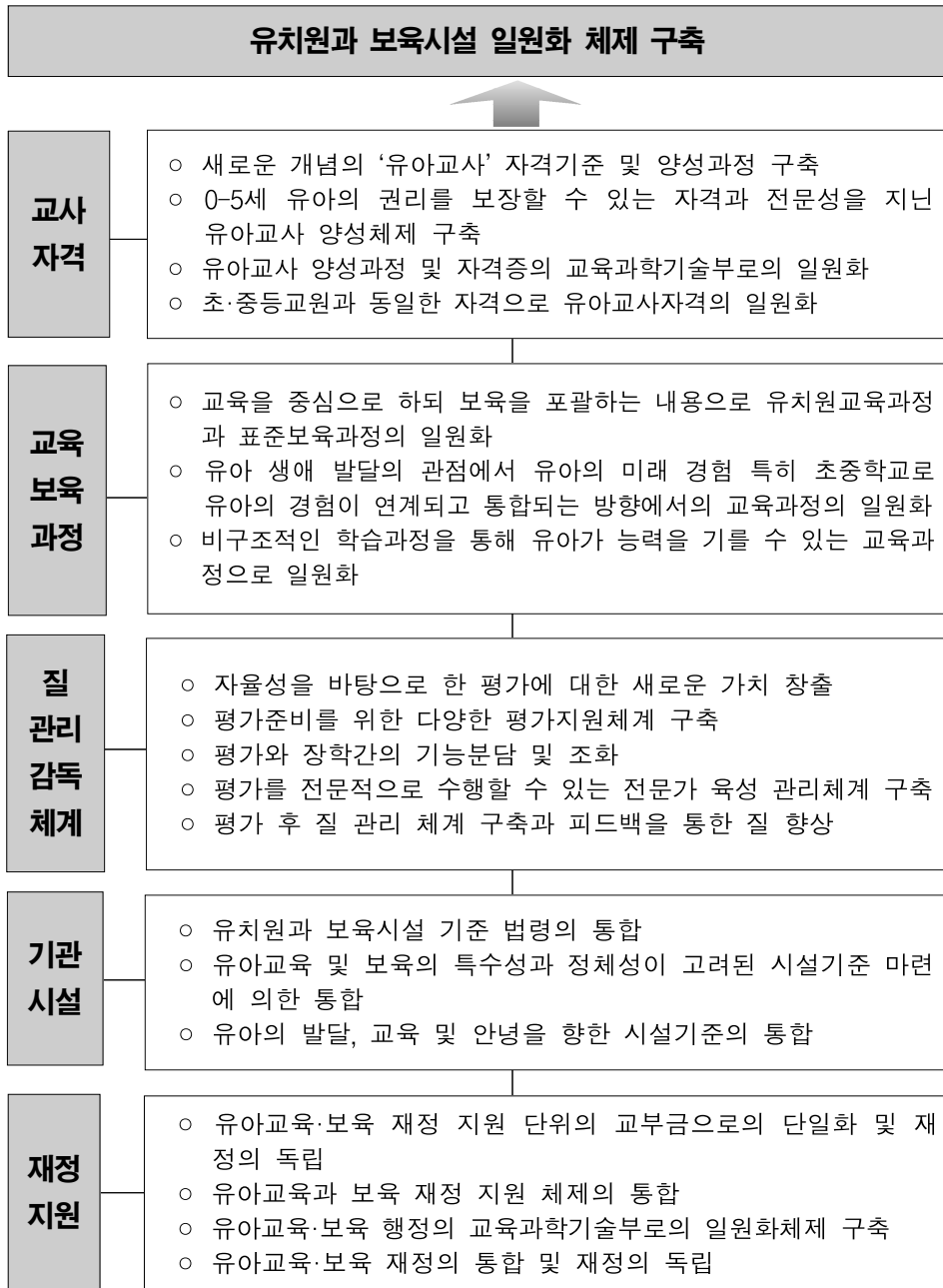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두 부처에 소속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 낭비의 문제는 물론 질적인 교육보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유아의 생애초기교육기관으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보 이원체제를 개선하여 질적인 교육과 보육에 대한 유아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체제 정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한국유아교육학회가 지향하는 미래형 유아교육체제인 유아학교를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가. 미래형 유아교육체제: 유아학교

- 교육·보육 및 복지가 함께하는 “교육·보육·복지 통합 교육기관”
 -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체제로 통합
 - 우수한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영유아의 질적인 삶을 위해 교육, 보육 및 복지가 함께하는 유아를 위한 체제구축
 - 유아교육, 보육 및 복지와 그 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인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토대로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
- “학교”의 개념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 정립
 - 유아교육기관이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아 주거나 특기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경험과 학습이 일어나는 의미 그대로의 ‘학교(school)’의 개념으로 정체성 정립
 - (예) 프랑스의 유아학교(ecole maternelle): 학교(ecole) + 모성(maternelle)
 - 유아교육이 독립된 교육기관인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교육목표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독자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구현
 - 학교체제를 갖춘 보편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그 속에서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가지며 발전
- 보편성으로서의 유아교육 실천
 - 다음세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진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유아교육 실천
 - 기회균등의 이념에서 출발하여 인생초기의 결핍된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기인되는 불평등을 보편적 교육기관인 유아교육을 통해 보상

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의 기본방향

- 미래형 유아교육체제 정립을 위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의 방안은 교사자격, 교육·보육과정, 질 관리·감독체계, 기관·시설, 재정·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1. 기관·시설

가.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설치 및 시설의 문제점

1)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나 기준들이 서로 다르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법령과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음.

- 유치원과 보육기관은 시설기준을 제시하는 기준 법령에서 다음 <표 8-1-1>과 같은 차이가 있음.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표에서 제시된 법령 및 규정이외에도 각 분야별(설립, 급식, 안전, 보건, 환경, 도로 등)로 다양한 법령이 적용됨.

<표 8-1-1> 시설기준 법령

	유치원	보육시설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에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기준 면적과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의 기준에 의해 유치원 시설기준 면적을 제시하고 있음. • 각 시, 도 교육감이 정한 교육청 고시에 의해 각 학급의 교재·교구의 종목 및 기준을 제시함. •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을 따름. • 영유아보육법에서 모든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에서 21인 미만과 21인 이상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각 교실 내 환경 및 안전설비기준에 대해 명시함.

- 보육시설의 경우는 그 종류가 다양하여 명시된 기준을 적용할 때에 시설의 유형(영아 전담, 가정보육, 부모협동 보육시설 등)과 각 시설의 유아 인원수에 따라 융통성을 두고 있으나 그 기준이 너무 포괄적임.

- 통합보육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각 분야별 기준 법령이나 규칙 등이 유아교육이나 보육을 위한 법령이 아닐 경우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함.
 - 교재·교구에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각 지방의 교육청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보육기관은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다.
- 2)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시설 설치 면적은 각 기관의 적용 법령이 다르고 이에 따른 차이를 가짐.
-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 법령에 차이가 있고 내용은 다음 <표 8-1-2>와 같음.
 - 보육시설의 놀이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옥외놀이터의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영유아의 추락이 가능한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 흡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방해물을 제거하여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치지 않도록 함.
 - 놀이시설물에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 영유아가 살을 베이거나 찢리지 않도록 함.
 - 놀이시설물의 이음새의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할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어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함.

-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표 8-1-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놀이터 및 유희실의 시설기준

	유치원	보육시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지는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원아의 통학에 문제가 없는 곳에 위치함. • 유치원 시설에는 교실,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화장실 등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양호실·수유실 등 기타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다만,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할 수 있음.
시설면적 (실외 놀이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¹⁾기준 면적은 유치원의 전체 원아가 40명 이하일 경우 $5 \times N$(유치원의 원아의 정원)으로 하고, 41명 이상일 경우는 $80 + 3N$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시설 설치 면적 놀이터를 제외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m^2 이상이어야 함.
실외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유원장(체육장)은 40명 이하인 경우 160m^2, 41명 이상이면 $120 + N\text{m}^2$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²⁾ • 학교 내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을 갖춘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 • 유원장에는 놀이시설 3종 이상, 모래밭 등을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는 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 영유아 52인 이상의 시설에 한하여 영유아 1인당 2.5m^2 이상으로 하고 모래밭(천연·인공 잔디, 고무 매트, 페타이어 블록도 가능) 및 놀이시설 3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1)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함.

2) 그러나 새로 설립되는 유치원이 인접시설의 공동사용이 가능하거나 도서 벽지여서 면적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

	유치원	보육시설
유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 유치원 유희실은 각 반마다 1실로 하며 실마다 최소 66㎡ 이상, 원아 1인당 1.65㎡ 이상(30인 이내 50㎡)으로 하도록 함. · 유원장은 99㎡ 이상으로 하고 원아 1인당 3.3㎡ 이상으로 하며, 1개 반이 초과될 때마다 50㎡를 가산하며, 유희실과 겸용 가능함. · 유치원 유희실은 칠판, 쾌도걸이, 사물함, 피아노(풍금) 등의 교구를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거나 불가피하여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층 이상에 설치 가능하지만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함. · 안전사고 시설을 갖추. · 건축물의 8/10이상이 지상에 노출될 때 지하층을 설치 가능함. · 거실,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하여 3세미만 영유아 1인당 2.64㎡ 이상, 3세 이상은 1.98㎡ 이상으로 함. · 침구, 그림책, 놀이기구 등 필요한 완구를 갖추.

3)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실내 환경 기준은 서로 다르며 그 규정이 모호하고 유아교육의 특수성, 영아반이나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유치원의 실내 환경기준은 「학교보건법」 규정에 근거하여 유아의 쾌적한 교실환경기준을 다음의 <표 8-1-3>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보육시설은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8-1-3>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실내 환경 기준

	유치원	보육시설
실내 환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도가 300룩스 이상 · 소음은 55데시벨 이하 · 온도는 섭씨 18도 이상을 유지 · 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원은 일정기간 내 보완하여야 하며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학급 정원 감축·원아 모집 정지·재정지원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채광·조명·습도·방충 및 온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냉난방 설비 등의 적합한 시설을 갖추. · 자연채광이 잘 되고 조명시설이 잘 되도록 함. · 바닥 난방시설을 갖추.

- 보육시설은 유치원에 비해 영유아의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위해 안전에 관한 설비 기준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모든 출입문(비상구 제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손끼임 방지 고무 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하거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염성 커튼류 및 카페트를 설치함.³⁾
- 4) 조리실 및 급식소에 대한 기준은 최근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유치원의 단체 급식소의 시설 기준이 강화된 반면에 보육기관의 조리실 및 급식소 기준은 모호함.
- 2008년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 대한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함. 아래의 기준이 정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름.
 - 조리실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습에 지장이 없고 식품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둠.
 -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이 없도록 벽과 문을 설치하고 전처리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나눔. 그러나 불가능한 경우와 100인 이하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함.
 - 조리실 내벽,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 내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청소, 소독, 화재예방이 용이하도록 함.
 - 출입구와 창문은 해충과 쥐의 침입을 막도록 방충망 등의 설비를 둠.
 - 조리실 내의 증기 및 냄새를 신속히 배출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함.
 - 조리실 조명은 220룩스(1x) 이상을 유지함.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

- 조리실에 손 세척이나 손 소독 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음.
100인 이상 급식 실시의 경우 손 세척과 손 소독 시설 모두를 갖추.
 - 적정 온도·습도유지를 위한 충분한 급배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갖추.
 - 급식 설비 및 기구
 - 냉장 및 냉동고는 식재료 보관, 식재료의 해동, 조리된 식품 냉각을 위해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이하, 냉동고 -18℃이하)를 유지함.
 - 조리, 배식 작업이 위생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식품 세척, 조리, 식기구 세척을 위한 시설과 식기구 보관장을 갖추.
 - 식기구 소독을 위해 전기살균소독기나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고 세척·소독을 위한 세정대를 설치함.
 - 식품 보관실
 - 방충망을 설치하고 환기시설이나 환기창 등 통풍을 위한 적절한 시설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육시설에 대한 조리실 및 급식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함.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5) 욕실, 화장실 및 기타 시설기준에 대해서 보육기관은 다른 시설기준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해대비 시설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유치원은 포괄적인 기준만을 간단히 명시하고 구체적인 안전기준은 각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
-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욕실 및 화장실 시설기준은 다음 <표 8-1-4>와 같음. 보육기관의 유아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의 특성에 대한 융통성을 주며, 특히 욕실 및 화장실 시설기준에서도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8-1-4〉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욕실 및 화장실 시설기준

	유치원 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 설치기준
목욕실/ 세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대는 반마다 2개 이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온도 고정장치로 화상을 예방하고, 미끄럼 방지장치를 함. •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며 난방을 함.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은 소변기는 각 반마다 남, 여 각1개, 대변기는 각 반마다 1개 이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보육에 필요한 수세식 유아용 변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닐 경우엔 방수처리를 함. •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와 온도를 조정 및 고정 장치를 설치함.
급배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설비는 수도로 하고 펌프 혹은 우물인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하고, 우물인 경우는 지표로부터 1m이상 높이에 반경 6m이내는 화장실, 하수저류장 등이 없어야 함. •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 보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비상재해 대비에 대한 강화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비상구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함.⁴⁾
 -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⁵⁾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함.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함.
 - 가스를 사용 시는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함.⁶⁾

4) 그 밖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규정에 의함

5)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부장관이 정함.

6)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유치원에서는 최근 각 지방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점검체크리스트 혹은 안전점검 매뉴얼 등에서 구체적인 안전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

나.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기관설치 및 시설의 통합 방안

1) 시설기준 법령의 통합

-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외에도 여러 가지로 다른 법령, 규칙 등에 의해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기준이 서로 약간씩 다르고 모호함. 따라서 다양한 법령과 규칙 등에 걸쳐있는 시설기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통합된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합된 법령을 일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기준들을 협의하여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음.

2) 유아교육 및 보육의 특수성과 정체성이 고려된 시설기준 마련에 의한 통합

- 유아교육과 보육의 특수성과 정체성, 즉 영아의 특성과 종일제와 반일제 교실의 특성 및 장애아 통합교육·보육에 대한 특수성과 정체성이 반영되어 시설기준의 통합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바깥놀이 시설이나 시설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함.

3)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설기준의 상향화 통합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은 최근 몇 년 동안 미흡했던 기준들을 구체화시키고 보완하면서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특히 보완되고 강화된 분야들은 유아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시설기준과 법령임.

- 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시설기준을 강화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이 서로 비슷한 모습을 점차 갖추어 가고 있음.
- 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기본적 생존권과 관련된 시설기준과 법령들은 그 기준이 높은 쪽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특히, 안전시설기준, 급식시설에 관한 기준, 비상재해 대비 시설기준 및 장애아를 통합하는 기관의 시설은 상향화 된 기준으로의 통합이 요구됨.

4) 유아의 발달, 교육 및 안녕을 향한 시설기준의 통합

- 유보통합과정에서 초기 시설기준의 통합은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필수적, 우선적 기준으로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하며, 점차로 유아의 최적의 발달과 교육 및 안녕을 위한 시설통합기준으로 상향화 되어야 할 것임.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과정에서 시설기준을 낮은 쪽에 맞추는 것은 교육 및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교육과 보육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위험을 가짐.
- 유보통합과정에서 기존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새로 통합될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유예기간을 두어 새로운 기준에 맞추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평가위원단에 의해 교육 및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유보일원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합시설기준의 하향화가 이루어져서 유아의 발달과 인권에 침해할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므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시설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교사자격

가. 유치원·보육교사 자격기준과 양성과정의 문제점

- 1)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 및 성격을 반영하는 자격기준과 양성과정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 취학 전 어린이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설립 목적 등이 다르므로 인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규정 역시 다름.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법적 근거는 사회적 요구와 무관하지 않음.
 - 보육시설의 설립은 여성의 취업률이 현재보다 현저히 낮았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고, 우리나라 여성 취업율이 50% 이상인 현재의 사회적 상황은 보육시설이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앞서 유아기 자녀의 보호는 물론 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OECD, 2006).
 - 유치원은 종일제, 시간제 등 운영시간의 다양화를 통해 부모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기능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해온 유치원교사의 성격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 즉 사회적 요구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의 성격 규정이 필요하며, 보육과 교육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 및 성격 규정을 반영하는 자격기준과 양성과정이 사회적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berhuemer, 2000). 0-5세 취학 전 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표 8-2-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비교

구분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근거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자격규정 및 자격증	-제 22조 교원의 자격 -교육과학부장관이 자격증 검정수여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자격증 검정수여
자격구분	- 준교사, 유치원정교사(1급, 2급) -원감, 원장	- 보육교사(1급, 2급, 3급) - 시설장
자격취득 최소학력	전문대학 졸업(2년제, 3년제)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전공	유아교육과, 아동학 관련학과 (전공과 교직과목)	보육과, 지정과목 개설학과 (전공 12과목 35학점)
승급의 기간	2급에서 1급: 3년 이상 2급에서 원장: 6년 이상 1급에서 원감: 3년 이상 원감에서 원장: 3년 이상	3급에서 2급: 1년 이상 2급에서 1급: 3년 이상 1급에서 원장: 2년 이상

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의 차이는 모든 0-5세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

-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유아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 포함),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지니고 있음. 그러나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성격의 차이로 자격기준이 다른 교사에 의해 교육, 보육되므로 인해 유아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 (표 1 참조).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비교해 볼 때 유아의 교육을 보장하는 교원으로서 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영아를 포함한 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는 가정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서 교원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유아의 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표 8-2-1, 표 8-2-2 참조).

〈표 8-2-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검정기준 비교

구분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관련법규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규칙
자격 검정·수여	교육과학부 장관(권한 위탁받아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자격관리	교육과학부 교원양성연수과	보육자격관리사무국
이수과목	전공과 교직과목의 기준	전공 관련 6개 영역 교과목 기준
실습기간	4주 이상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검정서류(2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자격증교부신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 확인서 2.보육교사 3급자격증, 경력증명서, 승급교육이수증명서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의 차이는 동일 연령의 유아의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자격기준과 양성과정의 차이는 교사의 전문성에 편차가 발생하게 됨. 이러한 교사간의 전문성 격차는 유아가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발달의 권리, 모든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나라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유아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할 수 없음. (표 3 참조)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다르므로 인한 양성과정의 차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다르게 발달시키게 됨. 그 결과 유사연령의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게 될 경우 교육의 전문성을 지닌 교사에게 교육을 받게 되고, 반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는 양육 혹은 보육의 전문성을 지닌 교사에게 보육을 받게 되는 상황임. 유아의 관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차이는 결국 유아의 권리가 편향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높음(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 (표 8-2-3 참조).

〈표 8-2-3〉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비교

구분	유치원교사 양성과정(2009년 시행)	보육교사 양성과정
전공영역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이상) - 유아교육론* - 유아교육과정* - 영유아발달과 교육* - 유아놀이지도* - 유아관찰 및 실습* - 유아언어교육* - 유아사회교육* - 유아수학교육* - 유아과학교육* - 유아미술교육* - 유아음악교육* - 유아동작교육* - 유아건강교육* - 유아교사론* -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 아동복지* -	보육기초: 4과목(12학점) 필수 - 아동복지(론)* - 보육학개론* - 아동발달(론)* - 보육과정*
		발달 및 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아동생활지도 - 아동상담(론) - 특수아동지도*
		영유아교육: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 놀이지도* - 언어지도* - 아동문학 - 아동음악과 동작* - 아동미술* - 아동 수·과학지도*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영유아교수방법(론)
		건강·영양 및 안전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아동건강교육 - 아동간호학 - 아동안전관리 - 아동영양학 - 정신건강(론)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이수필수)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부모교육(론) - 가족복지(론) - 가족관계(론)

구분	유치원교사 양성과정(2009년 시행)	보육교사 양성과정
	- 기타 교과교육 영역 전공과목 (그 외 잔여학점 21학점)	- 지역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소계	50학점 이상	11과목 (33학점) 이상
교직영역	교직이론(7과목 1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해당없음
	교직소양(4학점 이상) -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이상) - 인간에 대한 이해 - 교직윤리와 복무 - 사회변화와 교육 - 교육법 - 학생문화 - 학교관리와 생활지도 - 교직실무	해당없음
	교육실습(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이상)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 보육실습
소계	22학점 이상	1과목 (2학점)
전체	74학점 이상	12과목(35학점) 이상

주) *표는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과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유사 교과목을 나타냄.

- 3)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과정의 차이는 물론 유치원교사와 초·중등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과정의 차이는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낮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성인에 의해 교육되고 보육되어 유아기의 권리 보장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 유사한 연령의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과 양성과정의 차이는 유아기 권리 보장에 취약성을 지님. 0-2세 영아의 경우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교사에 의해 보육될 가능성이 높고, 3-5세 유아의 경우 어떤 교사에 의해 돌보아지느냐에 따라 교육 혹은 보육으로 편향된 권리 보장의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큼 (OECD, 2006).
- 유아의 권리 측면에서 유아는 학령기 유아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유아기의 경험은 학령기 경험으로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함. 그러나 영아기의 보육교사, 유아기의 유치원 혹은 보육교사 그리고 학령기 초중등교사는 자격과 양성과정 즉 전문성의 차이와 차별로 유아의 생애발달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유아의 생애 관점에서 자격과 양성과정이 다른 교사 즉 전문성이 다른 교사와의 단절된 경험은 연속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할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김희연, 정선아, 2006; Cohen, Moss, Petrie, & Wallace, 2004).

나. 유아교육 및 보육교사의 자격 통합 방안

1) 새로운 개념의 통합된‘유아교사’자격기준 및 양성과정 구축.

- 여성의 취업률이 현재보다 현저히 낮았던 시점에 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보육시설은 가정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여옴.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물론 저출산사회에서 취학 전 유아에 대한 질적인 육아지원 요구는 높아져가고 있음 (이미화 외, 2006; 이옥 외 2006). 이미 OECD(2006) 연구보고서에서도 인생 초기인 영유아기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음. 즉 0에서 5세 유아에게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각각의 기능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과 양성과정은 일원화되어야 함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

-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 및 성격을 규정하는 법 개정을 통한 0-5세 유아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유아교사 자격기준으로 통합할 것. 여기에서 교육은 포괄적으로 보육의 개념을 통합한 교육으로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음.

2) 0-5세 유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을 지닌 유아교사의 양성

- 유아는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삶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유아의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보장할 수 방향으로 일원화된 유아교사 자격과 양성과정이 구축되어야 함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
- 일원화된 유아교사 자격기준과 양성과정의 구축은 현재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을 개념을 포함한 교육의 전문성이 낮은 교사에 의해 돌봄을 받는 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음.

3) 유아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증의 교육과학기술부로의 일원화

- 유아교육 및 보육핵심학과 중심의 전공학과제에 의한 유아교사 양성체제 구축. 현재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영아교육, 영양·건강·안전 교육, 지역사회협력 요소를 강화하여 재편성할 수 있음.
-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증 소관 부처의 교육과학기술부로의 일원화.

4)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유아교사자격의 일원화

- 유아교사 자격제도를 일원화하여 초·중등 교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현재의 교사 자격을 강화하고, 전문성 수준을 높여야 함.
- 또한 일원화되고 강화된 유아교사 자격제도는 유아의 생애 경험을 연속적으로 통합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의 격차를 줄여 생애초기 교육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유아 생애 경험의 통합과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유아교육만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공교육으로 위상을 높이고,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교육’관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를 강조하지만 의무교육제도에는 편입시키지 않음. 교사의 자격기준은 유아의 삶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의 교사 자격에 준하는 기준으로 자격 상향조정할 것.

3. 교육·보육과정

가.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비교에서 나타난 문제점

- 1) 유사한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목적을 달리 하면서 교육과 보육과정의 성격, 추구하는 인간상이 달라짐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은 각각 유치원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8)과 표준보육과정(여성가족부, 2007)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 최초로 제정되어 현재 7차 유치원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고시하였으나, 표준보육과정은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고시되면서 2005년 개발되어 2007년 고시됨.
 - 유치원교육과정은 유치원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치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반면, 표준보육과정은 보육시설 영유아의 보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보육시설에서 운영해야 할 보편적 보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즉 유치원교육과정은 유치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준보육과정은 보육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됨. 그 결과 유사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두 기관이 기관의 성격 규정으로 인하여 각각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달라짐. (표 8-3-1 참조)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함(유희정 외, 2007). 예를 들어 교육과 보육과정 모두 모든 유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음.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은 설립목적이 다른 두 시설의 운영을 차별화하는 도구로 설정되었지만, 근본적인 내용 구성(민주시민 성장, 창의적,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에는 차이가 없음.

- 유치원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표준보육과정에 비하여 지향성은 물론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함. 예를 들어 표준보육과정은 방향성 혹은 가치만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유치원교육과정은 가치 실현의 조건을 제시하고 방향성과 가치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음.

〈표 8-3-1〉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목적, 인간상, 목표 비교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목적 및 추구하는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보육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자율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목표	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라.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마.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바.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주: 교육인적자원부 (2008), 여성가족부 (2007)

- 2)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르나 목표는 유사함.
- <표 8-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5가지 생활영역에서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정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아를 포함하는 보육시설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달리 유치원의 건강생활영역이 유아의 건강과 안전 영역과 신체발달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하여 유아의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유치원교육과정이 더불어 사는 태도와 전통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반면 표준보육과정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사는 태도를 강조하는 차이가 있음.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유아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는 내용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표준보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를 보육과정의 목표에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임.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언어영역과 탐구영역의 목표는 매우 유사하나, 표현영역의 경우 유치원교육과정은 개인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목표를 하고 표준보육과정은 표현의 영역을 자연과 예술작품에 대한 표현을 목표로 하여 진술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음.
- 3)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은 각 기관의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성 내용이 매우 유사함.
- <표 8-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모두 수준별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표준보육과정의 경우 영아의 연령내 발달차를 고려한 연령구분 내 수준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유희정 외, 2007).

〈표 8-3-2〉 영역과 내용 비교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대상	3-5세		0-5세	
수준별 교육 과정	I 수준, II 수준, 공통 수준의 교육 내용을 유아의 발달 정도에 알맞게 편성		연령구분: 3개 연령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수준구분: 연령구분내 1-3수준	
영역	건강 생활	나의 몸 인식하기 나의 몸 움직이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신체 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 신체활동 참여
	사회 생활	나를 알고 사랑하기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 현상에 관심 가지기	사회 관계	자기존중 정서인식과 조절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식
	표현 생활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 즐기기 감상하기	예술 경험	심미적 탐색 예술적 표현 예술 감상
	언어 생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사 소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탐구 생활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과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 수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	자연 탐구	탐구적 태도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탐구
			기본 생활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바른 생활

- 영역의 구분과 내용에 있어서 역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음. 유치원교육과정은 5개 영역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나, 표준보육과정은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건강생활에 포함하고 있는 기본생활내용을 영역으로 독립시켜 총 6개 영역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세부 내용은 매우 유사함.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영역과 내용의 미세한 차이는 오히려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발견할 수 있음.
- 4) 0-5세 유아를 위해 국가수준에서 구성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은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연계되고 통합되지 못함.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의 가장 큰 차이는 유치원교육과정 문서 체계 및 편성·운영 지침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고려하여 진술됨. 반면 표준보육과정은 교육이 아닌 보육으로써 다른 유아의 장래 교육과는 단절되어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유치원교육과정 여기 국가수준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모두 국가수준에서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하여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생애관점에서 각 단계 경험의 연계성과 통합성이 부족함.
 -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경험의 연계와 통합의 문제는 유치원교육과정 경우 0-3세 미만의 유아가 보육시설을 경험하고 유치원으로 옮겼을 경우 보육시설의 보육경험을 연계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구성되어있음.
 - 동일연령 (만3-5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은 상호간에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이 연령대에 두 기관을 다니게 되는 경우 유아의 경험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5)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교육과정 모두 발달수준별, 단계별 지식과 기술의 학습을 강조하는 단계적 접근으로써 교사 주도적일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아가 자기조절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됨.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모두 학습영역을 결정해 놓고 있으며, 교사는 유아의 발달 범위에 맞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접근의 교육과 보육활동은 유아의 본질적인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될 가능성이 높아 교사는 더욱 유아를 학습으로 이끄는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OECD, 2006)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모두 놀이를 통한 유아중심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교사를 위한 지침서는 학습내용, 방법 등 학습에 대한 세부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해 유아가 의미있는 학습내용을 탐구하고 좀 더 열린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음 (유희정 외,

2007).

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

- 1) 유사한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은 기관의 성격과 목적을 일원화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과 보육과정의 성격과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목표, 교육내용 등을 일원화하여야 함.
 -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은 국가수준에서 구성되므로 어떠한 유아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가치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도록 함.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하여 가칭 ‘유아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이의 목적, 목표, 구성방향, 교육내용을 재설정한다. 현재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구성내용은 매우 유사하므로 이를 일원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2) 현재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보육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일원화함.
 -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아교육과정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의 보육 내용과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일원화하도록 함.
- 3) 국가수준에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일원화는 유아 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유아의 미래 경험 특히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로 유아의 경험이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함.
 - 일원화된 유아교육과정은 유아 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유아가 하게 되는 모든 경험이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초중등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함.
- 4) 현재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교육과정 모두 발달수준별, 단계별 지식과 기술의 학습을 강조하는 단계적 접근이므로 일원화된 유아교육과정은 비구조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유아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함.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일원화된 가칭 유아교육과정은 유아가 무

엇을 하고 어떤 것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구조화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학습 개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함. 유아들이 기관안에서 비구조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함.

5) 일원화된 ‘유아교육과정’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과정과 목적에 대해 교육기관과 지방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 일원화된 유아교육과정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안하기 보다는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과 같이 교육기관과 지방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국가 수준의 큰 울타리를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과 실행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기관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허용함.

4. 질 관리·감독체계

가. 유아교육 및 보육 평가체계의 문제점

1) 기관별 특성과 정부지원 유무를 고려치 않은 형평성부족과 평준화의 역기능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평가지표가 기관별 (공사립간, 지역별, 규모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정부지원의 유무에 따른 기관별 차이(재정, 환경, 교사수준 등)를 고려치 않아 형평성 부족과 함께 자칫 평준화의 역기능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특히 개별보육시설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음.

- 2007년 유치원 평가지표는 유치원의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로 지표구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치원 평가지표 중 급식,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 예산편성과 같은 영역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요소들인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평가결과가 좋게 나올 수 없는 영역들임. 따라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음.(김혜숙, 2007)

- 보육인증평가의 경우, 시설규모 및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별화함. 그러나 설립연도, 재정도, 위치, 크기, 설립목적 등 다양한 시설의 특수성과 상황의 특이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평가지표로 인해 불공정성이 지적됨. 특히 평가지

표 중 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경력의 보육교사 비율 평가항목의 경우, 급여수준과 교사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시설에 불공평한 항목으로 지적됨.

- 민간보육시설의 시장규제로 인해 시설도태의 근거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따라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의 시장경제원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2) 유아교육 및 보육평가 준비를 위한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며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됨
- 평가준비를 위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수업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와 함께 대체교사제와 같은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서인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치원 평가의 경우 시행 초기라 평가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제적 지침서를 개발 보급하여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
 - 평가에서 서류작성의 부담을 줄이고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서류이외에 유치원 평가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는 서류가 없도록 해야 함.
- 3) 평가지표가 반복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다각적이고 현실성 있는 평가지표 구축이 요구됨.
- 유치원 및 보육 함. 특히 자체점검과 현장관찰에서 같은 지표를 사용하기보다는 다각적 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유치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중요도의 비중에 따라 문항수의 조절이 필요함.
 - 유치원 평가지표 중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특별활동에 대한 현실적 방향성 정립의 필요성이 지적됨.
 - 보육평가인증지표(물리적 환경/보육활동 관련/시설운영측면)중 물리적 환경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교사의 보육활동과 관련된 지표가 부족함.(정원주, 2007) 따라서 환경적 영역의 기관평가보다는 교사의 상호작용과 같은 질적인 부분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상 물리적 환경 강조로 인해 보육시설의 비용부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보육시설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김경혜 외, 2006) 특히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적 외부요소들을 평가항목에서 비중 있게 평가된다면 동기부여가 힘들. 따라서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수정 보완이 필요함.

4) 현장관찰의 문제점 및 한계 극복 대안 마련의 필요성

- 현장관찰시간 부족(실제관찰시간 6시간)이나, 시설규모별 현장관찰자 인원과 시간이 같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현장관찰자의 편견이나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고, 현장관찰자에 의한 일회적 평가로 인해 문서화된 자료위주의 피상적 평가가 될 한계가 있음.
- 현장관찰자의 일방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해 시설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객관적 관점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조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함.
- 자체점검보고서 점수 반영비율과(자체점검보고서 25%, 현장관찰보고서 50%, 평가인증 위원회 의견서 25%)과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보고서와의 차이로 인한 감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외국의 경우, 자체점검보고서의 경우, 외부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은 하지만 평가점수에 일정비율로 반영하지는 않음(이대균, 2005)

5) 평가결과 공개 및 차별지원에 따른 문제점.

- 평가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한 추후논의가 필요함. 특히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에서 주어진 학부모의 선택권은 평가결과공개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존폐 위기에 치달을 수 있음. 결과공개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평가결과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함. 평가 결과에 따른 징별적인 수단은 소규모 시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음. 평가가 시설의 질적 제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방법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화는 평가결과를 직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평

가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보육시설의 감소와 소규모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나.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을 위한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1)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평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

-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교육화 공보육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평가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부모들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평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평가가 유치원 및 보육의 질적 제고라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와 기관의 이해와 자율적 참여가 중요함. 이를 위해 교사와 기관장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가 지나친 계량화나 책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평가인증의 근본적 취지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 교사들 간의 충분한 토의, 합의과정이 필요함. (강달금, 2006 외)

2) 평가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립

- 평가준비 과정에서 교사와 기관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평가를 준비하는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수업결손을 막을 수 있는 대체교사제 확립이 필요함.
-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보육시설의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조력활동이 요구됨(심성경 외 2006, 정원주 2007)

- 평가 및 평가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평가와 장학간의 기능분담 및 조화

- 평가와 장학지도의 기본취지와 목적을 살리되, 평가와 장학간의 적절한 기능분담이 필요함. 장학지도에서 관리할 것을 점검한 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장학지도와 평가의 기능을 연계하되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반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피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장명림, 2007)
- 보육의 경우 평가인증과 지도점검 의 기능분담이 필요함. 지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등, 위생관련 부서 및 안전관련 부서, 급식 및 안전전문가, 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여성가족부, 2007)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인력부족 및 중복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
- 보육의 경우 평가이전에 교사 장학이 선행되어야 함.

4)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관리체계구축

- 평가가 대부분 정성적 지표로 구성된 관계로 평가위원의 전문적 시각과 올바른 판단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유치원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선발하고,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과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현장관찰자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와 함께 현장관찰자를 체계적으로 선발하고,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과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현장관찰자교육을 위해 장기적으로 대학 등에 위탁하여 학점취득과 같은 심도 있는 연수과정 개발이 필요함.(이대균, 2005)

5) 평가 후 질 관리 체계를 구축과 결과보고서 피드백을 통한 질 향상 도모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유치원 및 보육의 질적 제고의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한 전문 컨설팅체계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충실한 결과보고서의 피드백을 통해 컨설팅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함.

- 평가인증 후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발급과 인증유효기간동안 매년 1회 자체점검위원회 구성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함. 따라서 매년 연차보고서와 이외에 확인방문제도를 실시할 것. NAEYC의 경우, 2006년부터 불시방문제도 도입.
- 평가 후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대학-현장을 잇는 전문컨설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5. 재정·지원

가.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 지원의 문제점

1) 행정 이원화로 인한 중복 지원 및 비효율성의 문제

- 현재 우리나라의 0-5세 영유아들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별도의 재정을 유사한 항목에 배분하고 있음.
-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사업,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사업,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등은 완전히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항상 중복지원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지역교육청과 시·군·자치구 등에 이중으로 담당인력을 뒹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김중해 외, 2005; 송기창, 2008; 조부경, 2007a, b; 천세영, 2006).
- 최근 들어 5세 무상교육과 보육의 기준을 같이 하는 등 기획 예산처의 조정, 심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설 확충, 교사 양성 및 연수, 동일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과정의 중복 개발 등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조부경, 2007a, b)

2) 이원화 행정 체제의 일원화된 운영으로 갈등 및 경쟁

- 행정체제의 이원화는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효율화하여 사업의 발전을 추구할 때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 즉, 한 부처에서 지원액을 늘리면, 다음 해에 다른 부처에서 그 사례를 빌미로 증액을 요구함으로써 경쟁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유아교육지원과 보육지원 행정 체제는 이원화되어 있으면서도 운영은 일원화를 추구함으로써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송기창, 2008). 한 예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 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월 11만원) 지원사업을 교직수당(월 25만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때, 여성 가족부에서 보육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음.
-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유아를 서로 유치하기 위하여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천세영, 2006).

3) 불안정한 재원 및 서로 다른 재정 지원 단위

- 유아보육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매우 불완전한 재원임. 국고 보조사업은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경우 법령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재원이 삭감되거나 폐지될 수 있음. 유아교육자료 개발사업은 2001년에 중단되었다가 2002년에 부활되었으며, 시범유치원운영사업은 1996년에 시작되었으나 3년간 지속하다가 1999년부터 폐지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유아교육재원은 2008년도부터 법정교부율로 확보되는 교부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보육재원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유아교육재원이 초·중등재원에 통합됨으로써 유아교육재원의 안정성도 확고한 것은 아님(송기창, 2008).
- 2007년까지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사업은 모두 국고 보조사업으로 사업은 이원화(유아교육 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 보육 지원사업: 여성가족부)되어 있지만 재원을 배분하는 기관은 기획예산처로 일원화 되어 있어 비교적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

- 유아교육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유아교육지원은 지방사업으로, 보육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단위가 이원화됨.

4)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재정 지원 방식

가) 국가 재정의 투자 방식의 차이

-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국공립,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 후 프로그램별 지원 및 유아보육비 지원을 병행함
- 유치원은 시설별 지원을 근간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및 시설비 등 대부분의 재정을 직접 투자하고, 사립 유치원에는 재정을 투자하고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설립자가 동일할지라도 그 시설이 교육에 속해 있느냐, 보육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투입되는 재정 수준이 다르게 됨. 예를 들어, 보육 재정의 경우 민간 시설인 법인에 대해서도 국·공립 보육 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법인에 대해서도 인건비 등과 같은 운영비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교재·교구비만 지원하고 있음.

나)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방식의 차이

- 국가 재정 지원 투자 방식의 차이로 인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 국공립 유치원은 설립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시설비를 기본적으로 지원받으면서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은 무상교육, 보육비에 인건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 공립과 사립, 민간보육시설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아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바우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고영미, 2008).

다) 무상교육·보육비에 포함된 항목의 차이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표준보육·교육비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를 포함하여 산정됨
-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균등한 금액을 표준보육·교육비 항목으로 산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
- 표면적으로는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지원 항목으로 반일제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종일제를 다니는 유아의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이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교육비와 차액이 있을 경우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임. 반면에 어린이집은 보육비 지원금에 급식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의 종일제 보육비를 받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동일한 연령의 3-5세 유아일지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음.

라) 수업료 차이로 인한 부모 부담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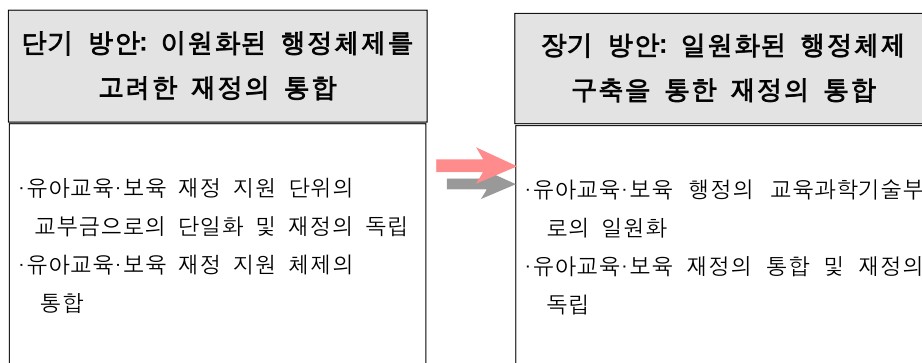
- 어린이집 내에서도 국·공립인지, 민간인지, 법인인지,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이외에 차액에 대해 부모에게 부담 부담비용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유아일지라도 어떤 기관을 선택해서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내용이 다르고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립은 모든 지역의 수업료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월 5,500원 이하이므로 5세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유아는 100%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나, 사립의 경우에는 월 167,000원이 넘는 유치원도 많이 있어 그 차액에 대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수업료가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급식비

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내에서도 급식비를 지원받는 유아와 지원받지 못하는 유아가 있게 되므로, 부모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국·공립 보육시설은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표준보육비와 실제 징수해야 할 수업료 간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표준보육비와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 금액을 부모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아가 어떤 유형의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게 됨.

나.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의 통합 방안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논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최근 들어 관련 연구(문미옥, 2006a, b)에서 행정부처의 통합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음.
- 행정 기관의 일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육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양함으로써 이원화 체제가 당분간 지속되어질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의 통합 방안을 장, 단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그림 8-5-1 참조).



[그림 8-5-1]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의 장, 단기 통합 방안

1) 단기 방안: 이원화된 행정 체제를 고려한 재정 통합 방안

가)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 단위의 교부금으로의 단일화 및 재정의 독립

- 현행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교부금제도와 보육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서로 연계가 불가능하므로, 재원 지원단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지원사업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통합한 후 사업을 지방에 이양한 것과 동일하게, 보육지원비를 지방교부세에 통합한 후 사업을 교부세 사업으로 이양하는 방안(송기창, 2008)이 바람직함.
- 교부금으로 전환된 유아교육·보육 재원은 초·중등재원과 독립하여 배정함으로써 유아교육·보육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나)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지원 체제의 통합

-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지원 체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재원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함. 이는 행정체제는 이원화를 유지하되 동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재원은 통합함으로써 중복지원이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동일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임.
- 재원 통합의 방안으로는 선행 연구(송기창, 2008)에서 제시한 2가지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1안: 만 3~5세 또는 만 4~5세의 유아교육 대상과 보육 대상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0~2세 또는 0~3세의 보육 대상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
 - 제2안: 만 3~5세 또는 만 4~5세의 유아교육 대상과 보육 대상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하되, 0~2세 또는 0~3세의 보육 대상에 대한 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존치하는 방안.
- 위에 제시된 2가지 안을 토대로 장, 단점을 반영하여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 단기 방안: 0~2세 영아의 경우 사업의 확대가 보다 용이한 국고보조금으로

존치하고, 3~5세는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는 방안. 이 안은 선행연구(송기창, 2008)에서 제 1안으로 제시한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봄.

- 장기 방안: 0~2세 영아 재정 지원 사업의 규모가 일정 정도 확대되면 0~5세 모두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는 방안.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대상인 0~5세의 단일화 체제를 구축하고, 초, 중등 재정 지원과 동일한 체제를 구축한다는 장점이 있음.

2) 일원화된 행정 체제 구축을 통한 재정의 통합

가) 유아교육·보육 행정의 교육과학기술부로의 일원화체제 구축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육·보육재정 지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행정부처의 이원화 체제 속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이원화 체제로 인해 지원 내용이 달라짐으로써 학부모나 현장으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동일한 항목에 대해 이중 투자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거시적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 간다면 행정부처를 일원화 시켜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여겨짐.
- 행정 부처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면 100년간 사회복지 개념에 근거하여 출생 후 6세까지 영유아를 사회복지법에 의거 후생성의 보건복지국이 관장하던 대표적 국가이나, 1996년 7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 관련 업무를 모두 교육부의 초등교육국으로 이관하여 교육복지 개념으로 관장하게 됨.
-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일원화하여 교육, 보육 및 복지를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전제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로의 통합논의는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보육계의 견해가 제기됨.

나) 유아교육·보육 재정의 통합 및 재정의 독립

- 교육과학기술부로의 통합일원화가 이루어지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있던 기관 유형이 하나로 동일해지므로(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는 추후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동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동일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 짐.
- 단기 방안과 동일하게 일원화된 행정 체제 속에서의 유아교육·보육 재원은 초·중등재원과 독립하여 배정함으로써 유아교육·보육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참고문헌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개정 2007년) 5. 2 별표2.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klaw.go.kr>에서 2008년 6월 10일 발췌함.
- 고영미(2008).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유아교육학회 2008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333-347.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에서 2008년 6월 9일 발췌함.
- 교육인적자원부 (2008).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 권건일 외(2007). 유아교사(보육·유치원교사) 자격의 강화. 한국유아교육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학술토론회.
- 권건일, 김재환, 최순자(2007).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을 위한 비교분석. 유아교육연구, 27(6), 67-100.
- 김운기(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운영 경과 및 과제. 한국 유아교육학회 2007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김재남(2007). 유치원평가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언. 한국 유아교육학회 2007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김종해, 백선희, 이미정, 이원영, 임재택(2005).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37-85.

- 김혜숙(2007). 유치원평가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언. 한국 유아교육학회 2007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김희연, 정선아. (2006). 어린이의 삶의 관점에서 본 유아보육·교육과정의 본질: '발달'과 '교과'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5), 355-376.
- 나정, 장영숙(2002). 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동향. 양서원.
- 노광기(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운영 경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 유아교육학회 2007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문미옥(2006a). 유아교육체제의 변화 전망과 학제 발전과정에 대한 토론. 제 2회 학제 연구 정책토론회 교육체제 변화 전망과 학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6-35
- 문미옥(2006b). 한국의 미래 학제 탐색: 유아교육분야. 제 4회 학제 연구 정책토론회. 미래 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6-38.]
-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홈페이지. <http://kcac21.or.kr>에서 2008년 6월 10일 발췌함.
- 송기창(2008).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재정 시스템. 한국유아교육학회 2008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53-73
- 여성가족부 (2007).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교육내용 및 교사지침.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07-1호.
-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klaw.go.kr>에서 2008년 6월 9일 발췌함.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klaw.go.kr>에서 2008년 6월 9일 발췌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http://www.moe.go.kr>에서 2008년 6월 9일 발췌함.
- 유아교육법.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klaw.go.kr>에서 2008년 6월 9일 발췌함.
-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klaw.go.kr>에서 2008년 6월 10일 발췌함.
- 유치원 교육법.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klaw.go.kr>에서 2008년 6월 9일 발췌함.

함.

- 유치원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08. <http://www.moe.go.kr>에서 2008년 6월 9일 발
 취함.
- 유희정, 김희진, 김문정, 조혜주(2007). 육아지원기관의 교육·보육활동 분석. 육아정
 책개발센터.
- 이미화, 장명림, 신나리, 김문정, 김현철(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옥, 김은설, 신나리, 문무경, 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
 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종은(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운영 경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
 유아교육학회 2007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이화룡 외(2006). 초·중등학교 시설기준 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장명림(2007). 유치원평가 추진방향과 과제. 한국 유아교육학회 2007년 정기학술대
 회 자료집
- 정선아(2007).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유아의 권리와 삶의 관점에서. 유
 아교육연구, 27(6), 101-124.
- 정원주(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51,
 45-64.
- 조부경(2007a). 우리나라 무상교육·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정
 책 대토론회, 포럼 푸른한국 제 21차 세미나 자료집. 144-179.
- 조부경(2007b). 유아교육 재정 확보 및 배분 정책의 방향. 유아교육 재원확보와 효
 율적인 활용방안. 국회의원 정봉주 정책 자료집 14. 27-42.
- 천세영(2006). 유아·평생교육 재정투자 전략의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45-65.
- 충청남도교육청고시(2002).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3, 4.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klaw.go.kr>에서
 2008년 6월 10일 발취함.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 유아교육체제 정립을 위한 교원정책 발전방향. 서울: 창지사.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 연구소. 학교보건 및 교내 환경위생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2000).

Cohen, B., Moss, P., Petrie, P., & Wallace, J. (2004). *A new deal for children?: Re-forming education and care in England, Scotland and Sweden*. United Kingdom: The Policy Press.

Oberhuemer, P. (2000). Conceptualizing the professional role in early childhood centers: Emerging profiles in four European countries. *Early Childhood Research & Practice[Online]*, 2(2), Available:<http://ecrp.uiuc.edu/v2n2/oberhuemer.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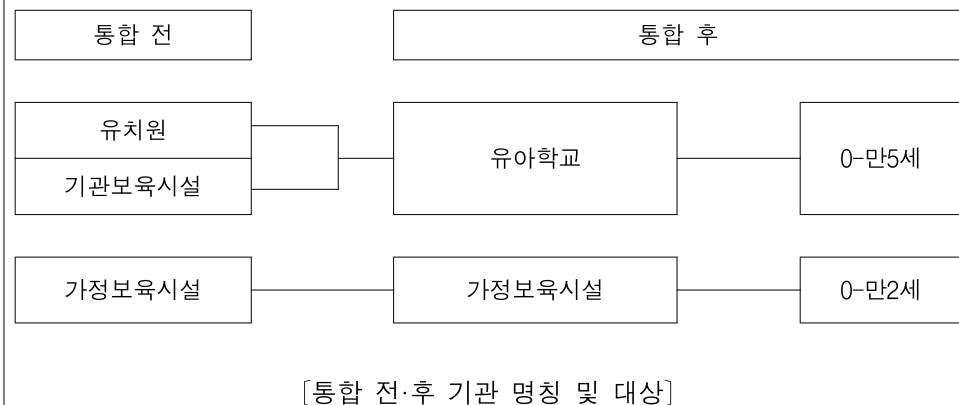
OECD (2006). *Start Strong II*. Paris, France: OECD.

부록 9. 한국육아지원학회 원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제안

- 본 정책 방안은 현재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할 행정부처가 궁극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됨
- 본 정책 방안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유아학교로 통합된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교사자격, 교육·보육과정, 질 관리·감독체계, 기관·시설, 재정 지원 등 각 영역별 정책방안이 제시됨
- 통합 후 현재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유아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그림 9-1 참조)
 -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보육시설도 유아학교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고 전환 의지가 있을 때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현재의 가정보육시설은 영아전담시설로 계속 유지 함
 - 유아학교의 취학 대상 유아의 연령은 0세부터 만 5세로 하며, 가정보육시설의 수용 대상 영아 연령은 0-2세로 함

□ 통합 후 기관 명칭



1. 기관·시설

가. 기관 및 시설 통합방안 배경

- 유아학교는 0-5세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호 서비스 기능의 통합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동일한 시설설치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규시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시설로 설치하나 기존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각기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시설. 설비기준에 준하는 개선과정이 필요함
-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립 인가기준이 다르며, 특히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의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으며,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만 설립·운영할 수 있음. 보육시설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육시설 인가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으며, 임대시설 허용 등이 가능함. 따라서 신규 설립 인허가 주체를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설립인가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설 설비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유아학교 시설기준은 가장 어린 영아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영유아기의 발달특징을 고려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기관 및 시설 통합 방안

- 기관 설립 기준의 일원화 및 조정을 위한 시설 기준령 및 허가절차 개정
 - 교육감의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육시설 인가 절차 및 신규 설립 인허가 주체를 일원화함
 -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관련 기준을 유아학교에 적합하도록 조정함

※ 현행 유치원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 시 교사 및 교지 소유주체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유치원의 임대 및 구분 소유 등을 불인정하였음. 반면, 보육시설은 임대시설을 허용하고 있음(표 9-1-1 참조)

〈표 9-1-1〉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설립 기준 비교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비고
성격 및 유형	공교육기관 (학교)	공보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및 사립·민간 공존 - 학원: 사교육기관 공존
	국·공립/사립 유치원	국·공립/직장/법인/민간/가정/부모협동 보육시설	
설립자	자격요건 없음	자격요건 없음	
원장 자격	자격 원장 임용 원칙	시설장 임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은 원장(9년 이상의 경력과 승급 교육)과 시설장(5년 경력과 보수교육)의 차이가 있음 • 유치원장은 보육시설장의 임용 가능, 보육시설장은 유치원장 임용불가 • 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장의 자격 취득 및 상호 임용제도 구축 • 유치원장과 보육시설장의 상호 임용체제 구축(영유아보육법 제 10조 개정 필요) - 학원: 설립자 및 원장 자격 없음
설립 법령 및 설립 방법	유아교육법: 시·도 교육감이 인가(유아교육법 제 8조)	국·공립 보육시설	
		직장/법인/민간/가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영유아보육법 제 12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비고
		모협동보 육시설	신청 (영유아보육법 제 13조)	
교지 확보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시설임대 불허 매도 및 담보 금지	설립 주체 소유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은 설립자의 교지 소유 원칙, 보육시설은 임대 가능 유치원의 설립 초기 비용 부담으로 설립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설립 주체 소유 제한 없음
교사 설치 위치	1, 2층 원칙	1층 원칙이나 장관의 인가 하에 2, 3층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은 1, 2층 원칙으로 보육 시설보다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제한 없음
교사 기준 면적 (실내)	1인당 5m ² (40명 이하: 5N) 41명이상: 80+3N (N: 원아정원수)	1인당 4.29m ² 이상('05년 이전 3.63m ²)		
실외 놀이터	160m ² (40명 이하) (41명이상: 120+N) (80명 기준 시 200m ²) 공동 놀이터 활용 허용	없음 (50인 이상 1인당 2.5m ²) 인근 놀이터 활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과 보육시설 실외 놀이 터 외적인 기준 및 공동놀이 터 사용 가능 원칙 유사 40명 이하의 기관은 유치원의 실외놀이터 기준 면적이 보육 시설에 비해 더 높음
보통 교실 /보육실	제한 없음	1인당 2.64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유아 1인당 최소면적 제시 필요(보육시설 유아 1인당 최소 면적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제한 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교육감 고시 학교 교구 설비의 유원장 설비 기준과 유치원 교구기준을 따라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기구, 교재교구 갖 추도록 함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교육감 고시 교수 구비 원칙, 보육시설 원구 구비 권장 유치원 교육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교구 구비, 보육시설은 원칙 없음 유치원에 조리실, 목욕실 등 종일반을 위한 설비 기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제한 없음

자료: 정미라 외(2008).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연구를 참고로 정리하였음.

- 반면 보육시설은 임대시설 허용 등으로 초기 설립비용 부담이 낮아서 시설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보육 시설장 평균 연령은 40세, 가정보육 시설장은

38세로 나타남(이미화 외, 2005)

- ※ 사립유치원수가 '00년 4,318개원에서 '06년 3,830개원으로 5년 동안 488개원이 감소함(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2006)
- ※ 보육시설 수는 '00년 19,276개소에서 '06년 28,761개소로 5년 동안 9,485개소가 증가함(여성가족부, 2006)
- ※ 유치원은 학교이며, 보육시설은 보호자 위탁에 의한 대리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기관 유형, 기관(시설) 설립기준 및 폐쇄기준이 상이함.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설립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현재의 상이한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설립 기준을 토대로 유아학교 설립 기준 및 시설 설비 기준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표 9-1-2〉 유아학교 설립 기준 및 시설 설비 기준 안

구 분	기 준	
설립 법령 및 설립방법	유아교육법 인가제	
교지 확보	설립자 교지 소유 원칙 완화: 복지관,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 임대에 의한 교지 사용 가능 원칙	
교사 설치 위치	1, 2 층 원칙	
교사기준 면적(실내)	1안: 현행 유치원 시설 기준 적용	2안: 40명 미만 1인당 4.29㎡(보육시설 기준), 40명 이상은 80+3N(유치원 기준) (예) 40명 기준: 171.6㎡ 80명 기준: 320㎡ 120명 기준: 440㎡
실외놀이터	1안: 현행 유치원 시설 기준 적용	2안: 40명 미만 1인당 2.5㎡, 40명 이상 120+N으로 완화 및 공동놀이터 활용 허용 (예) 40명 기준: 100㎡ 80명 기준: 200㎡ 120명 기준: 240㎡
보통교실/보육실	1인당 2.64㎡ 교실 최소면적 제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장 설비 및 교구 구비 고시 기준 제시에 의하여 놀이 기구와 교재교구의 구비 기준 고시 ● 조리실, 목욕실 등 설비 기준 고시 	

자료: 정미라 외(2005).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비전2010)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였음.

□ 유아학교 시설설비 기준의 조정 및 지원

- 취원 대상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시설의 설비를 추가하거나 관련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 기존의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전환한 기관은 별도의 종일반 교실 및 낮잠 공간 확보, 주방설치, 안전설비 및 CCTV 설치,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 샤워시설, 교시 및 복도 바닥 난방 등 설비 구비가 필요함
 - 보육시설에서 유아학교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유아학교 시설 설비기준에 맞게 시설설비 보완
- 3-5세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의 경우 취원 대상 연령 하향화에 따른 영아반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기존 유치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며, 부모의 영아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음
- 기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유아학교로 전환한 경우는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운 유아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적합하도록 시설설비를 보완하도록 함
- 신규설립 유아학교의 경우에는 ‘유아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음

□ 유아학교 체제를 위한 시설유형 제안

- 유아학교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 유형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시설의 유형은 가능한 시설의 통합 형태에 따라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경제적, 수요적 측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유-보 일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3가지 형태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음.

① 합축(合築)시설의 형태
·유치원과 보육소가 하나의 건물 속에서 복도, 화장실 등의 시설을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시설임.

② 병설시설의 형태
·유치원과 보육소가 한 건물에 있으나,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시설임.
·현관이 별도로 설치, 벽 등에 의해 나뉘어짐.

③ 시설의 공동 이용 형태
·유치원과 보육소의 건물이 별도로 있으나, 같은 부지 내에 있고 유원장 등이 울타리나 담 등으로 완전 구분되지 않아 서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임.

※ 일본의 유-보 일원화 시설유형의 사례: 와카야마현의 시로하마 유아원

〈표 9-1-3〉 와카야마현 시로하마 유아원의 ‘합축시설’ 운영사례

구 분	내 용	
1. 건물, 시설	2층 1개동 건물 2층에는 육아 지원실(지역의 육아지원센터 역할)	
2. 운영체제	유치원 원장(비상근), 주임교사 1명, 교사 3명(정규 2명, 반일근무 1명)	보육원 원장 1명, 주임보육사 1명, 지도보육사(미취원아, 지역활동) 1명, 보육사 18명(정규 9명, 반일근무 4명, 파트타임 5명)
3. 운영형태	0-3세: 전원 장시간 유아(보육원) 4, 5세 장시간 유아(보육원) / 단시간 유아(유치원) * 장시간 유아들의 경우에 한하여 연장보육 실시	
4. 일일 프로그램의 종류	단시간(오전 8:15-오후 1:30): 단시간 유아 프로그램(4, 5세 유아)	장시간(오전 8:15-오후 4:15) /연장보육(오전 7시-저녁 7시): 0세 영아 프로그램 1-2세 영아 프로그램 3-5세 유아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5. 교사자격	0-3세 영유아 학급: 정부기준에 준한 보육사 4, 5세 유아 학급: 유치원 교사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함께 갖춘 교사 채용
6. 휴무일	단시간 프로그램: 토요일, 하기 방학 장시간 프로그램: 일요일
7. 분리운영	재정운용 부문

자료: 김세곤, 박일건(2007). 유-보 일원화 시설 운영 사례의 한-일 비교. 일본학보, 75(0)을 정리하였음.

□ 유아학교 운영시간의 조정방안

- 유아학교는 초, 중등학교와 같은 학교체제로서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하루 운영시간은 반일제의 경우 1일 3-4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아학교에서는 취업모나 기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방과후 보육의 형태로 오전 7시- 9시, 오후 1시 이후부터 7시까지 전체적으로는 하루 12시간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방과후 보육의 연간 운영일수는 300일을 기준으로 함
- 반일제 이후 유아학교를 이용하는 유아들을 위하여 종일제에서 자율 귀가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함

2. 교사 자격

가. 유아학교 설립을 전제로 한 교사양성 체제 개편 배경

- 유치원교사와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1년제 보육교사 교육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되고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현재 유아교육과나 보육관련학과에서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 어느 한 쪽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들의 학력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인식 면에서 뒤떨어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여 공교육체제인 유아학교로 전환한 후에도 현재와 같은 양성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교직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보육학과 이외의 보육관련학과의 경우 주된 목적이 유치원교사 양성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 양성의 비율이 낮으며(10%)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과목을 개설함.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 학과가 아닌 학점 취득(35학점)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는 개방형 자격증 제도를 취하고 있어 수급을 예측하기 어려움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법적 기본 교육과정에서 차이가 있음
- 이상의 근거에 따라 유아학교 설립 시 교사자격증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 정비되어야 함
 - 통합된 시설은 '유아학교'로 칭하고 초등학교 이전의 공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정교사는 초중등학교 교사양성과 맥을 같이함
 - 가정보육시설은 영아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므로 가정보육 시설 종사자를 위한 자격은 별도로 관리함

나. 방안

□ 유아학교와 가정 보육시설 종사자의 유형

유아학교는 초중등학교와 같은 체제로 재정비하고 가정보육시설의 종사자는 현행 보육교사와 같은 자격으로 유지함

- 유아학교 교장
- 유아학교 교감
- 유아학교 교사
- 유아학교 방과후 교사
- 가정 보육시설 종사자(가정보육시설 담당)

□ 유아학교 교원배치 기준

유아학교의 교원배치는 다음과 같은 배치 비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9-2-1〉 유아학교 최소 인력배치 기준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	학급당 유아수
유아학교	만 1세미만	1: 3	1: 9
	만 1~2세미만	1: 5	1: 10
	만 2세~3세미만	1: 7	1: 14
	만 3세~4세미만	1: 15	1: 15
	만 4세~초등입학 전	1: 20	1: 20

※ 참고: 영아중심 가정보육시설

-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교사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
-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

□ 유아학교로 통합 후 현직교사의 자격 변환

- 현재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통합한 후 현직교사의 자격은 교직 이수여부를 중심으로 변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9-2-2〉 유아학교 교사자격증

통합 전 자격증	학력	경력	연수	통합 후 자격증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아학교 2급 정교사
유치원 1급 정교사				유아학교 1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학사/ 전문학사		교직 180시간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교과 교육론 포함)	유아학교 2급 정교사
	학사/ 전문학사			유아학교 방과후 교사
	보육교사교육 원	2년 이상		유아학교 방과후 교사
보육교사 1급			교직 180시간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교과 교육론 포함)	유아학교 1급 정교사
유치원 원감				유아학교 교감
유치원 원장				유아학교 교장
보육시설장			원장연수	유아학교 교장

□ 유아학교 교원양성 및 자격

- 현행 2,3,4년제 유아교육과는 ‘영유아교육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핵심 학과는 영유아교육학과로 전환 유도하여 유아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부여함(표 9-2-3 참조)
- 교사자격증 제도가 통합되어 유아학교 교사 자격증 제도가 실시되면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는 폐지함
- 장기적으로 유아학교 교사는 학사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전문학사 소지자는 역할수행 및 유아학교 교사 자격증 급에서 차이를 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표 9-2-4 참조)

- 보육교사 교육원은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양성을 전담함

〈표 9-2-3〉 전국의 대학 및 대학교의 보육핵심학과

구분	예
전문대학	방과후아동보육과, 보육상담전공, 보육과, 사회복지보육과, 생활보육과, 아동교육상담과, 아동노인복지학부, 아동놀이지도과, 아동문화과, 아동미디어과, 아동미술과, 아동미술보육과, 아동미술복지보육과, 아동미술전공, 아동보육과, 아동보육전공, 아동보육학습지도, 아동복지과, 아동복지보육과, 아동복지전공, 아동스포츠과, 아동에너지지도과, 아동예술교육과, 아동음악과, 아동조형미술과, 아동체육과, 아동컴퓨터보육과, 아동학습지도과, 유아체육전공, 유아특수재활과, 유아특수치료교육과, 아동문학보육과, 아동영어복지전공 등
4년제 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기독교아동복지학과, 소비자아동복지학부, 아동가정복지학과(부), 아동가족(학), 아동가족복지학과, 아동벤처산업학과, 아동보육(학), 아동사회복지가족소비과, 아동생활복지, 아동주거,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유아시니어스포츠전공, 의상아동학부 등

출처: 이미화 외(2006).

〈표 9-2-4〉 유아학교 교사의 업무분담을 위한 틀

주업무		지원업무	운영지원업무
교육계획안 작성			
교육활동	음율 조형 언어·문학 수·과학 소꿉 및 극화 신체활동 각 영역별 통합 활동	일상 양육활동 영유아건강일지쓰기 각종 문서 및 공문처리 업무일지쓰기 출석부 등 각종 문서정리 자원봉사활동관리 차량지도 시설물보수점검 전화받기	식단작성 음식재료 주문, 장보기 간식 및 점심준비 우유병 소독 및 설거지 세탁하기 교구장 청소 교실 청소 기기류 세척
	문제행동지도 교재교구 만들기 영유아관찰 일지쓰기 행사준비 및 진행 부모상담 실습생지도		

자료: 이미화 외(2007)에서 제시된 육아지원인력의 직무분석을 위한 틀을 일부 수정함

□ 유아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요건

- 유아학교 정교사 자격취득 요건은 현행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거하되 기본이수영역 일부개편
- 원칙:
 -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우수한 유아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기준, 유아학교 교사의 수업 관련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유아학교 교사 자격 기준을 개발하고 그에 근거하여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및 수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교사자격증 취득 기준에 근거함

〈표 9-2-5〉 유아학교 자격취득요건: 학점 및 개편내용

구분	내용	학점	개편 내용
전공	일반 전공	42학점 (기본이수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영아 관련과목, 생활지도(상담)관련 과목 강화
	교과교육	8학점	
교직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14학점 4학점 4학점	교육복지관련 과목 강화
계		72학점	

3. 교육·보육과정

가. 교육 · 보육과정 통합 방안 배경

- 교육과정의 이원화는 국가 재정의 측면,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리의 측면 등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통합, 일원화가 되어야 함. 즉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 관장하는 ‘유치원 교육과

정'(2007년 개정)과 2006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특히 이 중 만 3 - 5세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모두에 제시되어 있어 이중적 개발임

- 유아기의 교육은 보호와 교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의미로 작용하므로 재원하고 있는 기관이 다르다고 하여, 즉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냐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 질 수는 없음. OECD에서도 오래전부터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로 유아교육의 용어를 사용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사용하여 왔음
- 교육과정의 통합은 국가 수준에서 지향하는 인적자원 양성의 방향에 일관성을 지니기 위하여도 필연적임. 즉 국가 수준에서 교육 및 보육과정을 제정, 고시하고 있다는 것은 곧 국가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및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함
- 현재 단일 국가에서 다른 두 경로와 내용으로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 및 보육과정이 제시되는 것은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일치와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하거나 동일한 관점을 두 경로를 통해 제시하는 비효율적 체제임. 따라서 교육과정의 통합은 필연적임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에서 교육과정 통합은 그 필요성이 높으면서도 비교적 통합의 가능성과 접근이 용이한 영역임
 - 교육과정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예측 및 지지가 여러 연구 자료들에서 언급되었음(김영철, 2007; 신화식, 권희경, 박진옥, 2007; 유희정, 김희진, 김문정, 김혜주, 2007; 이기숙, 강민정, 2007; 이옥, 2006)
 -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이옥, 2006)
 - 우리나라처럼 유아교육기관이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출산율 저하와 취업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로 1994년 계획된 엔젤플랜을 통하여 이원화된 유치원과 보육소를 기능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는 3-5세의 교육내용을 유치원과 보육소 모두 문부과학성에서 제정한 '유치원 교육요령'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박은혜, 김명순, 신동주, 정미라, 2000; 최윤정, 2005). 또한 최근에는 '인정 어린이원'이라는 유치원과 보육소를 통합한 형태의 시설

이 나오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교육과정 역시 ‘유치원 교육요령’임

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보육·교육과정의 통합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 하여 교육과정을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체제의 일원화를 기함
 - 유아기에 있어 교육과 보호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교육부처로의 통합은 유아기 교육을 생애 전체 교육과 연관되는 공교육 및 평생교육의 체계 속에서 강화하여 나가는 토대가 될 것임
 - 교육부처로 통합하는 것은 질 높은 인적자원양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하부 체계인 교육과정 제정, 개정 및 평가, 장학 및 교육과정 관리 체계, 교사양성 및 자격관리 체계, 위의 기능을 수행할 전문행정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음(김영철, 2007). 우리나라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보다 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또한 국가 백년지대계의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OECD 국가들 중 스웨덴, 뉴질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 교육복지 선진국들에서 0-6세유아의 교육을 이미 교육부처로 통합하였음
 - 스웨덴의 경우 아동보호와 학교체제를 통합하면서 유아교육과 보호에서 교육적 요소를 더 강조하며, 교육체제를 보편적인 평생학습체제로 개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학부로 통합하였음(나정, 장영숙, 문무경, 2000; 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 2005) 스웨덴의 통합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통합과정에서 보육은 교육으로서 이해될 수 있고, 교육은 평생학습과 발달적 관점에서 보육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이옥, 2006)
 -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ECEC의 정책 및 재정 총괄부서가 아동가족부에서 교육연구부로 변경되었음(문무경, 2007)
 -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의 경우에도 교육부처와 내무부처로 나뉘어 있는 유보 분리가 유아교육 발전의 장애물임을 학계에서 계속 지적되어 오던

중, 교육부로의 통합을 추진 중임. 즉 대만의 교육부는 2000-2003년까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아교육정책팀'을 구성하고, 내정부와 함께 유보통합 방향에 대한 연구와 협의를 진행하여, 2004년에 유보통합 이후 행정 주무 부처를 내정부로 한다는 결과를 공포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자 2005년 대만 행정원은 다시 유아교육의 행정체제를 교육부로 통합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2007년 11월 현재 관련 법안이 입법원에 제출된 상태임(페이 정린, 2007)

-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교육과정의 통합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즉 유아교육이 아직 기간 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는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공교육적 특성은 매우 공고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강화하는 의미에서도 초등교육과의 연계는 중요 관심사가 되어야 함.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초등 교육과의 연계는 명시, 강조되고 있음

□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

-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및 보육시설의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근거 법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조정,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시되어야 함
- 법적 토대의 마련과 이후에 이루어질 교육과정 제정을 위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개정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함
 - '교육과정 개정 위원회'의 역할은 부처 통합이 이루어진 교육 선진국의 경우 최종 부처 통합을 위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유아교육·보육 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된 사례가 있어(OECD, 2006) 이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0-만5세 유아를 위한 통합 교육과정의 제정

- 교육과정 제정 작업은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
- 전인적 인간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함
 - 현행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서도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해 기르 고자 하는 인간상을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음. 이는 유아기는 전 생애의 기초적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데에 유아교육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역시 전인적 인간의 양성을 기초로 하는 교육목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는 생활영역을 기초로 구성함.
 -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는 각각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5개 생활영역으로,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두 교육과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교육과정 구성 영역의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 영유아의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의 전체적인 발달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므로 통합되는 유아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형성된 공통의 이해와 상호 연구된 내용을 최대한 조율하여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5개 생활영역을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 구성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9-3-1〉 현행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각 영역별 내용 비교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영역 명칭	내용 구분	영역 명칭	내용 구분
건강생활	나의 몸 인식하기	신체운동	감각 및 신체 인식
	나의 몸 움직이기		신체 조절 및 기본 운동
	건강하게 생활하기		신체 활동 참여
	안전하게 생활하기	기본생활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사회생활	나를 알고 사랑하기	사회관계	바른 생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자기 존중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기		정서 인식과 조절
	사회현상에 관심가지기		사회적 관계
표현생활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경험	사회적 지식
	예술적 표현 즐기기		심미적 탐색
	감상하기		예술적 표현
언어생활	듣기	의사소통	예술 감상
	말하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읽기
탐구생활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자연탐구 영역	쓰기
	과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		탐구적 태도
	수학적 기초능력 기르기		과학적 탐구
			수학적 탐구

-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구성은 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하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함
 -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시 유치원 교육과정과 여성가족부의 표준보육과정은 모두 수준별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개정하는 통합 유아학교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구성 체제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임.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급의 구성을 연령별로 할 것인지, 혼합연령으로 할 것인지는 각 기관별 상황이나 철학, 또는 일과 시간의 구성 방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그러나 단일 연령 학급으로 운영한다고 하여도

각 연령 내에서 나타나는 개인차까지 존중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유아교육의 방향이며 현행의 이원화 체제에서도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원칙적으로는 수준별 구성 체제를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합 교육과정은 현재의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형태를 계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 체제는 1992년에 개정, 고시된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미 연구, 적용되어 왔음

- 현행 표준보육과정의 연령에 따른 수준 구분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수준 구분은 재조정함
 - 현행 표준보육과정은 만2세 미만을 1, 2, 3수준으로, 만2세를 1, 2수준으로, 만3-5세를 1, 2, 3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만3-5세의 교육과정을 1, 2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각 연령 및 연령 범위에 따라 수준 표기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통합하는 교육과정의 제정 과정에서 연구, 보완되어야 할 것임
 - 교육과정은 유아들의 놀이 및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정함
- 유아학교 교육과정 통합의 체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의 일정기간 동안(약 1-2년) 연령별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병행하여 적용함
- 통합의 체제가 정착되기 전 일정기간 동안(약 1-2년)에는 0-2세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보육과정’을, 3-5세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이 기간 동안 보육시설에서는 3-5세의 경우, 필요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
- 0-만5세까지의 연령에 적용하는 통합 교육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고시, 시행함
-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자료집의 개발과 고시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및 교사 교육을 진행
-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교육에서는 연령 및 발달 수준 및 하루 일과 길이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교육과정이 어떻게 전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됨

- 시행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적절한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이 이루어짐.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장학 인원과 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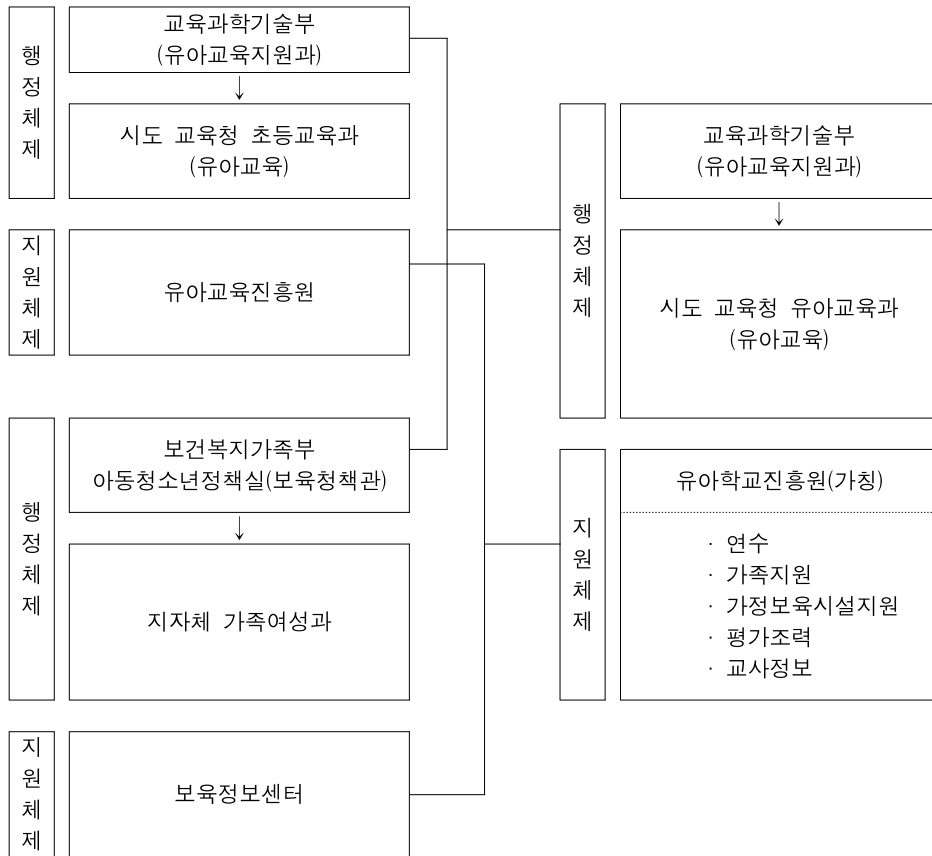
4. 질 관리 감독

가. 질 관리 감독체제 개편정책 배경

- 현행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질 관리 감독은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으나 모든 체제가 중복되기 보다는 한 체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질 관리 감독을 다른 체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임
- 각 체제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질 관리를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하여 질 관리 감독 측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을 중심으로 전달체제가 운영되고 있어 질관리 및 전달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현행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보육시설은 지자체 가족여성과에서 각 시설의 개원과 폐원, 시설 및 설비,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유치원은 시범실시 중인 유치원 평가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실행하고 있음

나. 질 관리 감독 방안

- 통합 후 효율적인 질 관리 감독을 위해 교육과학부 산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학교 전달체제의 통합이 요구됨



[그림 9-4-1] 유아학교 체제 전환 후의 전달체계

-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이 끝난 후, 현재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업무를 분리하여 유아교육과를 신설함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전달체제내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할 전문장학사를 선발하여야 함
 -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업무를 담당할 장학사는 반드시 유아교육과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 배치함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의 조직을 일반관리, 기관 질 관리, 교사 질 관리, 교육과정 질 관리 담당 부서로 개편함

1) 일반행정 관리

- 통합 후 교육과학부 산하 시도교육청에 신설되는 유아교육과의 일반관리 부서에서 일반 행정 관리를 총괄함
 - 일반 행정 관리에서는 현행 초중등학교 일반 행정 관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함
- 준비과정: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폐원, 시설 및 설비,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비교 점검하여 유아학교를 위한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각종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유아학교법(가칭)에 근거하여 사전 정비하여야 함

2) 유아학교 질 관리

- 통합 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을 통합한 유아학교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
- 준비과정: 유아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구를 설치함
 - 현행 보육시설 인증평가사무국의 업무를 기반으로 통합함
 -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인력과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시범 평가를 담당했던 인력의 협력을 유도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시설평가인증 지표와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유치원 평가의 지표를 통합하여 유아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표 9-4-1〉 현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

유치원		어린이집	
영역		영역	
1. 교육과정	1-1. 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 보육환경	가. 보육시설 환경
	1-2. 일과 운영의 적절성		나. 보육활동 자료
	1-3. 교수-학습 방법의 적합성	2. 운영관리	가. 시설의 운영관리
	1-4. 평가의 적절성		나. 보육인력
2. 교육환경	2-1. 교육환경 구성의 적합성	3. 보육과정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2-2. 교재·교구의 적합성		나. 보육활동
	2-3.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안정성	4. 상호작용	가. 일상적 양육
3. 유아의 건강·안전	3-1. 건강관리의 적절성	5. 건강과 영양	나. 교사의 상호작용
	3-2. 영양관리의 적절성		가. 청결과 위생
	3-3. 안전관리의 적절성		나. 질병관리
4. 운영관리	4-1. 교직원 인사 및 복지의 적절성	6. 안전	다. 급식과 간식
	4-2. 예산 편성 및 운용의 합리성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3.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4-4. 기관장의 원 운영의 전문성		
	4-5. 학부모 만족도		
5. 종일반 운영	5-1. 종일반 운영을 위한 기본·설비 구비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가. 가족과의 협력
	5-2. 종일반 프로그램의 적절성		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5-3. 종일반 교사 확보		

- 기존의 보육시설평가인증 지표와 유치원 시범평가 지표의 강점을 취사선택함.
궁극적으로는 유아학교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함

〈표 9-4-2〉 유아학교 평가인증 지표(안)

영역	상세 영역
1. 교육환경	1-1. 교육환경 구성의 적합성
	1-2. 교재·교구의 적합성
	1-3.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안정성
2. 교육과정	2-1. 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2-2. 일과 운영의 적절성
	2-3. 교수-학습 방법의 적합성
	2-4. 평가의 적절성
3. 상호작용	3-1. 교육에서의 상호작용
	3-2. 일상적 양육
4. 건강, 영양 및 안전	4-1. 건강관리의 적절성
	4-2. 영양관리의 적절성
	4-3. 안전관리의 적절성
5. 운영관리	5-1. 교직원 인사 및 복지의 적절성
	5-2. 예산 편성 및 운용의 합리성
	5-3.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4. 기관장의 원 운영의 전문성
	5-5. 학부모 만족도
6.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6-1. 가족과의 협력
	6-2. 지역사회와의 협조

다. 수업 및 교사 질 관리(장학)

-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유아교육과에서 유아학교의 장학을 총괄 담당하여 일상적인 수업 및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장학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장학사를 추가 선발함

- 각 지역에 있는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자율장학 및 장학지도 등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5. 재정지원

가. 재정지원방식 통합의 배경

- 현재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재정지원의 내용이 서로 달라 차이가 나므로 이를 최소화하여 이용 유아의 입장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그동안 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공적재정을 중점 투입하였고,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차등지급함.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의 차이는 물론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하여 유아가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의 차이가 발생함
- 육아지원 비용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 철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즉 지원 대상 유아의 범위와 기관의 종류 등에 대한 원칙이 필요함
 - 일정 연령의 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우선 실시한 후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5세 유아는 부모 소득에 따라 유아교육비를 전액지원을 하고 있으며, 3, 4세아는 부모 소득에 따라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는 유아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정도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이러한 지원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연령의 아동, 예컨대 취학직전인 5세아에 대한 보편적 재정지원을 한 이후에 다른 연령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유아교육과 취업모 지원을 구분하여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통합하여 유아학교 운영시간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부 유아대상 미술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인정되어 유아교육

비 지원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지원을 향후에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학교만 1차 정부지원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학원 등은 사회교육기관이므로 2차적인 보완 기관으로 인정하여 사회교육비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도록 함

- 현재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관별 지원(공립 유치원 및 국공립 보육시설), 프로그램별 지원(영아프로그램 지원, 종일반 지원 등), 아동별 지원을 통합하여 유아학교 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기관(시설)별 지원은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나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낮추고,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유아별 지원은 부모에게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예산 활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유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유아학교 운영이 부모의 선호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유아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이 초래될 우려도 있음
- 현재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이용 시간이 다양하나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의 차이가 없어 종일반 이용 유아들이 수혜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따라서 이용시간에 따른 교육(보육)비 지원체계를 강화시켜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따른 재정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나. 재정지원방식 통합 방안

- 유아학교 교육비는 이용 대상 유아 연령 및 시간을 기초로 표준 비용을 산출하여 적용
 - 현재 국가가 유아에게 직접 지원하는 유아교육비는 여성가족부가 제시(2005)한 표준교육비(보육료)의 50.6%에 불과함(정미라 외, 2007)
 - 따라서 정부지원 유아학교교육비에는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은 물론 모든 부대비용(대체교사 수당, 초과근무수당, 기관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비, 지역 등)을 포함하여 표준 교육비로 현실화시켜야 함
 - 이러한 비용체계는 유아학교교육에 대한 부모의 추가 비용 부담을 없애고

정부지원 무상교육비의 체감도를 높일수 있을 것임

- 반일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대한 비용은 보편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모든 유아들에게 순차적으로 적용
 - 1일 3시간, 주 15시간 교육에 대한 유아학교교육비 지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모든 유아를 위한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지원 대상 선정은 농어촌지역과 도시 빈곤계층을 우선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함
- 종일반 프로그램 오후시간 및 보육료에 대한 지원은 취업모 가정의 자녀 및 저소득 계층 가정을 중심으로 바우처를 통해 추가로 지원
 -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가비용지원은 취업모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노동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함
- 시설별 지원을 유아별 지원으로 전환할 때 국공립 및 사립(민간) 유아학교간의 지원 비용의 내용 및 격차가 조정될 것임
 - ※ 일본의 경우, 표준보육단가는 4세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아동연령, 지역,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산정하고 있음
- 만3-5세 유아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한 완전 유아학교 무상교육을 우선 실현하고, 이를 점차 저소득 계층 및 도시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 실현
- 1일 3시간, 주 15시간에 해당하는 유아학교 교육비는 무상교육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오후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노동부 또는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유아학교 교육비 지원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사립 유아학교에 한함
 - 오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바우처 수혜대상기관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유아학교 및 가정보육시설로 한정하되 회계감사 및 정기적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질 관리를 실시함
 - 바우처의 형태는 공교육 체제에서 영유아가 유아학교나 가정보육시설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학교로 수업료가 지불되는 묵시적 바우처 방식으로 함
 - 묵시적 바우처의 경우 사업담당부서가 제공업체 관련부서에 예산을 위임하고 사후 보고를 받게 되며, 제공업체 관련부서가 증명서를 수령하여 지급 지불로

서 완결됨. 사업담당부서와 제공업체 관련부서의 공조가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며, 공급자의 품질 유지를 비교적 보장할 수 있어 '공급자 바우처'로 인식됨

- 지방자치단체의 유아학교교육비지원을 유도하기위하여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교육경비 조례'를 "유아학교 지원"을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
 -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조례'는 대부분 초중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므로 유아학교를 이용하는 유아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경비지원대상'에 유아학교를 포함시켜 조정해야 함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2006). 유치원 시도교육청별 학급 규모.
-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시 2007-153호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저자.
- 김세곤·박일건(2007). 유·보 일원화 시설 운영 사례의 한·일 비교. 일본학보, 73(0), 327-340.
- 김영철(2007).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보적 발전방향. 한국유아교육학회 2007년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한국 유아교육·보육 자리매김의 미래전망).
- 김윤신(2004). 학교환경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정책포럼, 77, 6-8.
- 나정·장영숙·문무경(2000).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및 제도 분석.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보고 OR 2000-1.
- 문무경(2007). OECD 주요 유럽국가들의 육아정책 동향.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정책포럼. 2007, 4호. 72-85.
- 박은혜·김명순·신동주·정미라(2000). 세계의 유아교육제도. 서울: 양서원.
- 신화식·권희경·박진옥(2007).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007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유아교육현장·학문·정책 간 협력: 그 의미와 실천).
- 여성가족부(2006).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 여성가족부(2007).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여성가족부: 저자.

- 유희정·김희진·김문정·김혜주(2007). 육아지원기관 교육, 보육 활동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기숙·강민정(2007). 일본의 유보 일원화와 ‘인정어린이원’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27(5). 63-86.
- 이옥(2006).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방안. 세미나 자료 2006-1. 육아정책의 통합 적 접근(1).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일주(1999). 한국유아교육 일원화체제 모형 탐색.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라·나정·박은혜·하봉운(2008).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보고서.
- 정미라. 천세영. 신은수. 문무경(2005). 저출산에 대응하는 유아기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략: 유아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비전 2010). 교육인적자원부.
- 최윤정(2005).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8개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4), 5-31.
- 페이 정 린(2007). 양질의 유아교육 확보와 대만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PECERA) 한국학회 국제세미나(차기정부에 바란다: 유아교육의 정책방향) 자료. 81-86.
-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 서울: 학지사.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부록 10. 교사 자격 관련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부록 11. 질문지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한국갤럽 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패널홈 panel.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ID AI-5

--	--	--	--	--

Gallup 20081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의뢰를 받아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 :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6-7

- 지역크기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SQ1) ○○님 댁에는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그 아동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면접원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여러 명일 경우, 가장 큰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받을 것)

- 1. 있다 (아동 연령 : 만 _____ 세) → **SQ2)로 갈 것**
- 2. 없다 → **면접종단**

SQ2) (SQ1)에서 '있다'(1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그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시설은 유치원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입니까? 그리고, 그 시설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 1. 국공립 유치원
- 2. 사립(법인) 유치원
- 3. 국공립 어린이집
- 4. 법인 어린이집
- 5. 민간 어린이집

SQ3) ○○님 댁의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다니는 기관이 아니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닌 총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_____년 _____개월

SQ4) 그럼, ○○님과 그 아동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1. 어머니
- 2. 아버지
- 3. 부모 이외의 주 양육자
- 4. 기타(적을 것 : _____)

DQ1) 성별(응답자)

- 1. 남자 2. 여자

DQ2) 연령(응답자)

만 _____세

기관·시설 관련 사항

문1) ○○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이가 있다 → **문1-1)로 갈 것**
- 2. 차이가 있는 편이다
- 3. 차이가 없는 편이다 → **문2)로 갈 것**
- 4. 전혀 차이가 없다

문1-1)(문1)에서 '차이가 있다'(1,2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제시되는 항목들 중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시작하는 시간
- 2. 마치는 시간
- 3. 교사의 특성
- 4.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5. 이용하는 비용(교육비/보육료)
- 6. 시설·환경
- 7. 보낼 수 있는 연령
- 8. 기타(적을 것 : _____)

문2) ○○님 닥의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 1)-11)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사항 없음
1) 운영시간	1	2	3	4	5	
2) 실내 환경	1	2	3	4	5	
3) 실외 놀이 공간	1	2	3	4	5	
4) 놀잇감, 교재교구	1	2	3	4	5	
5) 교육·보육 내용 및 프로그램	1	2	3	4	5	
6) 선생님의 성품 및 전문적 자질	1	2	3	4	5	
7) 건강·위생 및 안전 관리	1	2	3	4	5	
8) 급·간식	1	2	3	4	5	
9) 등·하원버스 이용	1	2	3	4	5	8
10) 주변 환경	1	2	3	4	5	
11) 부모교육 및 가정과의 교류	1	2	3	4	5	

문3)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별없이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하나로 일원화하는 편이 좋다
2. 일원화하기 보다는 현재 상태가 더 좋다
3. 연령(영아/유아)에 따라 보내는 곳을 구별하는 것이 좋다

교사 관련 사항

문4)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님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달라야 한다 → **문4-1-4-3)으로 갈 것**
2. 같아야 한다 → **문5)로 갈 것**

문4-1)(문4)에서 '달라야 한다'(1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학력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등학교 졸업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
5. 학력은 상관없다

문4-2)(문4)에서 '달라야 한다'(1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0~2세)를 담당하는 교사의 학력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등학교 졸업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
5. 학력은 상관없다

문4-3)(문4)에서 '달라야 한다'(1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어린이집 경우, 유아(3~5세)를 담당하는 교사의 학력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등학교 졸업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
5. 학력은 상관없다

문6)으로 갈 것

문5)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의 학력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등학교 졸업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
5. 학력은 상관없다

교육과정 관련 사항

문6) ○○님 닉의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국가가 정한 교육 및 보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문7) ○○님 닉의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이 가장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 보기를 번갈아가며 읽어줄 것)

- 1. 전인적인 발달
2. 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3. 안전한 보호
4. 자유 놀이중심 활동
5. 영양식 제공과 건강
6. 쓰기, 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7. 특별 프로그램(영어, 미술 등)
8. 기타(적을 것 : _____)

재정 관련 사항

문8) ○○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가구의 형편에 따라 정부가 교육비나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문9) ○○님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정부의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문10) ○○님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비/보육료'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1. 매우 만족스럽다 -> 문11)로 갈 것
2.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이다
3.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문10-1)로 갈 것

문10-1) (문10)에서 '만족스럽지 않다'(3,4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현재 '유치원 교육비/어린이집 보육료'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기본 교육비/보육료 부담이 커서
2. 기본 교육비/보육료 이외의 특별활동비 등 추가 지불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3. 사립이나 민간기관 이용시 국공립에 비해 비용이 비싸서
4. 기타(적을 것 : _____)

문11) ○○님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민간 어린이집'은 교육비나 보육료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관리·감독 관련 사항

문12) ○○님은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감독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문13) ○○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가가 주관하는 평가나 평가인증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14) ○○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기관에 대한 평가나 평가인증의 통과 여부를 고려하시겠습니까?

- 1. 고려할 것이다
2.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문15) ○○님은 자녀를 보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알고 싶은 정보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 보기를 번갈아가며 읽어줄 것)

1순위	61-62	2순위	63-64
-----	-------	-----	-------

1. 유치원의 연혁 및 역사
2. 교직원의 학력 및 경력
3. 프로그램 및 활동 특성
4. 시설·환경·안전 관리 현황
5. 비용
6. 이용시간
7. 등·하원 차량 운행 여부
8. 이용 아동 현황
9. 기타(적을 것 : _____)

응답자 분류

DQ3)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27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1. 초등학교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제/대학졸업 이상

DQ4)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8-29

1. 농업, 어업, 임업
2. 자영업
3. 판매/서비스직
4. 기능/숙련공
5. 일반작업직
6. 사무/기술직
7. 경영관리직
8. 전문/자유직
9. 전업주부
10. 학생
11. 무직
12. 기타(적을 것 : _____)

DQ5) ○○님 닥의 월평균 가구 총 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1. 49만원 이하
2. 50 - 99만원
3. 100 - 149만원
4. 150 - 199만원
5. 200 - 299만원
7. 300 - 399만원
8. 400 - 499만원
9. 500 - 799만원
10. 8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면접 후 기록

리스트번호	35-39
점포상호	
응답자 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면접원 이름	ID 40-42

Supervisor	검 증 원
43-44	

연구보고 2008-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인 조 북 회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32-5 93330